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2호 2008. 12

차례

특집 한일협정과 일본의 전후처리

- 이원덕 ▮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 - 국제 비교의 관점 7
- 남기정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 37
- 이현진 ▮ 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의 해결 방식 - 경제협력 방식으로의 전환과정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73
- 김영미 ▮ ‘국익’으로 동원된 개인의 권리 - 한일회담과 개인보상문제 99
- 안소영 ▮ 일본 국회의사록을 통해서 본 한일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 관한 연구
- 교섭의제의 전환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143

논문

- 최혜영 ▮ 버드나무 신화소를 통해 본 유라시아 지역의 문명 교류의 가능성 혹은 그 接點 187
- 박아림 ▮ 고구려 벽화와 북방문화적 요소 219
- 전현실 ▮ 渤海 수입 衣料 연구 249
- 김종식 ▮ 1920년대 초 일본정치와 식민지 조선지배 -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의 활동을 중심으로 309
- 정성희 ▮ 滿洲國(1932~1945)의 時憲書 발행과 그 정치적 의미 339

Contents

Special Issue Korea-Japan Treaty of 1965 and the Post War Settlements

- Lee, Wondeog ■ A Study on the Japan's Post-war Reparations Diplomacy :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s 7
- Nam, Kijeong ■ Taking Diplomacy Seriously : Japan and Korea on the Road to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37
- Lee, Hyunjin ■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the issue of claims :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resolved in the form of economic cooperation 73
- Kim, Youngmi ■ Individual right mobilized for “national interests” : Individual compensation and Korea-Japan Treaty 99
- Ahn, Soyoung ■ The study on the Korean-Japanese Normalization Treaty negotiation by the analysis of Japanese National Assembly Records 143

Articles

- Choi, Haeyoung ■ A Study on the Myths of Willow Tree of the Eurasian Continent 187
- Park, Ahrim ■ Study of the Nomadic Characteristics in Koguryo Wall Paintings 219
- Jeon, Hyunsil ■ A study on the Imported Textiles of Balhae 249
- Kim, Jongsik ■ Japanese Politics and the Rule of Chosun in 1920s
– Mizuno Rentaro's Colonial Policies in Japanese Political Context 309
- Jeong, Seonghee ■ A Study of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raditional-Calendar System in Manchukuo 339

특 집

한일협정과 일본의 전후처리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

- 국제 비교의 관점 -

이원덕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I. 문제제기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래 일본의 전후처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련의 이국 간 조약을 통해 법률적으로는 전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일본정부는 미수교 상태에 있는 북한을 제외하고 모든 전후처리가 종료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¹⁾ 그러나 아시아 각지로부터 일본 전후처리에 대한 불만과 항의는 1990년대 이래 거세게 제기되어 왔다. 중군위안부 보상요구를 비롯하여 홍콩의 군표 보상요구,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제기된 보상요구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전후배상 외교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과정을 독일의 경우와 비교, 검토하는 한편, 일본이 아시아 제국에 대해 실시한 전

1)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배상 및 재산·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기타 관련 조약 등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왔으며 이들 조약 당사국과의 사이에는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되었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웹사이트 참조. <http://www.kr.emb-japan.go.jp/> 2007년 7월 2일 검색.

후처리의 전체 상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간 한국에서는 한일회담과 그 결과로 맺어진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를 담보해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응당 받았어야 할 보상이 유보된 채, 경제협력자금의 수혜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철저하지 않은 전후처리 문제는 전후 줄곧 한일과거사 논쟁의 핵심이 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한일관계를 대립과 마찰로 이끌어가는 악재가 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들은 일본과의 전후처리 문제를 한일관계라는 양국 간 프레임의 좁은 틀에 가두어 놓고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일 간 전후처리 문제는 과거 일본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피해와 손실을 입었던 아시아 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러 전후처리 사안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의 분쟁에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일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일본 전후처리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를 국제적 비교관점에서 다룬 연구²⁾나 일본의 대아시아 배상정책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는 다소 존재³⁾하나 국내에서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2) 전후처리의 일독 비교를 다룬 한글 연구로는 사토 다케오, 하영선 편, 1997, 『일본과 독일의 전후처리 비교』, 『한국과 일본: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 나남출판. 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 문헌으로는 佐藤健生, 1991, 『ドイツの戦後補償は日本の規範か』, 『世界』 1991년 2月号; 大嶽秀夫, 1986, 『アデナウアーと吉田茂』, 中央公論者; 大嶽秀夫, 1992, 『二つの戦後ドイツと日本』, 日本放送出版協會; 栗屋憲太郎・田中宏・三島憲一・廣渡清吾・望田幸男・山口定, 1994, 『戦争責任 戦後責任: 日本とドイツはどう偉うか』, 『朝日新聞』 등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3) 일본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그간 비교적 많이 축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전후처리의 개별 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전후배상 정책의 전체상을 체계적으로 조감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연구는 永野慎一郎・近藤正臣 編, 1999, 『日本の戦後賠償: アジア経済協力の出発』, 勁草書房이 있다. 이 연구는 일본이 수행한 17개의 전후처리 개별 사례에 대한 분석을 모아놓은 것으로 일본의 전후배상이 아시아 제국과의 경제협력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피했다.⁴⁾

일본 전후처리에 관한 연구는 한일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북일 교섭의 행방을 예측하는 데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패전국이 전쟁 종결 후 수행하게 되는 전후처리의 과정은 강화조약의 체결, 전범에 대한 군사재판, 배상-보상, 청구권에 대한 해결, 전쟁 재발을 위한 평화교육 등의 일련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⁵⁾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일련의 제 과정을 광의의 전후처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협의의 전후처리의 개념을 채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전쟁종결 이후 패전국 일본이 승전국 및 피해국에게 취한 배상, 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물질적 조치를 축으로 하여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를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독일의 전후보상 정책과의 비교

일본과 독일의 전후처리 과정을 비교할 때 양국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일본이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을 통해 전후처리에 임한데 비해서 독일의 경우는 강화조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독일과 연합국이 대독 강화조약의 체결을 미루게 된 데는 동서독의 분단 상황과 전후 급속하게 진행된 유럽에서의 동서 냉전의 전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1992년 독일 통일이 이루어져 표면적으로는 대독 강화조약을 미루어 온 이유

4) 박원순, 1995, 「일본의 전후 배상정책과 그 실제」, 민족문제연구소 지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 30주년을 맞이하여』, 아세아문화사는 이 문제에 관한 국내의 선구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논문은 일본의 배상정책의 전체 상을 개설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5) 사토 다케오, 1997, 앞의 글.

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독일과 연합국 사이에 강화조약의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독일에 있어서 전후보상이란 대체로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나치즘 박해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와 구별되는 전후보상으로서 전쟁 자체에 기인하는 일반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도 존재한다. 예컨대 일반적 전쟁 결과법, 전쟁희생자 부조법, 전쟁포로 보상법 등이 그것이다. 이들 국민에 대한 전쟁피해의 보상은 국민의 생활재건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만 서독은 1980년대 말까지 약 1,000억 마르크를 지출하였다.⁶⁾

1_ 국가 간 배상의 회피

본래 전쟁에 기인하는 국가 간 배상으로는 국제법상으로 국가배상(Reparation)이라는 개념이 있다. 전쟁에 의한 국가배상과 관련해서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베르사유 강화조약에 의한 과대한 배상의무를 지게 된 것이 국가주의 세력의 대두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전쟁에 의한 국가배상은 전쟁 종결 후 강화조약이나 배상협정 등의 국가 간 조약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후 독일은 패전 즉시 연합국에 의해 동서로 분할 점령되었고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의 추진 주체인 독일제국 자체가 존속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합국은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평화조약의 체결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서독은 기본적으로 패전에 따른 국가배상 문제의 연기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독일이 국가배상문제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와 관련한 협정체결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6) 廣渡清吾, 1994, 「ドイツにおける戦後責任と戦後補償」, 栗屋憲太郎・田中宏・三島憲一・廣渡清吾・望田幸男・山田定, 『戦争責任・戦後責任: 日本とドイツはどう違う』, 東京: 朝日選書, 180~194쪽.

7) 廣渡清吾, 1994, 앞의 글.

첫째, 런던 채무협정은 독일에 대한 채권국과 독일 사이에 1953년 2월에 체결된 독일의 대외채무의 지불유예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에 의하면 독일의 교전국, 피점령국 및 그 국민의 전쟁에 기인한 독일에 대한 청구권의 심사는 배상문제의 최종적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소련, 폴란드에 대한 배상에 관해서는, 우선 포츠담협정(1945년 8월 2일)에 의해 소련이 소련 점령지역(동독)으로부터 배상징수를 행할 것과 폴란드에 대한 배상은 소련이 징수하는 분에서 지불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소련은 동독을 최종적으로 배상의무로부터 해방시켰다. 폴란드도 이에 이어서 독일에의 배상청구를 포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셋째, 독일과의 구 동맹제국(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가 1947년 2월 미영불소 4대국과의 평화협정에서 독일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런던 채무협정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넷째, 오스트리아와는 1961년 11월에 크로이츠나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면 독일은 오스트리아에 9,500만 마르크의 보상을 지불하는데 이것은 오스트리아 국내 희생자 부조법 등 나치즘 박해에 의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제도에 충당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_ 나치 박해에 대한 개인보상

서독연방 정부는 1986년 10월 연방의회에 제출한 ‘나치즘 불법의 회복과 보상에 관한 보고서’에서 “역사에 있어서 모범도 경험도 없는 제도”이며, “나치스 불법에 대한 보상이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업적으로서 간주할 수 있고 그것은 내외의 희생자 단체에 의해서도 승인되고 있다”고 자찬하고 있다.

‘나치즘 불법에 대한 보상’ 급부 총액은 1990년 말까지 약 865억 마르크에 이른다. 이 급부의 8할은 1956년 6월 29일 제정된 나치스 박해 희생자를 위한 보상에 관한 연방법에 의거해서 지급된 것이다.⁸⁾

이 연방보상법에 규정된 나치즘의 박해희생자가 보상권리자인데 이는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할 수 있다. 연방보상법은 이 보상권리자의 범위를 속지주의로 규정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서독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기준일은 1952년의 말일, 독일보다 전에 사망한 자는 최후의 주소가 기준이 된다. 또 기준일 이전에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추방된 자는 최후의 주소가 1937년 말일까지 시점에서 독일제국의 영토에 있으면 해당된다). 또한 구소련 동국제국에 거주하고 있던 독일계 주민으로 귀환자, 피 추방자로서 서독으로 이주해 온 자 등 속지주의의 약간의 예외도 인정하였다.

보상권리자에게는 박해를 받은 본인뿐 아니라 피 박해자의 근친자로서 박해받은 자, 살해된 피 박해자의 유족, 그리고 오인으로 인해 박해받은 자 등도 포함된다. 유대인에 대해서는 집단적 박해가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어 개개의 박해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집시에 대해서는 집단적 박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여전히 재판상의 쟁점이 되고 있다.

보상금부의 방법은 금전금부가 주가 되고 거기에는 일회적 금부와 종신연금금부의 형태가 있다. 금전금부 외에는 의료, 개호금부, 저리의 생활재건자금 제공 등이 규정되었다. 보상제도의 운영초기에는 보상에 의해 박해를 받은 유대인이 독일에 귀국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상금부의 지불의 약 8할은 외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3_ 서방 제국에 대한 보상

나치즘 박해의 희생자의 한 그룹으로서 일괄적으로 서측 피해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독일에 점령된 서측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정치적 이

-
- 8) 연방보상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치즘에 정치적으로 적대한다는 이유에서 혹은 인종, 신앙 또는 세계관 등의 이유에서 나치즘 권력지배하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불법이 행해진 것, 신념에 바탕 해서 혹은 신앙 또는 양심을 위해서 나치즘의 권력지배에 대해 행해진 저항은 독일민족과 국가의 복리에의 공헌이며 또한 민주적, 종교적, 경제적 조직 또한 나치즘의 권력지배에 의해 위법하게 침해된 것, 이들 사실을 승인하여 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하의 법률을 의결했다.”

유로 인해 나치스에 박해를 받았던 이들 국가의 시민을 일컫는다. 서독의 연방 보상법은 보상권리자를 속지주의에 의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측 피해자는 독일국가에 대해 직접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서측 8개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스, 프랑스, 영국)은 독일에 대해 종래 간과해 왔던 서측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교섭을 개시하였다. 그 후 스위스, 스웨덴도 이 교섭에 참가하였다.

서독정부는 이에 대해 1958년 12월 8일 8개국에게 보낸 각서에서 다음과 같은 방침을 표명했다. 첫째, 각 국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청구권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런던 채무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임의적인 급부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이 경우에도 서독정부에 한정된 급부 능력을 고려하여 모든 종류의 박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형적인 나치스 불법행위

〈표 1〉 서독과 피해국 간의 보상액과 협정 체결시기

국가	보상액수	보상지불협정 체결시기
룩셈부르크	1,800만 마르크	1959년 7월
노르웨이	6,000만 마르크	8월
덴마크	1,600만 마르크	8월
그리스	1억 1,500만 마르크	1960년 3월
네덜란드	1억 2,500만 마르크	4월
프랑스	4억 마르크	7월
벨기에	8,000만 마르크	9월
이탈리아	4,000만 마르크	1961년 6월
스위스	1,000만 마르크	6월
오스트리아	9,500만 마르크	11월
영국	1,100만 마르크	1964년 6월
스웨덴	100만 마르크	8월
총액	9억 7,100만 마르크	

※ 廣渡清吾, 1994, 「ドイツにおける戦後責任と戦後補償」, 栗屋憲太郎, 田中宏・三島憲一・廣渡清吾・望田幸男・山田定, 『戦争責任・戦後責任: 日本とドイツはどう違う』, 東京: 朝日選書, 192쪽.

에 대한 보상에 대상이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 인종적인 박해에 관해서는 이미 유대인 회의에 대해 4억 5,000만 마르크가 지불된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각서에 입각하여 그 후 서독과 각국 간에 보상에 관한 이국 간 협정이 체결되었다. 보상 지불액과 체결시기는 앞의 표와 같다.

4_ 동구제국과의 관계

동구제국(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은 서독이 브란트 정부하에서 동방정책을 추진하여 외교관계가 부활한 1970년대 이후 서측 제국과 마찬가지로 서독에 대한 보상요구를 제기하였다. 여기서는 동구제국이 오로지 서독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였고, 동독에 대해서는 국외로 한 것이 하나의 중대한 장애가 되었다. 이 태도는 이스라엘이 서독뿐 아니라 동독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소련 및 동구제국은 이미 국가배상의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와는 조정도 문제가 되었다. 거기에서 보상청구를 뒷받침하는 논의로 첫째, 개개의 사인의 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국가배상과는 구별된다는 점, 둘째, 국가배상과 나치스의 불법에 대한 보상은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의 권리 여하에 관계없이 동구제국의 나치스 희생자에 대해서 보상이 행해야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독일 통일까지 서독과 동독 간에는 보상문제에 관해서 이국 간 협정은 일체 성립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 연행되어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된 약 8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에 대한 보상문제이다. 이 중에 대부분을 점하는 것은 폴란드인이었다. 이 문제의 해결이 1980년대 후반부터 독일 국내에서도 강조되었다. 연방정부는 1986년의 보고서에서 강제노동은 '전쟁과 점령지배의 일반적인 수반현상'으로 국가배상의 문제에 속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런던 채무협정에 의해 최종적인 배상문제의 규정에 이를 때까지 유보되어 있으므로 청구권은 독일국가, 독일 각주에 대해서 뿐 아니라 사적 기업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보상은 독일이 종래 행해 왔던 나치스의 불법에 대한 보상

의 틀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여 1989년 6월 야당 녹색당이 '나치스의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을 위한 연방재단'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9월에는 사민당도 동 취지의 법안을 제출) 동시에 폴란드와의 사이에 '나치스 지배하에서의 폴란드인 강제 노동자에게 개인적 보상을 행하기 위한 포괄협정'의 체결을 제안했다. 폴란드와의 협정체결에 관한 이 제안은 '나치스의 불법에 대한 보상'으로 강제 노동자에게도 보상을 행해야 하며, 애초 런던채무협정의 서명국이 아닌 폴란드에게 협정의 효력을 주장하는 정부의 해석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독일 통일 후 급속하게 진전을 보고 있다. 1992년 4월 28일 독일정부와 폴란드정부는 나치스의 희생자와 강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행하기 위해 폴란드에게 '화해기금'을 창설하여 독일 측이 여기에 5억 마르크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Ⅲ. 일본의 대아시아 전후처리의 구조

1_ 냉전격화와 대일 배상정책의 전환

점령초기 미국이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의 배상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였다. 즉, 첫째, 재군비를 가능케 하는 일본 내 자본설비는 연합국에 인도하고 둘째, 일본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과 점령유지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현물 배상을 징수하며 셋째, 일본의 보유했던 재외자산은 연합국에게 인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격화되면서 이러한 배상방침은 후퇴를 거듭하였고 마침내 전후처리의 기본방침을 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배상에 관한 규정이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즉, 강화조약에는 과대한 배상징수로 인해 일본경제에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관철되었다. 즉, 징벌적인 요소가 배제되고 존립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폭 완화된 것이다. 냉전적 대결체제 아래에서 대 공산주의 방위와 자유주의 진영 강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일본의 존재방식이 규정되었다.

이처럼 대일 배상조건의 대폭 완화된 요인으로는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냉전의 급격한 도래에 따른 일본이 전략적 비중이 급상승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 대한 가혹한 금전배상 요구가 독일의 경제 혼란을 야기하고 배상지불도 정체된 채, 나치스의 대두를 초래했다는 쓰라린 경험에 대한 반추 그리고 셋째로는 대일 점령비용을 절감하려는 미국의 정책적 의도를 들 수 있다. 점령기간 중 일본국민의 최저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미국은 20억 달러 이상을 부담했다.

연합국이 패전국 일본에게 부과한 배상요구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관대한 것이었다고 일컬어진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연합국이 부과한 가혹한 배상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는 나치 독일의 등장을 허용하게 되었다는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애초부터 상대적으로 전후 일본에게는 관대한 배상방침이 고려되었다.

연합국이 패전국 일본에게 부과할 배상조치의 윤곽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것은 1945년 7월 26일 발표된 포츠담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포츠담 선언의 제11조는 “공정한 실물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산업의 유지”와 “장래 일본의 세계무역에의 참가”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⁹⁾ 즉,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문제에 대한 교훈으로부터 일본에게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산업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표명된 것이었다.

이어서 일본의 패전이 확정된 이후 1945년 9월 22일 발표된 미국의 ‘초기 대일 방침’의 제4부 ‘경제관계’의 제4항 ‘배상 및 반환’에는 대일배상의 4대 기본원칙이 명기되었다. 이는 이후 몇 차례 겪게 될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합국

9) 岡野鑑記, 1958, 『日本賠償論』, 東洋經濟新報社, 8쪽. 포츠담 선언의 전문 참조.

의 대일 배상정책의 견고하고도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즉, 이 4대 원칙이라 함은 1) 일본산업의 비군사화 원칙 2) 일본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증할 수 있는 평화적 일본경제 유지의 원칙 3) 실물배상 즉 현존의 자본설비 및 시설 또는 그 생산재에 의한 배상의 원칙 4) 배상 채권국 간의 공평한 배분의 원칙이 그것이다.¹⁰⁾

그러나 일본에게 가혹하고도 엄중한 배상을 청구하려 했던 미국의 초기방침은 1947년 이후 동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본격화된 냉전은 점차 동아시아로 확산되면서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냉전의 격화는 1949년 중국대륙이 마오쩌둥의 공산당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절정을 맞이하게 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은 동아시아 냉전의 열전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격화되는 와중에서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은 근본적인 궤도수정을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정책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미국은 냉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일본의 민주화, 비군사화를 촉진 시킴으로써 장래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위협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동아시아 전략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점차 확산되면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급변하였다.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은 아시아의 핵심적인 동맹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즉, 미국은 산업생산력을 보유한 일본을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할 최대의 방파제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1948년 이후 중국의 국공내전의 전황이 공산당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애초 중국을 맹주로 하는 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려던 미국의 구상은 좌절되고, 그 대신 미국의 대일 전략적 가치는 급상승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정책의 전환을 급격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즉,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배상정책은 점령초기 폴리 보고서에서 제시된 엄격하고도 엄중한 배상 원칙에서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점차 후퇴를 거듭하게

10) 岡野鑑記, 1958, 위의 책, 77쪽.

되었다. 1948년 이후 스트라이크 보고서, 로알 장관의 성명, 존스톤 보고서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군사시설, 군수 공업시설 부문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중간배상 조치마저 도중에서 표류하였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중간배상의 배분 문제를 둘러싼 혼란은 좀처럼 수습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이 정한 배분비율에 대해 중국, 소련 그리고 필리핀 등이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중간배상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¹¹⁾

2_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전후처리

1) 강화조약의 체결

배상 및 보상을 필두로 하는 일본 전후처리의 기본 방향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규정되었다. 즉, 일본은 점령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한 이후, 강화조약에 의거하여 전후처리 조치들을 일괄적으로 이행하였다. 한편 강화조약으로 해결을 보지 못한 사항이나 강화조약에 불참한 국가들과의 전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개별적인 평화조약이나 양자협약에 의한 해결이 추구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대 아시아 전후처리의 전체 상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화조약이 규정한 전후처리 내용들을 먼저 검토하고, 다음으로 개별적인 양자조약에 의해 전후처리가 다루어진 사안의 두 범주로 분류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강화조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강화회의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의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평화조약의 초안은 미국과 영국이 기초국이 되어 11개월 간에 걸친 사전교섭을 끝내고 8월 13일 최종안이 각 연합국에 제시되어 강화회의는 이에 대한 서명을 목적으로 소집되었다. 이 강화회의에는 일본과 50개국이 초청되었는데 이들 국가는 1942년 1월 1일 연합국 공동선언

11) 岡野鑑記, 1958, 앞의 책, 78~175쪽.

의 서명국이거나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었던 나라들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공산당 지배하의 대륙중국과 국민당의 대만의 대표성 문제를 둘러싸고 미소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표면화됨에 따라 초청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전후에 독립한 국가라도 일본과 교전상태에 있었던 국가로부터 분리 독립한 경우에는 초청 대상이 되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그러한 경우이다. 한편 인도, 미얀마, 유고슬라비아는 참가를 거절하였고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는 강화조약 초안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서명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일본을 포함하여 총 49개국이 서명에 참가하였다.¹²⁾

2) 강화조약의 배상규정에 따른 전후처리

강화조약의 내용 중 배상과 직접 관계된 조항은 제14조이다. 따라서 제14조를 배상조항이라고도 부른다. 강화조약 제14조(a)에서 “일본은 연합국에게 전쟁 기간 중 입힌 손실과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승인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본이 모든 손해 및 고통에 대해 완전한 배상을 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존립가능한 경제의 유지”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실시한다는 한계 규정을 두고 있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의 영역이 일본군대에 의해 점령되고 또한 일본국에 의해 손해를 입은 연합국”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당국이 ‘희망할 때’에 한하여 교섭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상청구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배상요구를 포기한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화조약에 입각하여

1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배상에 관한 일본 측의 기존연구는 매우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배상문제를 공식적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문헌은 大藏省財政史室 編, 1984,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話まで』 第一卷, 東洋經濟新報社; 外務省賠償部 監修, 賠償問題研究會, 1963, 『日本の賠償』, 世界ジャーナル社가 참고가 된다.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는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영국(홍콩, 싱가포르), 미국(괌, 키스카)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이 중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의 연합국은 배상 청구권 포기를 선언하였고 라오스, 캄보디아도 배상요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만이 대일배상을 요구하여 개별적인 배상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최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대만, 한국, 북한은 강화조약의 서명국이 아니었으므로 강화조약에 입각한 배상 청구권을 갖지 못하게 되어 이후 개별적인 교섭에 의한 전후처리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배상의 방식에 관해서는 “생산, 침몰 인양 기타 작업 등에 일본인은 역무를 연합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역무배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일본의 배상에 관해서는 금전이나 현물 방식이 아닌 역무에 의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강화회의 석상에서 미국의 탈레스 대표는 미국이 역무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¹³⁾ “일본은 현재 고용이 불안정한 인구나 불완전한 공업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양자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원료부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원료는 일본군이 침략했던 국가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 만약 전쟁으로 황폐한 이들 국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원료를 일본에 보낸다면 일본인은 이를 원료 공급국을 위해 가공할 수 있고 게다가 일본인의 역무가 자유롭게 제공된다면 상당량의 배상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국회에서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은 금전배상을 하였다. 또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오히려 물품배상이었지만 일본에게는 금전도 물품도 독립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역무배상이다. 따라서 조약에서는 역무배상으로 한정되어

13) 국무총리실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2006, 『일본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전후보상 및 국내원호관련 자료집』, 15~16쪽. 이 자료집에는 일본외무성조약국 법규과장이 작성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의 배상청구권 처리」라는 논문의 번역이 소개되어 있다.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역무배상에 대해 설명하였다.¹⁴⁾

이처럼 강화조약의 초안 단계에서는 역무배상 이외의 배상방식은 예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역무배상 방식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필리핀 대표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역무이외의 방식인 금전배상, 현물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그 후의 개별 배상협정의 교섭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역무방식 이외에 현물방식이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3) 해외 일본재산의 처분

직접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이외에도 배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연합국 내에 있는 재외 일본재산의 처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강화조약 제14조 (a)2.(I)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각 연합국이 일본 및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조약의 최초 효력 발생 시에 그 관할하에 있는 것을 압류, 유치, 청산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합국 내의 재외 일본재산의 몰수에 관한 개념은 초기 점령문서에서도 드러났으며, 베르사유 강화조약이나 이탈리아 평화조약의 선례에서도 예상된 점이다. 1907년 헤이그 육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령지 사유재산권의 존중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적국 사유재산의 몰수 원칙은 관행으로 확립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¹⁵⁾

재외 일본재산의 반 이상이 존재했던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국은 아니지만 동 조약 제21조 규정에 의해 제14조(a)2의 이익을 받게 되어, 중국 내의 일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로, 소위 분리지역이라 불려왔던 한반도, 대만에 있는 일본재산에 관해서는 평화조약 제4조(a)에서 특별 협약의 대상이 되었지만, (b)에서 분리지역에서 미국

14) 국무총리실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2006, 위의 책, 16쪽.

15) 국무총리실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2006, 앞의 책, 16~17쪽.

〈표 2〉 패전 직후 일본의 재외재산, 재외재산조사회 조사, 「재외재산 평가액 추계」

(1945년 8월 15일 현재)¹⁶⁾

한반도	702억 5,600만 엔
대만	425억 4,200만 엔
중국 동북지역	1,465억 3,200만 엔
화북	554억 3,700만 엔
화중 화남	367억 1,800만 엔
기타(화태, 남양 그 외 남방지역, 구미제국)	280억 1,400만 엔
합계	3,794억 9,900만 엔 (236억 8,100만 달러)

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일본재산 처분의 효력을 일본이 승인할 것이 규정되었다.

3_ 배상협정에 따른 전후처리

1) 양자 조약에 의한 배상 및 준 배상

1952년 4월 28일 강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은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었다. 일본은 독립 직후부터 가장 중요한 외교과제의 하나로 연합국에 대한 배상문제 처리에 대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화조약의 규정대로 소규모의 배상 금액과 역무형식의 배상을 실시하려고 하는 일본과, 상대적으로 많은 배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역무배상 이외의 현물배상을 청구하려는 아시아 제국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여 배상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일본의 오키자키[岡崎勝男] 외상은 1953년 가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3개국을 방문하여 국교수립과 배상협정 교섭의 촉진에 임하게 되었다. 이때 오키자키 외상은 강화조약 제14조가 규정하는 역무배상의 '역무'라는 개념을 확대 해석하

16) 内海愛子, 2002, 『戦後補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日本史リブレット68, 山川出版社, 29쪽.

여 각국이 요구하는 자본재의 제공을 인정하겠다는 배상 지불방침의 변경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동남아 4국과의 배상교섭은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일본과의 배상협정 체결¹⁷⁾에 가장 먼저 나서게 된 것은 미얀마였다. 미얀마는 1948년 1월 독립했지만 강화조약의 미국 초안이 일본의 배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화회의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이국 간 평화교섭을 진행해야만 했다. 미얀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배상교섭을 지켜보는 태도를 취하다가 1954년 8월 교섭을 위한 사절단을 방일시켰다. 미얀마 측은 25억 달러의 전쟁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타국과의 평등, 특히 필리핀에 대한 오노-가르시아 안(4억 달러 20년간 지불 안)을 자국에도 적용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였다. 일본은 이에 2억 달러 10년간 지불 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하였다. 외화사정의 악화에 시달리던 미얀마는 이를 마침내 수용하여 1954년 11월 양곤에서 〈평화조약〉 및 〈양국 간 배상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는 2억 달러(720억 엔)의 배상금을 10년간 지불하고 더불어 10년간 5,000만 달러 경제협력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배상형태로는 강화조약에서 규정한 역무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일본인의 역무 및 일본의 생산물’이라는 형태로 공여할 것이 규정되었다. 또한 이 협정에는 이른바 배상재검토 조항이 설치되어, 이후 체결될 타국과의 배상협정과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배상액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미얀마는 1963년 3월 추가협정을 맺어 1억 4,000만 달러의 무상원조와 3,000만 달러의 차관 공여를 추가적으로 획득하였다.

미얀마와의 배상 타결은 타 아시아 국가와의 교섭에도 탄력을 주게 되었다. 미얀마에 이어 배상협정을 타결한 것은 필리핀이었다. 앞서 서술한 바와

17) 미얀마의 대일배상협정 체결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Ma-Mint Kyi, 1984, “Burma-Japan Relations 1948-1954 : War Reparations Issue,” 東京大學總合文化研究科國際社會科學專攻博士論文; 永野慎一郎・近藤正臣 編, 1999, 앞의 책, 第5章 ‘ビルマ賠償’ 참조.

같이 필리핀은 미국의 대일배상 정책이 전격적으로 전환되었을 때도 가장 큰 불만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강화회의석상에서도 대일 배상징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강경파 역할을 담당했었다. 필리핀은 1952년 1월 교섭을 개시하고 일본에게 8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액을 청구하였으나, 일본은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회담이 일시 중단되었다.

1953년 11월부터 교섭이 재개되어 필리핀은 8억 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하고 이에 일본은 5,000만 달러 안으로 맞서 난항을 거듭하였다. 결국 1956년 8월에 교섭이 타결되어 양국 간에 ‘배상협정’과 ‘경제개발차관에 관한 교환공문’에 서명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은 5억 5,000만 달러(1980억 엔) 상당의 역무와 생산물에 의한 배상과 2억 5,000만 달러(900억 엔)에 이르는 차관공여가 합의되어 전후처리가 마무리되었다.¹⁸⁾

다음으로 체결된 것이 인도네시아와의 배상협정이다.¹⁹⁾ 미얀마와 필리핀과의 배상협정 체결로 말미암아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과의 배상협정은 시간문제로 이해되었다. 인도네시아는 강화조약에 서명하였지만 배상조항에 대한 국내의 불만 고조로 비준을 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강화조약 이후 교섭에 착수하였으나, 독립 직후의 혼란상황에 직면하여 타결을 보지 못하다가 1952년 1월 배상에 관한 중간협정의 가 조인이 있었다. 그리고 1953년 12월에는 ‘침선인양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기도 하였다. 교섭에서는 배상총액에 관해 인도네시아가 8억 달러를 요구하고, 일본이 2억 5,000만 달러를 주장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1957년 일본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와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의 직접회담에 의해 일거에 기본원칙이 확정되어 ‘평화협정’과 ‘배상협정’이 동시에 체결되었다. 여기서 일본은

18) 필리핀의 대일배상 협정에 관한 연구로는 吉川洋子, 1991, 『日比賠償交渉研究』, 勁草書房이 대표적이다.

19) 인도네시아의 대일배상 협정에 관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宮城大藏, 2001, 「インドネシア賠償をめぐる國際政治」, 『一橋論叢』 125(1); 倉澤愛子, 1999, 「インドネシアの國家建設と日本の賠償」, 赤澤史朗, 栗谷憲太郎など 共編, 『年報日本現代史 第5號 講話問題とアジア』, 現代資料出版 참조.

배상금으로 인도네시아에게 2억 2,300만 달러를 12년간 지급하고, 정부차관으로 4억 달러를 20년간 공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역채권 1억 7,000만 달러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여 그 총합은 약 8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고 애초부터 인도네시아가 집요하게 주장했던 필리핀과의 동액요구는 달성된 결과가 되었다.

베트남은 남북분단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7년에 걸친 인도차이나 전쟁 때문에 배상협정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베트남은 애초 20억 달러의 전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교섭이 중단되었다. 1955년 4월부터 배상교섭이 재개되어 4년간의 교섭을 벌인 끝에 1959년 5월에 사이공에서 배상협정이 체결되었다. 여기서는 3,900만 달러 상당의 역무와 생산물을 5년에 걸쳐서 지불할 것이 합의되었다. 배상협정과 더불어 차관협정이 체결되어 3년간 750만 달러의 차관을 공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북 베트남은 1956년 8월과 1959년 5월에 배상청구권을 유보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동남아 4개국에 대한 일본의 배상협정은 1950년대 중, 후반을 통해 전부 체결되어 전후처리가 종료되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이었지만 일본에게 배상청구권의 포기를 통보하였다. 일본은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라오스와의 사이에는 1958년 10월 경제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10억 엔의 원조를 2년에 걸쳐 무상으로 공여하였다. 한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1959년 3월 별도의 경제기술협력 협정을 맺어 15억 엔의 원

〈표 3〉 일본의 동남아 4국에 대한 배상²⁰⁾

국가	협정체결	배상총액
미얀마	1955. 4. 16	720억 엔(2억 달러)
필리핀	1956. 7. 23	1,980억 엔(5억 5000만 달러)
인도네시아	1958. 4. 15	803억 880만 엔(2억 2,308만 달러)
베트남	1960. 1. 12	140억 4,000만 엔(3,900만 달러)

20) 永野慎一郎・近藤正臣 編, 1999, 앞의 책, 12쪽.

〈표 4〉 일본의 준(準) 배상(경제협력, 재산-청구권)²¹⁾

국가	협정체결	금액(비고)
타이	1955. 7. 9	54억 엔(특별 엔 해결협정)
	1962. 1. 31	96억 엔(경제협력협정)
라오스	1958. 10. 15	10억 엔
캄보디아	1959. 3. 2	15억 엔
미얀마	1963. 3. 29	473억 3,600만 엔
한국	1965. 6. 22	677억 2,800만 엔(유상 2억 달러)
	1965. 6. 22	1,020억 9,300만 엔(무상 3억 달러)
싱가포르	1967. 9. 21	29억 4,000만 엔(무상)
	1970. 10. 9	29억 4,000만 엔(유상)
말레이시아	1967. 9. 25	29억 4,000만 엔
미크로네시아	1969. 4. 18	18억 엔(신탁통치지역 미일협정)

조를 무상으로 3년에 걸쳐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태국과는 1955년 7월에 ‘특별 엔 협정’이 성립되어 54억 엔 상당의 영화 파운드를 지불기로 하고 96억 엔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독립이 늦어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경우는 양국 모두 평화조약 체결 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정식 배상 채권국이 되지는 못했지만 1957년 8월, 1965년 8월에 각각 독립을 달성한 이후 대일 배상에 대한 청구를 요구하였다. 일본은 이 두 나라에 대해 정식의 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각각 말레이시아에 무상 29억 4,000만 엔 그리고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동액의 유상, 무상 공여가 각각 이루어졌으며, 미크로네시아에 대해서도 ‘신탁통치지역 미일협정’을 체결하여 18억 엔의 경제협력자금이 제공되었다.

2) 분리지역에 대한 재산청구권 처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배상 및 청구권 처리와 관련하여 일본과 교전상

21) 永野慎一郎・近藤正臣 編, 1999, 앞의 책, 12쪽.

태에 있었던 연합국과 전쟁 중에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일본의 패전으로 일본에서 분리된 이른바 분리지역(한반도와 대만)을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다. 분리지역에 대한 전후처리는 제14조의 배상규정과는 별도로 제4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배상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분리에 따른 상호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4조는 한반도와 대만으로 대표되는 분리지역과의 재산, 청구권 문제를 일본과 이들 지역의 당국 사이에 특별협정을 맺어 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한국과의 재산청구권 처리문제는 강화조약 제4조에 입각하여 한일회담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강화조약의 이전 시기에 이승만 정부는 한국이 승전국의 입장에서 강화조약에 정식 참가함으로써 일본에게 대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한다는 구상하에 '대일배상 요구조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였으나 한국이 강화조약의 정식서명국에서 배제되고 제14조국이 아닌 제4조국으로 전락하면서 한국의 대일요구는 재산청구권의 형태로 축소, 재조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재산 청구권에 관한 8개 항목'을 일본 측에 제기하였으나 일본은 이 중 법적인 근거와 물증이 확보된 것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정치적 요구로 철저히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재산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격차와 청구권 금액의 차이를 전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본은 경제협력방식을 제안하였고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경제협력방식이란 재산청구권 항목에 대한 세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제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무상, 유상의 총액자금을 공여함으로써 재산청구권의 권리를 완전 소멸시키는 방식이다. 1962년의 11월 김종필-오히라 메모에 의해 양국은 경제협력방식에 의한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합의한 것이다.

난항과 파란으로 가득 찬 14년간의 마라톤 교섭은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과 더불어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마침내 결착을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일본이 제공하고 그의 수반되는 결과로 재산, 청구권에 관한 모든 권리가 최종적으로 소멸한다는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전후처

리가 마무리되었다.²²⁾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의 대일 재산 청구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정부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서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휴전선 이북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북한과의 미결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현안으로 되어 있다. 1990년 가네마루[金丸信] 자민당 부총재의 전격적인 방북을 계기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개시되어 16년간 여러 차례에 걸친 회담의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였으나 현재는 핵, 미사일, 납치문제 등으로 교섭이 무기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법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일본에게 남겨진 유일한 미해결의 전후처리 과제이다.²³⁾

한편 대만과의 재산·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1951년 체결된 일화(日華)평화조약에서 일본정부와 중화민국정부 간의 특별협정의 주제로 삼기로 결정되었으나, 1972년 전격적으로 대만과의 단교를 전제로 한 중일 국교정상화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특별협정을 맺어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게 되었다. 즉, 대만과의 재산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정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하나의 중국정책을 강력히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일본이 대만과의 추가 협정체결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일본은 1987년 '대만주민 출신 전몰자의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만 출신 구 일본병사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는 1970년대 이래 대만 출신 일본 병사들의 보상 요구가 제

22) 한일회담의 청구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한 연구로는 이원덕, 1997,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한일회담과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서울대출판부; 太田修, 2003, 『日韓交渉: 請求權問題の研究』, クレイン 참조.

23) 북일교섭에서 재산청구권 문제는 2002년 9월의 '평양선언'에서 대강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일 간에도 한일협정에서 채택한 '경제협력방식'을 원용하여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처리를 시도한다는 내용이 합의되었다.

기되어²⁴⁾ 마침내 일본 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의원모임, 사회단체 등이 결성되어 이들이 일본법정 및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한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일본은 대만 출신 일본병사와 그 유족에게 일인당에 200만 엔의 금액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사태는 종결되었으나 이 지불의 명목은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²⁵⁾

3) 중국과의 전후처리

1972년 국교정상화를 위한 중일교섭에서 일본은, 중국과의 전후처리 문제는 1952년 일본과 대만 사이에 체결된 ‘일화(日華) 평화조약’에 따라 해결이 끝났으며 따라서 중국은 국가로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중국에게 배상 청구권의 포기를 중용했다. 한편 중화인민 공화국 정부는, 일본이 중화민국 정부와 체결한 1952년의 ‘일화(日華) 평화조약’은 애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고하게 견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거듭된 교섭결과 타협을 보게 되었다. 즉, 중일 양국은 마침내 “중일 간의 배상문제는 형식적으로는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 발표 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²⁶⁾

24) 대만 출신 일본병사의 보상운동이 제기되게 된 계기는 1974년 12월26일 대만 출신의 나카무라 테루오 씨가 인도네시아의 모로타이 섬에서, 전쟁이 종결된지도 모른 채 30년 만에 구출된 사건이다. 그는 발견 당시 “나는 일본병이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의 구출은 그동안 일본정부가 무시해 왔던 대만뿐 아니라 한국 국적 출신 일본병사의 보상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5) 대만 출신 일본병사에 대한 위로금 지불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台灣元日本兵士の補償問題を考える會編, 1993, 『台灣補償痛恨—台灣人元日本兵戰死傷補償問題資料集會冊』 참조.

26) 중국은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이 초기의 배상징수 방침에서 일본의 전후 부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대일배상의 요구를 약화시켰다. 그러나 중국은 1952년 〈일화강화조약〉을 체결하여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대만의 결정을 결국 답습, 계승하는 방식으로 1972년 대일배상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게 되었다. 石井明, 1987, 『中國の對日占領政策』, 日本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전시 중 영토가 일본군 점령하에 있었던 최대의 피해 국이지만 강화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그것은 중국, 대만 중 어느 정부를 강화조약에 초대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 동서 양 진영과 미영 양국이 대립했기 때문이었다.²⁷⁾ 중국, 대만정부 모두 강화조약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은 강화조약 직후 공산 중국을 배제하고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와 강화조약 교섭에 착수하였다.²⁸⁾ 일본과 중화민국 정부는 1952년 4월 ‘일화평화조약’과 동시에 서명된 의정서에서 “일본국민에 대한 관대와 선의의 표징으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였다.²⁹⁾

‘일화평화조약’은 그 이후 1972년 9월 중일 국교정상화의 결과 ‘존속 의의를 상실하고 종료’ 하였지만 그 때 서명된 중일 공동성명 제5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중일 양국 사이에서 전쟁과 관계된 중일 간의 청구권 문제는 공동성명 발표 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³⁰⁾ 결국 중국은 대만이 포기한 대일 배상청구권 포기 입장을 인정하고 계승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³¹⁾

國際政治學會編, 『日本占領の多角的研究』, 季間國際政治 第85卷, 31~37쪽.

2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영미 교섭에서 중국 대표권을 둘러싸고 공산 중국의 대표권을 주장한 영국과 대만의 대표권을 주장한 미국이 대립을 거듭하였으나 결국 중국과 대만 모두 강화회의에 초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8) 한국 전쟁이라는 동아시아의 열전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일본이 공산 중국이 아닌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를 강화조약의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9) 대만과 일본사이의 평화조약체결을 둘러싼 교섭과정 및 배상처리 문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石井明, 1988, 『中國の對日講話』, 渡辺昭夫, 宮里政玄 編, 『サンフランシスコ講話』, 東京大學出版會; 彭明敏·黃昭堂, 1983, 『台灣の法的地位』, 東京大學出版會 참조.

30) 참고로 소련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후 만주 등의 지역에서 방대한 공업시설을 자국으로 가져간 구소련은 1956년 10월 일소 공동선언에 의해 “소련은 일본에 대해 일체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쌍방 모두 전쟁 결과로 발생한 모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전후처리 문제를 종결시켰다.

31) 중국인들은 대일배상 문제에 관해 “원한을 덕으로써 되갚는다(以德報怨)”라는 말을

전쟁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대일배상 청구포기는 이후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제공한 장기적이고도 대규모의 대중 경제개발원조(ODA)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은 중국의 배상포기에 대한 대가 혹은 감사의 의미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원조, 엔 차관 등 대중 경제협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³²⁾

Ⅳ. 맺음말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전후처리 정책은 냉전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만을 앞세운 편의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결과, 막대한 고통과 손실을 경험한 아시아 피해자들과의 화해와 신뢰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전후 처리에 대한 불만과 고발은 아시아 각지에서 각종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미결의 전후처리 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경제대국 일본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미결의 전후처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비록 국가 간의 배상은 철저하게 회피하였으나 과거 전쟁에 대해 거듭된 사죄 표명과 더불어 유대인을 비롯한 나치즘 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포괄적으로 취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독일의 피해자 보상 정책은 오늘날까지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통합된 유럽의 출범이 가능했던 것은 따지고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주변 유럽 국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데 적극적

자주 인용하여 중국인의 통 큰 관대함을 강조해 왔다.

32)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에 관한 새로운 자료와 다양한 관점에 관한 해설에 관해서는 石井明・朱建榮・添谷芳秀・林焼光, 2003, 『記録と考證：日中國交正常化, 日中平和友好條約締結交渉』, 岩波書店 참조.

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독일이 주도권을 발휘했다는 점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의 배상외교가 일본의 대 아시아 전후 외교에 부(負)의 유산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은 주목을 요하는 바이다. 배상을 축으로 하는 일본 전후처리 외교가 남긴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인들은 그들의 전후배상 및 청구권 지불을 과거 자신들이 일으킨 부당한 침략과 지배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의미로 실시했다는 인식을 거의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배상 및 청구권 지불을 일본이 은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아시아의 저개발국가에 대해 경제협력이나 원조제공의 의미로 제공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본래 배상이라는 것은 침략전쟁을 일으킨 국가를 징벌하는 한편, 전쟁으로 인해 피 침략국이 받은 피해와 손실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취하는 물질적 조치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배상은 이러한 징벌과 복구를 위한 물질적 공여 행위라기보다는 아시아 각국의 개발을 위한 경제원조 제공의 의미로 인식되는 경향이 농후했다.³³⁾

둘째, 일본의 배상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이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잇따른 이국 간 개별 배상협정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및 청구권을 지불했을 뿐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에는 일체 응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원칙하에 수많은 아시아의 전쟁 피해 희생자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전쟁이 끝난 지 60여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일본의 법정에는 전쟁관련 손해보상 요구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중군위안부, 외국인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 외국국적의 일본군인, 군속 등 수많은 대일 피해 보상문제가 제기되어 일본의 전쟁 책임,

33) 外務省賠償部 監修, 賠償問題研究會 編, 1993, 앞의 책, 22~23쪽.

전후 책임에 관한 추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일본이 당면한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의 전체 상을 개괄적으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본의 개별국가에 대한 배상외교에 대해서는 지극히 간략하게 검토하는 것에 그쳤다. 즉,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를 독일의 보상외교와 비교 검토하는 한편 일본의 대아시아 배상외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강화조약과 이국 간 배상조약 그리고 준 배상의 개념으로 대별하여 살펴보는 방식을 취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전후처리 외교의 제상에 대한 보다 치밀한 개념적 검토와 실증적인 비교분석이 요구되며 일본의 대 아시아 전후 배상외교에 대해서도 개별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http://www.kr.emb-japan.go.jp>

국무총리실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2006, 『일본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전후보상 및 국내원호관련 자료집』.

박원순, 1995, 「일본의 전후 배상정책과 그 실제」, 민족문제연구소 지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 30주년을 맞이하여』, 아세아문화사.

사토 다케오, 하영선 편, 1997, 「일본과 독일의 전후처리 비교」, 『한국과 일본 :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 나남출판.

우즈미 아야코, 하영선 편, 1997, 「동남아 제국의 대일보상 요구」, 『한국과 일본 :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 나남출판.

이원덕, 1997,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 한일회담과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서울대출판부.

이원덕, 2006, 「한일 국교정상화의 빛과 그늘」, 『월간조선』.

이원덕, 2006, 「한일 과거사 갈등의 구조와 해법 모색」, 김영작 · 이원덕 편,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일본학 총서 제1권, 한울 아카데미.

Kyi, Ma-Mint, 1994, “Burma-Japan Relations 1948-1954 : War Reparations Issue,” 東京大學総合文化研究科國際社會科學専攻博士論文.

岡野鑑記, 1958, 『日本賠償論』, 東洋經濟新報社.

永野慎一郎 · 近藤正臣 編, 1999, 『日本の戦後賠償 : アジア經濟協力の出發』, 勁草書房.
原朗, 「戦争賠償問題とアジア」, 『アジアの冷戦と脱植民地化』, 岩波 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シリーズ 第8巻.

大藏省財政史室 編, 1984,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話まで』 第一卷, 東洋經濟新報社.

外務省賠償部 監修, 賠償問題研究會, 1963, 『日本の賠償』, 世界ジャーナル社.

内海愛子, 2002, 『戦後補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 日本史リブレット 68, 山川出版社.

吉川洋子, 1991, 『日比賠償交渉研究』, 勁草書房.

宮城大藏, 2001, 「インドネシア賠償をめぐる國際政治」, 『一橋論叢』 125(1).

倉澤愛子, 1999, 「インドネシアの國家建設と日本の賠償」, 赤澤史朗 · 栗谷憲太郎など

- 共編,『年報日本現代史第5號：講話問題とアジア』,現代資料出版.
- 太田修,2003,『日韓交渉：請求權問題の研究』,クレイン.
- 台灣人元日本兵士の補償問題を考える會 編,1993,『台灣補償痛恨一台灣人元日本兵戰死傷補償問題資料集合冊』.
- 石井明,1987,「中國の對日占領政策」,日本國際政治學會 編,『日本占領の多角的研究』,季間國際政治 第85卷.
- 石井明,1988,「中國の對日講話」,渡辺昭夫・宮里政玄 編,『サンフランシスコ講話』,東京大學出版會.
- 內田雅敏,1994,『戦後補償を考える』,講談社.
- 栗谷憲太郎・田中宏・三島憲一・廣渡清吾・山口定,『戦争責任戦後責任：日本とドイツはどう違うか』.
- 大嶽秀夫,1992,『二つの戦後：ドイツと日本』,日本放送大學出版會.
- 佐藤健生,1991,「ドイツの戦後補償は日本の規範か」,『世界』.
- 彭明敏・黃昭堂,1993,『台灣の法的地位』,東京大學出版會.

[ABSTRACT]

A Study on the Japan's Post-war Reparations Diplomacy :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s

Lee, Wondeog

Japan's post-war reparation diplomacies were proceeded by its own convenient way, not to succeed to conciliate with the neighbour states and to get the confidences from them. Japan have taken the way to give the reparations to the nation states which had been suffered from her occupations, not to the individual war victims by the San Francisco Treaty. Therefore, post-war Japan have faced with the dissatisfactions and claims from the Asian neighbour people.

However, contrary to the Japanese style, the Germany have taken the way to give the compensations to the individual victims who had suffered from the Nazzist persecutions. Besides, the Germany have succeeded to conciliate with the neighbour states and finally to give contributions to make European Unification. The comparison of the post-war reparation diplomacy between Japan and Germany have given many lessons to consider the regional integration and peaceful order.

keywords

reparation, compensation, claims, Korea-Japan past history problem, Korea-Japan Basic Treaty, San Francisco Peace Treaty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 -

남기정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I. 머리말

한일관계의 1965년 체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하위체제였다.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의 규정력하에서 전개되어 왔던 것은 바로 이러한 위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물론 한일 양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 만들어질 국제체제가 각각의 국가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공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관련한 연구는, 우선 일본에서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외교정책(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등 미국의 외교문서가 공개된 것을 배경으로 미국의 전후질서 구상과 그 안에서의 대일정책을 주제로 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고,¹⁾ 일본 측 자료가 공개되면

1)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五十嵐武士, 1986, 『對日講話と冷戦-

서는 일본 측의 대미 협상 전략을 아울러 고찰한 연구 등이 이를 보완하고 있는 현실이다.²⁾ 그런데 이들 연구는 미일관계에 치중한 것이며, 더구나 일본의 대미협상에 관한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미일안보조약과의 연관에서 논의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본의 전후처리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³⁾ 한편 한국에서의(또는 한국인의) 연구를 살펴보면 서명국 참가 문제, 일본인 재산(적산)의 처리 문제, 독도 문제 등 미완결의 전후처리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⁴⁾

현재까지 이에 관한 논의는 냉전의 전개가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지 않는 관대한 내용의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결론에서 대동소이하다. 예컨대 한국의 서명국 참가문제를 연구한 김민수(2002)는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반공체제를 구축하려는 대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대일강화가

戰後日米關係の形成, 東京大學出版會; 五十嵐武士, 1995, 『戰後日米關係の形成—講話・安保と冷戦後の視点に立って』, 講談社; 細谷千博, 1984,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への道』, 中央公論社.

- 2) 豊下橋彦, 1999, 『安保條約の論理—その生成と展開』, 柏書房; 坂元一哉, 2000, 『日米同盟の絆—安保條約と相互性の模索』, 有斐閣; 浜井和史(2004), 「對日講和とアメリカの『太平洋協定』構想—國務省における安全保障取り決め構想, 1949~1951年」, 『史林』 87卷1號, 史學研究會.
- 3)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는 작업이 하라 기미에의 연구라 할 수 있다. 原貴美恵, 2005,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條約の盲点—アジア太平洋地域の冷戦と「戰後未解決」の諸問題』, 溪水社.
- 4)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金民樹, 2002, 「對日講和條約と韓國參加問題」, 『國際政治』 131號; 박진희, 2005, 「전후 한일관계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국사연구』 131호; 이석우, 2003, 『일본의 영토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인하대학교 출판부; 이석우, 2005a, 「제2차 세계대전, 평화조약, 그리고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1)」, 『(내일을 여는) 역사』 20호; 이석우, 2005b, 「제2차 세계대전, 평화조약, 그리고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2)」, 『(내일을 여는) 역사』 21호; 정갑용, Jon M. Van Dyke, 2005,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병준, 2005a, 「영국 외무성의 대일강화조약 초안 부속지도의 성립(1951. 3)과 한국: 독도 영유권의 재확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집; 정병준, 2005b, 「윌리엄 시볼드와 독도분쟁의 시발」, 『역사비평』 여름호; 정성화, 1990,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정책의 고찰」, 명지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논총』 7호.

‘관대한’ 내용이 되었고, 그 결과 식민통치의 책임문제가 간과되어 과제로 남게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⁵⁾ 마찬가지로 박진희(2006) 또한 애초에 ‘징벌적’ 조약으로 구상되었던 대일강화조약이 중화인민공화국, 한국전쟁 등으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일본을 ‘방공십자군’으로 자유진영에 편입하기 위해 ‘관대한’ 조약으로 바뀌었다고 결론짓고 있다.⁶⁾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FRUS 등 미국의 외교문서에 입각하여 미국 측 입장에서 분석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새로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여, 그로부터 드러나는 일본의 치밀한 사전 준비작업과 집요한 대미 외교, 그리고 한국정부의 상대적인 준비 부족과 즉각적 현실인식이 가져온 결과 등을 고려하면 냉전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추구된 ‘관대한 평화’의 원칙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배치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한국과 일본정부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 형성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양국의 외교 노력이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냉전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인지를 분석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자료들이 검토될 것이다. 우선 한국 외교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문서 가운데, 「한일예비회담(1951. 10. 20~12. 4) 자료집,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 태도와 그 법적 근거, 1950」(723.1 JA 자 1950, 76, C1-0001, 0006-0080)가 포함되어 있어 초기 한국정부의 입장과 외교 행태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자료를 들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제7회 공개분 외교문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 문서들 101건을 모아 530쪽에 달하는 자료집을 발간했다.⁷⁾ 아직도 자료 공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들 자료를 통해서 양 정부의 움직임을 보다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5) 金民樹, 2002, 위의 글, 143~144쪽.

6) 박진희, 2006,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9쪽.

7) 日本外務省, 2006, 『日本外交文書』, 195卷,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條約準備對策.

이하 Ⅱ절에서는 현재까지 주로 미국의 외교문서(FRUS 등)에 기초해 밝혀진 내용과 선행연구들을 참고하고, 일부 필자가 스스로 밝혀낸 내용을 기초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의 경위를 한일관계에 관련된 세 가지 문제, 즉 한국의 서명국 참가, 독도 영유권, 배상문제와 관련해 그 처리과정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다음 Ⅲ절에서는, 일본 측 외무성 자료에 입각해 일본 측의 움직임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Ⅳ절에서는, 한국 측 외교부 자료에 입각해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한일 양국의 대 연합국(특히 미국) 교섭과 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지니는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 간 쟁점

이하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에 의거하여 대일강화조약의 경위를 한국의 서명국 참가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배상문제 등 한국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내용이 일본에 유리하게 기울기 시작한 시점과 냉전의 전개 양상과의 관련성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의 서명국 참가 문제

첫째, 한국의 서명국 참가 문제이다.⁸⁾ 1949년 12월 시점에 제출된 국무부안에서는 한국의 서명국 참가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 단 그 의도는 한국이 서명국으로 참가할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과도한 배상요구를 취하하도록 유도하

8) 이와 관련해서는 金民樹(2002)의 연구가 가장 참고할 만하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소개 또한 金民樹의 같은 연구 각주 2가 자세하다.

려는 데 있었다. 한편 1950년 1월 작성된 영국 측 문서에는 한국의 참가에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일본의 구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식'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50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덜레스(John Foster Dulles)가 한국을 방문한 직후인 7월에 작성된 국무부의 문서에도 한국은 예비회담 구성국으로 명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0년 9월, 위의 1949년 12월 초안에 대한 검토작업에서는 한국의 참가 가능성에 여전히 긍정적이면서도 예비회담에 참가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의 참가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긍정적 의향을 확인한 한국은 영국과의 교섭에 나섰다. 1950년 12월 윤치창 주영대사가 베빈(Ernest Bevin) 영국 외상과 회담을 갖고 한국의 회담 참가에 영국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영국 측은 한국은 '패전국의 영토'였다는 점을 이유로 서명권을 가진 참가국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한국이 참가를 요청해 올 경우 비공식적으로나마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1951년 1월 장면 주미대사와의 두 차례의 회담에서 덜레스는 한국의 참가 가능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51년 4월 21일 2차 방일 중이던 덜레스는 일본 측에 한국의 참가를 고려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전했다. 일본은 1950년 9월에 작성한 '대일강화조약상정대강(對日講和條約上程大綱)'에서 '한국이 대일강화조약의 원서명국이 될 것을 주장할지도 모르나 이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던 터였기에 덜레스의 제안에 일본측은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서 23일 요시다[吉田茂] 총리는 덜레스와의 회담에서 '한국정부의 평화조약 서명에 관해(韓國政府の平和條約署名について)'라는 문서를 전하며, 그 가운데 대부분이 공산주의자인 재일 조선인의 연합국인 지위 획득에 따른 권리 요구는 일본정부에 커다란 짐이 된다는 논리로 한국의 조약 서명에 반대했다. 그러나 덜레스의 설득은 계속되었고, 일본 측은 '재일조선인이 연합국인의 지위를 획득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의 제안에 동의를 표했다. 한국으로서는 서명국 참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되는 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은 결코 한국을 배려한 해결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영토 및 배상문제에서 한국에 불리한 내용으로 확정되어 가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연합국의 일원이 아닌 서명국’으로 한국이 서명했을 경우, 불리한 조약 내용에 직접 구속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해결은 결코 일본에 불리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1951년 3월부터 6월까지 미영 간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중국의 대표권문제와 한국의 참가문제가 상쇄되는 형태로 한국은 조약 서명국의 리스트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들 과정을 검토하여 김민수(2002)는 한국이 조약 서명국에서 배제된 배경으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들고 있다. 첫째 미국 측이 당초부터 한국을 연합국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과 대일강화에 서 식민지 지배의 청산문제를 논의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의 참가가 중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 영국이 ‘법적 논리’에 기초해 한국의 참가에 반대했다는 점이다.⁹⁾ 결국, 한국이 서명국 참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과정에서는 냉전이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서명국 참가를 지지했던 초기의 입장에는 냉전 상황에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냉전 상황은 일본으로서는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이에 저항하는 데 동원된 논리에서 일본 국내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존재가 강조된 점에서 일본 국내의 냉전적 상황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2_ 독도 영유권 문제

둘째, 독도 영유권 문제이다.¹⁰⁾ 독도의 한국 영유로 해석될 수 있는 연합국 측 문서로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와 1033호가 있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SCAPIN-677(1946년 1월 29일), SCAPIN-1033(1946년 6월 22일)에

9) 金民樹, 2002, 앞의 글, 142~143쪽.

10)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석우(2003 ; 2005a ; 2005b), 정병준(2005a ; 2005b), 原貴美惠(2005) 등의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이하 미국 문서 등의 인용은 모두 위의 연구들로부터의 재인용임을 밝혀 둔다.

는 일본의 행정구역과 어업구역의 범위에서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제외했다. 그러나 이는 영토에 관한 최종처리가 아니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었다. 한편 미국 삼부조정위원회 문서인 SWNCC-59/1(1946년 6월 24일)의 부록에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조선이 독립될 조선에 귀속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7년 3월 국무성 평화조약 초안에는 1장 '영토조항' 1조에 일본에 귀속될 영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고, 일본이 권리와 권원으로 포기해야 할 조선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었다. 1947년 8월 초안 및 1948년 1월 초안에도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 1949년 10월 초안과 11월 초안에도 조선에 관한 지명 표기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을 뿐, 기본적으로는 영토조항에 관해 이전의 초안 내용이 계승되어 있었다.

이에 변경이 가해지기 시작한 데에는 1949년 11월 초안에 대한 시볼드 주일 정치고문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명기하도록 제안했던 것이다. 그 근거로 '역사적 정당성과 전략적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역사적 정당성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 외무성이 1947년 6월 발행한 「태평양 및 동해의 소제도(太平洋及び日本海小諸島, 미공개문서)」라는 조서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전략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냉전적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의 군사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라 기미에[原貴美惠, 2005]는 한반도가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독도가 한반도에 귀속될 경우 일본에 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붙이기도 한다.¹¹⁾ 어쨌거나 이후 독도 영유권 문제는 명백히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49년 12월 29일 초안의 2장 '영토조항' 3조에서 일본이 영유할 도서에 독도가 포함되고 일본이 포기하게 될 조선의 범위에서 독도가 삭제되었다. 이 초안에는 전문에 명기된 서명국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12월 2일의 초안 작성시까지 서명국 리스트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독도 포기에 대한 대가로 한국의 서명국 참가를 고려했던 것일 수 있다.

11) 原貴美惠, 2005, 앞의 책, 50쪽.

1950년 8월 초안에는 조약 서명국 리스트 자체가 삭제되었으며, 영토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시 없이 일반적 방침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이후 미국의 초안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영국의 1951년 4월 초안(3차 초안)에는 영토조항 제1조에 위도 경도를 사용하여 일본의 영토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독도는 일본의 영토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시볼드(William J. Sebald)는 델레스의 마지막 일본 체류일인 1951년 4월 23일 델레스 일행이 요시다 총리, 이구치 사다오[井口貞夫] 외무성 차관, 니시무라 구마오[西村熊雄] 외무성 조약국장 등과 함께 “방금 접수한 영국 조약초안(영국 측 3차 초안, 1951년 4월 7일-필자 주)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다”고 회고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영국 측 문서보다 미국 측 문서를 선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병준(2005a)은 독도가 일본령에서 배제된 데 대한 반대 입장을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영국 측 3차 초안과 지도에는 ‘북방 4개도서’ 가운데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등 두 개 섬이 일본영토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측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를 미국 측에 설득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측이 최종적으로 영국 측 초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했었는지 궁금한 부분이다. 독도보다 북방 4개도서 문제를 더 중시했던 일본 측으로서는 영국 측 문서를 더 의미 있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이석우(2003)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1949년 12월 19일자, 이전 일본 영토의 처분에 관한 협정(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 on December 19, 1949)’의 형식으로 된 문건에서 독도의 한국 영유를 인정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시볼드 의견서 이후의 일이며,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다시 인정된 것으로 주목된다. 이석우(2003)는 이 초안이 문안의 작성 방식이나 규정된 내용으로 보아 전체적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약규정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미국이 대일강화조약과 별도로 영토에 관한 협정을 고려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1950년

5월, 영연방 일본 평화조약 실무반이 런던에서 가진 회의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들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영토는 평화조약에 언급될 필요가 없다'는 항목이 들어 있다.¹²⁾ 따라서 영국도 평화조약과는 별도의 협정으로 영토조항을 확인할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거나 1951년 5월의 미영 공동초안에는 일본이 포기할 조선의 범위로 제주도과 거문도 및 울릉도가 명기되어 있으나 독도가 명기되지는 않았고, 결국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확인되었다. 한국은 1951년 6월의 미영 공동초안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독도 및 파랑도의 한국 귀속을 명기하도록 요청했으나 1951년 8월 10일 딘 러스크 국무차관보가 주미 한국대사에 전한 각서에는, 파랑도와 함께 독도의 한국 영유를 부인하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1949년 11월의 시볼드 의견서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시볼드의 논거는 '역사적 정당성'이 주된 것이었고, '냉전적 상황'은 미국 본국을 설득하기 위해 부차적으로 동원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서의 배경에는 영토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연합국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있었다. 결국,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냉전의 전개는 부차적 변수였고 일본의 외교적 작업이 보다 더 결정적 변수였다고 할 수 있다.

3_ 배상문제

셋째, 배상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박반환교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선박반환교섭은 미군정 법령 33호의 효력 및 그 집행의 범위와 관련해 배상문제의 행방을 가늠하는 전초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박반환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을 초기 선박교섭 한국 측 대표단을 이끌었

12) 이석우, 2003, 앞의 책, 59쪽.

던 홍진기의 회고에서 추적해 볼 수 있다. 홍진기는 한일회담에 앞서 SCAP과 선박반환을 교섭하는 대표단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경험이 있었다.¹³⁾ 홍진기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 말엽의 기록으로서 29톤 이상의 조선적 등록선박은 모두 855척 109,700톤이었는데, 이 가운데 외항선박을 비롯한 조선적 선박의 대부분이 징발되어 전쟁물자 수송에 투입되어 전쟁의 와중에 대부분 침몰하거나 파괴되어 해방 당시 조선에 남아 있던 큰 선박이라고는 5척의 조선우선(朝鮮郵船)뿐이었다. 그나마 일본인들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4척이 동원되어 일본으로 철수해 버리는 바람에 조선수역에는 1,500톤급 수산호 1척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런 가운데 1945년 12월 6일, 미군정 법령 33호가 공포되어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 내 일본과 일본인의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모두 미군정에 귀속시키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남한 과도정부는 미군정 법령 33호를 근거로 미군정 당국과 선박반환교섭을 개시하여, 1946년 8월 일본이 끌고 간 조선우선 등 5~6척의 선박 가운데 5척을 반환받는 데 성공했다. 이는 미군정의 요청을 받아들인 SCAP 측의 협조에 의한 것이었다. SCAP 측은 5척의 선박을 양도하면서 나머지 선박들도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뒤인 1947년 초, SCAP은 방침을 변경하여 남한 과도정부가 반환받은 5척의 선박을 다시 일본에 반환하라고 요구해 왔다. SCAP 측은 5척의 선박을 재반환하도록 요구하면서 그 근거로 '당초 선적주의에 의해 한국에 선박을 반환했지만, 이는 잘못된 결정이며 속지주의로 처리했어야 옳았다'는 법이론을 들고 나왔다.¹⁴⁾ 1946년 8월과 1947년 초의 사이에 있었던 SCAP의 태도변화의 배후에도 후술하듯이 일본 측의 연합군 최고사령부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1946년 후반기의 미국 측의 태도변화 또한 시기적으로 보아 냉전의 전개에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13) 중앙일보사, 1993, 『維民 洪璣基 傳記』.

14) 중앙일보사, 1993, 위의 책, 66쪽.

일반적으로 냉전의 진행에 따른 '역코스 정책'의 채택이 일본에 대해 전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1948년의 스트라이크 보고서와 존스톤 보고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이러한 입장이 한국의 배상 요구를 철회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에 반영된 것은 분명하지만, 냉전과 배상 요구 철회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배상의 근거가 될 교전국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대일 교전국이었다는 한국 조야의 의견에 동정적인 무초(John J. Muccio)의 입장은 오히려 미국 내 소수였다. 더구나 무초 또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배상은 이미 식민지 시기 일본의 국공유 및 사유재산의 취득을 통해 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당초에 한국에 유리한 내용이었던 이들 세 문제가 점차 일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던 배경에 무엇이 가로놓여 있었는가. 필자는 여기에서 일본 측의 주체적인 외교노력과 한국 측의 상대적인 준비부족 내지는 주관적 상황인식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새로 공개된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I. 일본 측 의도와 준비

1_ 평화조약 체결의 방식과 시기에 관한 전망 : 초기 입장

일본 외무성 조약국은 1945년 10월 22일, 평화조약 체결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먼저 평화조약 체결 방식은, 연합국 개별국가와의 체결 가능성은 적다고 보면서도, '국제정국의 변화 여부에 따라' 소련 또는 중

15) 박태균, 2005, 「한일회담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미국의 역할」, 『한국사연구』 131호, 49쪽.

화민국 등과는 별도의 평화조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조약안 작성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조약안 작성에 관여할 기회는 거의 없으나, 의견서 등을 전달할 가능성 있다고 보고, 이 경우 신속한 수교(手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영토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의 경우와 달리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에 이미 연합국의 의도가 나타나 있어서 이를 따로 긴급히 준비하거나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배상문제는, ‘할양지’¹⁶⁾ 안의 구 일본제국의 재산 귀속 문제를 포함하여, 평화조약이 규정할 중요문제의 하나로 인정된다고 하여 그 준비를 촉구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프랑스와 같이 긴급히 배상금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상문제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¹⁷⁾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일본 측이 ‘의견서의 전달’이라는 방식으로 조약안 작성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 둘째 영토문제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셋째 배상문제에서는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1945년 말에서 1946년 초까지 이루어진 일본 외무성의 연구는 연합국 측 방침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일본 측 희망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기할 것인가에 모아졌다. 특히,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저항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예컨대, “일본이 침략한 국가의 민생보다 높은 수준의 민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연합국의 방침은 일본이

16) 후술하다시피 일본은 조선을 사할린 등과 함께 할양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의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검토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되나 본고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 연구 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17) 日本外務省, 2006, 『準備對策資料1, 平和條約締結の方式および時期に関する考察(평화조약 체결의 방식 및 시기에 관한 고찰, 1945. 10. 22, 조약국 제3과)』, 『日本外交文書 195卷,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條約準備對策』(이하 준비대책), 이하 이 자료에서 인용하는 자료의 출처는, 페이지번호보다 자료번호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페이지번호가 아닌 자료번호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자료번호로 제시되는 자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일본외교문서 195권의 자료임을 밝혀 둔다.

수락한 포츠담 선언에도 없는 규정으로, '이를 정의라 하는 것은 기계적 정의 관이며, 유기적 역사적 정의관도 아니다. 장기적 계속적 실물배상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세계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학적 부정적 논문을 준비해야 할 것(강조는 필자)'이라고 하여 치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저항을 요구했다.¹⁸⁾

한편 외무성 정무국에서 영토조항과 관련하여 별도로 조사하여 작성한 문건에는 류큐(오키나와), 오가사와라, 화산열도, 남카라후토(남사할린), 치시마(쿠릴)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¹⁹⁾ 이미 이 시점에서는 일본정부는 SCAP의 행정권 분리 조치에 따라 독도가 미군정의 영역에 속하여, 장래 조선이 독립할 경우 일본으로부터 독도가 제외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문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조선과 관련해서는 카이로 선언에 의해 독립될 것이 명시'됨에 따라, '제주도는 조선과 함께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 시점에서는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제기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석해도 될 만한 부분이다.

2_ 외무성 내 평화조약 전담 연구반의 구성과 대 연합국 접촉

한편, 1945년 11월 21일에는 외무성 내에 조약국장을 간사장으로 한 '평화조약문제연구 간사회'를 구성하고, 정무국 제1과장 등 11명의 간사와 간사 보좌를 두는 등 평화조약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구성을 완료했다.²⁰⁾

'평화조약문제연구 간사회'의 제1차 연구보고는 그로부터 반년 뒤인 1946년 5월에 작성 제출되었다. 한국과 관련하여서는 배상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18) 「準備對策資料5, 想定される聯合國側平和條約案と我が方希望との比較検討(예상되는 연합국 측 평화조약안과 우리 측 희망과의 비교검토, 1946. 1. 26)」.

19) 「準備對策資料12, 領土條項(영토조항, 1946. 1. 31. 정무국)」.

20) 「準備對策資料2, 平和條約問題研究幹事會の設置について(평화조약문제연구 간사회의 설치에 관하여, 1945. 11. 21)」.

폴리 사절단의 조치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주목되는데, ‘폴리 사절단의 성명에 따른 조치가 평화조약 체결 이전에 실시되어, 평화조약에는 단순히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일본의 입장과 요구조건을 연합국 측에 침투시킬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 가운데 외국의 공관은 배상의 대상으로 몰수될 것이며 이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개인재산과 관련해서는 관대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¹⁾

이러한 연구내용을 기초로 일본 측은 1946년 말과 1947년 초, 중전연락중 양사무국의 총무부장 아사카이 고이치로[朝海浩一郎]가 대일이사회의 미국 측 및 영국 측 대표를 만나 배상문제를 둘러싸고 연합국 측의 태도 완화를 요청했다. 아사카이는 1946년 12월 17일, 대일이사회 미국대표인 애치슨(George A. Acheson)을 만난 자리에서 ‘폴리 사절단의 방침은 전체적으로 너무 가혹하며,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애치슨은 ‘미국의 기본방침은 일본의 전쟁능력을 박탈함과 동시에 일정한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유럽에서 미국은 이미 이탈리아에 대해 그와 같은 방침 하에 노력했다’고 하여 일본 측의 입장에 이해를 표했다.²²⁾ 1947년 1월 20일 아사카이는 이번에는 대일이사회 영국대표인 맥마혼 볼(William Macmahon Ball)을 만나 배상문제 처리에 대해 영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사카이는 배상문제에 언급하여, ‘영국의 태도도 미국과 같이 (배상의 목적이 일본의) 전쟁능력 박탈에 있으며, 따라서 콘펜세이션(보상-필자 주)과 퓨니티브(징벌적-필자 주)한 측면은 강조하지 않을 생각인가’라고 물으며 영국의 의도를 확인했다. 맥마혼 볼은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나를 강경파로 지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일본의 곤경은 지역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호주 등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여 징벌적인 배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21) 「準備對策資料24, 平和條約問題研究幹事會の第一次研究報告(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의 제1차 연구보고, 1946. 5)」, 연합국 측 상정안과 일본 측 안의 비교검토 항목은 비공개 부분이 있어 채록되지 않았다.

22) 「準備對策資料30, 朝海・アチソン會談 第4回(아사카이-애치슨 회담, 제4회, 1946. 12. 17)」.

임을 표시했다.²³⁾

이로부터, 특히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관대한' 평화조약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일본의 사전 조율작업이 1946년 말에서 1947년 초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연합국 측 가운데 특히 미국과 영연방의 주요 인사들 가운데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_ '평화조약에 대한 일본정부의 일반적 견해(1947년 6월)'

'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1947년 6월 5일에는 '평화조약에 대한 일본정부의 일반적 견해' 제1고가 작성되었다. 여기에서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합국에 대한 강화교섭 5원칙을 수립했다. 첫째, 평화조약안 기초과정에서 일본의 희망을 충분히 청취하게 할 것. 둘째, 평화조약은 대서양헌장, 연합국공동성명,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과 합치되게 할 것. 셋째, 일본의 민주화 비군사화, 기타 일반적인 평화조약의 이행을 일본 자신의 책임하에 이행하도록 기회를 부여받을 것. 넷째, 일본의 완전한 비군사화에 수반해, 그 정치적 독립, 영토의 보전 및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신속히 확립하도록 할 것. 다섯째, 일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조치(평화산업개발의 자유, 원자재 취득의 자유) 및 자립에 이를 때까지 원조를 얻을 수 있게 할 것 등이었다.²⁴⁾

일본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국 측에 의해 일본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여부는 불투명하며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등과의 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 이탈리아에게 의견 청취가 허락되었던 것은, 이탈리아가 후에 스스로 연합국 측에 가담했기 때문이며, 일본은 이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일본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23) 「準備對策資料31, 朝海・マクマホン=ボール會談 第1回(아사카이-맥마혼 볼 회담, 제1회, 1947. 1. 20)」.

24) 「準備對策資料36, 平和條約に對する日本政府の一般的見解(第一稿), (평화조약에 대한 일본정부의 일반적 견해, 제1고, 1947. 6. 5)」.

는 그 방법, 시기, 내용과 관련해 대단히 전문적인 필요가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나마 조기에 적절하게 의견을 진술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일본정부의 대연합국 접촉을 촉구했다.²⁵⁾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외무성은 대 이탈리아 평화조약을 사례로 하여 그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²⁶⁾

의견 전달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외무성은 다음과 같은 구상을 세워 놓고 있었다. 즉, 외무대신이 직접 맥아더(Douglas MacArthur)를 접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일본점령정책을 둘러싸고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GHQ/GS(민정국)와의 사전 접촉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다. 일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맥아더가 접수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이미 아사카이가 구축해 놓은 파이프를 동원하여, 애치슨 등과의 회견에서라도 간접적으로 일본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구상이었다. 특히 대일 강경태도를 보이는 호주에 대해서는 맥마흔 볼 라인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여 일본정부는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놓고 있었던 것이다.²⁷⁾

4_ 일본 측 주장과 요망에 관한 ‘을종’ 작업의 구체화

그러나 1947년의 외무성 작업은 냉전의 개시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내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 외무성이 다시 적극적인 작업을 개시한 것은 1948년 연말이 되어서였다. 그러나 이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본격적인 냉전의 전개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1948년 연말부터의 작업은 이미 1947년 이전에 준비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도의 내

25) 「準備對策資料38, 對日平和條約の時期および起草手續きについて(대일강화조약의 시기 및 기초 절차에 대해, 1947. 6. 1)」.

26) 「準備對策資料45, 歐州5ヶ國の平和條約調印後における諸問題について(구주 5개국의 평화조약 조인 후의 제 문제에 관해, 1947. 7. 1)」.

27) 「準備對策資料46, 平和條約に關する日本側希望申し出の手續について(평화조약에 관한 일본 측 희망 제출의 수순에 관해, 1947. 7. 2)」.

용이기 때문이다.

외무성이 강화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문건은 ‘할양지의 경제·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기술(1949. 12. 3)’이다. 이 문건은 조선, 대만, 가라후토(사할린), 관동주(關東州) 등을 과거 일본이 전쟁의 결과 국제법상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할양지’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에서의 일본의 과거 행위에 대해 연합국 측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시정은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 지역에서의-필자 주) 경제·사회·문화적 향상과 근대화는 전적으로 일본의 공헌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입각해, ‘일본이 이들 지역을 개발하는 데에는 국고에서 다액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자금을 주입’한 것으로 써 ‘한 마디로 일본의 이들 지역에 대한 통치는 일본으로부터의 지출(모치다시, 持出)에 의한 것이며, 식민지 착취설은 실정을 모르는 상상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오랫동안 평화적인 생업을 도모하던 일본 국민은 모두 축출당했으며, 공유 재산뿐만 아니라 평화리에 축적한 사유재산까지도 사실상 박탈당한 상태인 바, 평화조약에서도 이 내용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지만, 할양지의 거주민 및 사유재산에 대한 이러한 가혹한 조치는 전혀 국제관례상 이례적인 일’로 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지역은 ‘모두가 당시로써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보통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취득되어, 세계각국이 이를 일본령으로 승인한 것’으로써, 일본은 전쟁의 결과 이들 지역을 포기하는 데 이의는 없으나, 이를 국제적 범죄시하고 징벌적 의도에서 이들 지역을 분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적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할양지’에서의 일본의 공유 사유 재산의 전면적 포기를 규정한다면, 이는 “이들 할양지에 관한 일체의 대일청구권을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각개 공적 사적 채무를 일본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주기 바란다”고 하여 ‘적산’의 처리와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연계하는 방식을 구상, 제시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러한 해결은 결코 애퀴티(형평성-필자 주)를 잃은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간단명쾌하게 일괄적 윈스 앤 포 올(최종적-필자 주)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후일의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외무성은 경제적 인 건지에서, '이러한 해결방식을 취하지 않고 방대한 청구권을 추구한다면, 이는 일본의 부담능력을 넘어선 것으로, 경제적 자립을 심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철저히 저항할 생각이었다.²⁸⁾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딜레스가 특사로 임명되어 대일강화를 위한 미일교섭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확고한 입장으로 자리잡은 것이었으며,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²⁹⁾

이상 일본 외무성이 전개한 일련의 작업에서는 냉전의 전개를 일본 측 의도 관철의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조선이라는 '할양지'에서의 일본측의 식민지배의 역사적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전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관대한 배상원칙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IV. 한국 측 의도와 준비

1_ 대일배상 요구조서의 작성

1946년 5월의 폴리 배상문제 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남조선 비상국민회의는 홍진(洪震) 의장 명의로 하여 5월 22일 폴리 단장에 서한을 전달하여 남한 측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1946년 6월 18일에는 조선상공회의소가 대일배상 요구 청원서를 미군정에 제출했으며, 1947년 8월 13일에는 남조선 과도정부 정무회의에서 '대일배상요구조건조사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개

28) 「準備對策資料88, 割讓地の經濟的財政的事項の處理に關する陳述(할양지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진술, 1949. 12. 3)」.

29) 「準備對策資料97, 對日平和條約の經濟的意義について(대일강화조약의 경제적 의의에 관해, 1950. 5. 31)」.

시켰다. 이 조직은 대일배상연구위원회, 대일배상위원회, 대일배상문제대책위원회 등으로 호칭되었다. 이에 오정수(吳楨洙, 상무부장, 소집책임자), 민희식(閔熙植, 운수부장), 윤호병(尹煥炳, 재무부장), 이훈구(李勳求, 체신부장), 신기준(申基準, 외무행정처 차장), 김우평(金佑枰, 중앙경제위원회 사무장) 등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947년 11월 이래 매주 월요일 정기회의 개최하여 내용을 확충해 나갔다. 그 결과, 1948년 1월, '대일배상요구조건조사위원회'는 5가지 대일배상요구항목을 결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적산'과 대일배상요구를 구별하여, '적산'은 당연히 한국에 귀속되고, 이와 별도로 대일배상요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한편, 1948년 10월 9일에는 재무부가 작성한 '대일배상요구자료조서'가 발표되었다. 1948년 11월 27일의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일강제노무자 미제 임금 이행요구에 관한 청원', '대일 청장년 사망배상금 요구에 관한 청원' 등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12월 22일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상공부에 대하여 대일배상요구에 대한 세목 제출을 지시하였고, 상공부는 '대일배상 촉진위원회'의 조직을 준비했다.

1949년 1월 24일의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김준연 법무장관이 대일배상 조사기관의 설치를 제안하여, 대일강화에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이승만 대통령은 49년 2월, 기획처 기획국에 '대일배상청구위원회'의 설치를 지시하게 되었고, 은밀하게 배상청구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작업을 개시했다.

홍진기 등이 주도한 법무부의 건의와는 별도로 이순택(李順澤) 기획처장과 유진오도 대일배상문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건의하여 이 처장의 총괄하에 작업이 진행되었다. 대일배상조사는 1949년 3월과 9월에 이러한 작업의 성과가 '대일배상요구조서(1, 2부)'로 제시되었다. 조서 2부에서는 총액 314억 97만 5,303엔(해방 직후 환율로 계산하면 약 24억 7,676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일배상요구액으로 책정되었다.

기존의 연구에 입각하여 이상의 과정을 재구성해 보면, 한국 측은 폴리 사절단의 입장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일본의 배상의무를 확인하는 작업보다는

배상의 액수를 책정하는 작업에 몰두해 있었던 것 같다. 같은 시기 일본은 조선에서의 배상이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역사적 법적인 근거를 동원하여 연합국 측을 상대로 설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과 변화하고 있는 연합국 측 분위기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딜레스 초안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급히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

2_ 딜레스 초안에 대한 검토작업

한편 미국무부는 1951년 3월 23일 대일강화조약 초안을 임시수도 부산에 발송하여 한국정부의 의향을 타진했다. 1951년 3월 27일, 미 딜레스 초안은 한국에 전달되었다. 김동조(당시 외무부 정무국장), 한표옥(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 등의 회상으로는 곧 바로 이승만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나,³⁰⁾ 유진오, 홍진기(법무국장) 등의 회상으로는 실무진의 실수(또는 사보타지)로 인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³¹⁾ 이점은 앞으로 다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어쨌거나 법무부 법무국장의 입장에 있었던 홍진기는 초안의 내용을 미국으로부터 수교받은 공식 문건이 아니라 일본의 신문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유진오 등과 추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홍 국장은 초안 4조 a항과 관련하여 귀속재산 처리 문제가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는 점을 우려했고 유진오도 이에 동감을 표했다. 반면, 이승만은 맥아더와의 구두약속을 들어 귀속재산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한다.³²⁾ 이러한 이승만의 태도에서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국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30) 김동조, 1986, 『회상 30년, 한일회담』, 중앙일보사, 10~11쪽.

31) 유진오, 1993, 『한일회담』, 외교안보연구원, 17~19쪽; 홍진기, 1993, 『유민 홍진기 전기』, 중앙일보사, 51~52쪽.

32) 유진오, 1993, 위의 책, 18~20쪽.

미국이 보내온 초안에 대해 유진오, 임철호(任哲鎬) 경무대 비서, 이건호(李建鎬) 고대교수, 임송본(林松本) 식산은행 총재, 정부내 홍진기(洪璉基), 최규하(崔圭夏), 김동조(金東祚) 등이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1951년 4월 16일에는 '대일강화회의준비위원회(통칭, 외교위원회)'가 수립되어 공식적으로 대일강화문제를 준비하는 기구가 마련되었고, 유진오가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위원으로는 장면 총리, 조병옥 내무장관, 김준연 법무장관, 배정현(裴廷鉉), 최두선(崔斗善) 동아일보 사장, 홍진기 법무국장, 이건호 고대 교수, 박재섭(朴在攝) 고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³³⁾

위원회는 여러 차례 토의를 거친 끝에 홍 국장의 기초로 다섯 항목의 요구 사항을 정리했다. 첫째, 평화조약에는 한국도 참가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항목은 귀속재산과 대일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내용이었다. 셋째는 어업 문제, 넷째는 통상문제, 다섯째는 재일교포 문제 등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이를 변영태 외무장관이 손수 번역하고, 장면 총리가 강력히 권유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승낙을 얻어 미국에 통보했다. 한편 미국 측 자료에 의하면 10개 사항을 전달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한국 측의 관련자의 증언 등은 5항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³⁴⁾ 이 가운데, 귀속재산 문제가 조약 4조 b항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1951년 7월 9일에는 양유찬 주미대사가 델레스를 방문하여 7월 3일자 대일강화초안을 건네 받았다. 델레스는 양유찬과의 회견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이 서명국으로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하고, 대마도 귀속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맥아더 라인의 존속 문제도 한일간 양국협상 또는 한일을 포함한 다국간 협상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귀속재산 문제도 한일 양국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했다. 1951년 7월 16일, 변영태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7월 초안에 대해 비판하고, 유진오와 임송본을 법률고문과 경제고문으로 임명, 주일 대표부에 파견했다. 1951년

33) 유진오, 1993, 앞의 책, 21쪽.

34) 박진희, 2006, 앞의 글, 41쪽.

7월 18일, 양유찬은 강경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7월 19일에는, 딜레스를 방문하여, 한국정부의 5개항의 요구를 전달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을 교전국으로 인정할 것. 둘째, 일본은 대한 재산요구권을 포기할 것. 셋째, 한국을 대일강화조약의 조인국으로 할 것. 네째, 한일간 어획수역을 명백히 결정할 것. 다섯째, 일본은 대마도, 파랑도 및 동해 내의 독도에 대한 요구권을 포기해야 하며, 이들 세 도서는 러일전쟁 전에는 한국 소유였다는 것을 확인할 것 등이었다.³⁵⁾

다시 1951년 8월 2일, 양유찬은 미국무부에 다음과 같은 세 개 항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첫째, 일본은 1945년 8월 9일 이전 재한 일본인 소유 재산에 대한 요구를 포기할 것. 둘째, 맥아더 라인은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될 것. 셋째, 한국은 2조, 9조, 12조, 15조 a항의 이해를 향유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에 대해 1951년 8월 10일, 딘 러스크(Dean Rusk) 극동담당 국무차관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주미대사에게 보내왔다. 즉, 첫째 요구는 이미 반영된 것이고, 둘째 요구는 수용을 거부하며, 셋째 요구는 평화조약 체결 후 한일 양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었다.

1951년 8월 13일, 미영은 최종안을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한 각국에 통고했다. 이때 일본은 귀속재산 문제에 대한 4조 b항의 삽입 사실을 인지했다.³⁶⁾ 1951년 8월 16일에는, 최종확정 초안을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발표했고,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연합국의 대 이탈리아 평화조약에 비교해 유화적인 안이라며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³⁷⁾ 반면, 한국정부는 8월 20일 성명을 발표하여,

35) Memorandum of Conversation(1951. 7. 19), RG59, Lot 54D423, box.8, 박진희, 2006, 앞의 글에서 재인용.

36) 鹿島平和研究所, 1973, 『日本外交史』 28卷, 鹿島平和研究所, 34쪽.

37) 참고로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대 이탈리아 평화조약에서는 이탈리아가 구 식민지였던 에티오피아에 2천 5백만 달러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은 1936년으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쟁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1911년 이탈리아의 식민지가 되었던 리비아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확인되지 않았다. Treaty of Peace with Italy, www.austlii.edu.au/au/other/dfat/treaties/1948/2.html.

대일강화조약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평화는 적대성이 있는 곳에서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배제시킴으로써 그 목표와 의도를 훼손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상이 기존에 발간된 회고록과 연구들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미 외교 전반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1949년 후반에서 1951년 초까지의 한국정부의 외교(또는 준비작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새로 공개된 한일회담 외교 문서에서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3_ 주일 대표부의 검토작업

이하 소개하고자 하는 문건은 ‘주일대표부대일강화조사위원회(원문 첫장에는 대일강화조사준비위원회로 되어 있음)’의 활동을 기록한 「1950년 10월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 1950」라는 문건이다.³⁸⁾ 목차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설명서 / 머리말 / 한일합방조약 무효론 / 대일강화조약 체결시의 한국의 입장 / 배상 / 약탈품의 반환 / 한국 또는 한국인의 재일재산권에 대한 기본문제 / 확정채권 / 기타 특수한 요구권 / 재일한교의 국적 및 거주이전 문제 / 영토문제 / 대일강화조약의 정치향, ‘한국章’에 대한 건의서(초안) / 중심되는 연합국과 한국 간의 조약(초안)

설명서에서는 한일합방조약의 유효론/무효론을 검토하고 있는데, ‘무권대리(無權代理)’ 이론하에 원칙적으로 조약의 유효론을 부인했다. 사회질서 유지상 필요에 의해 취해진 행정에 대해 이를 추인할 수밖에 없다는 절충론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제국주의적 질서론을 인정하게 되는 현실적 모순에 직면하게

38) 2005년 한국의통부 공개 한일회담 자료, 분류번호 723.1JA, 등록번호 76, 정무과, 필름번호 C1-0001, 프레임번호 0006-0080.

된다고 하여 반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대일강화조약 체결시, 한국의 참가문제는 합병조약의 유/무효론과 관련되는 문제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타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의 유효성 문제, 악탈품 반환 문제, 영토권 문제, 재일동포의 국적 문제 등 모두가 법리적 해석에 제한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연장선에서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한국의 영토는 민족적 역사적 각 부문의 원상회복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검토 결정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회복권’의 기초 범위를 명백히 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³⁹⁾

머리말에서는 조사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주일 대표부의 ‘대일강화조사위원회’가 주일 대표부 정무과(정무부) 전직원과 재일동포사회 권위자 4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이하 본고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3, 4, 5항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3항(본론1항)은 한일합방무효론에 관한 내용이다. ‘위원회’는 먼저 이 조약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고 이를 쟁점화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일본이 식민통치과정에서 ‘군사점령’ 및 ‘무권대리’의 권리를 계속 행사했던 문제, 즉 최초에 가한 강제의 계속 가운데 국가질서에 준 사실상의 제2차적 제3차적 효과 전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다시 ‘대인상권(對人商權)’을 제외한 계승적 질서 유지를 지속한 선의의 관리자의 행동까지 무효라고도 주장하지 않았다.⁴¹⁾

한편 ‘위원회’는 한일합방조약이 ‘강제’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데에서 ‘강제’란 1905년의 한일협약의 강제에서 시작되며, 무효의 효력발생의 시점은 1910년 8월 22일에 소급된다고 보고 있다. 단, 약간의 국제관례상의 묵인, 추인이 필요하며,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은 국제관례상 유효(제3국은 사실상 한일합방을 승인하여 왔다)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무효의 효과는 승인을 취소한 날

39) 「법적근거」, 7쪽.

40) 작성일 1950년(단기4283년), 월일은 미상이나, 1950년 말인 것으로 추정됨. ‘주일 대표부’ 작성.

41) 「법적근거」, 11~13쪽.

이후에 발생하는데, 단 간도협약은 애초부터 무효라는 입장이었다.⁴²⁾

이외에 전면적 유효론, 절충론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절충론은, 협박에 의한 체결이므로 무효이지만, 국제사회의 승인이라는 국제법적 관습에 의해 유효하다는 태도를 말하여, 다만 승인이 취소된 때(1941. 12. 8, 1945. 8. 15, 1915[45]. 9. 2.)부터 장래에 향하여 무효라 주장하는 입장으로 소개되어 있다.⁴³⁾ 이러한 법적 검토는 일본측이 연합국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을 충분히 의식한 데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4항(본론2항)은 대일강화조약 체결시 한국의 서명국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취할 입장이 분석되었다. 여기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대 독일 및 대 오스트리아 평화조약,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대 이탈리아 평화조약이 분석되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대독평화조약에서 독일영토의 일부였던 폴란드가 독립하여 조약체결 당사국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체코슬로바키아 역시 대독평화조약에 전승국의 입장에서 행동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대 오스트리아 평화조약(상제르망 조약, 1920)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 '세르보-크로아트-슬로베느 국(1918년 수립, 1929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됨)'이 독립하여 평화조약의 체결당사국이 되었으며, 대 헝가리 평화조약(트리아농 조약, 1920)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 '세르보-크로아트-슬로베느 국'의 독립이 승인되어, 조약 조인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 결국, 오지리(오스트리아)-헝가리 군주국에 대하여 교전국가가 아니면서 직접 평화조약 조인국이 된 나라는 '希臘(그리스), 폴추칼(포르투갈), 쿠바, 니카라과, 파란(폴란드), 세르보-크로아트-슬로베느, 체코슬로바키아' 등 7개국인 바, 이 가운데 '파란(폴란드)'의 경우 법적 근거보다 정치적 근거가 우선시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⁴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대 이탈리아 평화조약에서는 알바니아와 이디오피아

42) 「법적근거」, 20~21쪽.

43) 「법적근거」, 24쪽.

44) 「법적근거」, 24~26쪽.

의 독립 승인이 규정되었는데, 강화회의에 참가한 국가는 알바니아, 오지리(오스트리아), 쿠바, 애급(이집트), 이란, 이락(이라크), 멕시코, 호주 등 8개국이었다. 특히 알바니아와 오스트리아는 대전의 결과 독립을 회복한 국가라는 점이 주목되었다. 또한 대 이탈리아 평화조약에서 보듯이 다수국에 의한 강화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인데, 형식상 전 참여국 참가주의가 취해지지만, 내용상으로는 미영불소중 5대 강국에서 일치된 점을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형식적으로는 만장일치를 보는 형태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대 이탈리아 강화의 내용은 직접 전투에 참가한 미영불소가 초안 작성에 참가했으며, 대 루마니아 강화, 대 불가리아 강화, 대 헝가리 강화의 내용은 영미소가 초안 작성에 참가, 대 폴란드 강화에 대해서는 미소 양국만이 관계국으로 인정되어 양국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었다는 사실과, 조약의 효력 발생도 이들 4, 3, 2개국의 비준만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특기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분석에 의하면, 대일강화조약의 경우, 미영과 소련의 대립에 영향을 받아, 대 이탈리아 평화조약 방식이 아니라 다수결 방식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는 전후 급변하는 극동정세에 영향을 받아 미소영중 4대국 중심주의는 어렵기 때문이며, 대일본전 조약 참가국 만으로도 현실에 부합치 않다는 점에서 극동위원회 구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한국의 서명 참가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극동위원회에 참가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만 대일강화조약 체결 전에 태평양군사동맹이 결성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 동맹의 결성 유무에 관계없이 일본의 안보와 관련하여 한국의 발언권이 중요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입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어 있다.⁴⁵⁾

제5항(본론3항)은 배상과 관련한 내용이다. 패배국의 배상책임은 전쟁행위의 배상과 전시특별조처상의 손해배상으로 구분, 전자를 교전법규 위반의 배상, 후자를 기타 보상이라 하는데, 광범위의 배상이라고 할 때에는 이 양자 외에 점령군 위원회 비용, 할양지역 내의 공공물 등을 포함하며, 소극적인 면

45) 「법적근거」, 26~29쪽.

에 있어서는 청구권의 포기도 포함된다고 분석했다.⁴⁶⁾ 여기에서는 할양지에서의 배상이 분석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며, 일본 측의 움직임을 포착한 준비작업 일 가능성이 있다.

1950년 10월 5일 워싱턴 UP 등 외신이 대일배상요구 철회원칙과 그 예외로서 연합국 점령지 내 일본재산의 차압을 상정한 데 대해, '미국의 의도가 배상철회에 있다는 것은 확신한 바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연합국 내에 있는 일본재산에 배상이 되는 그 배상원인을 연합국재산이라고 하여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손해를 배상대상에서 제외한 점에 특색이 있다'고 분석했다.⁴⁷⁾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조약에서 인정된 배상책임은 '전쟁행위로서 발생한 전승국 일반시민의 사망 및 부상에 관한 본인 및 피부양 가족의 손해'를 비롯 9개 항목 등에 불과하여, 대한민국이 일본에 요구할 배상은 상기와 같은 전투행동을 직접원인으로 한 점은 지극히 적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1910년 8월 29일의 한일합방조약이 무효한 고로 *** (해독 불가)에 발생하는**** (해독 불가)에 대하여 배상이라하기도 어렵다. 다만 1905년 11월 17일 이후 일본이 침략을 목적으로 하여 독립운동자 애국자에 가한 일체의 손해 보상요구는 배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 실재에 있어서는 대일강화조약 외의 부속 조약에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조언했다.⁴⁸⁾

기타 영토조항과 관련해서는 간도 문제가 제기되어 있으나 독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 다만 간도 처분의 경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어 '기타 변경도기(其他邊境島岐)'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나 내용은 채워져 있지 않다.⁴⁹⁾ 독도 문제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준비부족이었다기보다는 이미 독도의 영유를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의 시볼드 비판은 배상문제 등을 둘러싼 연합국 측의 '관대한 방침'으로의 선회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지, 독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

46) 「법적근거」, 29쪽.

47) 「법적근거」, 29~30쪽.

48) 「법적근거」, 30~31쪽.

49) 「법적근거」, 73~74쪽.

다. 독도 문제가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한국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내용 면에서 주일 대표부의 연구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전문가적 지식(특히 국제법)이 반영되어 체계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문서가 작성된 것이 1950년 10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이 한국 측 외무부 본부에 전달된 것은 1951년 1월이었다. 대일강화와 관련하여 미일 간의 교섭이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동안의 3개월의 지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후의 다른 문건에서 주일 대표부 ‘위원회’ 조서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원회’의 조서는 전달되었다 해도 무시되거나, 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일 대표부의 연구가 냉전을 의식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일 대표부의 연구는 일본 측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다. 냉전이라는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한국본국정부의 의도였으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내용을 볼 때 이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맺음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은 상호간 관련조항에 대해 각각 미(英)을 상대로 교섭하여, 한일 양국 간에는 직접 교섭이 없었다. 위의 Ⅲ절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은 한국의 서명참가, 귀속재산, 독도문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거의 대부분 일본의 의향이 반영되는 형태가 되었다. 반면, Ⅳ절에서 확인했듯이 재산권 문제를 제외하고 한국이 제기한 중요문제는 대부분 기각되고, 영토문제, 대일배상 청구, 재일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문제, 영해확정문제, 배상문제 등은 한일 양국 간 협상에 이관되었다.

요시다 총리는 강화의 지연이 일본에 유리했다고 회고했다. 일본 패전 직후였다면 징벌적 성격이 강했을 것이지만 강화가 지연되는 동안 연합국 측의 대일 인식이 깊어진 데다, 일본 측으로서는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강화를 얻어내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⁵⁰⁾ 냉전의 전개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한일 양국의 위상을 역전시킨 데 영향을 주었다면 바로 이러한 일본의 시간별기로서의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요시다의 회상에 따르면 강화에 대처하는 일본정부의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대일강화회의는 종래의 포츠머스회의나 베르사유회의와 같이 승전국과 패전국이 강화의 조건을 협의하는 회의가 아니라, 연합국 측이 일방적으로 강화의 조건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사태를 창출하는 회의라기보다는 점령하에 만들어진 사태를 추후 확인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점령기에 기성사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며, 연합국사령부에 대한 나날의 접촉이 강화를 위한 교섭이라는 기본으로 임했다고 한다. 둘째, 강화회의가 연합국 측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연합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일본 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한 국가란 미국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⁵¹⁾

이는 외무성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즉 외무성의 분석에 따르면 이탈리아 등과의 평화조약(파리조약)에서 패전국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소련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탈리아의 경우와 다른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합국 가운데 한 국가의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즉 “패전국이 주된 연합국

50) 吉田茂, 1998, 『回想十年(3)』, 中公文庫, 24쪽.

51) 吉田茂, 1998, 위의 책, 25~26쪽; 이러한 입장은 외무성 문건에서도 확인된다. 「對日平和條約締結の時期について(대일강화조약의 시기에 관하여, 1947. 6. 3, 조약국 조약과)」라는 문서에서는 “이번 평화조약의 특징은 ‘기성사실을 만들고 이를 조문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화회의의 그 자체보다도 평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접섭(접촉과 교섭)이 모든 평화조약 교섭’임을 명심하고 그 준비는 회의개최 시기에 연연하기보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 표명되어 있다.

가운데 한 국가가 어느 정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가운데 평화조약에 임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다”고 하여 “일본의 최고 수뇌부가 미영중소 가운데 어느 국가와 스스로의 이익을 일치(アイデンティファイ)시킬 것인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가령 소련과 일치시키고자 한다면 일본을 우선 완전히 공산화한 뒤 평화조약에 임할 정도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일종의 협박에 가까운 정책제언이었다. 물론 요시다는 일본이 스스로의 이익을 일치시킬 상대로 미국을 택했다.⁵²⁾

이러한 판단에 입각해 일본은 외무성을 중심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방대한 양의 설명자료를 작성했다. 1946년 가을 경부터 일련의 영문자료의 작성이 추진되었다. 「일본의 현상(경제편)」, 「일본의 현상(정치편)」 등의 자료에 이어 영토문제에 관한 자료는 일본정부가 가장 힘쓴 부분이었다. 이에선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사할린, 쿠릴 열도 등에 대해 역사적·지리적·민족적·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 이들의 일본 귀속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영토문제에 관한 자료만으로도 7권에 이르렀다고 한다.⁵³⁾ 미국은 이들 자료를 공식적으로는 접수하기를 거부했으나, 시볼드가 국장으로 있던 연합국 최고사령부 외교국의 도움으로 1948년부터는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일본외무성에서 외교국으로 전달될 수 있었으며, 워싱턴에도 보내지게 되었다. 요시다의 회고에 따르면, 이들 자료는 워싱턴에서 대단히 훌륭한 참고자료로 호평을 받아 일본측로서는 이에 고무되었다고 한다. 이후로도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인구문제, 전쟁피해, 생활수준, 배상, 해운, 어업문제 등과 관련해서 수십권에 이르는 자료를 작성하여, 1950년까지 약 2년 동안 평화조약 내용과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거의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었다.⁵⁴⁾

이러한 상황에서 냉전의 전개는 일본을 위해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

52) 日本外務省, 2006, 「對日平和條約の時期および起草手續きについて(대일강화조약의 시기 및 기초 절차에 관하여, 1947. 6. 1, 조약국장)」, 『日本外交文書, 195卷,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條約準備對策(이하 준비대책)』.

53) 吉田茂, 1998, 앞의 책, 27쪽.

54) 吉田茂, 1998, 앞의 책, 27~28쪽.

다. 한편 한국은 냉전적 상황을 강조하여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전략으로 대미교섭에 임했는데, 이는 오히려 일본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준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은 50년 2월 방일시, 아시아에서 고조되는 공산주의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월 16일의 도쿄 도착성명에서 이승만은 “성장하는 공산주의 팽창으로부터 일어나는 공통의 위협은 한국과 일본을 단결시켜야 하며 과거의 적대관계는 망각되고 현재의 제 곤란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의 요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승만은 반공통일전선 형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⁵⁵⁾

나아가 이승만은 1950년 6월 방한한 딜레스 고문에게 한국이 적대적 세력권에 들어 대일 항공기지가 설치된다면 일본은 단시간에 항공출격전의 범위에 들게 되나, 한국이 우방으로 남게 되면 일본의 방위보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⁵⁶⁾ 이러한 발언은 이승만의 의도와는 반대로 일본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고, 냉전에 따른 평화조약의 지연에 오히려 기여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5) 『경향신문』, 1950. 2. 18 ; 『연합신문』, 1950. 2. 19.

56) 『자유신문』, 1950. 6. 24.

참고문헌

〈1차 자료〉

한국 외교부, 「한일예비회담(1951. 10. 20~12. 4) 자료집,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 태도와 그 법적 근거, 1950」, 723.1 JA 자1950, 76, C1-0001, 0006-0080.
日本外務省, 2006, 『日本外交文書, 195卷,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條約準備對策』.

〈회고록〉

吉田茂, 1998, 『回想十年(3)』, 中公文庫.
김동조, 1986, 『회상 30년, 한일회담』, 중앙일보사.
유진오, 1993, 『한일회담』, 외교안보연구원.
홍진기/유민 홍진기 전기간행위원회, 1993, 『유민 홍진기 전기』, 중앙일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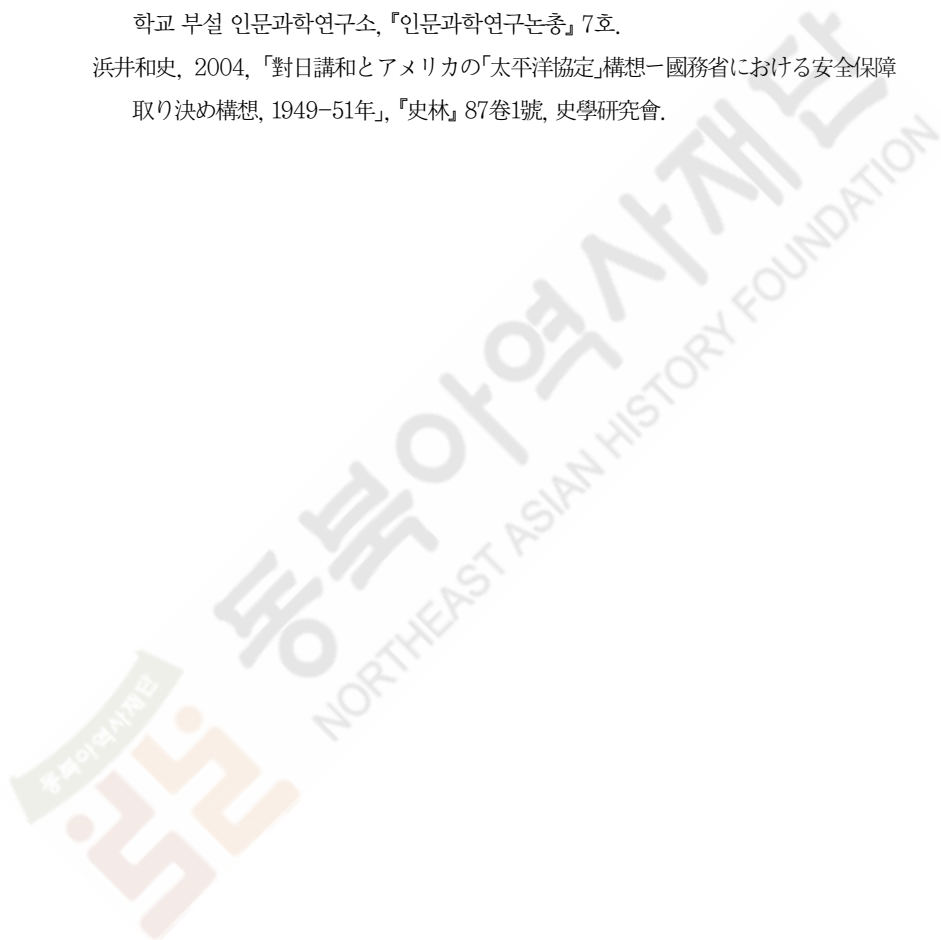
〈연구서〉

鹿島平和研究所 編, 1973, 『日本外交史』, 28卷, 鹿島平和研究所.
原貴美恵, 2005,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條約の盲点-アジア太平洋地域の冷戦と「戦後未解決の諸問題」』, 溪水社.

〈논문〉

金民樹, 2002, 「對日講和條約と韓國參加問題」, 『國際政治』 131號.
박진희, 2005, 「전후 한일관계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국사연구』 131호.
박진희, 2006,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태균, 2005, 「한일회담 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미국의 역할」, 『한국사연구』, 131호.
이석우, 2003, 『일본의 영토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인하대학교 출판부.
이석우, 2005a, 「제2차 세계대전, 평화조약, 그리고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1)」, 『(내일을 여는) 역사』 20호.
이석우, 2005b, 「제2차 세계대전, 평화조약, 그리고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2)」, 『(내일을 여는) 역사』 21호.
정갑용, Van Dyke, Jon M., 2005,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정병준, 2005a, 「영국 외무성의 대일강화조약 초안 부속지도의 성립(1951. 3)과 한국 : 독도 영유권의 재확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집.
- 정병준, 2005b, 「윌리엄 시볼드와 독도분쟁의 시발」, 『역사비평』 여름호.
- 정성화, 1990,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정책의 고찰」, 명지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논총』 7호.
- 浜井和史, 2004, 「對日講和とアメリカの「太平洋協定」構想—國務省における安全保障取り決め構想, 1949—51年」, 『史林』 87卷1號, 史學研究會.



[ABSTRACT]

Taking Diplomacy Seriously : Japan and Korea on the Road to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Nam, Kijeong

On the basis of newly declassified materials in Korea and Japan, this article aims to show how the two countries in the post-World War II years maneuvered to sway the terms of the impending peace treaty in favor of their respective posi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began early by forming a dedicated team of experts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ich then persistently campaigned through informal channels. To some extent, the Allied Powers were nudged along, especially on compensation issues and on the number of peace treaty signatories. On the Korean side, the government delegates stationed in Japan took notable initiatives which, in the end, failed to materialize. The failure seems to be due to disagreements between the delegates and the home government in Seoul.

All too often, the onset of the Cold War has been cited as the decisive factor for the leniency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at the neglect of the purposeful and meticulous diplomacy undertaken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 latter, this article concludes, was even more decisive. It would be a gross oversimplification to attribute the lenient peace terms at San Francisco to the Cold War alone.

keywords

San Francisco Peace Treaty, Korea-Japan Relations, Cold War,
Leniency



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의 해결 방식

- 경제협력 방식으로의 전환과정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

이현진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I. 머리말

한일회담의 주요 목적은 본래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유래하는 여러 문제를 청산, 처리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국교 수립을 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전후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주요한 의제는 청구권 협상이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청구권 협상은 배상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의 측면에서 논의되기보다는 국가 간 경제협력의 논리로 처리되고 말았다.

기존 연구에서 청구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한일협정 조문에 나타난 청구권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청구권 협정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의미를 검토하거나 민간인 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¹⁾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식은 일본의 전후처리

1) 김창록, 2005,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의 내용과 성격」, 『해방 후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 윤해동, 1992, 「한일협정에서의 청구권, 배상인가 구걸인가」, 『역사비평』 1992년 봄호; 오오타 오사무 저, 송병권·박상현·오미정 역, 2008, 『한일교섭-청구권 문제연구』, 선인.

방식인 청구권 협상이 어떻게 경제논리 속에서 처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청구권 문제의 접근 방식이 보 상에서 경제협력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역사적인 배경과 이를 강제한 논리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청구권 처리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논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일 간 청구권 문제의 제기와 처리과정은 일차적으로 당시의 미일관계에서 규정된 전후처리 협정(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그 협상의 논리적 틀이 제공되었다. 따라서 한일 간 청구권 문제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미일관계의 변화와 한미·한일관계의 변화라는 두 축의 상호 교차점에서 분석해야만 해결 방식의 논리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²⁾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한일회담의 전개과정에서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경제협력의 논리로 전환되어 가는지, 그 구체적인 처리과정을 당시 미국의 대외 원조정책과 한미일의 관계라는 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³⁾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한미일 관계가 구축, 본격 가동되며 한일 양국관계도 새롭게 구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일회담의 처리과정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동력으로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와 여기서 파생되는 한국과 일본의 대

2) 한미일 3국 정부의 국제정치 역학관계 속에서 청구권 문제를 분석한 연구로는 이종원과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종원은 미국이 한일 양국의 청구권 문제에 어떠한 입장을 가졌는지에 대해 분석했고, 기미야 다다시는 1960년대 청구권 문제가 경제협력 방식으로 타결된 것은 당시 한미일 3국 정부의 냉전인식의 산물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종원, 1995, 「한일회담의 국제정치적 배경」,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30주년을 맞이하여』, 아세아문화사; 木宮正史, 1995, 「1960年代における冷戦と經濟開發-日韓國交正常化とベトナム派兵を中心にして」, 『法學志林』 제92권 제4호.

3) 한일관계를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의 틀 속에서 살펴본 논문들로는 李鍾元, 1996, 『東アジア冷戦と韓美日關係』, 東京大學出版會; 허버트 빅스, 1984, 「지역통합전략-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의 한국과 일본」, 『1960년대』, 거름; 박진희, 2003, 「한일협정체결과 지역통합전략의 현실화-한미일 3국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0호 등이 있다.

응 방식이 결국 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드러났고 한일 양국의 외교정책의 기본 성격을 규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한미·미일관계, 그리고 한미일 3국 관계 등 다양한 층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할 때 1950~1960년대 한일관계의 기본적인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는 1950년대 개시된 한일 회담이 왜 1960년대에 가서야 비로소 급속하게 타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특히 한일협정에서 청구권 협정의 체결과정은 단순한 한일 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당시의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대외 경제원조 정책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대외 경제원조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의 변화는 한일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고, 한일 간 전후처리 과정의 논리를 제공해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미일의 국제관계 속에서 한일협정을 분석할 때 한일협정과 전후처리 문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며 경제협력 방식의 의미와 그것의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1950년대 미국의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과 청구권 문제

1950년대 한일회담은 역사문제나 한일 양국 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힘의 규정력이 파생시킨 문제였다. 6·25전쟁을 계기로 한미일 동맹이 정치·군사적으로 강화되고 일본의 부흥과 재무장이 강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일본의 경제적 부흥과 재무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반공보루를 만들려는 수순에 들어갔고 이에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950년대 당시 한일관계 정상화는 경제관계의 긴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고,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이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화를 통해 중국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중국의 공산화 이후에 일본을 아시아 자본주의의 축으로 만들고자 했던 미국의 '역코스 정책'이 실행되면서⁴⁾ 한반도의 안보가 곧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한 미국은 반공이라는 기치 아래 한국과 일본의 관계정상화가 아시아에서 자본주의 체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⁵⁾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와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조인은 이러한 미국의 지역통합전략 구상의 현실화를 위한 조치였다.⁶⁾ 미국은 일본의 재건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중심부의 창출을 기도하면서 동시에 1950년 1월 26일 한미군사원조협정, 1950년 9월 8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여 한미일 군사동맹 구상을 현실화해 갔다.

또한 미국은 일본에 대한 역코스 정책을 채택한 이후,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일강화조약을 처리해 갔다. 미국은 대일강화조약을 승자와 패자 간의 조약이 아닌 우방 간의 조약으로 상정하고 일본에 대한 배상요구정책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1951년 4월 발표된 미국 측의 대일강화조약 초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배상 무능력의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청구권은 재외자산의 처분권한 취득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본의 배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다.⁷⁾ 이러한 입장은 대일강화조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편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참가에서 불참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지역

4) 허버트 빅스, 1984, 위의 글, 215쪽.

5) 「John F. Dulles 미국무부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1953년 12월 10일」,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7, 『한일회담 관계 미 국무부 문서1(1952~1955)-주한·주일 미국대사관 문서철-』, 339쪽.

6)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이후 일본의 자본주의 세계로의 진입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일본은 1952년 8월 세계은행, 1955년 9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각각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56년에는 유엔의 일원이 되면서 세계체제 속에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해 갔다. 홍인숙, 1995, 「한일회담에 대한 미·일의 구도와 대응」, 『역사비평』, 1995년 봄호(통권30호), 26쪽.

7) 오오타 오사무, 2000, 「한일 청구권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9쪽.

통합전략 구상하에 일본의 제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이기도 했다.⁸⁾ 1951년 4월 델레스와 요시다 총리와의 면담자리에서는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의 서명국으로 참가하는 문제와 재일한국인 추방문제가 논의되었다. 여기서 일본은 한국은 교전국이 아니며, 만약 연합국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다수가 공산주의자들인 재일한국인들이 터무니없는 재산, 배상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 측의 참여를 반대했다.⁹⁾ 즉 일본은 한국의 과도한 배상요구로 인한 일본 경제재건의 어려움과 공산주의자들로 인한 사회혼란의 야기를 한국 측 배제의 주요 이유로 제기했다.¹⁰⁾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제안은 일본의 경제재건과 안정을 바라는 미국의 입장에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일본의 경제력을 배양하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산세력에 대항시키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일본의 경제 부흥을 원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전쟁배상에 대한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서도 일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¹¹⁾ 이와 같이 미국은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주권국으로서 일본의 부활을 위한 '관대한 조약'으로 처리함으로써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으며 이로써 한국은 대일배

8) 한국을 대일강화회의에 참가시키고 서명국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권고는 무초 주한미대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무초가 한국 참가를 권고한 이유는 미국과 유엔이 정책적으로 한국을 지지했으며 한국정부의 위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일강화회의에 한국을 참가시켜야 한다는 무초의 경우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배상은 이미 식민지 시기 일본의 국공유 및 사유재산의 취득을 통해서 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Muccio to Secretary of State," *FRUS*, 1949, vol. VII, p. 911).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청구권 문제 협의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9) 박진희, 2006,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7쪽.

10)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국을 배제해야한다는 입장은 영국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영국은 당시가 한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회담 참여를 반대했다. 金民樹, 2002, 「對日平和條約と韓國參加問題」, 『國際政治』 131호, 142~143쪽.

1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Officer in Charge Korean Affairs," Jan. 17, 1951, *FRUS*, vol. VII, pp. 94~98.

상을 요구할 근거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¹²⁾ 결국 일본의 부활을 동아시아 정책의 주축으로 결정하고 대일배상 포기정책을 취한 미국의 입장은 한일회담의 진행과정에서 청구권 문제 토의를 지연시키고 한일 갈등을 야기한 주요 배경이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국 측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한국은 배상과 청구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어업 문제 등 한일 간의 여러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본과 별도의 조약이 필요했고, 일본과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재일한국인법적지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협상이 필요했다. 이에 1951년 10월 연합국 최고사령부(SCAP)의 주선으로 한국과 일본의 회담이 개최되었다.¹³⁾ 본 회담에서 한국은 재산청구권 문제를 필두로 어업선 문제,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등 한일 간의 여러 현안에 대해 전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일본 측은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외의 의제의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한국은 교전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개의 강화조약 체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한일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이후 양국 교섭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¹⁴⁾ 이에 12월 4일 회담이 종료되기까지 일본의 무성의와 지연전술로 의제선정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되풀이되었다. 결국 의제에 관해서

12) 한국의 대일배상 요구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또한 현실주의적인 관점에 입각해 있었다. 1951년 1월 17일 리스크 미국무부 극동 담당 서기 차관보는 장면 주미대사에게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지불할 배상은 실제로는 미합중국의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하면서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합법적인 대일청구라는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Officer in Charge of Korean Affairs,” Jan. 17, 1951, *FRUS*, vol. VII, p. 97). 원래 미국의 대일배상정책에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희생과 피해의 회복이라는 관점은 없었던 것이다.

13) 한일회담예비회담은 1951년 10월 20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시볼드 외교국장의 주재로 한국의 양유찬 대표와 일본의 이구치 대표 등 양국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박진희, 2006, 앞의 글, 67쪽).

14) 박진희, 2006, 앞의 글, 63쪽.

는 기본관계의 수립, 재산청구권의 해결, 통상항해조약의 체결, 어업협정의 해결, 해저전선의 분할, 기타의 6개 의제를 채택하고 각 의제에 관한 분과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회담의 일정에 관해서는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일 강화조약이 발효되는 시점인 1952년 2월로 연기할 것에 합의하였다.¹⁵⁾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52년 2월 15일 제1차 한일회담이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후 14년간에 걸쳐 지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52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 논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의제는 청구권 문제였다.¹⁶⁾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4조 (b)항에서 미군정청이 재한 일본재산을 한국정부에 이양한 것은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추인함과 동시에 청구의 문제는 한일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한일 청구권 공방의 출발점이 되었다.

1950년대 진행된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제안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전제하에 일본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을 토대로 한 것이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해 전쟁배상의 성격을 약화시키면서 영토의 분리, 독립으로부터 생겨난 재정적·민사적인 채권·채무의 청산에 초점을 맞춘 요구였다.¹⁷⁾ 그러나 일본 측은 한국의 요구를 맞받아 오히려 대한청구권을 주장하였다. 한국 내 일본의 사유재산에 대해 일본이 청구권을 갖는다는 이 주장은 1907년 헤이그 육전법규, 46조 적지사유재산 불

15) 「한일회의 제9회 경과보고(1951. 11. 28)」, 「제10차 한일회의의 경과보고(1951. 12. 4)」, 『한일회담 예비회담(1951. 10. 20~12. 4) : 본회의 회의록, 제1~10차, 1951』,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77, 프레임번호 230~238, 240~245.

16)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 배상(reparation)은 전쟁으로 발생한 피해를 전쟁도발국이 물어주는 것으로, 보상(compensation)은 민간피해에 대한 손실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정의되었고, 청구(claim)의 개념은 피해대상과 범위, 손실을 회복시켜줘야 할 주체 등을 명시하지 않은 특별한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오오타 오사무, 2000, 앞의 글, 9~11쪽.

17) 1952년 2월 20일 개시된 재산청구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국 측은 '한일 간 재산청구권 협정 요강'을 제출했는데,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본 요구조항을 통해 한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반출해 간 지금, 지은, 한국인 소유의 일본 유가증권의 상환, 전쟁으로 인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가침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¹⁸⁾ 그러나 일본의 진정한 의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의 배상책임이 면제된 것을 전제로 한국의 과도한 배상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었다. 일본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대한청구권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¹⁹⁾ 일본의 대한청구권 요구의 최대 목표는 대한청구권과 대일청구권이 완전 상쇄되는 것이며, 최소 목표는 부분 상쇄를 통해 대일청구권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었다.²⁰⁾ 일본정부는 한국이 제안한 항목별 토의는 청구권 논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재한일본재산에 대한 청구를 고수하는 것이 일본이 취해야 할 중요한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²¹⁾ 그리고 이는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이 제시한 대일배상 포기정책에 대한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권 문제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조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논쟁이 거듭되자 한국과 일본은 미국 정부에게 배상과 청구권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입장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51년 12월 일본은 이미 청구권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견해를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타진한 바 있었고, 한국 또한 1952년 3월 20일 미국무부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조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은 한국의 대일 청구권을 상쇄하려고 하는 교섭기술이며, 제4조에 대한 견해의 표명은 늦추는

18)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한일양국 간의 의견 상위의 요점」, 『제1차 한일회담 (1952. 2. 15~4. 21) : 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8차, 1952. 2. 20~4. 1』,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86, 프레임번호 272~275.

19) 「請求權問題會談の初期段階における交渉要領」, 1952년 1월 23일付, アジア局2課, 문서번호 537, 1~2쪽.

20) 박진희, 2006, 앞의 글, 100쪽.

21) 「財産, 請求權處理に關する件」, 1951년 12월 10일付, アジア局2課, 문서번호 536, 3~4쪽; 한일회담 2차 회담 이후 일본정부는 이러한 상호포기의 원칙을 청구권의 처리방침으로 제시했다(高裁案, 「日韓交渉處理方針に關する件」, 1953년 10월 13일付, アジア局2課, 문서번호 1060, 1쪽).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무부에 권고했고 국무부도 당분간은 한일 간의 대립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²²⁾

미국정부의 4조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은 1952년 4월 29일과 5월 15일,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에 각각 통보되었다.²³⁾

강화조약 제4조의 b항의 규정의 결과로서 재한일본재산은 소멸되었고 따라서 일본은 동 재산에 대해서 유효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재한일본재산이 소멸했다는 사실은 동조약 제4조 a항에 의해 재일 한국재산의 결정을 행할 때 관련성을 갖는다.²⁴⁾

위의 공식견해에서도 보이듯이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일본의 대한청구권 주장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일청구권 요구가 재한 일본재산의 처분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다.²⁵⁾ 결국 미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애매한 태도를 통해 한일 간의 분쟁에 직접 개입을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이러한 미국의 애매한 태도는 한일회담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원칙을 고수한 것이었다. 미국은 미국의 간섭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지만,²⁶⁾ 미국의 불개입원

22)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57쪽.

23) 한국정부에 견해가 통보된 4월 29일은 대일강화조약이 발효되어 일본의 독립이 달성된 다음 날이었다.

24) 「미국의 청구권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1952년 4월 29일」,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7, 『한일회담 관계 미국정부 문서(1952~1955)-주한·주일 미국대사관 문서철-』, 1쪽

25) 미국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은 미국이 청구권 문제에 대해 입장표명을 자체 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미국정부 정치과장 Lamb은 주일미국대사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미국의 유권해석은 일본 측을 초조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청구권에 대한 상호 포기가 문제해결의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Richard H. Lamb이 주일미국대사에게 보낸 비망록, 1952년 5월 21일, 320.1-ROK JAPAN NEGOTIATIONS-1952」,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7, 『한일회담 관계 미 국무부 문서(1952~1955)-주한·주일 미국대사관 문서철-』, 2~3쪽.

26) 「Graham J. Parsons가 미국무부에 보낸 전문, 1954년 6월 2일, 320.1 JAP-

직은 오히려 한일회담을 난항으로 이끄는 요인이 되었고, 미국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되었다.

또한 미국은 한국정부 관료들은 미국이 일본편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관료들이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한일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중재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다.²⁷⁾

이후 1957년 미국은 한일회담 재개를 위해 1952년 4월의 유권해석에 대한 보완설명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4조 b항에 대한 미국의 최종입장을 밝힌 미국무성 각서를 한일 양국에 전달했다. 본 각서에서는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해 이러한 청구가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소유재산의 귀속으로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평화조약 중에는 청구권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춘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이 문제는 관계국 간의 협정에 맡겼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국과 일본의 특별협정에는 한국의 대일청구가 한국 정부의 재한 일본자산의 인수로 소멸, 충족되었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결정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한 일본자산의 처분 문제에 대해 미국이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특별협정은 관계 양국정부 간의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²⁸⁾

이와 같이 1950년대 청구권 문제를 비롯한 한일회담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은 과거사 인식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차이의 첨예화와 미국의 불간섭정책이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50년대 청구권 논의에 있어 한일 간의 경제협력 방식이 제기되지 않은 이유는 일본의 경제성장의 미성숙과 미국의 대한원조가 계속 유지되고

KOR 1954],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7, 『한일회담 관계 미국무부 문서1(1952~1955)-주한·주일 미국대사관 문서철-』, 480~481쪽.

27) 「텔레스 미국무장관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전문, 1954년 10월 8일, 320.1 JAP-KOR 1954」,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7, 『한일회담 관계 미국무부 문서1(1952~1955)-주한·주일 미국대사관 문서철-』, 529쪽.

28) 「1957년 12월 31일자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미국 측 각서 전문」, 『미일평화조약 제4조(청구권관계)의 해석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공개』, 한국정부 공개 외교 문서, 등록번호 719, 프레임번호 88~90.

있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과의 경제적 재결합이 가능하게 될 시기까지 청구권 문제 해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²⁹⁾ 미국 또한 완벽한 제3세계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국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일본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일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은 일본에 대한 무리한 압력행사가 일본이 중국과 무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했다.³⁰⁾

한편 한국은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가 지속되는 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이에 대한 배상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하는 여론의 비난과 이를 통해 발생할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과의 경제협력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1950년대 한국정부의 청구권 문제의 처리방식은 도덕적 명분상의 싸움으로 비추어지지만 오히려 이는 명분을 내세워 일본의 의도를 지연, 봉쇄하려는 한국 측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정부의 정책은 반공이라는 미명하에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최대화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 한일관계개선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가운데 그 수위를 조절해 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청구권 문제 해결의 논리로서 경제협력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한국정부의 미국 대한 원조정책에 대한 비판논리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 경제원조정책에서 미국 원조물자의 대일조달 방안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미국의 일본 중시정책을 맹비난하며 한국에 도입되는 미국 원조물자가 일본에서 조달되는 것을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로 한국정부는 일본 상품이 국제 수준에 비해 질이 낮고 고가이며 일본에의 과도한 수입의존은 경제적인 종속을

29) 오오타 오사무, 2000, 앞의 글, 64쪽.

30) 한국전쟁 휴전 후 전쟁 특수의 감소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중무역의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본제계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대두했던 것도 미국에 있어서는 커다란 압력이었다. 李鍾元, 1996, 앞의 책, 111쪽.

초래한다는 것을 제기했다.³¹⁾ 이와 같이 한일 간의 경제협력의 문제가 경제적 종속의 의미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일본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한 한일 간 수직분업체계의 구축이라는 일본 중시의 한일경제협력 논리는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당시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결국 1950년대 한일 양국의 인식은 한일관계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았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가운데 한일회담에 임하는 태도 및 정책을 조율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청구권 문제의 접근방식의 전환은 1960년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196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서 한일관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진 데서 비롯되었다.

Ⅲ. 1960년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변화와 청구권 문제의 처리과정

1_ 1960년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변화

대외원조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195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다. 로스투우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협소한 군사적인 고려에서 벗어나 장기적 경제개발 원조를 공여하여 저개발지역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사회가 우위를 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냉전의 바람직한 종결방법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대외원조의 중점을 제3세계 국가들의 개발욕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다. 비록 이러한 분위기가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로 인해 대외경제원조의 확대에 직접 이

31) 『동아일보』, 1954년 4월 29일, 1954년 5월 9일.

어지지는 못했지만 저개발국가의 경제개발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³²⁾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의 본격적인 전환은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루어졌다. 케네디 행정부의 원조정책은 저개발국의 경제활동을 궤도에 올리고 시장으로서 이들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면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러한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에 공헌하기 위해서 원조는 장기간의 계획원조여야 하며 증여가 아닌 차관의 형식으로 원조의 수단을 바꾸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³³⁾ 그러나 1958년 이후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공산권 국가들의 저개발 원조가 더욱 적극화하는 경향 속에서 저개발국 원조는 더 한층 증액이 요구되고 있었다. 더욱이 저개발국 중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계속 경제개발계획을 책정하고 다액의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은 미국 중심형 원조에서 벗어나 국제협조형 원조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⁴⁾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통합전략을 실시한다는 정책은 195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들어오면서부터이다. 미국은 1960년의 시점에서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담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1961년에 제출된 대일정책의 가이드 라인에서는 일본의 위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강조되었다.

32) 이현진, 2005, 「제1공화국기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5쪽 ; ‘새로운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로스토우 보고서는 1954년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가 공산주의자에게 패퇴한 이후 이른바 1954년의 위기는 군사적·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심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작성되었다. 즉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순한 도식을 탈피하고 경제발전에 중점을 둔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3)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 『선진제국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139쪽.

34) 케네디는 특별교서를 통해 자유공업국이 저개발국에의 경제원조에 조직적으로 참가할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 위의 책, 140쪽.

- 1)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세계 무역의 파트너이다.
- 2) 미국의 군사시설의 핵심부분을 호스트하고 있다.
- 3)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제개발에 기술 및 자본을 공여하는 기
초를 제공하고 있다.³⁵⁾

위의 항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일본이 이제 어느 정도 부흥에 성공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본이 다른 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저개발국의 원조를 강조하고 공적자금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1960년대의 새로운 대외정책에서 일본과 관련한 핵심적인 정책은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이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에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었다. 한국은 1950년대를 통해 단일국가로서는 미국의 대외원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짐을 일본이 덜어준다면 미국의 역할은 아시아에서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케네디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한일관계의 정상화의 문제가 제기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1961년 북한이 소련, 중국과 일련의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북방 3각체제가 형성됨으로써 한일관계 정상화는 그 시급성을 더하게 되었다. 1961년 7월 일본의 고사가 외상은 북한이 중국, 소련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일국교 정상화의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발언하여 이같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³⁶⁾

일본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미국의 대아시아 원조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미

35) Japan, Department of State, Guidelines for Policy and Operations, October, 1961, NND 941092, RG59, Japan and the U.S., Microfiche, W.5972, Havard University, Lament Library 소장(박태균, 2005, 「한일협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와 그 특징」, 『해방 후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 경인문화사, 231쪽에서 재인용).

36) 『합동연감』, 1964, 213쪽.

국의 대외정책의 변화는 곧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존슨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³⁷⁾ 여기에 베트남 문제가 더하면서 아시아에서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이에 한일 간의 관계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2_ 경제협력 방식을 통한 청구권 문제의 처리과정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원조가 급격히 삭감하면서 한국은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경제발전을 빨리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청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었다. 한국의 상황이 점차 경제문제의 해결에 주안점이 두어지면서 청구권 문제를 비롯한 한일회담의 현안문제의 처리는 실리적인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장면 정권이 들어서자, 대일정책의 기조는 적극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한 장면 정권은 국내 경제난 해소와 미국의 원조정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자 했고 이를 위한 자본은 외자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특히 대일청구권 자금 및 일본 자금 도입을 주요 자금원으로 상정함으로써 한일회담은 이전과는 다른 진전을 보게 되었다.³⁸⁾

장면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대일관계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고 ‘일본이 성의 있고 조건 없는 경제원조를 하겠다면 이를 검토 후 수락하겠

37) 당시 미국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한일관계 정상화이며, 이것은 주한미군의 감축보다는 대한 원조의 삭감 때문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Memorandum from Robert W. Kome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Special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Bundy),” May 19, 1964,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9).

38) 박진희, 2003, 앞의 글, 111쪽.

다'는 입장을 언명하며 한일관계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³⁹⁾ 한일 양국의 적극적인 태도에 힘입어 4·19혁명으로 중단되었던 한일회담은 1960년 10월 25일 재개되었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안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편 장면 정부는 한일회담과는 별도로 일본의 민간경제시찰단의 방한을 준비하는 등 한일경제협조를 추진하고 일본의 민간자본의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이는 국회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받았고, 장면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국교정상화 이전에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한다거나 대규모의 경제시찰단을 초청하는 일 등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되었다.⁴⁰⁾

한편 5차 한일회담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 측에서 제시한 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해 심층적인 토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회의에서는 이전의 과거사 논쟁의 구도를 벗어나,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와 청구금액에 대한 계수적인 검토에 들어갔다.⁴¹⁾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친선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였고,⁴²⁾ 5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 동안 이들은 한국 정부 관료들과 접촉하며 한일관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일본 측 의원들과 한국 관료와의 공식, 비공식 논의를 통해 합의를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일본은 현재 난관에 봉착해 있는 재산청구권 문제에 대폭 양보키로

39) 『동아일보』, 1960년 9월 8일.

40) 『동아일보』, 1961년 1월 24일.

41) 이에 대해서는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중 『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 1~13차 (1960~1961)』 등록번호 718 참조.

42) 『동아일보』, 1961년 5월 6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의원은 노다 우이치 등 8명의 의원과 이세키 유지로 아세아국장 등이었다. 노다 단장은 도착 성명을 통해 이들의 내한 목적이 한국의 실정을 그들의 눈으로 충분히 시찰하고 한국 각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정세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아시아의 반공제일선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과 공통된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에 입각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 매진할 결의를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했다.

- 2) 일본은 대공방위상에 있어서의 평화선을 인정하고 한국은 한일 간의 잠정적인 어로협정 체결에 동의했다.
- 3) 한일 간의 경제협력은 원칙적으로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 후에 하되 국교정상화 전이라도 재일한교의 약 65백만 달러의 모국 투자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았다.
- 4) 양국이 경제사절단을 교환기로 하였다.
- 5)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 후에 있을 양국 간의 경제협력 특히 GARIOA, EROA 자금의 대한민국 전용에 있어 한미일 3개국 경제위원회를 설치토록 한다.⁴³⁾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한일 양국의 주요 논의는 경제협조 추진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협조 논리는 한일회담의 최대쟁점인 청구권 문제의 정치적 타결과도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일본은 GARIOA 및 EROA 자금의 대미변제금을 한국의 경제원조자금으로 전용할 것이라는 점을 제기했는데, 이는 이후 청구권 금액 산정에서 주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한일 간의 논의가 급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한국의 상황과도 연관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한일관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에서도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청구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대한원조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미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4년부터 미국과 일본은 미국이 전후 일본에게 제공한 GARIOA 및 EROA 원조에 대한 채무변제 교섭을 개시했고, 1959년 사토[左騰]-앤더슨 간의 회합에서 몇 가지 합의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즉 18억 8,900만 달러라는 채무액을 무료 하고 새로이 채무액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과 이를 동남아시아 개발 또는 미일의 공동 목적에 사용할 것 등에 합의하였다.⁴⁴⁾ 그리고 쿠데타

43) 『동아일보』, 1961년 5월 12일.

44) 『일본의 대미 GARIOA 및 EROA 채무 지불 교섭에 관한 요미우리 신문(1959. 10. 6) 보도내용 요약』,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 일본의 대미 GARIOA, EROA 채무

직전인 1961년 5월 일본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주로 개인적 배상, 금괴 등을 위한 청구권을 해결하는데 5천만 달러와 2억 5천만 달러의 차관,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장기 대여 자금 등을 생각하고 있었다.⁴⁵⁾

이와 같이 미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청구권 회의 동안 한일 간 경제협조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한일 간의 경제교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는데, 이는 청구권 문제를 경제협력 방식으로 타결하려는 계획하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일 경제협조와 대일 청구권은 별도로 해결되어야 하며 대일 청구권 등 현안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에 한일 경제협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⁴⁶⁾ 또한 대일청구권 문제의 정치적 타협 역시 시기상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한일회담은 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군사정권은 쿠데타 직후인 1961년 5월 22일 장면 정권의 대일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했고, 미국의 지속적인 원조를 확보하고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⁴⁷⁾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군사정권의 적극성은 1961년 11월 박정희의 방미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박정희는 방미 도중 일본에 먼저 들러 이케다 총리와 극동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조속한 관계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음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⁴⁸⁾ 한편 미국 측은 일본의 대한경제원조는 한국의 대일청구권 해결과

변제, 1959~1962],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751, 프레임번호 39~40; 일본의 대미채무 변제금액과 관련한 논의에서 미국은 6억 8,000만 달러의 상환을 주장하였고 일본은 상환금액을 4억 2,000만 달러 정도로 추산하였다. 이후 이는 4억 9,000만 달러로 최종 조정된다. 「특별정세보고(1962. 1. 9), 『제1차 정치회담(1962. 3. 12~17): 예비교섭』,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732, 프레임번호 45.

45) 도널드 스티븐 맥도널드 저, 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역, 2001, 『한미관계 20년사(1945~1965년)-해방에서 자립까지』, 한울아카데미, 192쪽.

46) 『동아일보』, 1961년 1월 11일.

47) 『동아일보』, 1961년 5월 22일.

48) “Memorandum of Conversation : Subject-U.S.-Korean Relations,” 1961. 11. 14, *FRUS*, 1961~1963, vol. XXII (박진희, 2003, 앞의 글, 111쪽에서 재인용).

연결된 것인데 한국정부는 한국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유망한 수단으로서 일본이 그것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즉 미국은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청구권 문제를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고,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주요함을 인식시키고 '선타결 후국교'의 방식으로 고려할 것을 제기했다.⁴⁹⁾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일본과 모든 협상을 마무리지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1961년 6월 이미 일본의 대미 채무변제 금액을 4억 9,000만 달러로 확정짓고 이를 저개발국의 원조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미일간의 협상을 마무리지었으며 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극동에서의 개발원조에 있어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⁵⁰⁾ 또한 미국정부는 일본의 대미 상환대금을 저개발원조에 충당한다는 법안을 확정지은 상태였다.

이에 미국은 한일회담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의 명분을 중시하는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여겼으며,⁵¹⁾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며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⁵²⁾

이와 같이 1960년대에 진행된 청구권 협상은 경제발전문제에 집중되었고, 경제협력 방식으로 일괄타결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미국은 3억 5,000만 달러에서 4억 5,000만 달러 사이의 협상금액을 제시하면서까지 한일회담 타결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⁵³⁾ 일본의 원조를 이용하

49) 「주목할 만한 라이샤워 대사의 권고(1964. 7. 14)」, 『한일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 1961~1964』,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764, 프레임번호 61~65.

50) 「미일공동성명(1961. 6. 22)」,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 일본의 대미 GARIOA, EROA 채무변제, 1959~1962』,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751, 프레임번호 51~53.

51) 「번디 차관보 방한과 한일회담(1964. 10. 3)」, 『한일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 1961~1964』,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764, 프레임번호 70~79.

52)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Japan," July. 13. 1962, *FRUS*, 1961~1963, vol. XXII, 문서번호 267.

53) "Memorandum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May 17, 1962, *FRUS*

여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계획을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임을 한국인들에게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었다.⁵⁴⁾

청구권 금액조정 과정에서 미국이 제시한 금액은 일본의 대미 채무변제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였다. 또한 한국정부 관료와 미국 대사관과의 대답에서는 주로 일본과의 자본재 도입문제 및 일본으로의 연지불 수입 등에 대비한 한국의 법개정문제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조치들이 논의되었다.⁵⁵⁾ 그리고 금액조정을 포함한 일본과의 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일본의 대미 채무변제 금액이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기금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하였다.

이후 한일회담은 실무자회담을 통해 주로 기술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고, 한일 간 의견 차이를 보이는 주요 쟁점들은 비공식 회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일괄타결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진행되었다. 결국 청구권 문제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일괄타결되었고, 그 타결의 논리는 경제협력 방식이었다.⁵⁶⁾ 그리고 한일협정의 결과로 도입된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은 1963년 수정된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은 청구권 문제가 가지고 있던 역사적 성격보다는 경제협력이라는 실용적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경제문제 해결과 실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1961~1963, vol. XXII, 문서번호 261.

54) 도널드 스톤 맥도널드 저, 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옮김, 2001, 앞의 책, 192~193쪽; 한편 당시 한국정부는 한일협상의 진전을 미국의 대한원조의 교섭 카드로 사용하려 했으며,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미국의 대한원조를 삭감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보증을 요구했다.

55) 「회담요지(1964. 6. 29.)」, 「정무국장과 미국 대사관 직원과의 접촉」, 『한일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 1961~1964』,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764, 프레임 번호 55~60.

56) 한일 간 최대 난제였던 청구권 문제는 김종필-오히라 회담을 통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상, 유상, 민간 상업차관 등의 제공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일거에 해결되었다. 이후 한일국교정상화의 전제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무상자금 3억 달러, 유상자금 2억 달러를 제공하도록 했고, 이러한 자금 이외에 상업차관에 의하여 3억 달러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했다. 경제기획원, 1976, 『청구권 자금백서』, 11쪽.

IV. 맺음말

본 연구는 한일회담의 전개과정에서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경제협력 방식으로 처리되어 가는지, 그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당시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틀 속에서 한미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50년대 한일회담은 역사문제나 한일 양국 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힘의 규정력이 파생시킨 문제였다. 6·25전쟁을 계기로 한미일 동맹이 정치·군사적으로 강화되고 일본의 부흥과 재무장이 강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일본의 경제적 부흥과 재무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반공보루를 만들려는 수순에 들어갔고 이에 한일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52년 한일회담이 개최되었고 회담의 핵심의제는 청구권 문제였다. 한일 간의 청구권 논의는 일차적으로 연합국과 일본 간의 전후처리 협상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일본의 부활을 동아시아 정책의 주축으로 결정하고 대일배상포기정책을 취한 미국의 입장은 한일회담의 진행과정에서 청구권 문제 토의를 지연시키고 한일 갈등을 야기한 주요 배경이 되었다.

한편 1950년대 한국정부의 입장은 반공이라는 미명하에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최대화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한일협력관계 증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일본정부 또한 한국정부의 과도한 배상요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역청구권을 주장하며 청구권 해결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채택하였고, 이는 결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로 드러나면서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의견대립을 더욱 첨예화시켰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도 불개입원칙을 고수하며 한일 간의 분쟁에 직접 개입을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이는 결국 청구권 문제를 비롯한 한일회담 논의를 난항으로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문제는 일본의 경제재건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미국의 대일강화조약 체결의 원칙인 대일배상 포기정책에 영향을 받았고, 과거사 인

식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와 미국의 불간섭정책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후 청구권 문제의 접근 방식의 전환은 1960년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후 일본은 한국정부에게 철저한 법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청구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주장하면서 한국 측의 개인 청구권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청구권 문제의 접근 방식으로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하면서 청구권 문제를 비롯한 한일협정의 타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경제개발자금 마련의 시급성으로 인해 경제협력의 논리에 동의하면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1960년대 초 한일 양국의 청구권 문제의 접근 방식이 경제협력의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는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변화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에 주요한 관심을 기울여 온 미국 정부는 경기침체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통합전략의 구축을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미국의 대아시아 원조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1960년대 미국 대외원조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미국정부는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청구권 문제의 처리에 정치적 타협을 권유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일본의 대한 경제원조를 한국의 대일청구권 해결과 연결 짓는 경제협력 방식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일본과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GARIOA 원조 및 EROA 원조에 대한 대미채무변제를 끈질기게 요구했으며, 대미채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일본이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원조의 방식을 통해 일부를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다. 결국 이 과정은 청구권 처리에 있어 일본정부가 경제협력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결국 1960년대 청구권 문제는 자국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전후 급격히 성장한 일본 독점자본의 진출을 갈망한 일본의 요구, 불안정한 정권 기반을 경제성장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한국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참고문헌

외무부, 1949, 『대일배상조서』.

대한민국 외무부 공개, 「1951~1965년 한일회담 자료」.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 『선진제국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대한민국정부, 1965, 『한일회담백서』.

경제기획원, 1976, 『청구권 자금백서』.

U.S. Department of State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51, 1961~1963, 1964~1968.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7, 『한일회담 관계 미 국무부 문서1(1952~1955)-주한·주일 미국대사관 문서철』.

문정인·김세중 편, 2004,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박진희, 2003, 「한일협정체결과 지역통합전략의 현실화-한미일 3국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0호.

박진희, 2006, 「제1공화국의 對日政策과 韓日會談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태균, 2006,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유진오, 1993, 『한일회담 - 제1차 회담을 회고하면서』, 외교안보연구원.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李鍾元, 1996, 『東アジア 冷戦と 韓美日關係』, 東京大學出版會.

이현진, 2005, 「제1공화국기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위논문.

한일관계사 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2005, 『해방 후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 경인문화사.

다카사키 소우지, 1998, 『검증 한일회담』, 청수서원.

오오타 오사무 저, 송병권·박상현·오미정 역, 2008, 『한일교섭-청구권문제연구』, 선인.

도널드 스텐 맥도널드 지음, 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옮김, 2001, 『한미관계20년 사(1945~1965년)-해방에서 자립까지』, 한올아카데미.

허버트 빅스, 1984, 「지역통합전략-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의 한국과 일본」, 『1960년대』, 거름.

[ABSTRACT]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the issue of claims :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resolved in the form of economic cooperation

Lee, Hyunjin

This thesis analyzes the process of how the issue of claims between Korea and Japan following the liberalization of Korea was resolved in the form of economic cooperation during Korea-Japan dialogue considering the aid that was provided by the US.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e relationship of Korea, US, and Japan during this process.

During the 1950's, the normaliz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did not mean that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becoming truly closer. Rather with the realization of the communism revolution in China, the partnership of Korea and Japan focused more on preventing the spread of Chinese communism from spreading.

With the US implementing its "reverse policy," in other words, trying to have Japan be the stronghold of Asian capitalism, it realized that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directly impact Japan. Therefore, the US strongly felt that the normaliz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would contribute to the stabilizing of the capitalist system in Asia. This position taken by the US became the basis for the Korea-Japan Dialogue taking place. The issue of claims

raised during the 1950's could not be resolved due to the non-intervention policy of the US and the difference of views between Korea and Japan on its past. Furthermore, it was influenced by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hich waived compensation to Japan with the justification that it was supporting the reconstruction of the Japanese economy.

The shift in approach to resolving the issue of claims took place in the 1960's when the US adopted a different policy in external aid with the aim of reducing its burden through cooperation with Japan. Moreover,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Korea-Japan relations became more urgent in resolving the economic issues between the two nations. Accordingly, the US intervened proactively on the claims issue, recommending political compromise and suggested to Japan that its aid to Korea be linked to this matter. The issue of claims was resolved in 1960's in the form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interest of three nations all being met. In other words, US wished to reduce its burden for economic aid ; Japan wanted to enter into the Korean market with its rapid post-war economic growth ; and the Korean government yearned to overcome the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with economic growth.

keywords

Regional Integration Strategy, economic cooperation, claims, GARIOA-EROA agreement, The treaty with Japan

‘국익’으로 동원된 개인의 권리

- 한일회담과 개인보상문제 -

김영미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I. 머리말 : 한일 과거사 청산의 과제

‘과거 청산’¹⁾이란 부정적인 과거사를 정리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그렇다면 한일 과거사 청산작업에서 양국이 함께 ‘청산’해야 할 그 ‘과거’는 무엇일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에서 벌어진 과거사 청산은 양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나 사회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성이 있다. 과거사와 관련하여 청산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테러·납치·고문·학살·인종차별 등 독재나 전쟁 혹은 식민지배 과정에서 폭압적 권력이 자행한 인권 유린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거스르는 반인륜적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²⁾ 한일 과거사의 청산 과제 역시 이러

1) 과거란 결코 인간이 사라지게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청산이란 결국 기억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과거를 긍정적으로 전유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에서 사용되는 ‘과거 극복’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적으로 통상 이용되는 ‘청산’이라는 말을 ‘극복’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안병직, 2005, 「과거청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한 보편성 속에 놓여 있다. 천황제파시즘체제로 일컬어지는 극도의 권위주의 국가체제가 자행한 국내외의 인권유린 행위를 규명·비판·반성·성찰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평화 공존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과거사 청산의 작업은 상호 갈등과 반목하기보다 불행한 역사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극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 이 때 ‘함께’라 함은 미사여구가 아니라 청산의 작업을 타국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는 실질적 의미에서이다. 과거사 청산은 타국에 대한 요구와 함께 자국에 내재한 제국주의 잔재를 비판·반성·극복할 수 있는 자기 성찰적 작업이다. 프랑스 과거사 청산 작업의 과정에서 초기에는 대독협력자 문제가 주된 것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 기소자들은 나치학살정책에 대한 방조 곧 반인륜범죄로 심판되고 있다.³⁾ 이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민족담론에서 벗어나 인권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행한 일은 한일회담이 자신의 과거 청산에 실패한 두 나라 정부간의 회담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일회담이 과거사 청산 작업으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한일회담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서들은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약 14년에 걸쳐 진행된 한일회담과 한일협정은 대단히 불철저한 과거사 청산 작업이었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한계는 일본 통치당국으로부터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그에 따른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戰後 천황제파시즘체제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것이 한일회담이 ‘마라톤 교섭’이 된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⁴⁾ 회담을 중단시켰던 ‘구보타 망언’⁵⁾이나

16쪽.

3) 유진형, 2005, 「프랑스 문단과 과거사 청산」, 『세계의 과거사 청산』, 130~132쪽.

4) 14년간의 교섭기간 중에 양국의 수뇌를 비롯하여 정치가, 실무 담당자 간에 개최된 회담의 수를 통산하면 1,500회를 상회한다. 이는 교섭이 얼마나 분규와 난항으로 가득 찼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이다.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2쪽.

5) 구보타[久保田貫一郎]는 한일회담의 일본 측 수석대표로서 제3차 회담 재산청구권위원회 제3회 회의(1953년 10월 20일) 중에 “36년간 일제강점에는 한국민에게 유리하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뻔한 ‘다카스기 발언’⁶⁾은 돌출적 사건이 아니라 일본 지배층의 과거사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일본의 국내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한일회담을 분석하고 있는 이원덕의 연구는 일본의 어떤 정치세력도 ‘한일회담이 갖는 과거 청산의 성격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⁷⁾ 다카사키 소우지의 연구도 진보적인 일본인들조차 구보타의 역사인식에 동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⁸⁾ 일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일회담을 통해 역사의식을 교정하고 그들로부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옛날의 일은 없었던 일로 흘려버리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현명한 것’⁹⁾이라는 박정희의 인식은 한일 회담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취할 수밖에 없었던 자세였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어떠했는가?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을 다룬 박진희의 박사논문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태도를 대단히 차별적으로 보고 있다.¹⁰⁾ 이승만 정권이 견지한 과거사 청산의 태도를 박정희 정권이 완전히 포기하게 됨을 비판하고 있다.¹¹⁾ 그러나 두 정권의 태도 차이는 과거사

였다” 등의 조선 지배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여 회담이 중단되었다.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 경과보고(1953. 10. 20)’ 「본회의 회의록 및 1~3차 한일회담 결렬경위」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95, 프레임번호 1278~1290.

6) 다카스기[高杉 一]는 일본 측 수석대표로서 1965년 1월 중순 제7차 회담의 제3회 본회의를 앞두고 “일본의 노력은 결국 전쟁으로 좌절되었지만 20년쯤 더 조선을 가치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등 일제의 조선 지배가 조선을 발전시킨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정부는 이미 합의된 회담의 성과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 이 발언을 은폐하려하였지만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파문이 일어났다. 「야당, 망언이라고 규탄. 한일회담, 高杉 발언으로 암영」, 『조선일보』 1965년 1월 20일자; 「나 자신도 놀랐다」 高杉 일본대표, 문제의 발언 공식 해명, 『조선일보』 1965년 1월 21일자.

7) 이원덕, 1996, 앞의 책, 301쪽.

8) 다카사키 소우지[高崎宗可], 1998, 『검증 한일회담』, 청수서원.

9) 박정희가 쿠데타 직후인 61년 6월 1일 외국기자초청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朝日新聞』, 1961년 6월 2일자.

10) 박진희, 2006, 「제1공화국의 對日政策과 韓日會談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1) 박진희, 2006, 위의 글, 193쪽, “그러나 한국의 대일정책의 기초는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변화되었다. 청구권 문제는 단순한 ‘경제협력’ 문제로 축소·변

청산에 대한 의지나 입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박정희 정권 단계에서는 일본의 역청구권이 폐기되었다는 앞 시기 회담의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한일관계를 개선하지 않더라도 1950년대 중반까지 대미원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이승만 정권의 조건과 경제개발을 성사시키지 않으면 정권유지가 힘들었던 박정희 정권의 조건이 회담에 임하는 자세의 차이를 낳았던 보다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본 연구는 한일회담에 임했던 한국정부의 일관된 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일본 측에 배상을 요구하면서 배상의 주체가 되는 절대다수의 피해자들을 배제시키고 있는 점이다. 해방 직후 남한으로 유입된 귀환동포가 250만 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당시 사회적 호칭이 ‘戰災民’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대부분은 식민지배의 최대 피해자들이었으며, 해방 이후 절대적 빈곤층이 된 사람들이었다.¹²⁾ 한국정부가 한일회담을 풀어나간 방식은 식민지배의 피해자들을 소외시키고 정치논리에 의해 진행된 권위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것이었다.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이와 같은 권위주의적 태도가 말로 식민국가의 경험 속에서 내면화된 청산해야 할 유산이라 할 것이다. 1965년 타결된 한일회담은 제국주의 지배정책의 피해자들을 소외시키면서 동북아의 반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가 간의 야합으로 끝났다. 군국주의 잔재를 청산하는 자리에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지 않고 한일, 한미일 정부는 재무장을 위한 확고한 연대를 하고 있었다.¹³⁾ 이 때문에 한일협상 타결 직후 피해자들은 협상의 내용에 반대하며 그들을 위한 과거사 청산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2004년 「강제동원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의 발족은 피해자들이 상당수가 죽고 난 지금에야 이루어지는 대단히 뒤늦은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한일회담은 한국현대사에 과거사 청산과 관련

질되었다. …… 청구권 문제가 갖고 있는 민족사적 요구, 역사적 측면이 모두 누락된 채 한일 간 고위급에 의해 비밀리에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12) 이연식, 1998, 「解放 直後 해외동포의 귀환과 미군정의 정책」,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일본과 한국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국의 핵실험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되어서 이중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일제 식민유산을 극복하는 문제이며, 또 하나는 그 청산의 경험을 다시 극복하는 문제이다. 현재까지 한일회담 연구서들은 한일회담을 한일 국가대표들 간의 교섭사로서 접근해 왔다. 한일회담에서 박정희 정권은 ‘정부’가 곧 ‘개인’을 대변한다고 하였다. 한일 간의 회담은 곧 식민지 시기를 살아간 구성원들의 전체의 이해와 관련된 과거사 청산 작업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경험과 이들의 목소리를 간과하고 있는 지점은 현재 한일회담 연구의 중요한 한계로 지적할 부분이다. 본 논문은 한일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개인보상문제의 성격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한일협정과 그 이후 한국정부에 의한 보상문제의 처리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청구권 자금의 역사적 성격 변화

한일회담의 전 과정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문제는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한일회담에서 기본관계문제가 정신적 과거사 정리 작업이었다면 청구권 문제는 물질적 차원의 청산 작업이었다. 이 두 문제는 서로 다른 분과위원회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다. 청구권의 범위와 정도는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하와 식민지배체제가 조선에 미친 영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일회담에서 협상의 주도적인 사안은 청구권 문제였으며 기본관계문제는 청구권 문제의 보조적 사안으로 기능했다. 그 극단적 조처는 박정희 정권의 ‘액수’에 따른 일괄타결 방식이었지만 이승만 정권기 기본관계문제가 부각된 것 역시 일본의 역청구권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다카스키 망언’이나 ‘구보타 망언’은 동일한 내용이었지만 하나는 청구권 문제가 타결된 시점에서 제기되었고, 하나는 청구권 문제가 교착된 시점에서 제기된 것이기에 그에 대한 정

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회담에서 정신적 과거사 청산보다 경제적 실리를 더 중요시하였음을 말해준다.

청구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무엇보다 ‘청구권’의 성격이 각 국면에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한일회담 과정에서 청구권은 크게 두 차례의 성격 변화를 보인다. 먼저 1950년대 초 ‘賠償 청구권’에서 ‘民事 청구권’으로의 변화이다. 냉전체제의 심화에 따른 미국의 대일배상정책의 급전환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은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을 위한 무기고로 상정하여 경제적 군사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제1단계로 하였다. 이는 1948년 11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본을 패전국이 아니라 미국 세력권의 강력한 군사동맹국으로 그리고 주요 우방국으로 대우하는 이른바 ‘역전된 코스’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른다. 이로써 일본은 아시아의 인접국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힘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게 되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강화회의 및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조인은 ‘역전된 코스’ 정책의 완성을 미·일 간에 성문화한 것이었다.¹⁴⁾ 이러한 미국의 지역통합구상은 대일배상에서 강경론을 유화정책으로 전환시켰으며, 이는 한국의 대일배상문제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전쟁 배상의 권리를 상실하였고, 일본을 상대로 제한된 청구권 협상만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일청구권은 미국의 배려에 의해 삽입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A)항에 근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의 시정당국 및 주민과 일본 및 일본국민 간의 재산청구권은 이러한 시정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협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¹⁵⁾

한국정부가 배상액을 자발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권은 더 이상 전쟁배상

14) 홍인숙, 1995, 「한일회담에 대한 미·일의 구도와 대응」, 『역사비평』 30호, 25~26쪽.

15) 대한민국정부, 1965, 『한일회담백서』, 40쪽.

이 아니라는 미국의 방침을 수긍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구권의 변화는 미국의 대일강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일청구권은 ‘전쟁배상’에서 ‘영토분리에서 발생한 민사적 채권·채무 청산 문제’로 대전환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 체결 직후 발간한 홍보책자인 『한일회담백서』에서 ‘청구권의 성격’이라는 항목을 두고 청구권의 이러한 성격 변화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권을 식민통치의 대가로 인식하는 것은 청구권 문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불행히도 桑港 평화조약의 조인당사국으로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평화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승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흔히 청구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로서 논의하는 일부의 의견은 이와 같은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에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근본적 입장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개념의 혼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본국에 요구하는 청구권을 국제법에 적용해서 보면 영토의 분리 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 해결 문제인 것이다.¹⁶⁾

그러나 이러한 국제법적 시각이 얼마나 한국사회 내에서 공유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박정희 정부는 앞서 『한일회담백서』에서 청구권의 성격을 해명하면서 청구권 문제를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로서 논의하는 일부의 의견은 이와 같은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에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근본적 입장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개념의 혼동인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 한국사회의 국민 상당수가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로서 청구권을 사고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이와 같은 ‘청구권’에 관한 시각은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16) 대한민국정부, 1965, 위의 책, 40~41쪽.

그렇다면 한일회담을 추진했던 한일양측의 정부관료들도 이러한 사회적 시각에서 자유로웠을까. 회담 중 청구권 문제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와 끊임없이 연동되어서 양정부의 전략과 전술에 구사되고 있었다. 곧 미국의 반공을 위한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전략에 의해 한일과거사 처리 문제의 굴절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수뇌부들 간의 동의에 의해 합의되었지 그들의 대변하고 있다고 표방하는 국민들의 합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오재희 전 주일대사의 다음 구술은 정부 관료들도 협상의 근거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만 의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흥정을 하는데 말이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어떤 때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해서 하지만 어떤 때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만 의거해서는 우리가 불리할 때도 있던 말예요. 일부로 그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만 의거만 하면, “이거는 왜 당신들이 강화조약에 없는 건데 왜 자꾸 요구를 하나?” 던지 이런 게 자꾸 나오면 안 되니까 뭐 그냥 그렇게 알고 하는 거죠, 뭐. (중략)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식민지 통치에 대한, 아까 처음부터 얘기지만 이게 딱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차가 나니까 어..., 그러니까 이걸 맞추려면 강제력이 필요한데 강제력이 없는 거 아녜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국민들은 입장이 같은 거예요. 정부가 우리 국민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¹⁷⁾

다음으로 1965년 피해자 청구권의 포기과 ‘정치적 타결’에 의한 성격변화이다. 이는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선 액수가 대단히 축소된 점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이 상실되고 경제협력기금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¹⁸⁾ 한일회담의 청구권

17) 전 주일대사 오재희 구술 인터뷰(2007년 11월 5일, 외교협회).

18) 박진희, 2006, 앞의 글, 193쪽, “청구권 문제는 단순한 ‘경제협력’ 문제로 축소·변질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 경제협력자금이 1950년대 대일청구권 8개항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본은 무상 공여분이 한국의 ‘독립 축하금’ ‘경제협력자금’

문제에서 일본정부가 가장 피해가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전쟁 동원 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문제였다. 가조인된 상태에서도 일본 측은 이들에 대한 책임을 일본정부는 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재확인하였다.¹⁹⁾ 한국정부는 최종의 순간에 피해자 청구권을 포기하였고 경제협력기금과 함께 일괄타협하였다. “대일청구 8개 항목 중에서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청구권이 휴지화되고, 그것이 8억 달러의 경제협력조항으로 살짝 바뀌치기 되고 말았다”는 한 일본 참의원의 지적은 대단히 날카롭다 할 것이다.²⁰⁾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회담 타결 이후 이들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착복’하였다. 한국정부는 유가족에게 전시 사망자 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사실상 청구권 자금이었던 무상공여 3억 달러의 5.4%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박정희 정권의 과거사 청산 의지의 포기를 주관적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본의 증거주의 전술을 객관적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스스로도 ‘정치적 해결의 불가피성’은 청구권에 대한 근거, 곧 증거불충분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한일회담백서』의 ‘정치적 해결의 불가피성’이란 항목에서 박정희 정권이 제시한 답변이었다.²¹⁾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준비기간까지 합하면 거의 15년 이상 청구권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민사상의 재산권 문제였다. 그런데 왜 피해

으로 제공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 이 부분은 다카스키 소우지, 1998, 앞의 글, 194쪽 참조.

20) 이 질문은 한일협정의 일본의 국회비준 과정에서 공명당 소속의 구로야나기[黒柳明]가 제기하였다. 그는 국회비준에서 한일협정의 비윤리성에 대해 발언한 유일한 의원이었다. 다카스키 소우지, 1998, 앞의 글, 215~216쪽.

21) 대한민국정부, 1965, 앞의 책, 46~47쪽, “일본 측은 한국정부의 현시정지역에 한 한 청구권 중에서 법적근거와 증거관계가 확실한 부분만 변제하겠으나 한국측 청구의 대부분은 법률관계와 증거관계가 불명확하여 변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일본 측의 證據湮滅, 장시일의 경과 및 6·25동란으로 인하여 증거보존이 불충분한 점과 또 현재 대한민국의 시정권이 사실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합의는 8개 항목의 청구를 세목별로 법이론과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무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다. 1950~1960년대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모두 살아있던 시기였다. 더구나 징병과 징용 피해자 문제는 그들의 육체가 과거의 경험을 곧바로 말해주는 산증인들이 즐비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사망한 2005년도에 제1차 강제동원 피해 신고가 20만 건이 접수되었다²²⁾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정부의 자료인멸’이나 ‘한국전쟁기 자료 훼손’ 때문에 증거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항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괄타결은 결정적으로 정부 의지의 문제였다.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볼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은 미군정법령 제33호와 역청구권 문제이다. 일본의 역청구권 문제는 청구권 협상을 지연시키는 돌출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기 쉽지만 이 부분은 청구권 문제의 이중구조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차 회담까지 청구권 협상의 중요한 내용은 역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청구권 협상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청구권 협상의 중요한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권 문제를 경제논리로만 보면 재조일본인의 사유재산 문제를 청구권 협상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킨 부분은 이후 배상의 금액을 상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재조일본인의 사유재산 부분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던 것은 대일청구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를 단순한 ‘제스처’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유재산 부분에 대한 배상액의 변제를 실질적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일회담에서 청구권문제는 전쟁배상이 아닌 민사상의 청구권 문제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법령 제33호는 미군정의 대일강화정책이 대단히 엄격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에 실시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 청구권 협상과 대비해 볼 때 일본으로서는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되고 있었다. 법령 제33호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한국의 일부 청구권이 전쟁배상에 입각해서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대일배상과 관련해서 미군정법령 제33호는 한국 측에 대

22)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보도자료(일제 강제동원 1차 피해신고 마감)」, 2005년 7월 13일자.

단히 유리한 조치였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이 법령이 당시 남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가지는 의미이다. 먼저 이 법안이 제기되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법령 제33호는 폴리 대사의 권고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조처는 미군정청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었다. 우선 일본인의 사유재산을 접수한다는 미국의 방침은 1945년 6월부터 제기되고 있었지만 미군정은 진주 직후 공유재산만 군정청에 귀속시키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매를 허락했다. 그리고 폴리는 건의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세 명의 대표를 한국에 보내 미군정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폴리의 의견을 받은 맥아더는 일본인 재산 문제를 미군정청에 ‘위임’하도록 지령을 내렸다.²³⁾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폴리 대사의 권고가 미군정이 일본인 사유재산을 군정청에 귀속시키는 조처를 내리게 되는 결정적 근거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이미 군정법령 제2호에 의해 일본인 공유재산이 군정청에 귀속된 상황에서 국제적 관행을 깨고 다시 제33호를 통해 그동안 매매를 허락한 일본인 사유재산을 무리하게 군정청에 귀속시킨 것은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이나 ‘적산가옥의 접수와 활용’을 통해서 대중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남한 내 정치세력의 물적 토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었다. 이 견해는 미군정의 경제정책을 다룬 이혜숙의 논문에서 이미 지적된 바이다.²⁴⁾ 일본인 사유재산의 군정청 귀속은 헤이그조약의 위반이 분명했기 때문에 귀속재산 처리 문제는 미군정 내부의 법률심의회 고문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²⁵⁾

제33호는 대단히 엄격한 전쟁배상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한일 과거사 청산에 보다 엄격한 조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의 핵심

23) 이원덕, 1996, 앞의 책, 18쪽.

24) 이혜숙, 1992,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 고지훈, 2002, 「주한미군정의 점령행정과 법률심의회국의 활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 식민지 국군주의 지배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것이었다면 이 법안은 그러한 기능을 정반대로 수행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12월까지의 가장 많은 귀환민들이 유입되었던 시기였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주택문제였다.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를 비롯한 남한의 정치세력들은 식민지배의 최대 피해자들인 이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조일본인의 사유재산인 적산가옥의 무단 매매를 금지하고 귀환민들의 주거지로 활용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전후 배상 문제의 ‘시민적 해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12월 6일 미군정법령 제33호가 발표되었을 때 적산가옥에 임시로 기거하던 ‘전재민’들은 ‘불법주거자’로 규정되면서 일본가옥에서 쫓겨났다. 미군정법령 제33호는 사유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조일본인의 재산을 군정청으로 귀속시켰으며, 일인 재산문제에 대한 일체의 사회적 개입을 차단하였다. 이후 전재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인 주택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은 고조되었으나 미군정은 끝까지 이를 외면하였다.²⁶⁾ 그리고 농지를 제외한 상당수의 ‘적산’은 군정청과의 인맥에 따라서 배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식민체제에 협력한 친일세력이 불하받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식민지 지배체제의 최대 피해자들인 동원, 징병, 징용자들은 대부분 조선인 하층민들이었다. 제33호는 이들 하층민들을 배상문제의 주체에서 배제시킨 정책의 기원을 이룬다할 것이다.

26) 전재민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연식, 1998, 앞의 글 참조.

Ⅲ. 귀환자 운동과 1949년 ‘대일배상요구조서’

1_ 해방 직후 귀환자 운동

국회는 1948년 11월 27일 「대일강제노무자 未濟금채무이행 요구에 관한 청원」 및 「대일청장년사망배상금 요구에 관한 청원」 등 2건에 관한 청원안을 채택했다. 이 청원을 제출한 것은 징병·징용·학병에서 돌아온 귀환자와 유족들의 모임인 ‘태평양동지회’와 ‘태평양·중일전쟁 유가족동인회’였다.²⁷⁾ 정부가 청구권 협상을 준비하기 전 피해자들의 청구권 운동은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국회의 동의를 얻고 있었다.

강제동원자들 가운데 살아서 돌아온 자들도 실업율이 높았던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기란 쉽지 않았다. 부상자들은 재활기간과 자금이 필요하였으며 미귀환자의 유가족들은 가정의 부재로 극심한 생계 곤란에 직면하고 있었다. 사망 혹은 부상 위로금이나 미수 임금은 귀환자나 귀환자의 유족들에게는 장례비용이자 재활자금이었다. 강제동원 사망자들의 유골이 돌아왔지만 정부의 외면에 의해 이 유골들은 지하창고에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태평양 일대에서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미귀환자들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귀환자들과 유가족이 중심이 되어 1948년 1월 7일 태평양동지회라는 조직이 결성되었다.²⁸⁾ 이 조직은 해방 직후에 결성되어 약 3년 동안 혼란한 사회정세 속에서 ‘묵묵히 동지규합과 자료수집에만 전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들의 성실한 노력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지난 1월 7일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었다고 보도되었다.²⁹⁾ 곧 이 조직은 해방 직후에 결성되었다가 1948년 1월에 사

27) 『제1회 국회 속기록』 제15호, 국회사무처, 1948년 11월 27일자.

28) 「태평양동지회 재편성, 대일배상청구자료 수집」, 『조선일보』, 1948년 1월 27일자.

29) 「태평양동지회,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골 이안식 준비」, 『국제신문』, 1948년 9월 14일자.

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평양동지회의 활동의 중심은 강제동원자와 이들의 미수 임금에 대한 실태조사였다. 정부가 수립되자 동지회는 정부 행정기관의 협력하에 각급 행정기관을 통하여 신고를 접수받았다. 신고대상자는 ‘남녀 육해군 군속·징용·보국대·여자 정신대·전병사자 및 미귀환자의 유가족 등으로 미수 임금이 있는 자’라고 보도되었다.³⁰⁾ 그리고 태평양동지회의 1948년 9월의 발표에 의하면 태평양전쟁 당시 피징용자는 70만 명이며 미수 채권은 30억 원에 해당한다.³¹⁾ 이 발표에 의하면 미수 채권은 태평양동지회가 직접 일본정부와 교섭해서 받을 것이며 전쟁배상과는 관련 없는 ‘일본 정부 대 개인의 채권 채무 문제’로 ‘이 피땀의 대가를 대일배상과는 달리’ ‘유가족을 돕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위의 보도에 의하면 피징용자들의 미수채권은 이미 남조선 과도정부를 통하여 맥아더 사령부와 일본정부와 교섭한 바 있었으며, 그 결과 ‘일본정부 대 개인의 채권 채무 문제로 일본이 당연히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지불방법에 있어 그 당시의 화폐 환산으로 지불하겠다’는 언질까지 했다. 미수채권에 대한 태평양동지회의 입장은 전쟁배상문제와 분리해서 민간주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³²⁾

정부수립 직후 피징용자들의 생존권과 채불 임금 문제, 더 나아가서 강제동원 사망자들의 유해수습문제까지 모두 민간의 당사자들에게 내맡겨졌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1948년, 1949년 일본 측으로부터 보내져온 사망자들의 유골은 부산항에 도착하여 방치되고 있었다. 태평양동지회는 이 유골들을 수습하여 가족들에게 보내고 합동위령제를 위해 유족의 지역사회에 供膳券을 발행하여 경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³³⁾ 이들은 귀

30) 「태평양동지회, 일제로부터의 미수된 임금을 조사」, 『경향신문』, 1948년 8월 19일자.

31) 「태평양전 피징용 동포는 70만, 미불 노임 30억 원, 태평양동지회서 일정부에 요구」, 『조선일보』, 1948년 9월 14일자.

32) 「태평양동지회,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골 이안식 준비」, 『국제신문』, 1948년 9월 14일자.

〈표 1〉 강원도 각 군별 강제동원 인원 수

(1949년 5월 현재)

	징용	보국대	징병	작업단	군속	합계
춘천부	337	142	65	4		548
춘성부	1,074	606	249	5	63	1,997
영월군	1,288	272	364	47	28	1,999
홍천군	113	202	40	46	34	435
평창군	426	762	295	83	23	1,589
계	3,238	1,984	1,013	185	148	6,568

〈표 2〉 강원도 지역 사망자 및 미귀환자 수

(1949년 5월 현재)

	사망자 수	미귀환자 수	합계
춘천부	5	6	11
춘성부	60	42	102
홍천군	21	4	25
평창군	66	26	92
영월군	22	19	41

환자와 유골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에 분개하였으며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오직 일본당국으로부터 미수 임금을 받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유골 수수문제와 미귀환자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1949년 3월 23일 태평양동지회는 다음의 담화를 발표해서 불만을 토로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당국은 너무나 무성의하고 그에 따라 토막 속에서 그날그날을 연명해 나가는 쓰라린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큰일이다. 우리들의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울 각오이다.”³⁴⁾ 이들은 정부의 무성

33) 경상북도의 경우 경북출신의 유골이 1,400여 주에 달하자 경상북도 내에서 20원권과 50원권의 공선권을 발행 모집하였다. 「일제에 강제 징용·징발되었던 한국인 유골 귀환으로 합동위령제 거행 예정」, 『영남일보』, 1949년 5월 18일자 ; 「4백만 도민 僉位에게 근고함 : 사단법인 태평양동지회」, 『영남일보』, 1949년 5월 21일자.

34) 「태평양동지회, 전범으로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동포 구제를 촉구」, 『연합신문』,

의에 대해 유골수습의 경비와 미귀환자 귀환, 그리고 생계가 막연한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미수 임금의 반환을 성공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태평양동지회의 자료조사는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태평양동지회 경남지부에서는 부·군 단위의 지회, 읍·면 단위의 분회를 설치하여 실태조사에 박차를 가했다.³⁵⁾ 태평양동지회의 피해조사 실태는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강원일보에 발표된 강원도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이 지역신문에 보도되었다.³⁶⁾

당시 태평양유족회에서 집계한 징용·징병·근로대·정신대 등에 동원된 노무자의 총수는 약 70~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청구권 운동은 한국정부 내의 관료들이 대일배상정책에 대한 준비를 서두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후 정부가 작성하는 대일배상요구 속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2_ 정부 주도의 배상정책과 1949년 『대일배상요구조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배상요구를 각 항목별로 정리한 것은 강화조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물이 1949년 발간되는 『대일배상요구조서』(이하 『조서』)이다. 유진오는 회고록에서 정부관료들이 대일배상준비 작업을 시작할 때 1948년 국회에 피해자들의 청구권에 관한 두 개의 법안이 상정되고 있었다고 한다. 즉, 정부의 배상준비는 기본적으로는 대일강화조약의 체결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전쟁 피해자들의 청구운동도 정부 내의 관료들이 배상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³⁷⁾

1949년 3월 24일자.

35) 「일제의 징용·징병으로 희생된 한인유골 8,000여 주에 대해 당국은 무성의로 일관」, 『민주중보』, 1949년 5월 20일자.

36) 「일제에 강제 징발된 강원도민 수는 6,560여 명으로 판명」, 『강원일보』, 1949년 5월 29일자.

정부의 『조서』는 한국이 강화조약의 서명국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작성된 것이며, 청구권의 내용도 전쟁배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따라서 1949년 「대일배상요구조서」와 1952년 제1차 한일회담에서 제시된 「한일 간 재산 청구권 요강」은 그 청구권의 성격과 배상의 액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 두 표는 1949년에 작성된 『조서』와 1952년 제1차 한일회담에서 제시된 배상요구 목록이다.

1949년의 『조서』는 제한된 기간이지만 비교적 광범한 관련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작성된 것이다. 『조서』는 당시 정부 각 부처로부터 대일배상청구에 관한 세목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한국전쟁 중에 증빙자료들이 전부 소실됨에 따라 『조서』는 한국정부가 한일협상에서 활용한 유일한 근거자료가 되었다.³⁷⁾ 『조서』의 서문에는 청구권의 성격에 대해 밝히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대일배상청구의 기본정신은 일본을 懲罰하기 위한 報復의 부과가 아니고 犠牲과 恢復을 위한 공정한 권리의 이성적 요구에 있는 것이다. (중략) 우리는 을사조약의 무효성을 국제법적으로 변명할 수도 있고 또는 ‘카이로’ ‘포츠담’의 양 선언의 진의를 천명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과거 36년간의 지배를 비합법적 통치로 烙印하는 동시에 기간에 피해 입은 심대하고도 무한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일배상요구 기본정신에 비추어 이는 이제 전연 불문에 부치는 바이다. 다만 중일전쟁 미 태평양전쟁 기간 중에 한하여 직접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인적 물적 피해만을 조사하여 이에 그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³⁸⁾

불법적인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전연 불문에 부치겠으며 다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중의 직접적 전쟁 피해만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37) 유진오, 1961, 『韓日會談-제1차 회담을 회고하면서』,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16쪽.

38) 유진오, 1961, 위의 책, 16쪽.

39) 외무부 정무국, 1949, 『對日賠償要求調書』, 2~3쪽.

〈표 3〉 1949년 대일배상요구조서의 대상 목록 및 액수

제1부 : 地金, 地銀, 서적, 미술품 및 골동품, 선박, 지도원판 기타	
제2부 : 확정채권	17,429,362,365 엔
1. 日系 통화	1,514,134,098 엔
2. 日系 유가증권	7,435,103,942 엔
3. 上海 弗貨	4,000,000달러
4. 보험금, 恩給, 기타 미수금	6,436,617,521 엔
5. 채신관계 특별계정	2,043,506,744 엔
제3부 :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하는 인적, 물적 피해	12,122,732,561 엔
1. 인적 피해	565,125,241 엔
2. 물적 피해	11,326,022,105 엔
3. 8·15전후의 일본 관리의 부정행위에 의한 손해	231,585,215 엔
제4부 : 일본정부의 저가수탈에 의한 손해	
1. 강제공출에 의한 손해	1,848,880,437 엔
요구 총액(제1부의 현물제외)	31,400,975,303 엔

※ 한국외무부, 1949, 『대일배상요구조서』, 523쪽.

〈표 4〉 1952년 한일회담에 제시된 대일배상 요강 8항목

1.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기타 국보, 지도원판 및 지금과 지은 반환.
2. 1946년 8월 9일 현재 일본정부의 대 조선총독부 채무를 변제.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에서 이체 또는 송금된 금액을 반환.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재산 반환.
5.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 및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기타 청구권 변제.
6.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소유의 일본법인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
7. 前記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생긴 과실을 반환.
8. 前記 반환 및 결제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

※ 외무부 정무국, 1955, 『韓日會談略記』, 377~378쪽.

실제로 『조서』는 식민지배에 대한 총체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전시의 직접적인 피해와 강제공출 곧 전시 저가격 수탈에 국한해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홍진기의 전기에 따르면 이 서문은 홍진기가 초안을 하였고 대일배상청구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⁴⁰⁾ 그러나 유진오도 배상청구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조서』 제작의 최고 책임자는 기획처장 이순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⁴¹⁾ 이 책에 실린 배상에 대한 관점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 내의 법률전문가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식민지 전체의 피해보상을 받기는 힘들다고 보았으며, 국제법적으로 합리적인 최소한의 청구권을 제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조서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개인보상 부분의 산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개인보상은 <표 3>에서 제3부 제1항 인적 피해에 해당하며 인적 피해 항목은 ‘피동원 한국인 제미수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다시 구체적인 항목 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피동원 한국인 제미수금⁴²⁾

- ① 사망자 위로금 : 63,015,000엔 / 12,603명에 대하여 1인당 5,000엔(신고액 평균)
- ② 사망자 葬祭料 : 1,260,300엔 / 12,603명에 대하여 1인당 100엔(신고액 평균)
- ③ 유가족 위자료 : 126,030,000엔 / 12,603명에 대하여 1인당 10,000엔(신고액 평균)
- ④ 傷疾者 및 일반노무자 위자료 : 113,053,000엔 / 상질자 1인당 5,000엔, 일반노무자 1인당 1,000엔
- ⑤ 부상자 傷疾 수당 : 36,105,941엔
- ⑥ 퇴직수당 총액 : 51,161,838엔 / 신고액
- ⑦ 상여금 총액 : 5,259,640엔 / 신고액
- ⑧ 현금, 기타보관금 : 45,397,020엔 / 신고액

40) 유영섭, 1993, 『維民 洪璣基 傳記』, 중앙일보사, 43쪽.

41) 유진오, 1961, 앞의 책, 14쪽.

42) 외무부 정무국, 1949, 앞의 책, 323~324쪽.

- ⑨ 미수채금 : 29,308,542엔 / 신고액
- ⑩ 가정 송금액 : 81,573,560엔 / 1인당 1개월 평균 80엔(신고액 평균)
- ⑪ 징용기간 연장수당액 : 12,960,400엔 / 1인당 1개월 평균 400엔(신고액 평균)

『조서』에서 이 금액은 ‘일본정부의 관계법규와 각사업장의 제급여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노무자의 수가 105,151명, 사망자 수가 12,151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미군정의 조사에 따른 것이다. 비고란에는 1946년 3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한하여 주한미군정청 보건후생부에서 등록에 의하여 조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군정의 조사결과는 실제보다 훨씬 축소된 것이라는 한계 역시 지적하고 있다. 등록자의 수이므로 실해당자의 극소수가 등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 1946년 10월 이후에 귀국한 동포도 막대한 인원에 달하지만 이들은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재조사를 고려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조서』가 작성된 3년 후 제1차 회담이 개시되었을 때 한국 측의 요구는 8개 항목의 요강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다시 <표 3>과 <표 4>로 돌아가면 한국이 승전국의 대우를 받지 못함으로써 전쟁 피해 항목 중에서 물적 피해와 저가격 수탈 등의 항목은 폐기되었고 유일하게 ‘인적 피해’ 부분이 <표 4>에 포함된 것은 이것은 일본정부로부터 각 개인들이 받아야 하는 민사상의 재산청구권의 성격이 가졌기 때문이다. 곧 1949년 『조서』의 ‘인적 피해’ 부분은 이후 한일회담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개인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태평양유족회에서 국가의 전쟁배상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교섭하여 생존 귀환자와 미귀환 혹은 사망자 유족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던 그 자금이다. 그런데 대일배상 요구조서의 인적 피해란에 적힌 노무자의 수는 태평양동지회에서 조사한 70만~80만이라는 숫자와 비교해 볼 때 약 1/7~1/8의 규모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조서』 초안의 항목들을 유지하면서 각 항목의 수치는 피해자 수의 증가에 따라 대폭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했다.

IV. 1965년 한일협정과 개인보상문제

이 절에서는 공개된 외교문서 중에 개인청구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일협정 체결 직전부터 재무부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청구자금이 민사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개인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개인보상의 폐기나 축소를 고려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재무부는 1964년 4월 7일자 경제기획원에 보내는 문서에서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재무부가 민간인 보상조치를 독촉한 것은 ‘문의 또는 진정’이 쇄도하고 있다는 점과 이것이 ‘엄연한 사유재산’이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사료’된다는 재무부의 판단에 입각한 것이었다. 다음은 이 문서에 표현된 재무부의 견해이다.

3. 한국정부의 대일본재산청구권 총액 중 이러한 민간인에 관련된 부분은 (1) 이것이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점과 (2) 또 정부는 다만 민간인을 위하여 재산청구권행사를 대행했다는 점에 비추어 한일회담이 종결되는 대로 일본으로부터의 보상금액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조치를 강구해 주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사료됩니다. 4. 따라서 정부는 한일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일본으로부터 받는 보상액의 사용방안에 관하여는 물론 전향에서 언급한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에 관하여도 진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청구권 액수가 한국정부에서 일본정부에 제시한 재산청구명세에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타결된 액수이기 때문에 본건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1) 보상을 요하는 재산의 종류 (2) 보상액 (3)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 요청됩니다.⁴³⁾

43) ‘조선은행을 비롯한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조치에 관하여(1964. 4. 7)’

재무부는 ‘정부는 다만 민간인을 위하여 재산청구권 행사를 대행’했으므로 회담 직후 합리적 방법으로 보상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시기부터 재무부는 합리적인 민간인 보상방안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1965년 8월과 9월에 나온 개인보상법 초안은 재무부에서 작성한 것이었다. 이 초안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후술하기로 하겠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재무부의 이 문서를 다시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경제기획원의 전달문이다. 1964년 5월 2일 경제기획원에서는 외무부장관에게 개인보상방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경제기획원은 앞의 개인보상이 당연하다고 밝힌 재무부의 문서를 전달하면서 개인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의 국내법 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기획원의 문서는 앞의 재무부와는 달리 개인보상이 삭감되거나 개인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 표기 건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사본과 같은 공문을 접하였는 바 본건은 다음과 같은 점이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유권적인 견해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구권 해결교섭이 타결될 경우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 청구권은 삭감되는 것인지 만약 삭감된다면 국제법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일교섭은 민간 보유 대일재산 청구권의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개별적인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 다.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여하히 처리할 방침인지.⁴⁴⁾

이것은 1964년 4, 5월 시점에서 개인보상에 대한 정부 내의 입장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기획원 내부 혹은 정부 내에서 개별보상을 하지 않는 입장이 강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1964」,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762, 프레임번호 138~139.

44) ‘조선은행을 비롯한 민간인보유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조치에 관하여(1964. 5. 2)’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1964」,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762, 프레임번호 137.

력히 고려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경제기획원의 질문에 대해 외무부에서는 5월 8일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보상의 책임을 지며 또한 개인들에게 보상을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외무부의 답변 내용은 외무부와 재무부는 개인보상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4. …… 아측 청구권에는 위 2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국 국민(법인 포함)이 보유하는 개인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번엔 일본과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전기한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개인 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당부로서는 개인이 정당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있어서는 아측이 일측과 교섭하였을 시에 문제되었던 제 문제점 즉 (1) 청구권의 법률근거, (2) 증거의 제시문제, (3) 일본 원화 표시로 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상의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대책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개인청구권에 대한 보상문제는 청구권 관계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의 사용방도 및 국가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대책수립을 위한 검토를 곧 시작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⁴⁵⁾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된 1965년 4월 3일 이후의 문서들은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1965년 4월 6일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는 한일협정으로 8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며 협정발표 이후에는 대일청구요강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1. 합의사항 5.에 있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된 한일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

45)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조치(1964. 5. 8)’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1964」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762, 프레임번호 142.

에는 한일회담에 있어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관계협정의 발표에 의하여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확인된다.⁴⁶⁾

정리하면 한일협정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8항목에 관련된 모든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개인청구권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은 명백하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내적으로 협정체결 전부터 일괄타결로 받은 이 자금에서 개인청구 부분을 소멸하거나 삭감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은 민사적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복안은 재무부나 외무부 등 관료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5년 4월 3일 기본조약 가조인 이후 전개된 청구권 협상에서 일본 측은 일괄타결의 불안정성을 염려하고 있었다. 일본 측은 소멸된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할 것과 개인청구권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정부는 '덩어리'로 해결된 청구권의 처리 문제는 '각각 국내의 문제로 취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곧 한국정부는 청구권 자금을 협상의 항목과 무관하게 국내적으로 재분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일본 정부의 청구권 자금의 사용에 대한 개입을 배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1965년 4월 26일 제1차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측은 소멸 대상을 구체적으로 중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회의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사토 대표 : 한국 측은 소위 청구권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이·시이나 합의 사항에 의하여 해결되어 버렸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소멸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하여 두어야겠다는 것이 일본 측의 생각이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함으로 본 협정에 집어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사다게 대표 : 청구권 소멸문제에 관하

46) '합의의사록(불공표)(1965. 4. 6)' 「청구권 관계회의의 보고 및 훈령 V.1 1965」 한국정부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1467, 프레임번호 78.

여 이대표께서는 쉬운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는 파고들면
 들 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 특히 여러 가지 개인의 청구권이 없
 어진다는 것이므로 중대한 것이다. 우선 소위 북한문제에 관하여는 청
 구권 문제의 경우 그 법률관계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과 대상이 어떤 것인가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 또한 종전 전에 있던 조선 총독부의 법적지위랄까 즉 조선총독
 부와 한국정부와의 관련(청구권과 관련하여 계승되었느냐의 여부)을
 명확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컨대 총독부에서
 취급한 간이 생명보험(이에는 한국인, 일본인, 제3국인이 모두 가입되
 어 있음) 또는 우편자금 등의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며 이러
 한 것은 일본정부의 처리나 한국정부의 처리가 00⁴⁷⁾가 맞아야 되는 성
 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재일한국인의 청구권의 처리 문제 즉
 소멸의 대상과 범위, 2차대전 종결의 시점 등이 이에 있어서 문제가 된
 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시이나 합의사항에 의하면 2차대전 후의 통
 상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소멸되지 않
 는 청구권의 범위(2차대전 종결의 시점 등이 문제가 됨)를 명확히 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밖에도 청구권의 내용이 각양각색
 이므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후일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 이수석 : 지금까지의 청구권
 문제 해결의 경위로 보면 각종의 청구권이 덩어리로 해결된 것으로 되
 었는데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결국 각각 국내의 문제
 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⁴⁸⁾

결국 증거주의를 고수함으로써 청구권 협상을 일괄타결로 이끈 일본 측은
 4·3 가조인 이후 이 청구권 협상으로 소멸되는 청구권의 목록을 분명히 하여
 이후 책임을 피해가려 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일괄타결된 만큼 그 분배
 는 국내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소멸되는 개인의 청구권이 어떠한

47) 필사본으로 수정된 부분으로 ‘표리’로 읽힘.

48)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1965. 4. 20)’ 「청구
 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1965. 4~6.」,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1468,
 프레임번호 25~26.

것인지, 청구권 자금의 분배 방식의 문제는 회의록의 논의 속에 자세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V. 개인청구권의 국내 처리과정

필자는 2005년 공개된 외교문서를 보다가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자료를 하나 발견하였다. 그것은 1965년 8~9월 곧 한일협정 체결 직후 작성된 민간보상법 초안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서들이 공개된 한일회담 문서 가운데 1952년도 황실재산관련 문서철 속에 끼어 있었다는 점이다. 공개된 외무부 문서들이 대단히 정연하게 목차까지 작성되어 정리되어 있는데 왜 이 문서들은 목차에도 적혀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8월 28일자와 9월 13일자로 작성된 대일본청구권관련재산에 관한 보상법(안)들은 재무부에 의해 마련된 안이다. 앞의 8월 28일자 문서는 작성자가 재무부이며 ‘(대외비) 민간인 보유 대일청구권관계 재산에 대한 보상법(안)’⁴⁹⁾이라는 문서명이 붙어 있다. 제2조에 정부가 보상의무를 지는 재산의 13개 조항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다. 9월 13일자 문서 역시 재무부가 작성자이며 문서명은 ‘대일본청구권관계 재산에 대한 보상지침법(안)’⁵⁰⁾이다. 이 문서는 앞의 문서 이후에 작성된 민간인 보상실행 기구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 보상의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청구권보상처리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49) ‘(대외비) 민간인 보유대일청구권관계 재산에 대한 보상법(안)(1965. 8. 28)’, 「청구권관계자료집 : 일본에 있는 구왕실재산목록(1951)」,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79, 프레임번호 546~554.

50) ‘(대외비) 대일본청구권관계재산에 대한 보상지침법(안)(1965. 9. 13)’, 「청구권관계자료집 : 일본에 있는 구왕실재산목록(1951)」,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79, 프레임번호 555~563.

이 두 문서의 작성자는 재무부이다. 재무부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64년부터 민간청구권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 보상법 초안은 무엇보다 당시 정부 내 재무부의 경제 관료들이 개인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대해 준비한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 협정을 통해서 한국 측 정부가 책임지게 되는 개인보상의 범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일본청구권관계재산에 대한 보상지침법(안)’의 초안에는 정부가 책임지는 개인보상의 항목을 다음 13개로 명시하고 있다.

1. 일본계통화 : 일본은행권, 일본정부지폐, 일본군표, 일본정부소액지폐
2. 일본계유가증권 : 일본국채, 일본저축권, 일본정부보증사채, 일본지방채, 일본일반사채, ○○보국채권, 일본일반주식
3. 피징용한인미수금
4. 재일본일본계금융기관에의 예금
5. 재일본일본계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또는 불입금
6. 해외외체저금 및 채권. 다만 해외 일본관리 지역으로부터 귀환한 자가 소지한 증서 및 통장에 의한 것에 한함.
7. 금융기관의 대출금. 다만 일본인 및 일본인이 전액출자한 법인에 대한 대출금에 한함.
8.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국에 소재하는 타은행에 대한 환대전.
9. 국내법인의 재일본재산 중 한국인 주주의 지분 해당 분.
10. 외자금고이자 미수금
11. 일본정부 국고금 및 일본계 은행대리점계정
12. 한국에 소재하였던 일본계은행의 청산계정
13. 한국인의 일본정부에 대한 恩級

위의 13개의 항목 가운데 재무부는 ‘3.피징용한인미수금’의 항목을 설정해 놓았다. 이 항목은 1~13번의 경제적인 채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강제동원자들에게 대한 피해보상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1949년 대한민국정부가 작성한 조서에서 ‘피동원한인 제미수금’은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되어 있었다. 사망자

위로금, 사망자 葬祭료, 유가족 위자료, 傷疾者 및 일반노무자 위자료, 부상자 傷疾 수당, 퇴직수당, 상여금, 현금·기타보관금, 미수채금, 가정 송금액, 징용 기간 연장수당액.

다음은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87호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상의 범위이다.

1. 구 군정법령 제57호 “일본은행권·대만은행권의 예입”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및 일본국정부의 보조화폐.
2.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일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 일본저축권, 일본국의 지방채,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와 일본국 정부가 보증하는 사채.
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하는 일본국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 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 온 해외송금. 다만 환거래결재분에 한하며 일본은행권 이외의 일본계 통화 및 일본군표는 제외.
5.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8월 14일까지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할 때에 일본국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6.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7.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 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
8.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국정부에 대한 다음의 채권. 우편저금·전체저금 치 우편 위체,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9.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수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⁵¹⁾

51)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관보』, 1971년 1월 19일자.

1965년의 초안과 1971년의 법안을 비교하면 보상항목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군표와 일반사채, 은급 등에 대한 보상이 빠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태평양동지회를 통해 귀환자들과 유족들이 그들의 권리로서 주장해 온 ‘피징용한인미수금’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로 한정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위의 재무부 초안이 구체적인 법안으로 변경되기까지 약 6년이 경과되었다는 것은 이 과정이 결코 원만하게 전개되지는 않았음을 말해 준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1971년 최종 공포된 법안이 박정희 정부가 처음에 제시했던 초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최종 공포된 법안은 정부의 초안보다 훨씬 많은 보상규정이 포함된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재무부의 안이 폐기되고 작성된 정부의 초안과 그것이 최종안으로 시행될 때까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았다.

먼저, 최초로 국회에 심의된 정부의 초안은 앞에서 살펴본 재무부의 초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약 1년 동안 숙고하여 마련된 박정희 정부의 보상법 초안은 1966년 3월 말에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초안의 이름은 모호하게도 「독립유공자 및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법」이었다. 독특하게도 독립유공자 보상법과 청구권 보상법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 초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부안의 제3항 ‘피징용한인미수금’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둘째, 해방 당시 1백원을 78원으로 저가 보상하고 대상도 13개 종목에서 7개 종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셋째,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항목이 새로 추가되었다. 1966년 3월 23일 이호범 재무부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신적 피해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독립유공자에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하고 보상비율의 산출근거는 ‘고등수학으로 해도 풀리지 않는 것으로 圓貨와 원貨를 맞매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보상의 축소 원인에 대해 특정인들에 대한 민간보상을 많이 하면 국민전체를 위해 사용될 청구권 자금의 비율이 적어진다고 답변했다.

이 초안에 대해 제기된 당시 한 신문에 게재된 비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보상비율의 문제이다. 법안에서는 ‘해방 전의 일본원화에 대한 보상

금의 평가는 보상금액 결정시의 일본원화와 원화와의 교환비율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 초안의 발표 당시 일본의 환율이 360원 대 1 달러이고 한국의 환율이 272원 대 1 달러였다. 따라서 교환비율이 360원 대 272원의 비율이 된다. 이는 해방 당시의 1백원을 78원으로 준다는 말이 된다. 1945년 8월 쌀 한 가마의 값이 12원이었는데 1965년 당시 3,300원이었다. 해방 당시 100원이 상당한 돈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일본국채, 화폐, 예금 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상받을 돈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둘째, 보상대상이 처음의 13개 항목에서 7개로 대폭 축소되었다. 여기에서 보상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발생하였다. 특히 선박 등의 현물보상, 징용자, 사망자 등에 대한 보상이 마지막 단계에서 모두 제외되어 버렸다. 국채, 저축권, 저축채권과 보국채권, 일본의 지방채, 일본에 본점을 둔 일본정부 투자기관이 발행한 사채와 일본정부가 보증한 사채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물을 제시해야 된다고 명기시켜 놓은 것이다. 예탁증이나 기탁증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제보상에 있어서도 확실한 증빙물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상당수가 보상을 못 받는 사태가 초래된다. 이러한 결과는 순수한 민간보상이 상당히 적어진 반면 정부 몫이 대부분(80%)인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청산위원회에 보상이 많이 나가 민간보상은 형식적인 걸치레로 되어 버린다. 정부는 청구권관리자금에 1966년도 보상액으로 책정된 2억4천만 원이 순수한 민간인에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돌아올 몫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2억 4천만 원의 대부분이 정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셋째, 독립유공자가 새삼스럽게 이제 민간보상과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법의 명칭도 「독립유공자 및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법」으로 하고 있는데 법체계 자체로 보더라도 이질적인 사항이고 오히려 정치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이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키 위해 독립유공자사업기금을 국무총리 밑에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원호처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있다. 독립유공자가 민간보상에 포함되어야 하느냐는 점도 문제이지만, 독립유공자의 한계를 어떻게 짓고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며 실제적인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하게 되느냐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재무부에서는 독립유공자의 한계를 원호법에 있는 대로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안을 정부와 공화당에서 검토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보상대상을 대폭 줄이고 독립유공자를 내세운 이면에는 상당한 정치적 배려에 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따져볼 때 정부는 민간보상에 지극히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점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까지 반영시키고 있다. 정부는 일정책 이상을 수년간 분할지급하려고 하고 ‘무이자 대일청구권보상권’이나 정부소유주식으로 대신 주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정부소유주식의 경우 보상지급기간을 단축할 때는 단축한 만큼 감할하여 지급키로 하고 있다.⁵²⁾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는 높았다. 민간청구권은 국민의 ‘血債’이며 공평한 방법으로 분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 신문은 정부는 민간청구권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냉정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고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8·15 광복 당시 쌀 한 가마를 오늘의 쌀 한 가마로 계산해 줄 것이며,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면 민간청구권의 최저 100배를 배상해 주고, 그것도 정부 재정상 부득이한 일이라면 한일협정에서 받은 무상 3억 달러만은 순 민간 보상자원으로 돌려 각종 청구권 대 무상 3억 달러의 안분 비율로써 보상할 것을 주장하였다.⁵³⁾

결국 이 법안은 많은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1967년 3월 9일 국회 재경위원회는 대일민간청구권보상의 준비 입법으로 7인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통과시키고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안」을 따로 만들어 보사위원회에 돌렸다. 전문 10조의 이 법안은 이 법에 규정한 대일민간청구권 대상자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채권을 신고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심사위원회가 이

52) 「뻔히 보이는 겉치레, 민간청구권보상법안의 허실」, 『조선일보』, 1966년 3월 24일자.

53) 「血債도 현실화하라, 민간청구권보상법안의 국회상정을 보고」, 『조선일보』, 1966년 4월 26일자.

를 심사하도록 규정했다.⁵⁴⁾ 이 법안은 보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45년 8월 15일 이전 일본국에 의해 징용 징병되어 사망한 자 ② 군령 제57호(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예입)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일본은행권 및 일본정부의 소액지폐 ③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제시되거나 또는 등록된 다음의 일본유가증권, 다만 利票는 제외 ⑦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 및 등록국채 ④ 일본저축권 ④ 일본저축채권과 보국채권 ④ 일본의 지방채 ④ 일본에 본점(본사의 주사무소)을 둔 일본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채와 일본정부가 보증한 사채 ④ 일본국에 본점을 두고 북한 및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단 북한소재 일본금융기관 예입본은 이미 신고되었거나 이 법 시행 전 한국에 주소를 둔 자의 명의분에 한함. ⑤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8월 14일까지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한 국민이 귀속 시 일본기관에 예탁한 예탁금 ⑥ 한국 또는 일본국에서 일본에 본점을 둔 일본생명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금과 받게 될 보험료 ⑦ 한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재일본지점 재산(청산되었을 경우는 잔여재산)에 대한 한국인 주주 기타 출자자에 대한 지분 ⑧ 일본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정부에 대한 다음의 채권 ⑦ 우편저금 및 爲替저금 ④ 간이생명보험과 우편연금의 납입금

재경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법사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의가 끝나기 전에 6대 국회의 회기가 끝나 자동적으로 법안이 폐기되었다. 그 다음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민간청구권 문제는 그대로 방치되었다. 그동안 대일민간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방침을 문의했지만 정부관계자들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어 어떻게 된지 알 수 없다고만 답변했다.⁵⁵⁾

민간청구권 법안이 다시 제출된 것은 1968년 5월에 되어서였다. 신민당의

54) 「7월부터 접수, '민간청구권신고법안' 재경위 통과」, 『조선일보』, 1967년 3월 9일자.

55) 「대일민간청구권 보상, 2년째 방치상태」, 『조선일보』, 1967년 12월 19일자.

정상구 등의 의원 13명은 5월 24일 대일청구권자금 중 민간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일협정에 의한 무상자금 3억 달러 중에서 재원을 염출하여 이를 보상토록 하는 「대일민간청구권특별보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 17조로 된 이 법안은 보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무부 안에 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8명의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대일민간청구권보상처리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채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안에 이 위원회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토록 했다. 보상비율은 1945년 8월 15일 당시와 보상금 결정 당시의 물가 지수 격차에 따르도록 했다. 보상대상자의 재산권으로는 ① 일본은행권 ② 일본정부가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 ③ 구군정법에 의해 예치된 일화 ④ 일본정부 밑에서 각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과 振替貯金 ⑤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할 때 일본정부기관에 기탁한 재산 ⑥ 일본정부 밑에서 불입한 각종 보험금 ⑦ 일본국에 예입한 연금 및 은급 ⑧ 일본정부 밑에서 이루어진 각종 송금 등을 예시하였다.⁵⁶⁾

이와 같이 정부의 보상법이 지체되는 가운데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개인이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군정법령 57호(1946년 3월 5일자)에 따라 당시 조선은행에 예입했던 일화 15만여 엔에 대한 보상청구소송이 부산에서 제기되었다. 이 소송이 제기되자 한 신문의 사설에는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한 지 만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기준과 절차가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당국의 무성의”를 드러낸 것이며 “일본에 대해서는 3억 달러의 청구권의 행사하고 있으면서 그 구체적인 보상대상 중의 하나인 민간인보상에 관해 아직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背任”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게 되면 정부의 국민에 대한 불성실과 무책임을 재판기록으로써 입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 기사는 6대 국회에서 관계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교환비율을 공정히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둘째, 징용과 징병자로서 사망한 자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56)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안을 제출」, 『조선일보』, 1968년 5월 25일자.

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징용·징병의 확인의 곤란함과 자금의 과다한 수요를 들어 이 문제를 끌아뭇개려 들고 있지만, 적어도 확인이 되는 한에서는 보상을 해 주는 성의를 표시해야 할 것이며, 한일문제가 국내문제로서 미결 속에 남아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⁵⁷⁾

해방 직후 전개된 피해자들의 보상운동은 1960년대 한일교섭이 진전되면서 다시 조용히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2년 ‘김종필·오히라 메모’로 청구권 문제의 골격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피해자들의 보상요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재산청구권을 가진 피해자들은 청구위원회로 문의편지를 보냈으며 원폭 피해자들의 보상운동도 전개되었다.⁵⁸⁾

1969년 10월 정부는 민간청구권 보상의 전단계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황중률 재무부장관은 이 법이 통과된 다음 1970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청구대상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여 보상액을 산출하여 적절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대상을 미군정법령 제57호에 따라 예입한 일본은행권, 일본정부가 발행 또는 보증한 유가증권, 일본에 소재한 일본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일본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일본생명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재일본지점 재산의 한국인 주주의 지분, 일본정부에 납입한 우편저금보험·연금, 군인 군속 노무자 등 피징용 사망자로 했다. 둘째, 신고기간은 6개월로 하고 신고하지 않은 청구권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셋째,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처리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여 신고접수, 계획수립, 증거조사, 적부심사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넷째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체형과 벌금형을 부과했다. 황 장관은 대일민간청구권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임의단체인 대일민간인청구권협의회的主張으로 미루어 20만 명에 3천 달러 이내로 보고 있으며 해방 후의 환율과 물가변동을 등 어떤 방법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느냐는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57)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을 빨리 제정하라」, 『조선일보』, 1968년 12월 28일자.

58) 오오타 오사무, 2000, 앞의 글, 212~215쪽.

정하겠다고 밝혔다.⁵⁹⁾

1970년 초 재무부는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를 6월경부터 접수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 신고분에 대한 첫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⁶⁰⁾ 그러나 청구권신고법안은 1970년 말에야 제정되었으며, 1971년 1월 19일자로 공포되었다.⁶¹⁾ 이 법안은 제2조에서 신고대상의 범위를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 이하 동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 포함, 이하 동일)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및 일본국 정부의 보조화폐’, ‘유가증권’, ‘일본국 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보험금’, ‘채권’ 등과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가 그 신고 대상이었다.⁶²⁾

신고대상에서 군표와 통화, 공법인 혹은 정부보증사채 이외의 사채는 제외되었다. 또한 상해자는 제외되고 사망자만 보상대상이 되었으며, 사망자의 경우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만 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이 법안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증거주의였다. 제1조에 규정하고 있듯이 이 법안은 ‘대일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즉, 피해자가 가진 자료에 입각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결국 이 법에 의하면, ‘사망통지서’나 ‘전사통지서’ 등 증거서류가 없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8·15 이후에 사망한 피해자도 제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 원폭피해자, 군대 위안부, 조선인 군인·군속, 재일한국인·조선인은 제외되었다.⁶³⁾

청구권 신고는 1971년 5월 21일부터 시작하여 1972년 3월 20일까지 받는

59) 「민간청구권 보상 결정」, 『조선일보』, 1969년 10월 1일자.

60) 「대일 민간청구권 6월쯤 신고 접수」, 『조선일보』, 1970년 2월 10일자.

61) 「법률 제2,287호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관보』, 1971년 1월 19일자.

62) 오오타 오사무, 2000, 앞의 글, 215~216쪽.

63) 오오타 오사무, 2000, 앞의 글, 2217쪽.

것으로 보도되었다.⁶⁴⁾ 이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사무는 5월 21일부터 개시되었다. 서울에는 종로구 내자동에 대일민간청구권 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았으며 지방은 재무부가 지정한 30개 세무서에서 각각 신고업무를 대행하였다.⁶⁵⁾ 약 4개월이 지나고 9월이 되자 신고건수가 거의 없는 소강상태에 이르렀다. 이때 보도된 집계에 의하면 총 1만 6,678건에 7,373만 6천 엔의 재산권이 접수되었으며, 징병·징용 등으로 사망한 인원신고가 1,120여 명이였다.⁶⁶⁾ 신고가 거의 접수되었다는 예측과 달리 그 이후에도 뒤늦은 신고가 많이 접수되었다. 신고 개시 6개월 시점인 11월 25일 현재 신고액은 총 3만 4,615건에, 금액은 1억 1,531만 2,000엔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2개월 만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신고가 폭주한 것으로 보인다.⁶⁷⁾

그러나 신고 접수가 중반을 넘었지만 이때까지도 정부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청구권자금 제7차 연도 실행계획 동의원에 대한 정책질의 과정에서 신민당 의원들은 1972년도 청구권자금 사용계획이나 예산에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신고법만 있을 뿐 보상기준과 비율 및 보상시기를 규정하는 보상법 등을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것으로 보아 이 당시까지도 박정희 정부의 보상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⁶⁸⁾

드디어 1972년 3월 20일 신고업무가 마감되었다. 약 8만 건에 9억여 엔, 사망자 6,500여 명 선으로 계측되었다. 그런데 마감 날에는 신고인원이 폭주하였다. 서울사무국은 평소의 4, 5배가 넘는 무려 1,700여 명의 신고자가 몰려들어 혼잡을 이루었다고 보도되었다. 이날 사무국과 전국신고지정세무서에서는 접수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늦추고 구비서류의 검토 없이 신고서의 기재

64)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 중순부터 업무개시」, 『조선일보』, 1971년 4월 1일자.

65) 「대일민간청구권 오늘부터 신고 받아」, 『조선일보』, 1971년 5월 21일자.

66) 「모두 1만 6,678건, 대일민간청구권 접수」, 『조선일보』, 1971년 9월 16일자.

67) 「34,615건에 1억 1천만 엔,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조선일보』, 1971년 11월 28일자.

68) 「보상법 제정 요구, 경과위, 청구권자금 사용 재조정」, 『조선일보』, 1971년 11월 23일자.

만으로 반접수를 받았다고 보도되었다.⁶⁹⁾ 이로 미루어볼 때 이 신고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접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증거불충분 및 자료 미비로 신고거부 내지 보상제외된 것이 5,750건이었다.⁷⁰⁾

신고마감 이후에도 보상법의 제정은 2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상법은 1974년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피징용 사망자 보상금 30만원, 재산보상비율 1엔 대 30원으로 확정되었다. 피징용자 중의 사망자분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일시에 전액 지불하고 재산보상은 30만 원까지는 내년에 지불하고 그 이상은 1976년부터 1978년까지 3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채권(연리 5%)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⁷¹⁾ 1974년 12월 21일자로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⁷²⁾ 그리고 1976년 현재 보상이 결정된 것은 재산관계 93,685건(66억 4100만원), 피징용 사망자 9,546건(28억 6100만원), 합계 103,221건(95억 200만원)이었다.⁷³⁾ 민간에 대한 총 보상금은 무상원조 3억 달러 중 약 5.4%에 불과한 것이었다.

VI. 맺음말

그동안 청구권 문제에 대한 시각은 한일당국자 간의 문제에 국한해서 협상의 성과나 한계에 대해서 논해 왔다. 그러나 회담에서 표방된 국가나 민족의 이익

69) 「8만여 건 9억 엔에 사망자 6천 5백 명 추산, 대일김낙청구권 신고 어제 마감」, 『조선일보』, 1972년 3월 21일자.

70) 경제기획원, 1976, 『청구권자금백서』, 59쪽.

71) 「보상비 30대 1 확정, 대일민간청구권 내년 7월 지급」, 『조선일보』, 1974년 9월 27일자.

72) 「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 『관보』, 1974년 12월 21일자.

73) 경제기획원, 1976, 앞의 책, 58쪽.

이 식민지시기의 실질적 피해자 대중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국익 중심의 논의는 대단히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곧 당시 한국이 청구권 협상에서 보다 많은 배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사 청산이 더 많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말해 준다. 청구권 문제에서 일제로부터의 배상을 어떤 명목으로 어떤 액수로 받는가도 중요하지만, 청구자금의 국내 처리과정 역시 청구권 협상의 총체적 성격을 밝히는 데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일회담에서 제기되는 개인청구권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밝히고 대일민사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정책의 변화과정을 실증적으로 추적한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2005년도에 공개된 한국정부의 외교문서가 활용되었다. 그리고 1948년 민간 주도의 재산권 청구 운동이 전개된 시점부터 1974년 12월 21일 한국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법이 공포되기까지 국내외 신문자료들을 발굴하여 민간청구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국내에서 처리되어 가는 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범위는 1974년도 보상법의 공포까지이며, 그 이후 피해자들의 소송운동은 다루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을 규명하였다. 첫째, 청구권 자금의 역사적 성격이다. 한일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청구권 자금은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서명국에서 배제됨으로써 전쟁배상에서 민간청구권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한일회담에서 한국정부의 청구권 협상은 민간의 재산권 협상을 대행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정부와 피해자의 관계이다. 한일회담이 개시되기 이전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청구권은 전쟁배상과 별도의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관공서를 활용하여 피해조사를 사회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보상의 물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한일회담의 시작은 한편으로 이들의 대일청구 노력을 국가가 주도하여 해결해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청구권 협상은 피해자들의 참여 없이 진행됨으로써 한일회담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셋째, 민사청구권의

처리를 둘러싼 정부 내의 입장 차이이다. 재무부와 외무부 등 정부 내의 관료들은 대일청구권이 민사적 재산권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1964년 한일회담이 성사되는 단계에 가서 개인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와 공화당은 개인보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금의 전적인 국가적 활용을 기획하였다.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개인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는 일본 측의 태도에 대해 개인보상은 국내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본 측의 개입을 막고 자금 배분에 대한 전권을 확보하였다. 넷째, 국내 보상법의 제정과정에서 정부와 피해자 및 사회여론의 대립이다. 정부는 피징용자 피해보상을 삭제하고 최저가의 보상액을 제시함으로써 청구권 자금의 국가적 전용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은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여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정부의 태도는 보상법의 지연과 최저 보상이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일회담 타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청구자금을 받고도 개인보상을 지연하자 직접 소송으로 맞섰다. 이들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는 정부가 최소한의 액수이지만 개인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강제력으로 작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포된 것이 1974년 보상법이었다. 대단히 미약하다고 알려진 이 보상법도 사실은 사회적 압력의 일정한 결과물로서 정부의 초안보다는 진전된 것이었다.

한일회담을 통해 받은 청구권 자금은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은 비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의 보험금이나 예치금을 강제 압수하여 복지예산으로 편성한다면 그것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인가? 청구권 자금의 사용처가 어떠했는지는 차후의 문제이며 정부가 국익의 이름으로 개인 청구권과 재산권을 가로챈 것은 사유재산 침해의 범죄였다는 사실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날 누구도 국가경제를 위해 개인권리가 희생되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회담 청구권 협상의 성과와 한계 역시 비단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경제 역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 목적에 복무해야 될 가치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본회의 회의록 및 1-3차 한일회담 결렬경위』,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95.
-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1964』,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762.
- 『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1 1965』,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1467.
- 『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1965. 4-6』,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1468.
- 『청구권관계자료집 : 일본에 있는 구왕실재산목록(1951)』, 한국정부 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79.
- 『강원일보』, 1949. 5. 29.
- 『경향신문』, 1948. 8. 19.
- 『국제신문』, 1948. 9. 14.
- 『민주중보』, 1949. 5. 20.
- 『연합신문』, 1949. 3. 24.
- 『영남일보』, 1949. 5. 18, 5. 21.
- 『조선일보』, 1948. 1. 27, 9. 14, 1965. 1. 20, 1. 21, 1966. 3. 24, 4. 26, 1967. 3. 9, 12, 19, 1968. 5. 25, 12. 28, 1969. 10. 1, 1970. 2. 10, 12. 26, 1971. 4. 1, 5. 21, 9. 16, 11. 23, 11. 28, 1972. 3. 21, 1974. 9. 27.
- 『朝日新聞』, 1961. 6. 2.
- 『관보』, 1971. 1. 19, 1974. 12. 21.
- 오재희 전 주일대사 구술 (2007년 10월 30일, 11월 5일. 한국외교협회).
- 국민대일본학연구소, 『정부공개 한일회담자료집』 1~12권.
- 국민대일본학연구소,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1~5권.
-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5년 7월 13일, 『보도자료(일제강제동원 1차 피해 신고마감)』.
- 경제기획원, 1976, 『청구권자금백서』.
- 김민철, 2005, 「한일협정문서 공개와 피해자 보상문제」, 『내일을 여는 역사』 제20호.
- 김창록, 2005,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공개의 의미」 『역사비평』 2005년 봄.
- 다카스기 소우지, 1998, 『검증 한일회담』, 청수서원.
- 대한민국정부, 1965, 『한일회담백서』.
- 박진희, 2006, 「제1공화국의 對日政策과 韓日會談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병직 외, 2005,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오오타 오사무, 2000, 「韓日 請求權交渉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외무부, 1949, 『대일배상조서』.

외무부 정무국, 1955, 『韓日會談略記』.

유영섭, 1993, 『維民 洪璉基 傳記』, 중앙일보사.

유진오, 1993, 『한일회담 - 제1차 회담을 회고하면서』, 외교안보연구원.

이연식, 1998, 「解放 直後 해외동포의 귀환과 미군정의 정책」,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혜숙, 1992,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홍인숙, 1995, 「한일회담에 대한 미·일의 구도와 대응」, 『역사비평』 30호.

[ABSTRACT]

Individual right mobilized for “national interests”

: Individual compensation and Korea-Japan Treaty

Kim, Youngmi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laims against Japan in Korea-Japan Treaty. In particular it explores the crack among war victims (civil claimer), president Park Jung-hi and the ruling party (The Republican Party), some bureaucrats in Korean government. The first group who were war victims and their surviving families mobilized for battles and works for the Pacific War claimed damages and arrearages against Japanese government before Korea-Japan talks starting in 1951, they presented two petitions for their claim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required Korean government to solve their claim against Japan without delay. Meanwhile Korea didn't obtain the statues of a member of the Allied forces in the peace talks arranged for the conclus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t meant that Korea couldn't require the reparation against Japan and that the korean claims against Japan were civil affairs. So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Japan talks was to act for the first group. There were two different views about individual compensation in Park Jung-hi regime. Some bureaucrats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Korean government insisted on doing individual compensation immediately and preparing the draft for that. It means that there was a group of rational bureaucrats in

Park regime. But president Park and the ruling party (The Republican Party) considered using the claim-fund from Japan for national interests without individual compensation. After all, the draft for compensation which the Ministry of Finance prepared was changed into new draft that didn't contain compensation articles for war victims. According to the new draft, the exchange rate between yen and won was too low. To block the resistance, Park regime tried to delay presenting the bill of compensation. It was ten years after the Korean government had taken the claim fund from Japanese government that the law of compensation was promulgated.

keywords

claims against Japan, individual compensation, Korea-Japan treaty

일본 국회의사록을 통해서 본 한일국교 정상화 교섭과정에 관한 연구

-교섭의제의 전환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안소영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I. 머리말

본 연구는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이하 한일회담)을 둘러싼 일본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전개된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당시의 의사록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한일회담 초기에서부터 역청구권 주장을 철회한 기시[岸] 내각하의 제4차 회답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구권 문제의 위상이 어떻게 설정되고, 또한 어떻게 변동되어 가며, 그 배경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일본 측 내부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그 과정에서 드러난 청구권 문제의 위상변동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일회담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교섭전략 및 외교자세는 결코 정형화된 하나의 틀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선, 원래 식민지 문제 및 전후처리라는 외교적 과제가 일본정부에 던져져 있었다고는 해도, 1952년의 '미국무성 각서'(4월 29일)¹⁾가 융변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한일국교정

1) 「대일강화조약 제4조의 해석에 관하여 미국무성이 주미 양유찬 대사에게 보내 온 공

상화라는 외교적 중요사안이 애초에 일본정부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내발적으로 제기되었다기보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추동되었다는 사실에 규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초기교섭과정에서의 강경한 ‘역청구권’ 주장 및 ‘구보타[久保田貫一郎] 발언’의 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정부가 한편으로는 미국정부의 독촉을 받아들여 한국정부와 외교교섭을 개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교섭상대국의 정치적 입각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한 비타협적 태도를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은 당면한 한일회담의 성사를 가장 시급한 외교적 목표로 두고 있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후일의 이른바 비준국회에서 그러한 외교자세가 ‘교섭기술상의 고려’²⁾에 의한 전략적 판단에 의거한 것이라고 설명되어졌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바로 1957년 기시 내각의 등장을 전후하여, 그때까지 한일회담의 추진에 소극적 혹은 관망적이던 일본정부가 역청구권을 철회하고 ‘구보타 발언’을 취소하는 등의 ‘양보정책’으로 국면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회담성사에 대한 의지는 높아져 가는데, 그것이 회담의제 설정에 있어서는 ‘청구권’ 해결방식의 의제가 퇴색되면서 ‘경제협력’ 방식이라는 신 의제로의 논의축의 전환 등을 동반하고 있었다. 더욱이 일본정부에 의한 역청구권 주장의 철회가 몰고 올 일본 국내적 역풍을 고려할 때, 회담 당사자로서의 정부와 국민적 이해대변을 앞세우는 국회의원, 여야 정당간의 갈등 및 대립, 조정 등의 정치과정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는 14년에 걸친 한일회담의 전 과정을 ‘청구권 방식’의 해결을 중심에 둔 전기와 ‘경제협력 방식’의 해결을 중심에 둔 후기로 나누는 전환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³⁾ 바로 이러한 점들로 해서 회담 초

한 및 성명서(영문)』, 1957. 4. 29, 『大韓民國外交年表(附 主要文獻) 1948~1961』(외무부, 1962), 191~193쪽.

2) 1965년 11월 25일 참의원 일한특별위원회에서의 후지사키 마사토[藤崎萬里] 외무성 조약국장의 발언

3) 김종필-오히라 메모에서 경제협력 방식으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공식 합의

기부터 기시 내각하의 제4차 회담(1958~1960년)에 이르는 기간의 일본국회에서 논의에 대한 분석은 교섭의제의 전환에 내포된 일본 측 교섭전략의 배경 및 그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심의에서의 발언 내용 및 사실, 사건의 적실성, 구체성의 확보를 위해 관련 인물의 회고록 자료는 공개된 자리에서의 논의의 행간을 읽어내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래의 연구 가운데에서는, 한일회담의 개최시기 동안 일본의 각 내각별로 표출된 일본의 대한정책의 실태와 그 성격에 초점을 맞춘 이원덕의 연구,⁴⁾ 일본 국내의 정당 간 외교노선상의 차이와 그것에 따른 한일조약에 대한 찬반론을 테마로 한 히로세 데이조의 연구,⁵⁾ 일본 정계의 제2공화국관을 주제로 한 다카사키 소오지의 연구⁶⁾ 등이 한일회담 교섭의제의 전환에 내포된 일본 측 교섭전략의 배경 및 그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많은 시사를 던진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본 국회에서의 논의를 주요대상으로 하여 청구권 문제의 변동의 추이 및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 분석된 본격적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⁷⁾ 더욱이 한국에서의 연구의 경우에도, 일본의 국내정치 과정에서 한일회

하였다는 공표에 근거하여 청구권 문제 해결 방식의 전환이 이 메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실은 이 공표를 가능하게 한 사전 접촉 및 공감대가 이미 1957년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이원덕, 1996a,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 일본의 전후처리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원덕, 1996b, 『한일회담과 일본의 전후처리외교』,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케다 정권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金斗昇, 2003, 『池田政權の對外政策と日韓交渉(1960~1964) - 内政外交「政治經濟一體路線」の視点から -』, 立教大學大學院法學研究科博士學位論文이 있다.

5) 廣瀬貞三, 1995, 「한일회담에 임했던 일본의 한국관」, 『근현대사강좌』 6호.

6) 高崎宗司, 1999, 「일본정계의 제2공화국관」, 『한국사학보』 7호, 고려사학회.

7) 청구권 문제와 관련하여, 종래의 연구에서 한국 측의 청구권 주장이 일본 측의 경제협력자금 방식으로 전환되는 정치적 타결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 의한 경제협력 방식으로서의 전환의 정치적 의미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여전히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吉澤文壽, 2005, 「植民地支配責任「忘却」の論理 - 日韓國交正常化交渉を題材として」, 同時代史學會, 『朝鮮半島と日本の同時代史』, 日本經濟評論社, 33쪽 참조.

답이 어떻게 논의되고 그것이 한일회담에 임하는 일본정부의 교섭전략과 방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분석한 논문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⁸⁾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의 교섭 그 자체의 상호작용은 물론이고, 국제정세와 일본의 국내정치적 조건, 정치과정에 의해서도 부단히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한일회담과 관련된 국회의 심의과정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계기와 양상, 그리고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⁹⁾ 특히 요시다 [吉田茂] 정권기에 해당하는 제1차에서 제3차 회담 기간의 일본 측의 역청구권 주장, 기시 정권 출범 후의 제4차 회담에서의 역청구권의 철회를 둘러싼 일본정부의 교섭전략 및 외교자세의 변화가 의미하는 외교의 다이너미즘에 대해 일본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논의를 통해 그 일단을 부각시켜보는 데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8) 논문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기본관계조약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설명과 국회에서의 논의를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 2005, 「일한기본관계조약을 둘러싼 논의」,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있다.

9) 국회가 구체적인 대외정책에 관련해서 그 의사를 가장 명확하게 표시할 기회는 조약 체결 승인여부와 관련해서 주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조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는 이미 상대국 간에 최종적 합의가 성립되고 그 내용이 확정된 후이므로 국회로서는 조약의 체결행위를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결정밖에 내릴 수가 없고 내용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대외정책결정구조의 특징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조약의 심의를 통해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그 행동을 추궁하며 또는 거기에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심의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일국교정상화조약이야말로 한일회담이 개최되는 전 과정에 걸쳐 일본의 국회에서 여야의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의회정치가 혼란에 빠질 정도로 중요한 심의과정을 거친 전형적인 사례였다. 木村修三, 1977, 「日本の對外政策決定と國會」, 細谷千博・綿貫讓治 編, 『對外政策決定過程の日米比較』, 東京大學出版會, 134쪽.

II. 한일회담 이전의 ‘청구권’ 문제 인식

1951년 10월에 시작된 한일회담의 제 현안 가운데서 청구권 문제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 측으로서는 한일관계의 재개에 있어서 청구권 문제는 근본적이고 제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의제였다.

한국정부는 1949년 2월, 일찌감치 대일 강화준비의 일환으로 기획처 기획국 산하에 ‘대일배상청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배상청구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국제적 기준 사이에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정부는 당시에 정리된 「대일배상요구조서」의 서문에서 최초의 대일청구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일배상청구의 기본정신은 “일본을 징벌하기 위한 보복적 부과가 아니라, 희생과 회복을 위한 공정한 권리의 이성적 요구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과거 36년간의 지배를 비합법적 통치로 각인하는 동시에 그간에 피해 입은 방대하고도 무한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일배상요구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차제에 이에 대해서는 전연 불문에 부치는 바이다. 다만,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기간 중에 한하여 직접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인적 물적 피해만을 조사하여 그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히고 있다.¹⁰⁾

10) 대한민국 외무부 정무국, 1954, 『대일배상요구조서』, 2~3쪽. 이 조서는 1949년 9월 1일 현재 한국정부가 38도선 이남 지역에 국한하여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1954년에 재발간된 것이다. 전체 내용은 제1부 현물반환요구(금, 은, 미술품, 골동품, 선박 등 특수물품의 반환요구), 제2부 확정채권(이는 일본의 패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한 기성 채권채무관계이며 따라서 배상문제와는 본질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기간 동안에 직접적으로 전쟁에 기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제4부는 일본통치 기간 동안의 한국의 자원, 노동력, 생산물에 대한 저가수탈의 일단의 조사를 토대로 한 최소한의 배상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의 현물을 제외한 요구총액이 모두 314억 엔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

이상의 서문 내용에 따르면,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불법적·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식민통치의 전 기간에 걸친 물질적·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국 자격으로 강화회의의 서명국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하에, 1937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그 기간을 한정하여,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 즉 '전쟁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요구라는, 해방 직후의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지만, 대일 배상문제에 관한 한, 일찍이 정부수립 직후부터 대일강화에 대비한 사전 조사 작업과 정책 입안을 주도해 온 실무관료들의 현실적인 접근태도의 소산이었다.¹¹⁾ 이들은 1951년 9월, 패전국 일본과 연합국들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교전당사자인 전승국에게 적용되는 전쟁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전전(戰前)의 일본의 식민지 지역에 대한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보상'의 실시를 규정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¹²⁾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이러한 전쟁배상 규정도 어디까지나 연합국의 '배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은 '강화회의'의 서명국에서 제외됨

는 부분은 제4부에서 '일본통치기간'이라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실제기간을 보면 전쟁기간에 한정되어 있다. 그 이유가 조사 대상 자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표면상의 명기와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전쟁기간에 한정해서 사고하고 있었던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기는 하지만 드물게 '일본통치기간'이 명기되어 있다는 점은 해석의 차이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이 분명하다.

- 11)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부터 제2공화국 시기 제5차 한일회담의 수석대표로 교섭 실무를 주도한 유진오가 그 대표적 인물이다. 그의 회고록은 대일교섭, 특히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현실적인 국익추구의 교섭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유진오, 1993, 『한일회담-제1차 한일회담을 회고하면서』,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 1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성격상,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한 조약이었을 뿐, 일본의 식민지 지배지역의 피해를 원상회복시키는 조약은 아니었다. 이처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서구 대국들의 냉전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주도되고 대일전(對日戰)에 관련된 아시아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荒敬, 1990, 『サンフランシスコ講話』, 歴史學研究會 編, 『日本同時代史』 2, 青木書店.

으로써 전승국이 패전국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 즉 배상 청구권도 갖지 못하였다. 그 대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조 (a)항과 제4조 (a)항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 '전쟁배상'적 성격의 청구와는 다른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후 한일 간의 청구권 교섭은 바로 이 조항들에 명시된 국제적 기준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평화조약의 '청구권' 문제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에서는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權原),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평화조약 비준국회에서의 답변에 나타난 일본정부의 인식을 보면, 제2조 (a)항 규정은 영토에 대한 권리나 권원을 포기한다는 뜻이지, 민간인(사유) 재산은 물론 일본의 국·공유 재산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제4조 (a)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 장차 수립될 정부와의 양국 간 협정에 의해 해결될 문제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¹³⁾ 조선의 독립에 대한 승인이 곧바로 재한 일본(인) 재산의 청구를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해석의 근거를 조약 제4조 (a)항과 관련하여 찾고 있다.

강화조약 제4조 (a)항은, '일본국 또는 그 국민의 재산으로 제2조에서 들고 있는 지역에 있는 것, 그리고 일본국가 및 그 국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으로서, 현재 이들 지역의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 및 그 지역 주민(법인을 포함)에 대한 것의 처리, 그리고 일본국에 있어서의 이들 당국 및 주민의 청구권(채권 포함)의 처리는, 일본국과 이들 당국과의 사이의 특별 협정(特別取極: special arrangements)의 주제로 삼는다'는 규정으로, 한국 정부 및 그 주민과 일본정부 및 그 주민에게 동일하게 청구권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한국에 있는 귀속재산에 대해 한일 양국이 직접 양국 간 협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일

13) 第12會 臨時國會 衆議院 「平和條約及び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會會議錄」, 1951, 10, 20.

본정부가 재한(在韓) 일본인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강화조약 제4조 (a)항의 ‘청구권’ 규정이 한일 양국에게 공히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한국 독립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와 연동하고 있다. 강화조약 비준국회에서 일본정부는, 강화조약 제4조 (a)항의 규정은 한국이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된 지역, 즉 연합국의 대일 전후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의 일환으로 일본이 그 ‘주권을 포기’하여 ‘독립을 승인’함으로써 분리된 지역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⁴⁾ 그러므로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도 분리 독립에 의해 발생된 재산 및 채권의 처리, 반환에 불과한 문제로 간주되는 것이다.

당시 한일회담에 대비하여 대일청구를 위한 실무작업을 하고 있던 유진오가 “한국 내 전 재산의 85% 내지 90%가 된다 하던 귀속재산의 처리를 일본과 협의하여 결정하다니 이는 한국의 독립을 일본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 아닌가”라고 개탄한 것은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청구권 규정이 독립문제에 관한 인식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정서와 얼마나 유리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¹⁵⁾

일본 측의 한일회담 교섭전략의 기초, 즉 적어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를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규정할 근거는 없으며, 한일 간의 재산 문제의 처리도 바로 그러한 인식의 전제 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일본정부의 정책기조가 여기에서 이미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정부 당국자의 설명처럼, 한일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일본은 한국의 대일청구를 ‘식민지 피해보상’이나 ‘전쟁배상적인 요구’가 아니라, 단지 ‘재산청구권적 요구’로서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한국 측의 청구항목에 대해 법적근거가 있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것에 한해서만 지불을 인정

14) 앞 중의원 회의록, 1951. 10. 20.

15) 유진오, 1983. 8. 30, 「남기고 싶은 이야기」, 『중앙일보』.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교섭에 응해 왔던 것이다.¹⁶⁾ 이렇게 볼 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제4조 (a)항의 청구권 규정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치가들의 주된 관심은 이러한 사실 즉, 일본의 식민지 지배 문제의 합법성 여부에 있지 않았다. 일본의 강화조약 비준국회 심의기록을 보면, 강화조약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으로 인해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합법성을 부여해 준 셈이 되었다는 사실보다도, 오히려 제4조에 추가된 (b)항의 규정으로 인해 재한(在韓) 일본(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일방적으로 포기된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더욱 중시하였으며, 국회심의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도 여야를 막론하고 바로 이 점에 집중되고 있었다.

강화조약 비준국회에서, 조선이나 대만 등지에서 돌아온 일본인 양자의 외지 재산의 소속에 관한 나가소네 야스히로[中會根康弘]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니시무라 구마오[西村熊雄] 외무성 조약국장의 답변은 그 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별협정의 주제가 된다’는 것은 최종적 처분을 양 당사국 정부 간의 협정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며, 제2조에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영토적 주권, 권원(權原)이며 재산권은 아니라고 한 그의 답변은 청구권 문제와 관련하여 강화조약 제4조의 해석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¹⁷⁾

원래 한국은 정부 수립 후에 연합국의 자격으로 대일강화조약에 서명하고 강화조약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일 ‘배상권’을 획득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영국 및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애초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다만, 대일 강화조약의 서명국 즉, ‘배상권’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보상적 조치로, 미국의 델레스 국무장관은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에게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16) 谷田正躬・辰巳信夫・武智敏夫 編, 1966,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説』, 大藏省印刷局, 60쪽.

17) 第12會 臨時國會 衆議院 「平和條約及び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會會議錄」, 1951, 10, 24.

평화조약에 적절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 결과로 강화조약 제4조에 (b)항이 추가되었던 것이다.¹⁸⁾

이 추가조치를 담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 (b)항은 “일본국은…… 미 군정부에 의해 또는 그 지령에 의해 실시된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 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일본정부가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에 의한 일본인 재산의 처리 즉, 미군정 법령 33호에 의해 귀속된 일본인 재산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미군정과의 협정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게 이관한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조항의 삽입으로 한국은 한국 내 귀속재산의 소유권의 이양이 확인되었으며, 일본이 이 조약의 체결을 승인한 것은 곧 일본이 재한(在韓) 일본(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의 견해는 달랐다. 일본정부는 강화조약 제4조 (b)항의 일본인의 재한 재산 청구권 포기는 결코 일본정부의 본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강화조약체결 비준 심의국회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후일 한일회담의 협상대표로도 참여하게 되는 니시무라(西村熊雄) 조약국장은 강화조약 제4조 (b)항이 “한국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 삽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정부로서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답변하였고,¹⁹⁾ 이 조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의 최종 단계에 갑작스럽게 포함된 데 대한 당혹감과 부당함에 대한 불만을 그는 감추지 않았다. 한일간의 청구권 교섭이 개시될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일본의 입장이 제약될 수 있음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미군정에 의한 일본인 재산의 점수의 성격에 관해서도, 연합국이 일본의 재외재산을 배상에 충당하기 위해 몰수한다는 것을 공식문서에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몰수가 아니라, 다만 연합국이 배상을 대신하여 일본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법리(法理)에 의거하여 사실상 일본인 재산의 한국정부로의 귀속의 부당성마저 제기하고 있

18) 김동조, 1986, 『회상 30년, 한일회담』, 중앙일보사, 12~14쪽.

19) 앞의 중의원 회의록, 1951. 10. 20.

다.²⁰⁾ 따라서 한국과의 청구권 문제는 “연합국이 아닌, 그저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나라”인 한국에 대해 제4조 (b)항에서와 같이 “전승국 취급의 대우를 하는 것은 국제법상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 니시무라 조약국장은 “한국은 연합국이 아니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금후 양국 간의 재산처리는 이탈리아 평화조약의 제14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논의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²¹⁾

제4조 (b)항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이 같은 인식은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여당인 자민당보다 오히려 야당의원들이 이 조항의 ‘부당성’에 대해 정부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으며, 한일국교정상화 조약이 체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조항이 추가된 경위와 일본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한일국교정상화조약 체결 비준국회의 심의에서 사회당의 도카노[戸叶里子]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정부 측의 설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외무성의 우시로쿠[後宮虎郎] 아시아국장은 “그때(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체결 이전 : 필자 주)까지는 이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상호 포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안이 고려되었습니다만, 미국 측의 최초의 입장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양자가 터놓고 얘기해보면 되는 일이니만큼 굳이 강화조약에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체로 그 선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샌프란시스코 회의 직전에 그 조항(제4조 b항 : 필자 주)이 삽입되어 실은 우리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측이 미국에 울며불며 매달리는 바람에 결국 미국 측의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된 것”²²⁾이라고 답변하고 있다.²³⁾

20) 앞의 중의원 회의록, 1951. 10. 25.

21) 앞의 중의원 회의록, 1951. 11. 7.

22) 第50會臨時國會衆議院「日韓特別委員會」, 1965. 10. 29.

23) 일본 측의 ‘미국에 울며불며 매달리는’ 한국 외교관들에 대한 묘사는, 약소국 외교의 숙명에도 굴하지 않는 당시의 한국외교관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 것으로 읽

더 나아가서 제4조 (b)항의 부당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은 다른 한편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법적 질서에 관한 논의로 전개되고 있다. 당시 패전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의 국유 혹은 공유재산이 분리지역에 양도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리지역에 있는 사유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된 상태는 아니었다. 독일이 체결한 베르사이유 조약 제297호 (b)항에서는 청산(양도)되었지만, 이탈리아 강화조약(제79조 제6항)에서는 청산되지 않았고, 제14부속서 제9항에서는 휴전일로부터 조약실시일 사이에 청산된 경우는 청산조치를 해제하여 도로 반환되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다.²⁴⁾ 그런 만큼 동일한 패전국이었던 이탈리아 평화조약의 경우, 식민지였던 알바니아나 에티오피아가 독립을 한 후에도 이탈리아 국민의 재산권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구식민지 즉 조선에 남아 있는 일본 국민의 재산상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4조 (b)항의 규정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²⁵⁾ 이 점에 대해 우선 정부 당국자는 일단 강화조약 제4조 (b)항 규정에 포함된 군정법령 제33호의 처리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원(原)소유자의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었다. 즉 군정법령에는 헤이그 국제 전시법규 등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사유재산의 몰수는 정당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미군정에 의해 귀속된 일본인의 재한(在韓) 재산은 특별 협정의 주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⁶⁾

이와 같이 이 시기의 일본 측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 (b)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청구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화조약 제4조 (a)항의 규정, 즉 양국 간의 교섭에 의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 경우 한국에 남겨진 일본인 재산의 총액은 한국이 요구하는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힐 수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24) 毎日新聞社 編, 1952, 『對日平和條約』, 毎日新聞社, 136쪽.

25) 앞 중의원 회의록, 1951. 10. 25, 1951. 11. 6.

26) 第13會 國會 衆議院 「外交委員會會議錄」, 1952. 5. 14의 오카자키[岡崎勝男] 외상의 답변.

데에 충분하므로, 한일회담이 개최되면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 재한 일본인 재산과 한국의 청구권을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한국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Ⅲ. 한일회담 초기의 청구권 교섭과 역청구권 주장

이승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1951년 7월경 한국의 강화조약 불참 결정이 한국정부에 통보되자 일본과의 직접교섭 희망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고 국무성이 이를 받아들여 회담개최가 성사되었다. 이승만으로는 강화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기 전에 일본과의 직접교섭에 의해 한일 간의 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1951년 10월 20일에 개시된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는 ‘일체의 현안에 관한 이국간(二國間) 교섭의 의제작성과 교섭방법’을 둘러싸고, 기본조약을 벗어나는 의제의 확대에 부정적인 일본과, 의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한국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었다. 한일회담에서 논의될 현안들은 교섭이 타결될 경우 일본 측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일본은 처음부터 의제의 확대에 반대할 뿐 아니라 교섭 그 자체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

2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4조 (a)항 2에 규정된 ‘재외(在外) 재산에 의한 배상’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정부나 기업, 개인이 해외에 갖고 있던 공사(公私)의 재외재산을 제공하는 것에 의한 배상 방식을 말한다. 연합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재외 재산을 몰수하는 형태로 배상을 시킨다는 방침을 취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조약서명국에서 제외됨으로써 제14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1945년 8월 5일 현재, 일본의 재한 재산의 총액은 702억 5,600만 엔으로 추산되었다. 國會圖書館外交防衛課, 1993. 12, 『調査と情報 第228號：戦後補償問題 總論(1)』, 國立國會圖書館調査及び立法調査局, 7쪽.

다.²⁸⁾ 그렇지만 결국 한국 측이 재산 청구권 문제를 회담의제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집중한 결과, 한국 측 주장대로 '재산청구권의 해결'을 포함한 6개 의제가 채택되었다.²⁹⁾

한일회담이 개최되기 이전에 이미 청구권 문제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해결 방식을 구상하고 있던 한일 양국 정부는 제1차 한일회담이 개시되자 곧바로 청구권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의견 대립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립의 초점은 한국 측의 '대일(對日) 재산청구권'과 일본 측의 전전(戰前)의 '재한(在韓) 일본인 재산청구권' 이른바 '역청구권'의 요구로 표면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일 회담은 세 차례나 결렬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한일간의 정식 토의는 1952년 2월 20일에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 '재산 및 청구권 위원회' 제1회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회담의 주요의제로 채택된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섭은 다른 아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 (a)항의 '양국 간의 특별협정으로 해결한다'는 것과, 동시에 제4조 (b)항의 '조선에 있는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재산에 대해 미군정이 처분한 조치의 효력을 승인한다'는 규정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문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 조항에 대한 한일 양측의 견해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로 인한 대립으로 인해 교섭은 난항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1차 청구권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8개 항목의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을 제출한다.³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28) 이원덕, 1996a, 앞의 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49쪽.

29) 채택된 의제는 기본관계의 수립, 재산청구권의 해결, 통상항해조약의 체결, 어업협정의 체결, 해저전선의 분할, 기타의 6개 분야이다. 외무부 정무국, 『한일회담약기』, 21~24쪽.

30) 그 내용을 보면, ① 한국으로부터 반출된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기타 국가 지도 원판 및 조선은행을 통해 반출해 간 지금(地金), 지은(地銀)을 반환할 것 ②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정부의 대조선총독부 채무를 변제할 것 ③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대체(對替) 또는 송금된 금액을 반환할 것 ④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의 재일 재산을 반환할 것 ⑤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은

요강'은 한일회담 개최 이전에 만들어진 『대일배상요구조서』(1949)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으나,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 배상'적 성격의 청구가 아니라 영토의 분리 내지는 독립으로부터 생겨난 재정적, 민사적인 채권 채무의 청산에 초점을 맞춘 '재산 청구권'적 요구로 그 성격이 바뀌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서명국에서 배제되어 '전쟁배상' 청구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배상'이 아닌 재산상의 채권의 성격을 갖는 8개 항목의 청구로 그 성격을 재규정한 것이었다.

제1차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교섭을 담당한 한국 측 대표들은 앞으로의 한일회담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패전국에 대해 전승국이 갖는 전쟁 배상권이 아니라,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 독립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의 재산 청구권적 성격을 띤 대일청구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측의 이러한 최초의 청구권 요구를 일본 측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은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5) 중단 직후의 일본 국회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3회 국회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오카자키[岡崎勝男] 외상은 한일회담의 경과개요를 보고하는 가운데, 1951년 2월 23일의 청구권 분과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항목의 청구권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조선 영유가 불법이었다는 전제하에 불법 영유 위에서 축적된 일본의 재산은 비합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미군정 명령 33호 및 한미협정에 의해 한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은 한국의 재산이며,³¹⁾ 일본은 이 재산

행권, 피징용 한인 미수금(및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한국인의 대일본정부 청구 은금 관계), 기타 청구권을 변제(弁濟)할 것 ⑥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소유의 일본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⑦ 앞에 적은 제반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정 과실을 반환할 것 ⑧ 반환과 결제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외무부 정무국, 『한일회담약기』, 377~378쪽; 원 자료는 한국정부 공식외교문서 「제1차 한일회담 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록」(1952. 2. 20),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안」(1952. 2. 21) 참조.

에 대해 이미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 측은 연합국 및 일본에 대하여 일종의 배상에 가까운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³²⁾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의한 일본인 재한 재산의 한국정부로의 귀속을 기정사실화하여, ‘일종의 배상에 가까운 청구권 요구’라는 것을,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대일청구의 기본성격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국 측의 주장이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재한(在韓) 재산의 처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명문규정(제4조 a항)에 따라 양국 간 협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둘째, 제4조 (b)항에서 일본이 재산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고 한 의미에 대해서는, 일반국제법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남한의 미군정이 점령군의 자격으로 일본의 사유재산에 대해 ‘적산관리적 처분’을 행한 것은 ‘승인’하지만, 그로 인해 일본인 재산에 대한 원(原) 소유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매각에 의해 발생한 대금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³³⁾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철저하게 법적근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한국 측을 당황하게 만든 것은, 일본이 종래의 소극적 자세와는 달리 공세적 자세로 선회하여 외교교섭의 기선을 제압하고자 이른바 ‘역(逆)청구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다. 일본 측은 1952년 3월 6일에 열린 제5회 재산청구권 위원회에서 한국의 재산청구권 요구에 대응하여 제출한 ‘재산청구권 처리에 관한 협정 기본 요강 안’에서 한국 내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였다.³⁴⁾

31) 재한 일본인 공·사유재산은 미군정법령 33호(1945. 12. 6 공포)에 의해 미군정청이 접수했고 이어서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종협정」(1948. 9. 20 발효)에 의해 한국정부에게 양도되었다.

32) 第13會 國會 衆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52. 5. 14. 및 參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52. 5. 16.

33) 위의 「회의록」.

34) 일본 측 협정요강 전문은 한국외교통상부 공개 공식외교문서 「제1차 한일회담 제5회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 1952. 3. 6 참조.

여기서 일본 측은 미군정 법령에 의한 한국 내의 일본인 재산에 대한 처리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승인의 범위를 국·공유 재산에 한정시키고 일본인(민간인) 재산의 경우는 양국 간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본의 대한 청구권을 제기하고 있었다. 한국 측이 제출한 ‘청구권 요강’이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독립)에 의해 생긴 채권 채무관계의 청산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일본에게도 한국에 남겨진 일본인 및 일본 정부의 재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 스스로가 승인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규정(4조 b항)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해 일본 측은 이 규정이 “국제법상 점령군에 인정되어 있지 않은 처분까지 승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한국 측 조약해석에 이의를 제기한다. 즉 1907년의 「육전(陸戰)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헤이그 육전법규)」 제46조의 ‘적지(敵地) 사유재산 불가침’ 원칙을 근거로 삼아 “재한 구 일본인 재산은 그 처분에 의해 발생한 대가 및 과실에 대하여 원래의 권리자(일본인)에게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³⁵⁾

이렇게 해서 제1차 한일회담에서의 청구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4조 (b)항의 “미군정에 의한 재한 일본인 재산의 처분의 효력을 승인한다”는 규정에 대한 한일 양측의 해석의 차이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된다. 미군정에 의해 접수되고 한국정부에 귀속된 일본의 재산에 대해 일본은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으며, 반면에 한국은 일본에 대해 배상에 가까운 성격의 청구할 수 있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해, “국제법상으로는 역사적으로나 (이치에) 맞지 않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4조 (b)항의 규정에 대해서도 “미군정이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적산 관리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원래의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매각에 의해 생긴 대금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일본 측은 전개하였다.³⁶⁾

35) 오카자키[岡崎勝男] 외상의 설명. 第13會 國會 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52. 5. 14.

36) 第13會 國會 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52. 5. 14 ; 參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52. 5. 16.

일본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와 다른 것이 아니었다. 중의원과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는 여당은 물론이고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일본정부의 역청구권 주장에 거의 전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조선을 위하여, 조선민족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으며, “일한 조약이 소위 전쟁의 결과로 일종의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³⁷⁾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대체로 일본정부의 역청구권을 옹호하는 분위기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의해 일본(인)의 재한(在韓) 재산권이 일방적으로 포기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일본 측의 반발과 그에 대한 재해석으로 인해 한일회담의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자 한국정부는 1952년 3월 20일 미국 국무성에 대해 평화조약 제4조의 해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특이한 것은 이에 대해 일본주재 연합국 총사령부(GHQ)에서는 본국의 국무성에,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은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상쇄하려고 하는 교섭기술이며 제4조에 대한 견해의 표명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국무성도 원칙적으로는 “한일 간의 청구권 주장은 상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당분간 한일관계의 대립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입장표명을 보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³⁸⁾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이 보낸 질문서에 대한 미국무성의 답신이 1952년 4월 29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전달된다. 그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 (b)항의 규정 및 귀속명령에 의해 한국 내의 재산에 대한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의 모든 권리, 권원(權原) 및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견해를 미국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한 일본재산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동조약 제4조 (a)항에 의해 재일 한국재산 처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관을 갖는다”

37) 히라바야시[平林太一] 의원의 발언. 第13會 國會 參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52. 5. 16.

38) 이원덕, 1996a, 앞의 책, 57쪽.

는 것으로,³⁹⁾ 여전히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남긴 애매한 상태의 것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애매함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와 달리 이번에는 4조 (a)항을 유보조건으로 하여 (b)항의 조문을 해석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b)항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이러한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한일 간의 상호청구권 주장으로 인한 대립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측의 대일청구권이 재한 일본인 재산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일본 측 주장을 강화하는 셈이 된 것이다.

이처럼 제1차 회담의 청구권 교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의 적용을 둘러싼 견해의 대립으로 결렬되었다. 그런 만큼 그 후 재개된 제2차 회담(1953. 4. 15~7. 23) 시기에 열린 일본국회에서는 청구권 문제의 교섭에 관한 한 특기할 만한 논의는 전개되지 않았다. 오히려 제15회 특별국회(1952. 10. 24~1953. 3. 14)에서는 주로 평화선 문제, 즉 평화선 내 일본 어선의 조업문제 및 일본인 어부 억류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다.

평화선(일명 이승만 라인)의 선포로 평화선 내 조업 어선의 나포 및 어부의 억류문제가 일본국내에서 정치쟁점화가 되자 일본정부는 한일회담의 의제들 가운데 어업문제를 선결의제로 채택할 것을 제의한다. 그러나 한국 측은 한일 회담 전반의 문제 즉, 5개 현안(기본조약, 재산청구권, 어업,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선박문제)을 동시에 일괄토의하지 않으면 회담 재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였고, 이를 일본 측이 수용함으로써 제3차 한일회담(1953. 10. 6~10. 21)이 재개되게 된다. 일본 측이 수용한 이유는 무엇보다 제3차 회담을 통해 당면한 어업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정부로서는 국회대책의 차원에서 평화선 침범을 이유로 나포된 어선 및 어부의 조속한 반환과 평화선 내에서의 저인망(底引網) 및 트롤 어선 어업의 지속이라는 일본 어민과 수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39) 1952. 4. 29 국무성 각서; 吉澤清次郎, 1973, 『日本外交史』 28, 鹿島平和研究所, 47~48쪽.

된다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이다.⁴⁰⁾

그러나 이러한 일본 측의 의도는 일본 측 수석대표인 구보타[久保田貫一郎]의 문제발언으로 인해 좌절되고 결정적인 교섭결렬의 계기를 맞게 된다. 1953년 10월 15일에 열린 제3차 한일회담 도중, 청구권 문제는 오직 한국의 대일청구권밖에 없다는 한국 측 발언에 대해, 일본 측이 ‘사유재산의 존중’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한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응수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미국무성 각서의 제시로 일견 진정된 듯이 보였던 평화조약 4조 (b)항의 문제가 교섭과정에서 다시 부상한 것이었다.

구보타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국 측 홍진기 대표는, “일본의 재한 재산은 미군정의 손으로 법령 제33호에 의해 접수되었다. 이 사실은 미국무성의 각서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본래 한국은 36년간의 일본 지배하에 한국민족이 받은 피해, 예를 들면 애국자의 투옥, 학살, 한국인의 기본적 인권의 박탈, 식량의 강제공출, 노동력의 착취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한국 측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순수하게 법률적인 청구권만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청구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희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청구권 주장이 다분히 정치적이며, 일본이 그러한 정치적 요구를 할 줄 진작 알았다면, 한국은 조선총독의 36년간의 통치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 이어진 일본 측 구보타 대표의 반박은 회담의 분위기를 급속히 냉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다. “한국 측이 그러한 정치적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현명했다. 만약 한국 측이 그런 요구를 내걸었다면 일본은 총독 정치가 공헌한 점, 예컨대 삼림 녹화, 철도 부설, 항만 건설, 논[畠]의 증가 등을 들어 반대로 한국 측의 요구를 상쇄했을 것이다.”고 응수한 것이다.⁴¹⁾ 그 뿐만 아니라 “한국 측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4조 (b)항의 규정에

40) 第17會 臨時國會 衆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1953. 10. 28)에서 오카자키[岡崎勝男] 외상의 설명.

41) 이상 구보타 발언을 둘러싼 논쟁에 관해서는 김동조, 1986, 앞의 책, 53~59쪽; 第16會 國會 參議院 「水産委員會會議錄」에서의 구보타 대표의 설명 및 第17會 臨時

의해 일본의 사유재산이 몰수된 것이라 해석한다면 그 해석은 미국 측의 국제법 위반을 선언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한국 측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체결 이전에 ‘독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령 연합국이 인정했다 하더라도 일본이 보기에는 이례적 조치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견해마저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⁴²⁾

이른바 ‘구보타 발언’으로 알려진 한일 간의 공방은 한국의 독립 및 재산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통치의 성격에 관한 한일 간의 근본적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당시의 일본인 사유재산이 한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축적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한국 측의 질문에 대해, ‘세세한 내용을 말하게 되면 끝이 없다. 단지 36년 동안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평등하게 취급되었다’고 답변한 구보타의 발언은 한국의 국민감정을 크게 자극하는 것이었고,⁴³⁾ 의도된 것이었든 그렇지 않은 것이었든 간에 이 발언을 계기로 교섭은 다시 결렬되어 이후 1958년 4월까지 한일회담은 열리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한일회담을 결렬로 이끈 구보타 발언은 단지 개인적 차원의 실언(失言)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 구보타 발언에 대한 일본국회의 논의를 살펴보면, 1953년 10월 27일 참의원 수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요청으로 구보타 대표는 자신이 행한 발언의 내용을 설명한 후, “총독부 정치의 나쁜 점이 있었음은 인정하더라도 좋은 점도 있었다는 것은 일본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는 일이다”고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해 아무도 이견이나 반대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⁴⁴⁾ 게다가 10월 28일에 열린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는 오카자

國會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1953. 10. 28)에서의 오카자키 외상의 설명 참조.

42) 第16會國會參議院「水産委員會會議錄」, 1953. 10. 27.

43) ‘구보타 발언’의 내용 및 그 의미에 관한 기존연구로는 다카사키 소오지[高崎宗司], 1985. 8, 「제3차 한일회담과 ‘구보타 발언」, 『思想』; 다카사키 소오지[高崎宗司], 1990, 『망언의 원형』, 木鐸社 등에 그에 대한 분석이 자세하다.

44) 第16會國會參議院「水産委員會會議錄」, 1953. 10. 27.

키 외상이 “우리는 아무 것도 잘못된 것을 말한 바 없으며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었으며 회의는 결렬되었다”고 구보타 대표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으며, 개진당의 나미키 의원은 “한국의 주장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무리한 요구에 대해 구보타 대표가 단호하게 반박한 것이므로 이를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발언하고 있다.⁴⁵⁾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구보타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한일 회담이 중단된 사실이 일본국회에서는 큰 정치쟁점이 되고 있지 않았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구보타 발언에 대한 이견이나 반론이 제기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온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도 식민지 지배 문제와 관련된 구보타 발언에 대해서는 대체로 묵인하고 정부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는 점은 이 시기의 일본 측의 한일 회담에 임하는 시각과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IV. 역청구권 주장의 철회와 교섭국면의 전환

구보타 발언 및 일본의 대한 청구권 주장의 철회로 한일회담이 재개된 것은 1957년 2월에 성립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정권 때에 들어와서였다. 기시 정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대도 한일회담 교섭재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태도를 촉구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⁴⁶⁾ 결국 1957년 12월 31일 기시 내각의 외상인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와 주일 한국대표부 대사 김윤택이 한일회담의 최대의 장애물이었던 역청구권 주장을 철회하고 구보타 발언 취소

45) 第16會 國會 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53. 10. 28.

46) 대한민국 외무부, 1962, 「한일 간의 조속한 국교회복을 촉구한 이승만 대통령 성명(1957. 4. 24)」, 『大韓民國外交年表-(附 主要文獻) 1948~1961』, 408쪽.

를 공식화하는 합의문서에 조인함으로써 한일교섭이 재개되었다.⁴⁷⁾

그렇다면 1957년 12월 31일 일본정부가 재한 일본인 재산의 청구권을 최종적으로 포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어떠한 배경 및 경위에 의해 이러한 방침전환이 현실화한 것일까.⁴⁸⁾

첫째, 이 방침전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일본의 국내정치적 배경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제3차 한일회담이 결렬된 후, 이승만 정권은 대일 어업 강경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다.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의 나포가 급증하자 일본에서는 평화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급기야 이 문제가 일본국회에서 핵심의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1952년 11월(제15회 국회)부터 1956년 6월(제24회 국회)까지 일본국회에서 평화선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가 13차례나 이루어졌다.⁴⁹⁾ 그런 만큼 일본정부의 입장으로서 ‘이승만 라인’으로 인해 생겨난 연인원 2,000여 명에 이르는 피랍 어부 및 600여 척의 피랍 어선의 존재가 그 이듬해로 예정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와 맞물리면서 시급한 정치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었던 상황이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카자키 외상의 답변에서도 상징되는 것처럼, “이승만 라인의 해결방법으로는, 양국의 논점을 공표하여 국제여론에 부치는 방법도 없지 않으나 인내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는 평화적 해결방법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⁵⁰⁾ 1953년 말경 구보타 발언을 취소하고 청구권 문제에 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한국 외무장관의

47) 역청구권 주장 및 구보타 발언 철회와 회담재개를 위한 교섭과정은 鹿島平和研究所, 『日本外交史』 28, 71~73쪽 참조. 합의문 전문은 神谷不二, 1978, 『朝鮮問題戰後資料2』, 日本國際問題研究所, 507~508쪽에 수록.

48) 우선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일본 및 한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미국의 존재이다. 미국이라는 상수항을 함께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본고에서는 일본국회에서의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 상수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49) 吉澤清次郎, 1973, 앞의 책, 54~55쪽.

50) 第15會國會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53. 2. 25.

제의에 대해 오카자키 외상이 어부, 어선의 반환이 이루어지면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결의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었다.⁵¹⁾

그 해결을 위해 하토야마[鳩山一郎] 내각에 들어오면서 억류 일본인 어부의 반환을 위해 일본의 오무라[大村]수용소에 수감된 한국인들과의 상호석방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오무라수용소의 한국인을 석방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다구치[田口長治郎] 의원의 질의에 대해, 외무성의 나카가와[中川融] 아시아국장은 “법적근거에 기초하여 시행 중인 오무라수용소의 합법적 조치와 평화선 억류의 비합법 조치를 관련시키는 것에 승복할 수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다. 이에 반해 시모마키[下牧武] 출입국관리국 차장은 오무라수용소 수감자의 석방은 출입국관리령을 부인하는 셈이 되지만, 단 한 번의 조치에 그치고 장래에 영향이 없다는 보장이 있으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여 상호석방에 의한 문제해결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음을 시사하였다.⁵²⁾

상호석방문제에 관한 법무성과 외무성 간의 이견은 점차 조정되어, 마침내 시게미츠[重光] 외상은 국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커다란 이익을 위해서는 무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법무대신과 같은 의견임을 확인했다고 답변한다.⁵³⁾ 이어서 1956년 3월 미국의 딜레스 장관의 방한(3. 17)과 방일(3. 18) 후에 가진 김유택 공사와의 회담 후에 시게미츠 외상은 일본인 어부 귀환문제해결이 임박하였음을 피력하였다.⁵⁴⁾

둘째, 일본정부에 의한 대한 교섭태도 변화의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기시 내각의 성립에 의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시바시[石橋湛山] 내각의 외상으로 취임한 때부터 기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한국과의 현안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대한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당시의 기시외상은 오무라수용소의 한국인과 억류 일본어민의 상호석방은 인도적 문제로서 무조건

51) 第17會 臨時國會 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53. 11. 4.

52) 第23會 國會 衆議院「農水產委員會會議錄」, 1955. 12. 1.

53) 第24會 國會 參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55. 12. 14.

54) 第24會 國會 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56. 3. 31.

해결한 후 후속 조치를 강구한다는 대강의 원칙을 한국 측이 승인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와 동시에 구보타 발언과 재산권 문제(이른바 역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교섭경위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대처한다는 이해가 성립되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상호석방교섭의 성공을 계기로 한일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보타 발언과 일본의 재한 재산청구권 철회를 진지하고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⁵⁵⁾

1957년 2월 25일 새 내각을 출범시킨 기시 총리는 1956년 후반에 일본정부가 재일 조선인의 복송을 묵인하는 정책을 취한 이래 냉각상태에 빠져 있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한일 간의 제 현안에 대해 획기적인 양보를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기시 총리는 “일본은 한국과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지금 북한과 교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가 하면,⁵⁶⁾ “일본의 대한 정책은 결코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친공(親共)적이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한일문제의 해결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므로 6월 중순으로 예정된 방미(訪美) 이전에 한국과의 회담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⁵⁷⁾ 기시 정권은 방미를 앞두고 대미(對美)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일회담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⁵⁸⁾

이 같은 기시 정권의 적극적인 유화자세에 고무되어 이승만 대통령도 이를 계기로 억류자 상호석방문제, 역청구권 문제, 구보타 발언 등의 현안문제 타결에 적극적 의지를 나타냈고 이에 기시 총리는 의회에서 “구보타 발언은 정부의 의사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서 철회에 인색할 것도 없다”며,⁵⁹⁾ “이 기회에 구보타 발언을 취소할 방침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도 종래의 일본 측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는 소신을 표명함으로써

55) 第26會 國會 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57. 2. 12.

56) 第26會 國會 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57. 3. 4.

57) 第26會 國會 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57. 4. 5.

58) 이원덕, 1996a, 앞의 책, 53~54쪽.

59) 第26會 國會 參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57. 4. 30.

교섭재개의 물꼬를 튼다.⁶⁰⁾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종래의 실무교섭 방식이 아닌, 고위 정치가 레벨의 정치적 절충이라는 교섭방식의 변화에 의해서도 촉진되었다.

일본정부의 반대를 무릅쓴 기시 총리의 결단에 의해 기시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 하루 전날인 1957년 6월 15일까지 회담재개를 위한 예비교섭을 벌였다. 그 결과, 회담재개의 전제로 일본정부는 ‘구보타 발언’을 취소하고 재한 일본인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이른바 ‘역청구권 주장’을 철회하기로 약속한다.⁶¹⁾ 여기에는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정치적 인식의 전환이 동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일본은 역청구권 주장을 철회하는 양보정책을 통해 한국 측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식의 청구권 문제해결의 모색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뒷날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시사적이다. “청구권에 관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더욱이 양자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사실상은 매우 곤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하다는 사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⁶²⁾ 그는 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예로써 강제연행노동자의 미지불 임금의 처리의 경우를 들어, “도대체 징용의 사실 유무, 게다가 그에 대한 임금의 지불 유무, 이러한 것들을 적확하게 입증하는 사실을 보완할 수가 없다. 일부가 보완이 되어도 전부는 불가능한 예가 대단히 많은 관계로……사실입증이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⁶³⁾ 법률적, 사실적 입증이 불가능한 종래의 접근방식으로부터의 선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시이나[椎名悦三郎] 외상이 강제연행 관계자료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본토 폭

60) 第26會 國會 衆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57. 4. 30.

61) 김동조, 1986, 앞의 책, 96~97쪽. 구보타 발언을 철회하는 공식발표의 원문은 대한민국 외무부, 1962, “구보타 일본수석대표의 발언을 취소하는 일본외무성의 구상서(口上書)(1957.12.31)”, 『大韓民國外交年表-(附 主要文獻) 1948~1961』, 443쪽 참조.

62) 第43會 國會 衆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63. 1. 29.

63) 第43會 國會 衆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63. 1. 29.

격 및 패전이, 조선에서는 한국전쟁이 있었던 관계로 이것들을 입증할 여지도 없다”고 답변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⁶⁴⁾

그런데 일본정부의 이러한 방침전환에 대한 일본국회의 반응은 일본(인)의 재한 재산청구권 포기의 부당성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으로 나타난다. 그 초점이 바로 1957년 12월 31일 공표된 ‘한일공동각서’⁶⁵⁾에서의 역청구권 주장의 철회에 맞춰졌고, 그 배경 및 그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추궁의 집중대상으로 떠오른다. 그 전형적 사례로 당시의 일본국회에서의 생생한 논의를 직접 인용해 본다.

가와카미[川上] 사회당 의원 : 한일 공동각서에 의하면 미국정부의 견해를 기초로 운운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 기초가 된 미국정부의 견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지야마[藤山] 외무대신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해석이라는 것은 일본이 청구권을 포기한 점을 한국 측은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와카미[川上] 사회당 의원 : 그 기초가 되는 견해라는 것은 문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의 일본 혹은 한국에 대한 충고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성명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타가키[板垣] 정부위원 : 작년 말에 체결된 예비협정에서 이른바 미국의 각서내용은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일 쌍방에서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대신 경위를 말씀드리면 일본의 대한 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종래 법리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그 후 일본 측에서 연구를 하여, 그리고 우연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주역이었던 미국 측의 해석과도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 해석의 기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참고로써 미국 측의 해석이 문서

64) 참의원 일한특별위원회, 1965. 12. 3.

65) 원문은 외무부, 1962, 『일본외무대신과 주일대표부 수석 간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大韓民國外交年表-附 主要文獻 1948~1961』, 444~445쪽.

로 작성된 것입니다.

가와카미[川上] 사회당 의원 : 일본과 한국과의 교섭 혹은 회담, 그 공동성명의 공동각서 속에 분명히 미국정부의 견해에 의한다는 점이 분명히 명기되고 있는데, 그 견해를 국민에게 알릴 수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가와카미[川上] 사회당 의원 : 적당한 시기에 공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째서 지금 공표할 수 없다고 하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후지야마[藤山] 외무대신 : 한일 간의 교섭은 매우 미묘한 단계에 이르러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억류된 어부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그런 의미에서도 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고려를 다하여 모든 문제를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와카미[川上] 사회당 의원 :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어째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지요.

이타가키[板垣] 정부위원 : 내용상으로 보면 특별히 발표해서는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작년 말 한국 측이 강하게 당분간 발표를 미뤘으면 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에 대해 일본 측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분간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입니다.

가와카미[川上] 사회당 의원 :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에 청구하려고 하는 재산청구권이라는 것인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청구권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만, 한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타가키[板垣] 정부위원 : 강화조약의 해석에 의거하여 일본의 대한 청구권은 없어졌습지만, 한국의 대일 청구권은 이론상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그야말로 본회담의 중심의제로 되는 것입니다.

후지야마[藤山] 외무대신 : 3월 1일 이후 한일회담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 교섭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⁶⁶⁾

위의 일본 정부당국자와 국회의원 간의 논의에서, 이 시점에서 일본의 한

66) 第28會 國會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58. 2. 17.

일회담 교섭전략 및 의제설정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싼 논의는 한일국교정상화가 타결된 후에 열린 이른바 비준국회에서도 ‘국민적 정서’를 매개로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다. 1965년 비준국회에서의 논의는 이 점을 다시 상기시켜 준다.

이시바시 마사시[石橋政嗣] 사회당 의원 : 지금까지의 외무성의 국민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거론하지 않는다면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외무성 정보문화국이 펴낸 『세계의 동향』 특집호 6권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에 청구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의 반환입니다. 그것은 사유재산의 존중의 원칙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도 인정되어온 원칙이며, 또한 조선으로부터의 귀환자의 피해가 이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본인이 조선에 남기고 온 재한(在韓) 재산은 멀리 우리나라에서 조선에 건너가 30여 년의 세월동안 각고의 어려움 속에서 흘린 땀의 결정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것은 외무성의 문서입니다. 「어떤 이의 계산에 따르면, ……한일 상호의 청구권은 다음과 같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40억 엔, 일본이 한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120억 엔, 그 차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20억 엔. 거기서 설명 한국 주장과 같이 일본은 한국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한 푼도 없고 청구권 문제라는 것은 오직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을 금액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계산에 따르면 종전 당시의 기준으로 120억 엔을 일본이 한국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조선에 있었던 일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하지 않은 채, 더군다나 이런 거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이며, 이 외무성의 견해야말로 현재의 일본 국민의 정서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까?⁶⁷⁾

후지사키[藤崎萬里] 외무성 조약국장 : 방금 설명이 있었던 것은 쇼와 28년(1953년 : 필자 주) 10월 22일의 정보문화국장의 담화인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한일교섭의 어느 단계에서의 미국 측 해석과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시의 국회에서의 정부의 견

67) 제50會 臨時國會 衆議院 「日韓特別委員會會議錄」, 1965. 11. 5.

해와도 다른 것으로 제일 일본에 유리한 부분을 한국과의 교섭과정에서 주장하던 단계의 발표입니다. 지금의 견해와 다릅니다.

이시바시 마사시[石橋政嗣] 사회당 의원 : 이 당시의 외무성의 주장, 이것이야말로 일본 국민감정에 딱 들어맞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 열심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귀환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 견해가 언제의 시점에 어떠한 경과를 거쳐 변화해갔는가. 이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핵심이고 본론인 것입니다.

시이나(椎名悅三郎) 외무대신 : 이 한국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 복잡다기합니다만, 여러 각도에서 양국의 기나긴 역사적 관계 등을 고려한 결과 이번엔 조약의 조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시바시 마사시[石橋政嗣] 사회당 의원 : 실제의 이해관계자가 그것으로 납득하겠습니까. 외무성이 아까 소개한 바의 태도로 노력할 경우에는, ‘아아, 역시 정부다!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잘 감안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의논도 없이 어느 사이엔가 지워 버렸다. 교섭의 줄다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시바시 마사시[石橋政嗣] 사회당 의원 : ……명목은 뭐라 하든지 간에 적어도 유상, 무상 5억 달러라는 금액을 일본이 한국에 원조하게 될 경우, 5억 달러로 마무리된 것은 많은 일본인 사유재산이 조선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틀림없는가라고 질문했더니 외무대신은 틀림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한(在韓) 재산을 가지고 있던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재산을 전부 내놓았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⁶⁸⁾

위의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일청구권과 일본의 역청구권의 계상금액 및 차액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일본의 ‘국민적 감정’과는 괴리를 보이는 역청구권 주장의 철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원조’의 실제적 의미 등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한 집중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청구권 분과위원회의 명칭이 ‘한국청구권위원회’로 된 것은 한국의 요구만이 다루어진다는 인상

68) 第50會臨時國會參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65. 11. 25.

을 받는다고 비판하는 이마이즈미[今澄勇] 의원의 질의 또한 일본의 역청구권 철회에 따른 한국 측의 일방적 재산청구권 요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었다.⁶⁹⁾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질의에 대한 수세적 답변에서 일본 정부의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역청구권 주장의 철회는 원래의 일본정부의 일관된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일본의 재산을 접수하여 한국에 양도한 처리는 인정하지만 거기서 일본의 재산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처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재산청구권 포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오니시[大西正道] 의원의 지적에 대해, 외무성의 다카하시[高橋] 조약국장은 “포기했다, 안했다는 것은 말에 불과할 뿐이며, 재산이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고려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포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애매한 답변으로 그 문제를 넘기려 하고 있다. 기시 총리도 “일본의 주장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이를 철회하고 미국 각서의 해석을 양국이 취한 것이 공동발표의 내용”이라며,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의 철회의 의미를 설명하였다.⁷⁰⁾

한 걸음 더 나아가 뒷날 후지사키[藤崎萬里] 외무성 조약국장은 기우치 시로[木内四郎] 자민당 의원의 재한 일본인 재산권의 포기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역청구권 주장은 실질적인 외교목표가 아니라, ‘교섭기술상의 고려’에서 제출된 전략적 방침이었다는 표현으로 집중 추궁당하는 사태를 벗어나고자 한다.

“정부가 한국과 교섭하는 데 있어서 청구권 제4조 (b)항의 규정은 반드시 일본의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은 설령 처분했음지는 모르지만, 그 대가에 대한 청구권이 없을 리 없다는 법률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그것을 쇼와 32년(필자 주, 1957년) 말을 바뀌서 결국 청구권도 없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일본정부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요청했을 때에는

69) 第29會 國會衆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58. 6. 24.

70) 第29會 國會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58. 7. 30.

현재에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청구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한국과의 교섭기술상의 고려에 따라 그런 의견을 일정 기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⁷¹⁾

역청구권의 주장이 한일회담 초반기에 교섭상의 기술로 즉 일본정부의 교섭전략의 카드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이 부분은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일본정부가 ‘역청구권’의 철회에 대한 설명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었는가를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957년 12월 31일 일본 정부가 ‘역청구권’을 철회함으로써 1958년 4월 15일 제4차 한일회담이 재개되기에 이른다. 이승만 정권의 말기에 해당하는 1958년에서 1959년에 이르는 제4차 회담 기간은 상호석방교섭이 타결되고 역청구권 주장이 철회된 것을 계기로, 제반 현안의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을 위한 교섭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일본인 어선 및 어부의 송환이 지연되고 재일 조선인의 복송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현안타결의 구체적 진전은 보기 어려웠다. 일본 국회(제29회~제34회)의 논의도 이들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V. ‘청구권’에서 ‘경제협력’으로

1960년 4월, 한국에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8월에 장면 정권이 수립되면서 한일관계도 호전될 기미를 보인다. 비슷한 시기(1960. 7. 19)에 성립된 일본의 이케다 내각의 고사카[小坂善太郎] 외상이 한국을 방문하고 이어서 제5차 한일회담(1960. 10. 25~1961. 5. 16)이 개최된다. 특히 제38회 국회(1960.

71) 第50會 臨時國會 參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65. 11. 25.

12. 26~1961. 6. 8)와 제39회 국회(1961. 9. 25~1961. 10. 31)에서는 역청구권의 철회 이래 일본정부의 청구권 해결 방식의 새로운 구상을 시사하는, '미국의 재산청구권 해석'에 관한 외무성 조약국의 견해가 새롭게 제시되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1961년 2월, 국회에서 고사카 외상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대한 종래 일본정부의 해석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1952년의 한일교섭에서 일본 측은, 점령군의 점령지 재산처분은 전시국제법상으로 인정된 것만 가능하므로 사유재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1945년의 군정법령의 효력에 대해서는 '관리권'의 이전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한국 측을 자극하는 주장을 하여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설명한다. 처음부터 1957년의 미국의 해석에 대해 일본은 타당성을 인정하고 재한 일본재산을 한국에 인도하였지만, 실제교섭에서는 이전의 주장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던 관계로 때로는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고 공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⁷²⁾

이에 대해 기하라[木原津與志] 의원이 국제법에 점령지의 개인재산 몰수규정이 없는 데도 점령군 사령관이 어떻게 몰수할 수 있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나카가와[中川融] 외무성 조약국장은, 군정법령 33호는 재조선 일본인재산의 몰수규정으로 12월 6일에 발효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해석으로 미군정으로부터 재산소유권이 한국에 이양되었다. 정부는 이를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으며, 평화조약의 규정에 의해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나카가와 조약국장의 답변에 대해 기하라[木原津與志] 의원은 다시, (b)항이 재산몰수, 소유권이전을 승인한다는 의미라면 (a)항은 전혀 의미가 없지 않은가라고 정부의 달라진 4조 해석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나카가와 조약국장은 (a)항은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일반적 규정이지만, (b)항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한국에 관한 예외적인 규정이다. 사유재

72) 第38會 國會衆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61. 2. 13.

산물수라고 하는 이례적 조치가 평화조약의 결과 전승국과 패전국 사이에 결정된 사례가 달리 없었다고는 딱히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⁷³⁾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정부의 해석에 대해 자민당을 비롯한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으면서 그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가와카미[川上寛一] 의원은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의한, 일본의 대한청구권 소멸이라는 해석이 언제부터 성립되었는지, 평화조약을 조인한 요시다 내각의 외무대신(오카자키)은 평화조약 제4조 (b)항의 처분은 승인했으나 원(原) 권리는 남아 있다고 국회에서 주장한 바 있는데, 미국 각서로 생각을 바꾼 것인가라고 질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카가와 조약국장은 미국의 해석은 이전부터 있었고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검토한 결과, 1957년 말, 이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견지에서 그 해석을 수용했다고 답변한다.

당시 국회에서의 일본정부의 설명은 일본의 재산은 소멸되었지만 그 사실은 한국과의 청구권 문제 협정을 체결할 때 고려된다는 것이었고, 그러한 설명은 미국의 해석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한일회담 당초에는 교섭기술상, 방대한 한국의 청구권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정규의 법이론을 전제하였고, 교섭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솔직하고 적절한 해석으로 바꾼 것이라고 부연하는 것이었다. 고사가 외상도 평화조약 4조 (b)항에 군정법령 33호의 재산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있는 재산권은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처음에는 헤이그 육전법규 제46조에 의한 ‘관리권의 이전’ 만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한일회담이 진전되지 못하고 미국의 해석도 나와 있으므로 수년간 연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면 방침의 전환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헤이그 육전법규’의 사유재산 몰수 불가 규정에 대해서도 나카가와 국장은 육전법규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와 같은 장기간의 점령, 점령군의 행정을 반드시 예견하지는 못했다는 논리로 종래의 주장을 부득이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⁷⁴⁾

73) 앞 회의록.

나아가 다바타[田畑金光] 의원은 한일 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가 나오게 된 것이 일본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한일 양국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를 질의한다. 이에 대해 나카가와 국장은 미국 각서의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1957년 12월 31일의 미국정부의 각서는 같은 취지로 1952년 4월 29일에 한국에, 그리고 같은 해 5월 15일에 일본 측에 제시되었다. 제2차 회담이 1953년 봄에 열리고 일본은 종래의 청구권에 대한 법이론적 주장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미국 해석을 고려하여 청구권의 각 항목별로 토의하고자 한 것이 결국 구보타 발언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그런데 1957년 말에 한국 측은 미국 해석을 기초로 해도 괜찮다는 태도를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일본 측도 이에 접근하였다. 1952년 당시 해석의 부연을 미국이 제시하는 것이 교섭의 원만한 진척에 적당하다고 한일 쌍방이 인정하고 미국도 이에 동의하여 제출된 것이라는 것이다.⁷⁵⁾

1961년 10월 20일에 개시된 제6차 한일회담에서는 각 현안에 관해 한일간의 교섭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청구권 문제는 1962년 말까지는 대체적인 합의를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제6차 회담이 개최되고 있던 제40회 국회(1961. 12. 9~1962. 5. 7)의 논의는 재산청구권에 대한 미국 각서의 해석을 둘러싼 해명이 계속되는 한편, 청구권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협력 구상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청구권을 어떻게 채산할 것인가라는 이시다[石田次男]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히라 외상은 시산(試算)해 보니 대장성과 외무성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증거를 모아 법적인 요건을 마련하기란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 또한 교섭과정에서 법률해석상으로는나 사실관계상으로는나 한국정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한 가지 구상을 상대방에 제시하고 반응을 보고 있는 중이며, 어디까지나 일본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74) 第38會 國會 衆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61. 3. 1, 3. 17; 第39會 臨時國會 衆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61. 10. 7.

75) 第38會 國會 衆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61. 3. 30.

방식과 실체를 구비하여 해결할 생각임을 밝히고 있다.⁷⁶⁾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제41회(1962. 8. 4~9. 2) 및 제42회(1962. 12. 8~12. 23) 임시국회에서의 한일관계에 관한 논의는 한일회담타결 특히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김종필-오히라 회담의 결과 대두된, 청구권 문제를 경제협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경제협력 문제에 관해서는 이케다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청구권 외에 한국에 대해 국교정상화 후에 경제협력 문제도 고려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었다.⁷⁷⁾ 또한 청구권을 공여 방식에 의해 일괄처리한다는 구상이 사실이나는 질의에 대해, 오히라 외상은 시간의 경과로 청구권의 실태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정치적 절충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교섭이 진행 중임을 밝힌다.⁷⁸⁾

이 때의 문제는 경제협력에 의한 청구권 문제 해결 방식을 한국정부와 어떻게 절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도카노[戸叶里子] 의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무상공여 혹은 장기 차관의 형태를 구상하고 있으나 한국이 어디까지나 청구권을 주장한다면 무언가 다른 표현방식이나 상호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⁷⁹⁾ 우츠노미야[宇都宮徳馬] 의원은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의 청구권 요구를 중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히라 외상은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유보할 생각은 없으며 현안을 일괄적으로 동시 해결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저개발국가에 속하는 한국의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에 공헌한다는 취지로 무상 유상의 경제협력을 실시하고 그러한 경제협력 공여에 수반되는 효과로서 평화조약 제4조의 청구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 또는 청구권 문제의 소멸을 한일양국이 확인한다는 것이

76) 第41會 國會 衆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62. 8. 29.

77) 第40會 國會 衆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62. 3. 13.

78) 第41會 臨時國會 衆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62. 8. 23.

79) 第41會 臨時國會 衆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62. 9. 2.

었다.⁸⁰⁾ 이러한 기본적 사고방식을 축으로 하여 절충을 계속한 결과, 1962년 말 한일 양국 정부는 결국 3억 달러의 무상 경제협력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차관의 공여라는 합의에 도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Ⅵ. 맺음말

본 연구는 한일회담의 초기부터 한일외교교섭에 소극적이던 일본정부가 1957년 기시 내각의 등장을 계기로 역청구권을 철회하고 ‘구보타 발언’을 취소하는 등의 ‘양보정책’으로 국면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과정을 전후로 한 국회 논의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일본정부에 의한 역청구권 주장의 철회는 일본 국내의 정치적 역풍을 초래하여 한일회담 당사자로서의 정부와 국민적 이해대변을 앞세우는 국회의원 간의 갈등 및 대립, 조정 등의 정치과정을 현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 대한 주목을 통해 ‘청구권 방식’의 해결전략에서 ‘경제협력 방식’의 해결전략으로의 이행이라는 교섭의제의 전환에 내포된 정치적 배경 및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첫째, 일본정부에 의해 역청구권 주장이 철회되고 그에 따라 한일회담이 급진전될 기반이 형성된 것은 1957년을 전후로 한 시기였다는 점과, 둘째, 교섭국면의 전환을 주도한 기시 총리의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 시기는 14년에 걸친 한일회담의 전 과정을 ‘청구권 방식’의 해결을 중심으로 둔 전기와 ‘경제협력 방식’의 해결을 중심으로 둔 후기로 나누는 전환점의 위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들로 해서 한일회담 초기부터 기시 내각하의 제4차 회담기(1958~1960년)에 이르는 기간의 일본국회에서의

80) 第41會 臨時國會 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62. 9. 2; 第42會 臨時國會 衆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62. 12. 11.

논의에 대한 분석은 교섭의제의 전환에 내포된 일본 측 교섭전략의 배경 및 그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평화선(이승만 라인)’과 억류 일본인 어민 및 선박 문제다. 이 문제에 관한 일본국회의 논의과정은 본 연구에서는 깊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역청구권 주장의 철회를 담은 ‘한일공동각서’의 미공개에 대한 야당원의 추궁에 대하여, 후지야마[藤山] 외상이 “한일 간의 교섭은 매우 미묘한 단계에 이르러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억류된 어부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그런 의미에서도 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고려를 다하여 모든 문제를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⁸¹⁾라고 하는 답변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억류 일본인 어민 및 선박 문제는 일본정부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었음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들과 유권자라는 관계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 점이 상대인 이승만 정권에 어떻게 의식되고 있었는지는 또 하나의 외교적 다이내미즘을 이해하는 데에 흥미로운 주제이지 않을 수 없다.

둘째, 1957년을 전후로 한 시기의 한일교섭국면의 변동의 배후로서의 미국의 존재이다. 미국에 의한 동아시아 삼국동맹체제의 건설 구상이 이를 강력하게 촉진하는 역할을 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952년의 ‘미 국무성 각서’(4월 29일)가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한일국교정상화라는 외교적 중요사안이 애초에 일본정부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내발적으로 제기되었다기보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추동되었다는 사실에 규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81) 第28會 國會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58. 2. 17.

참고문헌

〈1차 사료〉

- 대한민국정부 공식외교문서 「제1차 한일회담 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록」, 1952. 2. 20.
 대한민국정부 공식외교문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 안」, 1952. 2. 21.
 대한민국정부 공식외교문서 「제1차 한일회담 제5회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 1952. 3. 6.
 대한민국 외무부 정무국, 1952, 『한일회담약기』.
 대한민국 외무부 정무국, 1954, 『대일배상요구조서』.
 대한민국 외무부, 1962, 『大韓民國外交年表-(附 主要文獻) 1948~1961』.

- 第12會 臨時國會 衆議院 「平和條約及び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會會議錄」, 1951. 10. 20.
 第12會 臨時國會 衆議院 「平和條約及び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會會議錄」, 1951. 10. 24.
 第12會 臨時國會 參衆院 「平和條約及び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會會議錄」, 1951. 10. 25.
 第12會 臨時國會 參議院 「平和條約及び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會會議錄」, 1951. 11. 6.
 第12會 臨時國會 參議院 「平和條約及び日米安全保障條約特別委員會會議錄」, 1951. 11. 7.
 第13會 國會 衆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52. 5. 14.
 第13會 國會 參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52. 5. 16.
 第16會 國會 參議院 「水産委員會會議錄」, 1953. 10. 27.
 第17會 臨時國會 衆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53. 10. 28.
 第23會 國會 衆議院 「農水産委員會會議錄」, 1955. 12. 1.
 第24會 國會 參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 1955. 12. 14.
 第24會 國會 衆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56. 3. 31.
 第26會 國會 衆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57. 2. 12.
 第26會 國會 衆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57. 3. 4.
 第26會 國會 衆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57. 4. 5.
 第26會 國會 參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57. 4. 30.
 第28會 國會 衆議院 「外務委員會會議錄」, 1958. 2. 17.
 第29會 國會 衆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 1958. 6. 24.
 第38會 國會 衆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 1961. 2. 13.
 第38會 國會 衆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 1961. 3. 1.
 第38會 國會 衆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 1961. 3. 17.

- 第39會 臨時國會 衆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61. 10. 7.
 第40會 國會 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62. 3. 13.
 第41會 國會 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62. 8. 29.
 第41會 臨時國會 衆議院「外務委員會會議錄」, 1962. 9. 2.
 第42會 臨時國會 衆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1962. 12. 11.
 第43會 國會 衆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 1963. 1. 29.
 第50會 衆議院「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等に關する特別委員會會議錄」, 1965. 10. 29.
 第50會 參議院「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等に關する特別委員會會議錄」, 1965. 12. 3.

〈연구논저〉

- 김동조, 1986, 『회상 30년, 한일회담』, 중앙일보사.
 다카사키 소오지[高崎宗司], 1985, 「제3차 한일회담과 구보타 발언」, 『思想』.
 다카사키 소오지, 1990, 『‘망언’의 원형』, 木鐸社.
 유진오, 1983, 「남기고 싶은 이야기」, 『중앙일보』.
 유진오, 1993, 『한일회담-제1차 한일회담을 회고하면서』,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 일본의 전후처리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원덕, 1996, 「한일회담과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 2005, 「일한기본관계조약을 둘러싼 논의」,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荒敬, 1990, 「サンフランシスコ講話」, 歴史學研究會 編, 『日本同時代史』 2, 青木書店.
 神谷不二, 1978, 『朝鮮問題戰後資料』 2, 日本國際問題研究所.
 木村修三, 1977, 「日本の 對外政策決定と國會」, 細谷千博・綿貫讓治 編, 『對外政策決定過程の日米比較』, 東京大學出版會.
 金斗昇, 2003, 「池田政權의 對外政策と日韓交渉(1960~1964)-內政外交 政治經濟一體路線’의 視點から-」, 立敎大學大學院法學研究科 博士學位論文.
 佐藤勝巳, 1969, 「國會の日韓論議にあらわれた日朝關係把握の問題点」, 『朝鮮史研究

會論文集』6.

谷田正躬, 辰巳信夫, 武智敏夫 編, 1966,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説』, 大藏省印刷局.

吉岡吉典, 1966, 「日韓條約をめぐる日本の思想」, 『朝鮮史研究會論文集』2.

吉澤清次郎, 1973, 『日本外交史』28, 鹿島平和研究所.

吉澤文壽, 2005, 「植民地支配責任「忘却」の論理－日韓國交正常化交渉を題材として」,

同時代史學會, 『朝鮮半島と日本の同時代史』, 日本經濟評論社.

國會圖書館外交防衛課, 1993, 『調査と情報 第228號：戦後補償問題 總論(1)』, 國立國

會圖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ABSTRACT]

The study on the Korean-Japanese Normalization Treaty negotiation by the analysis of Japanese National Assembly Records

Ahn, Soyoung

This study is the analysis on the contents of Japanese National Assembly Records which besiege the Korean-Japanese Normalization Treaty negotiation from the government of Yoshida to that of Kishi.

Especially I paid attention to the change of the agenda about the claim and economic cooperation problem in period of the Kishi Cabinet starting in 1957. At that time, the Kishi government has withdrawn the “Inverse-clame” and “Kubota speech” having raised a st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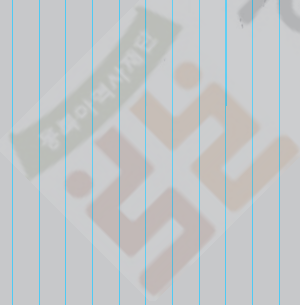
The withdrawl of the “Inverse-clame” resulted in the political conflict in Japanese domestic politics. Because of that, political process of opposition or adjust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became conspicuous. Analysing this process, I tried to find out the political significance in the change of the settlement from the claim to economic cooperation.

keywords

The Korean-Japanese Normalization Treaty, The Clame, The “Inverse-clame”, Treaty of Peace with Japan in San Francisco, Japanese National Assembly Records, Kishi Nobuske

논문

1



버드나무 신화소를 통해 본 유라시아 지역의 문명 교류의 가능성 혹은 그 接點

최혜영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신목 숭배는 세계적으로 퍼져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라시아 북방, 샤머니즘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다고 알려져 왔다. 샤머니즘적 인식체계에서 나무는 산과 더불어 하늘과 지상, 지하 세 세계의 이미지를 유추하게 해 주는 전형적인 자연이었을 것이다. 브리야트족의 경우, 우주의 중심에는 천상, 지상, 지하를 연결해 주는 세계수가 있는데 샤먼의 나무가 천상계의 문을 열어준다고 믿었으며, 야쿠트족의 경우도 샤먼에게는 각자의 나무가 있다고 믿어졌다. 이러한 나무 숭배는 시간, 공간, 신앙의 차원에서 생성, 분화, 소멸과 변형을 거듭하면서 복합적 층위를 형성해 왔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신목 숭배는 지역에 따라 대상 수종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체로 버드나무, 느릅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등이 자주 나타난다. 생태학적으로도 시베리아의 남쪽에는 버드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상수리 등 몇 가지 수종이 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나무는 버드나무이며,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에는 버드나무만 생장한다고 한다.¹⁾

특히 만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는 버드나무 숭배가 여신과 관련하여 강하게 등장한다. 흉노, 선비, 만주, 몽골 등 유목민들의 버드나무 숭배의식은 이미 江上波夫에 의하여서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富有光의 글에서 그 사례들이 잘 조사되어 있다.²⁾ 우리나라에서도 이종주, 이수자, 이윤희 등에 의해 다루어졌다.³⁾ 그런데 이수자는 “버드나무를 벽사의 기능으로 여겼던 것은 우랄 지역, 몽골, 만주,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버드나무는 일찍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난나 여신이나, 주술의 여왕 헤카테 및 신들의 여왕 헤라 등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여신의 나무’였다. 예컨대 주술의 여왕이자 달, 지하세계 및 가축의 수호 여신이었던 헤카테 여신의 신성한 나무는 버드나무였다. 즉 버드나무 화소는 동북아시아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의 문명이 탄생하였다고 알려진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도 여신과 일찍부터 결합되어 있었다. 비슷한 모티프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경우, 자연발생적,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리라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어떤 지역의 한 이야기 모티프가 인근, 혹은 원근 지역에까지 서로 유사한 개념 및 문화적인 상징들로 확산되면서 변화하여 가

- 1)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나무는 흔히 宇宙樹, 宇宙木, 世界樹, 神檀樹, 神樹, 혹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 神樹 신앙은 북방 샤머니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고대 페르시아나 인도, 켈트족 신화 등에서도 역시 발견된다. 신단수는 세계가 열리는 태초의 공간이자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창조의 신성한 공간이면서, 인간 세상과 하늘 세계가 교류하는 매개체이자 통로 구실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그 모습이 특이하여 신성스럽게 여겨졌거나, 생활현장의 주변에 많이 자생하고 있어 여러 가지 실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했던 나무가 神樹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생태학적으로 자작나무는 타이가 지대, 소나무는 흑룡강 하류 지역, 버드나무는 초원과 삼림 지역에서 많이 숭배되고 있다. 박원길, 1998, 「코틀라칸의 즉위의례에 나타나는 神木繞旋儀式에 대하여」, 『中央史論』 10, 372쪽.
- 2) 江上波夫, 1948, 『ユウラシア古代北方文化』, 東京, 227~231쪽; 富有光, 1990, 『薩滿教與神話』, 遼寧大學出版社, 제4장, 柳祭.
- 3) 이종주, 1997, 「동북아시아의 성모 유희」, 『구비문학연구』 4; 김재용·이종주 공저, 1999, 『왜 우리 신화인가』, 동아시아; 이수자, 1995, 「설화에 나타난 버들잎 화소와 서사적 기능」, 『구비문학연구』 2; 이윤희, 2004, 「한국설화의 버드나무 상징성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논문.

는 양상들을 추적하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다.

이 논문은 위에 언급된 여러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허허[赫哲]족이나 아이누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서남아시아, 유럽 등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전반에 걸친 버드나무 숭배양상을 살펴 보면서 공통적인 현상과 배경, 상징체계, 그 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 II장에서는 주로 동북아시아 유목민 사이에서 발견되는 전반적인 버드나무 숭배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III장에서는 기타 유라시아 지역의 버드나무 신화소 및 그 숭배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 IV장에서는 우리나라 버드나무 숭배신화의 양상 및 관련 신화의 역사적 변천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II. 동북아시아의 버드나무 숭배

1. 창세 여신

만주족 창세 신화 『天宮大戰』에 의하면 태초의 물거품에서 최초의 여신 아부카허허[阿布卡赫赫]가 태어났다. 아부카[阿布卡]는 하늘, 허허[赫赫]는 ‘여인’(혹은 女陰)이라는 의미로 ‘하늘 여인’을 뜻한다. 토지여신 바나무허허도 아부카허허에게서 태어났다고 한다. 아부카허허⁴⁾는 버드나무 여신으로, 포도마마

4) 여기서 버드나무는 우주의 창시자, 인류를 비롯한 생명 및 만물의 창조자 역할을 한다. 우주의 맨 위인 구층 하늘은 버들작약꽃 여신의 세계이다. 최초의 신이자 여신인 아부카허허가 악신에게 패배하면서 버드나무잎을 떨어뜨렸는데, 이에서 인류와 만물이 생겨났다고 한다. 『천궁대전』에서 버드나무는 인간의 말을 하고 벌레와 개구리를 살렸다고 되어 있으며, 인류의 대홍수기에 오로지 버드나무와 느릅나무 만이 살아 남았다고 한다. 이종주, 1997, 위의 글; 김재용·이종주 공저, 2004, 『왜 우리 신화인가, 동북아 신화의 뿌리』 개정판, 동아시아; 穆嘩駿 口述, 『黑龍江民間文學』, 19

[佛多媽媽：佛多是 ‘버들가지’, 媽媽는 ‘어미’ 혹은 ‘할미’의 뜻]로도 불린다. 우주가 처음 열렸을 때, 바다 위에 가장 먼저 생긴 것은 포도(버들)⁵⁾이며, 포도가 웨이후[小船, 버들잎의 상징물로, 여성생식기를 비유]를 낳고, 이로부터 인류가 나왔다는 것이다. 혹은 인류의 시조모 포도마마는 장백산(백두산)의 버드나무가 변해서 된 것으로, 지상의 생명체에게 하늘의 진흙과 버들을 내려주어 살게 하였다고 한다.⁶⁾

아부카허허 혹은 포도마마는 만주족 건국신화에 나오는 장백산의 세 天女 중의 포구륜[佛古倫]과 동일체로 간주된다.⁷⁾ 포구륜 역시 버들각시[柳枝娘娘] 혹은 버들엄마[柳媽媽]로 불려서 이 역시 버드나무가 인격화한 된 시조모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버드나무는 만주족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나무로, 창조여신, 시조모신, 풍요 여신으로 표상된다.⁸⁾ 후기로 오면서 버드나무 여신은 창조여신 혹은 시조모신의 위상으로부터 점차 그의 아들, 곧 왕의 권력의 보호신으로 변화해 간다. 즉 신화는 점차 아들 부库里雍順[布库里雍順]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가 왕권을 확립해 가는 과정으로 초점이 바뀌어 가는 한편, 버드나무 여신 포구륜은 아들 부库里雍順의 수호자로 자리잡는 것이다. 포구륜

집 ; 陶陽, 種秀 編, 1990, 『中國 神話』, 상해문예출판사, 137쪽.

- 5) 만주어의 Fodoho는 ‘버들’, 곧 ‘버드나무’이면서 Fodo, 곧 ‘버들가지’를 가리키기도 한다.
- 6) 조현설, 2003,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178~179쪽 ; 부찰씨족은 물 속 동굴에서 버들가지가 변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합하여 자기 종족이 나왔다고 본다. 이 외에도 버들가지를 잡고 살아 남았다는가, 버들가지가 변해서 미녀가 되어 자손이 태어난다는가 하는 이야기는 무수히 발견된다. 포도마마의 아류격 신들도 많았다. 예컨대 아오무시마마는 옛날에 백두산 천지 옆의 큰 버드나무 위에 살았다고 한다.
- 7) 만주족 신화에 의하면 장백산 동쪽 부库里[布库里] 산 아래 불후리[布勒湖里] 못에 세 천녀 연구륜[恩古倫], 정구륜[正古倫], 포구륜[佛古倫]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 중 포구륜은 神鵲이 물고 온 朱果를 삼키고 임신하여 부库里雍順[布库里雍順]을 낳았다. 여기서 세 여인은 柳花 세 자매를, 부库里雍順은 朱蒙을 연상시킨다.
- 8) 김재용 · 이종주 공저, 2004, 앞의 책 ; 김재용, 2001, 『동북아창조신화와 양성 원리』, 『구비문학연구』, vol.12 참조. 만주족의 다른 신화자료에 의하면 대홍수 후에 천신 아부카 언두리가 몸에 묻은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 한명 살아 남았는데, 버들가지가 물속의 그를 건져주고 동굴로 싣고 간 후 여인으로 변하여 후손을 낳았다고 한다.

의 아들이자 건국 영웅 부쿠리용순 역시 그의 왕좌 혹은 왕권에 대한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버드나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만주족 최초의 건국신화 관련자료로는 『만문노당』을 비롯하여 『동화록』, 『태조고황제실록』, 『만주실록』, 『만주원류고사』, 『황청개국방략』, 『장백정존록』 등이 전한다. 이 가운데서, 아주 소략하게 기록된 『만문노당』을 제외하면, 모든 사료에 버드나무 신화소가 등장한다.⁹⁾ 『만주실록』에서는 버들가지가 독자적으로 등장하는 한편, 나머지 사료에서는 버들가지가 쭉과 함께 등장하는데, 여기서 버드나무는 주로 왕권을 상징하는 ‘의자’의 역할을 한다.¹⁰⁾ 만주족 외에도 흉노, 선비, 몽골, 돌궐, 위구르 민족 사이에서도 민족의 기원과 버드나무와 관련한 설화가 많이 전승되고 있다.¹¹⁾

9) 『만문노당』이 기록된 것은 대개 1635년이다. 이들 사료들은 모두 관방자료로서, 대동소이한 내용을 전한다. 주요 관련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만주실록』, “神鵠이 물고 온 朱果를 삼킨 포구룬이 사내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배를 타고 물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람이 사는 곳에 이르러 물가에 올라가 버들을 꺾어 좌구를 엮으니 마치 의자와 같았다.…… 세 성씨가 서로 족장이 되려고 살육하다가 마침내 그를 군주로 모시자, 그는 백리녀를 처로 삼고 국호를 만주로 정했다.”; 『태조고황제실록』, “작은 배를 타고 물을 따라 내려가 강나루에서 물가에 올라가 버들가지와 쭉을 잘라 좌구를 엮어 그 위에 단정히 앉았다.”; 『동화록』, “神鵠이 붉은 열매를 물고 강나루에 이르러 물가에 올라가 버들가지와 쭉을 잘라 좌구를 엮어 그 위에 단정히 앉았다.”; 『만주원류고』, “神鵠이 붉은 과일 버들가지와 쭉을 잘라 좌구를 엮어 앉았다.”; 『황청개국방략』, “神鵠이 朱果를 물어와 강나루에 이르자 물가에 올라가 버들가지와 쭉을 잘라 좌구를 엮어 그 위에 단정히 앉았다.”; 『장백정존록』, “배를 타고 강을 따라가다가 강기슭에 올라 버들과 쭉을 꺾어 단정히 앉았다.” 등이다. 부쿠리용순의 아류격 만주족 영웅도 이런 저런 모양으로 버드나무와 연관이 있다. 예컨대 만주족의 영웅신화 『타라이한마마』에 의하면, 타라이는 두 그루 큰 버드나무를 여러 젊은이가 힘을 합쳐 뽑게 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협력하도록 설득한다. 이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타라이를 존장으로 모신다.

10) 서대석, 2001, 「동아시아 영웅 신화의 비교 연구」, 『동아시아 제민족의 신화』, 한국구비문화학회, 박이정, 116~117쪽. 만주족 신화 ‘뒤룽아가씨’에서 아부타이는 만 년 묵은 버드나무로 활을 만들어 요괴를 죽인다. 이종주, 1998, 「神들의 본풀이, 滿洲神話」, 『한국고전연구』 4, 390쪽.

11) 예컨대, 한 목동 청년이 정신을 잃자, 하늘의 새가 맑은 물이 묻은 버들가지를 물고와 입에 넣어주어 살렸고, 목동은 이 새와 결혼하여 카자흐족의 선조가 되었다고 한다. 『서북민족문화사』, 북경: 천진고적출판사, 1995, 46~47쪽; 최원오, 2001, 「동아시아 알타이계 민족의 민족 기원신화에 나타난 특징 연구」, 『동아시아 제민족

숙신, 읍루, 말갈, 여진으로 이어지는 만주계통이나 선비, 거란, 몽골로 이어지는 몽골계의 버드나무 숭배 습속은 후대에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제신제천전례』에 의하면 버드나무여신은 청대의 황실에서도 여전히 조상신격으로 모셔졌다. 만주족이 중국을 통일한 뒤 지냈던 행사 滿洲大祭 중에는 사흘째 밤에 거행되는 避燈祭인 ‘포도마마제(佛托媽媽祭)’가 있다. 포도마마는 민간이나 궁중에서 모두 대대로 큰 제사를 지냈던 여신으로, 당시 완립마마, 만력마마, 왜리마마, 희란마마, 희륵마마 등으로도 불리었으며, 반드시 버드나무가 포함된 제사를 받았다.¹²⁾ 청조는 17세기 중엽 산해관에서 압록강에

의 신화』, 261쪽. 선비족의 가을 제사는 조상 전래의 제천행사인데, 신목(주로 버들가지)을 세워 놓고 말을 탄 채 세 번 뒤 멈추는 행사였던 듯하다. 이러한 유목민족들의 제천행사는 조지의 순환주기, 즉 유목경제의 생산패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참고로 버드나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몽골비사』에 몽골족은 ‘기마민족이며, 나무 방어 민족’이라고 명시될 정도로 나무 숭배 사상이 많았다. 특히 고대에는 종족의 제사, ‘주겔리’를 무성한 나무 밑에서 지낸 후 왕을 선출하는 습속이 있었다. ‘주겔리’는 고대 제의를 뜻하는 단어로 『몽골비사』 43~44장에 두 번 정도 나오는데, 『몽골비사』의 명대 漢蒙 번역본에는 “나무에 고기를 걸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로 풀고 있다(데 체렌소드눔, 2000, 『몽골비사의 무속신화』,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278쪽). 『몽골비사』 57에는 코톨라를 몽골부의 3대 칸으로 뽑은 뒤 신목의 주변을 돌면서 춤추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왕의 즉위식에서도 무성한 샤먼 나무의 둘레를 춤추며 찬양하고, 나무 아래 둥글게 모여 의논하고 맹세하였는데, 이는 흑룡강 성 여러 소수민족에게서도 발견되는 습속이다. 이때 무성한 나무는 합법적으로 승계한 왕권의 신성한 목적자이자 후견인의 의미를 가지며, 수종은 버드나무일 확률이 높다. 이 외에 흉노족이나 선비족 모두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제천행사를 했다. 顏師古는 흉노나 선비를 비롯한 북방제국이 가을철에 신수의 주변을 도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漢書 匈奴傳에 대한 顏師古의 註 참조), 사마천의 『史記』에는 음력 5월말의 용성제, 가을의 대립 등의 제천행사가 기록되어 있다. 용성제는 조상과 천지와 귀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그 의식의 형태에 대해서 江上波夫 등은 거란의 柴册儀나 몽골의 오보제처럼 신령한 나무 주위를 도는 방식으로 추측한다. 躡林祭 역시 신령한 나무 주위를 도는 ‘神樹繞旋’ 의식으로 보이는데, 대상은 버드나무가 주종을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박원길, 2001,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머니즘』, 민속원, 24~37쪽.

- 12) 新濟蠻族 자치현 만족문화연구회, 1997, 『新濟蠻族문장』, 82~92쪽.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누르하치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2007년 8월 버드나무 신화소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그때 만주족의 근거지인 랴오닝성 신빈만주족 자치현에서 만난 만주족 학자 장문기에게서

이르기까지 아홉 곳에 변방관문을 설치하고 버드나무를 심어 경계로 삼으며 漢族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이 버드나무 방책의 경계, 곧 유조변(柳條邊)을 설치한 것은 방벽으로서의 버드나무의 현실적 유용성 외에도, 유목구역을 확정 지어 한족의 유입으로 인한 유목지의 농경지화를 막으면서 궁극적으로 만주족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_ 생명의 탄생, 성장

神樹 숭배와 함께 나무로부터 인간이 탄생하는 모티프 역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만주족과 같은 계열의 언어를 쓰고 흑룡강 유역에 살던 허저(赫哲, 혹은 나나이)족은 우주의 천상, 지상, 지하에 모두 세 그루의 세계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천상의 나무에는 천신과 태어나기 전의 인간 영혼들이 새 모양으로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 지상의 나무에는 인간과 동물들의 영혼이 살며, 지하의 나무에는 마귀와 죽은 귀신들의 영혼이 있다. 짐케비치(P. P. Simkevic)의 연구에 의하면 허저족은 천상의 나무 ‘오미야무오니(오미야는 새, 혹은 영혼의 의미이고, 무오니는 나무라는 뜻)’를 믿고 있다. 꿈속에서 천상의 나무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누르하치가 기병하기 전 명나라 장수 이성량의 휘하에 친위병으로 있었다. 여차한 연유로 이성량은 누르하치를 죽기를 도모하게 되었는데, 이성량의 애첩 희란이 누르하치에게 이를 귀띔해 주어 달아난다. 누르하치는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개와 까마귀의 도움으로 무사히 건주에 도착하게 된다. 희란은 누르하치를 도와주었다는 죄목으로 옷이 벗겨진 채 죽임을 당했는데, 그녀의 무덤에는 버드나무가 자라났다. 누르하치는 개와 까마귀, 특히 옷을 벗긴 채 죽임을 당한 희란을 기리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희란을 위한 것이 바로 避燈祭, 곧 불을 켜지 않는 제사 ‘포도마마제(佛托媽媽祭)’라는 것이다. 여기서 개(늑대)와 까마귀(독수리, 매)는 유목민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시조 신화소(늑대와 까마귀가 건국시조와 결합하는 것은 유라시아 유목민에게 보편적으로 발견된다)로, 버드나무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이 누르하치 때 시작된 것은 물론 아니고, 조상 전래의 버드나무 숭배가 새로운 버전으로 나타난 것이다. 富有光 외, 『薩滿教女神』, 176~180쪽; 최혜영, 2005, 『고대 로마와 동북아시아의 신화 분석: 늑대와 새』, 『지중해 지역 연구』 7-1; 최혜영, 2006, 『데메테르와 유화』, 『역사와 경계』 58; 최혜영, 2007, 『루페르칼리아 축제, 루파와 고대 로마의 기원』, 『역사학 연구』 30.

작은 새가 날아오는 것을 본 여인은 임신하게 되며, 죽는다는 것은 그 영혼이 다시 그 나무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들에게 살고 죽는다는 것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가는 것이다.¹³⁾ 립프스카야(N. A. Lipskaja)의 연구에서도 허저족의 각 씨족은 각각의 신목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에 있는 각 씨족의 나무에서 날아온 새는 해당 씨족의 여인에게만 들어간다고 믿고 있다.¹⁴⁾ 허저족이 숭배하는 나무 중 가장 뚜렷한 것은 버드나무이며, 버드나무야말로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였다. 먼 옛날 대홍수가 지나간 뒤 남겨진 것이라곤 石頭 하나와 버드나무 한 그루 뿐이었는데 이 둘이 결합하여 허저족의 조상이 나왔다는 것이다. 허저족은 자식을 원할 때 버들가지를 세워 놓고 기도하며, 삼신할머니 신위에 버들가지를 세우고 그 위에 풀잎을 엮어 새둥우리를 만든다. 요컨대 이들에게 아이의 탄생, 성장, 죽음은 모두 신목,¹⁵⁾ 혹은 신목인 버드나무와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흑룡강성과 길림성 등지의 만주족이 자식 점지를 비는 의식도 이와 비슷하여, ‘포도마마’의 신위에 버들가지를 세운다.¹⁶⁾ 길림성의 만주족 샤먼의 ‘포도마마’ 제식은 아이의 성장과도 관련된 제식이다.¹⁷⁾ 神樹로 쓰이는 버드나무는 가지와 잎이 무성한 것을 골라서 쓴다. 대문 바깥에서의 장대 제사(神竿에 드리는 하늘 제사) 의식에서는, 샤먼이 화살을 들고 버드나무를 세 바퀴 돌며, 땅에 곡주를 뿌린 다음, 가족 중 아이가 버들가지 위에 앉은 물방울을 먹는다. 가지와 잎이 무성한 버드나무와 촘촘히 앉은 물방울은 모두 그 집안에 자손이 번

13) 烏丙安, 1987, 『만족신화탐색』, 『중국 신화』 제1집, 중국민간문예출판사, 48쪽.

14) A.V. Smoljak 저, 최길성 역, 1988, 『나나이족의 영혼관』,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민음사, 456~466쪽에서 재인용.

15) 흑룡강 지역에 남아 있는 무속 가운데 만약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샤먼이 하늘의 태아나무로부터 태아의 혼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민속적 신앙이 있다. 조현설, 2003, 앞의 책, 176쪽.

16) 『만족민속고』, 『흑룡강민간문화』 4집, 252쪽.

17) 제사 때, 샤먼은 서쪽 구들의 조상들 감실(龕室) 아래에 걸린 황포 주머니에서 끈(자손끈이라 불림)을 꺼내어 한 머리는 서쪽 구들 神板 아래 묶고, 다른 한 머리는 문 바깥에 세운 버들가지 위로 끌어간다. 이런 의식을 하면, 사내아이는 자라서 용맹한 용사가 되고, 여자아이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믿었다.

성하고 평안할 것임을 나타낸다. 시보[錫伯]족은 아이가 태어나면 버드나무 널빤지와 가지로 침상과 장난감을 만들고 그것으로 얼굴을 문지른다. 만약 어려서 죽으면 열매 없는 버들가지로 묶어 야외에 버리고, 장성하여 죽으면 무덤 위에 버들가지를 꽂는데, 이는 빨리 새 세상에서 회생하여 후대를 번성케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시보족의 숭배대상인 시리마마[喜利媽媽]의 신위 역시 버드나무이다. 홍안령 북단에 거주하는 몽골인도 사람이 죽으면 버들가지를 잘라 무덤 위에 꽂아 두는, 이른바 마니수(瑪尼樹) 풍속이 있었다고 전한다. 내몽골에 사는 몽골인 역시 무덤 위에 버들가지를 꽂고 살기를 바라는 데, 만일 이 버드나무가 뿌리를 내려 자란다면 상서로운 징조로 여겼다. 이처럼 버드나무는 민족의 기원에서부터 아이와 자손의 번영을 기구하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일본 홋카이도의 아이누족 사이에서도 버드나무 숭배가 강하여 인류가 버드나무에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이들이 많았다.¹⁸⁾ 아이누족은 특히 조상의 척추가 버드나무에서 나왔다고 믿으며, 아무리 큰 부상을 입어도 척추가 부러지지 않는 한 살아남는다고 믿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강가 버드나무 푸른 가지를 꺾어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이나오(inao)'를 만들어 이를 침대 옆에 세우고 아이의 수호신으로 삼아 섬긴다.¹⁹⁾ 아이가 병들었을 때 버들가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서, 버들가지를 정원에 꽂아 놓고 '柳媽媽'라고 부르며 병이

18) C. Masashibo, 1973, *Chosakshu*, Tokyo, p. 2, p. 196, p. 201, p. 330, “코탄카 루카무이가 인간을 만들려고 하였을 때 제비를 하늘의 신들에게 보내 어떤 재료가 만들까 물었다. 신들은 처음에 나무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제비가 떠나간 후에 신들은 돌이 더 강한 재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수달을 보내어 급히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시켰다. 그런데 수달은 가는 중에 물고기 떼를 보고는 그것을 잡느라 깜빡하고 늦게 전하였다. 이 때문에 인류는 나무로 만들어져서 죽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새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더 수가 많아졌다. 여기서 인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나무는 버드나무로 전해진다.”

19) “이나오(inao)시여, 당신은 신이시니, 우리는 당신 앞에서 당신을 숭배합니다. 신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신은 버드나무로 척추를 만들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버드나무 이나오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어, 이 아이가 오래 살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J. Batchelor, 1901, *The Ainu and their Folklore*, London, pp. 85~88.

낫기를 간구하거나, 부족에 따라서는 버들가지로 엮은 탑에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²⁰⁾

이상에서 아이의 탄생, 질병 치유, 생사의 기로, 죽음 등에서 버들가지는 중요한 기원의 대상이 된다. 이는 버드나무가 이승과 저승의 삶의 경계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3_ 豊饒, 祈雨 등의 주술적 기능

버드나무 신화소와 관련한 이들은 특히 대개 수렵과 어렵에 종사한 이들이다. 아이누족의 근거지 日高와 靜内 지역에 전승해 오는 ‘카무이 유카르’에는 “우리가 물고기 동료를 잡아 올리고 버드나무로 그 머리를 두드려 주어서 그들은 신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물고기를 잡는 의식에서 버드나무는 인간의 식량이 된 물고기들의 신격화를 도와주는 도구인 셈이다. 또한 膽振 鵜川에서는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오는 때에 ‘시샤모(버드나무 물고기) 맞이 의식’을 드린다. 그 내용은 식량난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하여 한 여신이 버드나무 앞에 식량의 혼을 불어넣어서 보내주는데, 버드나무 앞은 모두 시샤모, 즉 버드나무 물고기가 되어서 인간의 식량이 된다는 것이다.²¹⁾

버드나무 제사는 효협제사[敎祭] 중에서도 가장 이름이 높았다. 만주족의 逸話集 『東海沉冤錄』에는 동해 위지[窩集] 지대 부락에 살던 만주족 옛 선조들이 버드나무를 이용하여 江神이나 海神을 제사하던 의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강이 마르거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의 위기 때나, 고기를 잡을 때에 아이누족처럼 부족 전체가 버드나무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²²⁾ 중국 서남쪽 바이

20) 아이누족의 나무 숭배는 부족에 따라서 당느릅나무 숭배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아이누족과 관련한 다른 전승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아이누가 단일민족이 아니고 몇 갈래가 한데 모여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듯하다. 更科源藏 저, 이경애 역, 2000, 『아이누신화』, 도서출판 역락.

21) 이와 관련하는 이가 모두 여신이며, 강도 男川이 아니라 女川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22) 버들을 제사 지낼 때는 여성 한스후린[罕斯呼林]이 미모의 여자 여럿을 뽑아 허리에

[白]족은 아직도 매년 음력 4월 23일부터 나이 많은 남녀 샤먼 두 명이 조롱박을 매단 버들가지를 들고 좋은 날씨와 풍년, 장수를 기원하는 행렬을 이끈다.²³⁾ 이는 모두 풍요제와 버드나무 사이에 긴밀한 주술적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²⁴⁾

우랄 지역에서도 버드나무가 많이 등장한다. 아들이 부모 곁을 떠날 때 버드나무를 심어 놓고 간다든가, 악마나 나쁜 마술사를 물리치려고 할 때 버드나무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모티프를 가진 동화들이 많다. 이는 버드나무의 신성성이나, 벽사적 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비를 내리게 하는 북방 여러 민족의 주술, 자다(Jada)에도 버들가지가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자다石을 버들가지에 매단 다음 물 단지에 담그거나 드리워 놓고 주문을 외는 방법이다.²⁵⁾ 이처럼

버들떠만 두르게 한 뒤 부족민들이 그들 몸에 사슴피나 곡주, 깨끗한 강물 따위를 뿌린 뒤 돌아다니게 한다. 이 때 처녀들은 버드나무신 혹은 水神을 대표한다. 비슷한 풍습이 만주국 시대(1930~1945)까지 있었다고 전한다. 富有光, 1990, 『薩滿教與神話』, 遼寧大學出版社, 제4장 「柳祭」.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2000, 『동북아시아 민족 문화』, 소명출판, 402쪽 참조. 魚祭의 경우는 버드나무 가지로 사람 크기의 물고기 형태를 한 신의 우상을 만든다. 여자 샤먼과 군중들은 모두 몸에 버드나무 가지를 두르고 어린애들은 버드나무 가지와 껍질로 만든 각종 물고기 모양의 모자를 쓰고, 물고기 춤과 물고기 노래 등을 부르며 강물을 마신다. 이른바 물고기와 버드나무의 세계의 결합이다. 위지[窩集] 지대 부락의 魚祭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 이런 의식을 치르면 물고기의 신 莫德喝恩都力가 풍어를 줄 것이라는 것이다. 富有光, 1990, 앞의 책, 제4장 「柳祭」.

23) 오늘날도 여러 주술적 행위의 유습이 남아 있다. 몽골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양이 마에서부터 등, 엉덩이 부위 등에 우유를 뿌린 후, 양들로 하여금 빨간 천으로 테두리를 감은 나무틀, 혹은 붉게 칠한 버드나무 나무틀을 통과하게 하고 제사를 지낸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몽골의 무속과 민속』, 월인, 162쪽.

24) 버드나무로 신상을 조각한 것을 '柳木人'이나 '柳木神'이라 하는데, 만주족 제 성씨의 샤먼들에게서 그 형태가 다양하여, 버드나무가 샤먼의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5) 몽골족의 잘라마나 오보 역시 버드나무 및 주술과 연관되어 있다. 잘라마는 샤먼이 기복행위를 할 때나 제사, 초혼 등에 쓰이는 것으로 대개 버드나무에 묶은 흰색의 긴 천, 혹은 종이 조각을 의미한다. 내몽골 출신 역사학자 작치드세첸은 잘라마란 고대 샤먼교에서 유래하며, 버들가지를 꺾고 이곳에 여러 가지 색깔의 천들을 매어 두는 오보는 잘라마의 관습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돌궐어 민족의 샤머니즘 신앙』, 『비교민속학』, 11, 1994, 401쪽. 오보는 산천의 神이 어느 산꼭대기나 언덕에 머물고 있다고 샤먼에게 가르쳐 주면, 그 자리에 흙을 쌓고 그 위에 돌과

버드나무는 사냥감이나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려는 풍요나 벽사, 祈雨 등의 여러 가지 주술적 목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Ⅲ. 기타 유라시아 지역의 버드나무 숭배와 전반적 배경

1_ 서남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버드나무 숭배

버드나무 숭배는 서유럽과 아일랜드에 걸쳐 있던 켈트족, 그리고 그中间的의 스키타이,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기까지도 광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켈트족 원초의 나무인 우주목과 메소포타미아의 이난나의 버드나무 이야기 등은 앞에서 소개한 허저족의 세 그루 나무 이야기와 매우 닮은 점이 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스키타이에는 점술가들이 많은데, 그들은 버들가지를 이용하여 점을 친다. 이는 스키타이의 고래의 전통으로, 커다란 버드나무 나뭇단을 가지고 와 땅에 놓고 하나하나 늘어놓으면서 주문을 외다. 그리고 주문을 외면서 다시 나뭇가지를 모으고 또 다시 하나하나 늘어놓는 점술이다.²⁶⁾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전하는 게르만족의 신탁도 이와 비슷하

나무 등을 엮어 장식을 붙인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오보의 중심 기둥에 세워져 있는 목간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연결하는 신목을 상징하는 것으로 버드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몽골에서의 ‘어머니 나무’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 나무는 몽골어로 예지 모드, 혹은 오드강 모드로 불린다. 일부사람은 오드강 모드를 오드 모드(버드나무)와 관련 지워 설명하기도 한다. 장장식은 오보가 라마불교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장장식, 2005, 『몽골유목민의 삶과 민속』, 민속원, 64쪽), 여러 맥락에서 볼때, 오히려 기존의 전통적인 습속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습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2005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동북쪽의 타반 톨고이의 한 무덤에서 木棺에 담긴 여성의 유골과 황동 반지가 발견되었다. 고려대 한국학연구소의 연구 결과, 목관은 칭기즈칸 생존기인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초쯤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재질은 버드나무였다.

였음을 알 수 있다. 타키투스는 게르만족의 신탁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무로 점을 치고 운명을 묻는다고 한다. 즉 게르만족은 열매가 달린 나무에서 가지를 하나 꺾은 뒤 이를 가늘게 쪼개어 막대로 만들고, 이 막대기에 특정한 기호를 표시하여 구분하고, 이들 막대기들을 이용하여 점을 친다는 것이다. 기타 켈트족이나 나하나르발렌족 등의 게르만족은 숲을 특별히 경외하며, 후자의 경우는 여자 옷을 입은 성직자가 숲을 돌본다고 특기하고 있다.²⁷⁾ 스키타이족과 게르만족의 점복 형태가 서로 비슷함과 스키타이족의 신탁 나무의 수종이 버드나무였음을 고려해 볼 때, 게르만족의 신탁 나무도 버드나무였을 가능성이 짙다.

게르만족의 한 갈래라고 볼 수 있는 켈트족의 버드나무 숭배현상이 강하였음도 함께 고려할만 하다. 켈트족의 신화에 따르면, 이그드라실(Yggdrasil) 나무는 우주를 상징한다. 꼭대기는 하늘에 닿고, 가지는 세상을 덮고, 세 개의 뿌리는 죽은 자들의 땅, 거인들의 영역, 그리고 인간의 세계를 향하여 각각 뻗어나간다. 하지만 독수리가 잎을, 니드호그(Nidhogg)라는 뱀이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데, 이 나무가 쓰러지면 우주도 종말을 고할 것이다.²⁸⁾ 다른 켈트 신화에서는 우주는 진홍색 뱀의 알로부터 부화되었는데, 이 알들은 버들가지 속에 싸여 있었다고 하며, 버드나무는 박달나무와 함께 다른 세계로부터 영혼을 불러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²⁹⁾ 갈리아 및 브리타니아를 원정하면서 직

26) Herodos, *Historiai*, 4.67.

27) Tacitus, *Germania*, 10, 27, 39, 40.

28) M. Eliade 저, 최중성 외 역, 2005, 『세계종교사상사』 2, 이학사, 217쪽.

29) 다른 한편, 오딘은 아스크르와 엠블라라는 두 나무에서 최초의 한쌍의 인간을 창조했다고 한다. 아스크르는 서양 물푸레나무이며, 엠블라는 느릅나무를 의미하는 elm과 같은 단어로 추정된다. M. Eliade 저, 최중성 외 역, 2005, 위의 책, 주 46. 그런데 중국 심양의 북쪽 안쪽에 자리한 청 태종(홍타이지)의 무덤 한 가운데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 나무는 가끔 소나무, 혹은 버드나무로 소개되고 있으나, 2007년 필자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느릅나무였다. 왜 그 나무가 버드나무가 아닌가 하는 것은 과제로 남는다. 아이누족의 경우, 버드나무 숭배족과 (당)느릅나무 숭배족이 나란히 나타나며, 이때 느릅나무는 불과, 버드나무는 물과 보다 관계되는 듯이 보인다. 更科源藏, 『아이누신화』, 97쪽 참조.

접 켈트족과 접촉한 바 있던 로마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켈트족은 단지 하나의 여신밖에 없다고 하며 이를 미네르바라 불렀는데, 카이사르가 로마식으로 고쳐 불렀던 이 여신의 실체는 켈트족의 하늘의 여왕 브리짓이고, 그녀의 신성한 나무는 버드나무였다. 브리짓은 치유와 금속 공예를 주로 담당하는 세쌍둥이 여신으로 아기 잉태와 관련한 주술을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매년 2월 1일은 그녀의 축일이자 켈트족에게는 봄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인류 최초의 서사시로 알려진 「길가메쉬 서사시」의 「길가메쉬와 지하세계」에는 하늘의 여신 이난나와 버드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³⁰⁾ 이에 의하면, 세상에 단 한그루 버드나무(halub)가 유프라테스 강 연안에 있었는데, 폭풍으로 그 뿌리가 뽑혔다. 이난나는 이를 물에서 건져내서 우룩(인류 최초의 도시국가 중의 하나)에 심었다. 이난나는 자신의 순결한 왕관과 침대를 꾸미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 버드나무가 크게 자라자 나쁜 것들이 찾아들어, 뿌리에는 뱀이, 가지에는 천둥새(Anzud)가, 나무 등치에는 악령 여인이 등지를 틀었다. 이난나는 아버지 하늘신 아누(Anu)와 형제 태양신 우투(Utu)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마침내 우룩의 영웅 왕, 길가메쉬가 이난나의 청을 들어 도끼로 뱀을 쳐 죽이자 새는 놀라서 산으로 도망하고 악령 여인도 황무지로 도망갔다.³¹⁾ 이러한

30) 「길가메쉬와 지하세계」, 142-3 ; S.N. Kramer, 1936, "Gilgamesh and the Willow Tree," *Open Court* 50, p. 100 ; H.G. May, 1939, "The Sacred Tree on Palestine Painted Pottery,"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59-2, p. 255 참조.

31) 구약성서 『창세기』에 의하면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창조된 것은 초목이었다. 에덴에는 여러 나무들이 있어서 생명활동에 관여할 뿐 아니라 선악의 판단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여러 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시편 137편에서 바빌론 강가에서 버들가지에 수금을 걸고 애통해 하였다는 등, 버드나무에 관련한 것도 여러 군데 나온다. 팔레스타인의 대표적 여신 아세라 역시 나무로 상징되었고, 종려나무나 버드나무 등도 여신과 관련되었다. 버드나무는 이집트의 최고의 여신 이시스의 남편 오시리스의 시체가 안긴 나무이기도 하다. 오시리스를 담은 관은 페니키아의 해안에 있는 타마리스크(버드나무의 일종) 밑에 닿았다. 이 나무는 비블로스 왕 궁전의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되었는데, 이시스가 결국 그 기둥을 넘겨받아 남편의 관을 꺼냈다고 전한다. A. Evans, 1901, "Mycenaean Tree and Pillar Cult

모티프는 페르시아의 우주수 고케레나(또한 이와 관련된 개구리와 두 마리의 물고기 카라) 이미지와도 닮아 있다.

켈트족의 버드나무 여신 브리짓과 메소포타미아의 이난나 여신 사이에, 즉 지리적으로 양자를 매개하는 곳인 그리스 로마에는 헤카테 여신 및 헤라 여신이 있다. 원래는 오리엔트 출신으로 추정되는 헤카테 여신은 버드나무 여신이자, 주술의 여신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대표적인 마녀 이미지를 가진 키르케는 강가에 버드나무를 가득 심어 헤카테 여신과 달의 마술에 바쳤다고 한다.³²⁾ 신들의 여왕으로 알려진 헤라 여신의 나무 역시 버드나무였던 점은 흥미롭다. 고대의 유명한 여행가 파우사니아스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알려진 나무는 사모스 섬의 헤라 성전의 버드나무(lygos)라고 말한다. 그는 사모스 인들은 헤라가 사모스의 강가 버드나무 아래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으며, 자신이 여행하던 당시에도 아직 이 나무는 자라고 있었다고 기술한다.³³⁾ 신들의 여왕 헤라 여신은 실제로 그리스의 어느 신들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숭배받았던 여신으로,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신전들(사모스의 헤라 신전, 페라코라의 신전, 아르고스 신전 등)은 모두 헤라에게 바쳐진 것이다. 올림피아 제전으로 유명한 올림피아에서도 제우스의 신전보다 훨씬 먼저 헤라 신전이 세워졌고, 남성 중심의 올림피아 경기 이전에 헤라 여신을 기리는 여성 제전이 먼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짙다.³⁴⁾

in its Mediterranean Relations,” *Journal of Hellenic Studies*, 21.

32) 헤카테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과 동일시되는데, 아르테미스 역시 버드나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파우사니아스에 의하면 아르테미스 여신은 동쪽의 타우리스인들과 관련하여 피 및 버드나무와 관련한 여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오르티아 아르테미스 여신은 버드나무 숲에서 발견되었고, 그녀의 신상조각을 버드나무가 지탱하고 있었다고 한다. Pausanias, 『여행기』, 3.16.1.

33) Pausanias, 『여행기』, 8. 23. 5 ; 7. 4. 4. 이 헤라의 버드나무 다음으로 오래된 나무가 바로 신탁으로 유명한 도도나의 떡갈나무, 그 다음은 아크로폴리스와 델로스의 올리브나무, 월계수나무 등이 있다고 파우사니아스는 덧붙이는데, 나무 숭배 중에서도 버드나무 숭배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34) 헤라 여신은, 신들의 여왕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등의 문헌 사료에서 질투심 많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여신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이

버드나무 여신 헤카테 혹은 헤라는 앞에서 언급된 이시스나 이난나 등 오리엔트의 여러 여신들의 이미지와도 겹치며, 이집트에서는 헤케트(Heket, Heget) 여신과 동일시된다. 개구리 또는 개구리 머리를 한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헤케트는 이집트의 시조신 중의 한 명이자, 생명 및 출산, 특히 왕들의 탄생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다.³⁵⁾ 헤케트 여신의 상징 나무는 버드나무인데, 유화부인과 개구리 금와왕의 결합이 생각나게 하는 여신이다. 또한 로마의 지모신인 ‘보나 데아’ 축제에서는 여성들이 일종의 버드나무에 눕는 의식이 있었다고 전한다. 보나 데아는 ‘좋은 여신’이라는 뜻으로, 풍요의 여신에 속하는데, 이 축제에는 남성들의 접근이 엄격히 금해지며, 여성들만 모여서 축제를 벌였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지모신인 데메테르를 섬기는 밀레시아의 테즈모포리아 축제에서 버드나무 침대가 사용되었다고 전한다. 이 축제 역시 남성들의 참가는 엄금되었다. 이 두 축제의 공통점은 남성의 참가를 엄금하였다는 것 외에, 집을 떠나 밖에서 일종의 천막 같은 것을 짓고 거주하는 등 평소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사회적 속박을 벗어나며, 요리법 등에도 ‘옛날’의 생활방식을 재현하였다는 것이다.³⁶⁾

이상 서남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나타난 버드나무의 상징이나 의미를 살

들 문헌 자료들은 특히 남성 독자를 주 대상으로 남성에 의해 쓰여졌던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며, 젠더 구분이 보다 덜 명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신전이나 의례 등의 민속학적, 문화학적 측면에서 볼 때 헤라 여신의 중요성은 확실히 드러난다.

35)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 세상의 시조신을 뱀과 개구리로 형상화하였다. 예컨대 헤르모폴리스 신전에는 여덟 남녀신이 그려져 있는데, 남신은 개구리 머리를, 여신은 뱀의 머리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개구리는 태초의 물에서 저절로 생겨난 양서류로 이 세상의 원천적 힘을 잉태시키는 여근을 상징하기도 한다. 물 혹은 강의 잉태력을 상징하는 개구리는 출산의 여신 헤케트 여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켈트족 신화에서도 개구리는 ‘대지의 주인’, 치유력을 가진 강의 신과 연관된다. 힌두 전통에서 개구리는 울음을 통해 겨울 가뭄을 끝내고 봄비를 내리게 하는 신성한 존재인데, 리그베다(Rig Veda)는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제1질료로서 ‘큰 개구리’를 언급하고 있다.

36) H.S. Versnel, 1992, “The Festival for Bona Dea and the Thesmophoria,” *Greece and Rome*, 2nd, 39, 1, p. 34 이후.

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버드나무는 대개 이난나, 브리짓, 헤카테, 헤라 등의 여신들과 결합하여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벽사, 풍요 혹은 마술 등의 주술적 기능이나 죽음과 연관된 이미지를 가진다는 점이다. 시체의 관에 버들가지를 넣는다든가 어린나이에 죽었을 때 무덤에 버드나무를 심는 켈트족의 관행은 만주족이나 아이누족의 경우처럼 버드나무가 죽은 자의 세계와 결합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치유나 풍요와 관련한 주술적 기능도 보인다. 고대 스파르타의 아르테미스 여신의 풍요의식에서도 역시 버드나무가 비옥함이나 풍성함과 관련되었음을 보여주며,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³⁷⁾는 버드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고, 그 사제들은 불임 여성의 침대에 버들가지를 비치하는 치료방법을 썼다.³⁸⁾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목축 생활과 관련되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켈트족은 유럽 내 대표적인 유목인이며, 고고학적으로 헤라의 본래 모습은 ‘동물들의 여왕’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 또한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로마의 축제일(Fasti)』에서 버드나무는 ‘늑대, 루페르칼리아 축제, 늑대 아기 로물루스와 레무스, 목동, 목동의 신 파우누스’ 등과 연관된 대목에서 나오는 등, 모두 유목사회적인 배경과 관련되어 있다.³⁹⁾ 베르길리우스의 『選詩(Ecloges)』에서도 버드나무는 전반적으로 유목적 환경과 짝지어 나타난다. 예컨대 버드나무는 요정 갈라테아와 함께 나타나는데, 갈라테아는 목동의 신 파우누스 혹은 판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던 비운의 요정이었다. 또한 판 신의 고향이자 목축의 고향 아르카디아와 아민타스 등이 버드나무와 함께 등장하는데, 아민타

37) 아스클레피오스의 이름 중의 하나인 아그니타스는, 그가 버드나무의 일종인 아그누스 카스투스로 만든 나무 조각상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Pausanias, 『여행기』, 3.14.7.

38) 또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표적 시인 오르페우스는 지하세계 하데스를 방문하였을 때 버들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래하고 말하는 능력을 얻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오르페우스는 델포이 신전의 부조에 버드나무에 기대어 그 가지를 만지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C.M. Bowra, 1952, "Orpheus and Eurydice," *The Classical Quarterly*, n. s. 2, 3/4, p. 123 이후 참조.

39) Ovidius, *Fasti*, 2. 359. 염소가 파우누스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내장은 버드나무 꼬챙이에 꿰어져 장만된다.

스는 화살에 목숨을 잃게 되는 목동 출신이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버드나무는 목동, 목신, 목축적 배경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즉 버드나무는 농경민과 관련 깊은 올리브 나무와 대조적인 상징물로, 보다 자연적이며 원시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⁴⁰⁾

2_ 유라시아 지역 버드나무 숭배의 배경

유라시아 전반에 걸쳐 버드나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서에서 산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버드나무와 물의 상관관계가 아닌가 한다. 버드나무와 물의 친연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어서, 고금을 막론하고 풍수지리에 정통한 이는 으레 버들가지를 이용해 물길을 찾는다. 물은 농경민에게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수렵이나 어로, 유목을 주로 하는 이들에게는 물길은 직접적 생존과 관련이 깊었다. 이들의 거주지는 대개 겨울이 춥고 길 뿐만 아니라, 이동이 심하여서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기가 농경 지대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웠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버드나무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가까이 풍부한 물이 있음을, 곧 생명과 생존의 원천을 찾았음을 의미하였을 것이다.⁴¹⁾ 아부카 허허, 포구룬과 물과의 연관성은 물론이고, 고구려 유화부인의 아버지도 물의 신, 河伯이어서 버드나무의 물과의 동질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버드나무 숭배가 불을 삼가거나 불을 중시하는 의식과 함

40) Vergilius, *Ecloges*, 1, 64 ; 3, 64 ; 5-16 etc ; 아폴로도로스의 신화(2-157)에서는 버드나무관이 형벌의 의미로 프로메테우스와 연관지어져 설명되고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류 최초의 불을 버들가지에 숨겨 인간에게 전해 주었다.

41) 중국의 자연과학동화집 『사막의 정복자 버드나무』는 사막의 마왕(뜨거운 바람과 모래)과 버드나무 씨앗들이 사막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다. 버드나무가 뿌리 끼리를 서로 얹으며 물길을 찾아 땅속 깊숙이 뿌리내리면서 마침내 사는 데 성공하자, 복숭아등 다른 나무들도 더불어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버드나무의 속성 및 버드나무의 생명력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춘린 외 저, 국제문화 역, 2004, 『사막의 정복자 버드나무』, 웅진닷컴.

께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포도마마를 모시는 만주족의 제례의식에 서의 불을 끄는 피동제는 물론, 한식 같은 절후가 곧 그러한 예이다.⁴²⁾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청명절, 혹은 이를 전후한 한식날이면 아궁이의 묵은 불을 꺼트렸다가, 이튿날 내병조(內兵曹)에서 버드나무로 일으킨 새 불이 임금에게 바쳐지면, 임금은 그 불씨를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관청과 대신들 집에 나누어 주는 관례가 있었으며, 모든 가정은 일제히 이 버드나무 불씨로 아궁이에 새 불을 붙였다고 한다. 이처럼 상서로운 불을 처음 지피는 데 버드나무⁴³⁾가 깊이 관여하게 된 것도, 버드나무의 물과의 친근성, 나아가 물과 불의 상극 관계를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두 번째는 버드나무 이파리가 여성의 성기 모양을 닮은꼴인데다, 가장 이른 봄에 싹과 꽃을 피우는 수종에 성장속도도 빨랐다는 점이다. 특히 가지만 꺾어서 심더라도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리는 강인한 생명력⁴⁴⁾까지 지니고 있으므로, 일종의 同氣感應식 주술법의 일환으로서 창조의 여신이자, 생명의 여신, 나아가 어린이의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⁵⁾

42) 청명 절기 만주족들의 분묘 습속은 한족과 다르다. 한족은 장지를 분묘에 꽂아둔 뒤 분묘 입구에서 종이를 태우지만, 만주족은 버들가지를 꽂아둔다. 청명절기와 겹치는 한식날의 기원이 된 개자추는 버드나무 밑에서 불에 타 죽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문에 버드나무를 꽂았다고 한다. 그런데 개자추의 고향이자 불에 타 죽은 면산은 산서성에 속한다. 이곳은 중국의 두 개 문명, 북쪽 유목민족과 남쪽 황하문명의 접경지로, 핏 이후 비로소 남방문화를 받아들였던 지역이다. 개자추의 죽음을 초래한 핏 文公은 가죽옷을 좋아해 양가죽 옷이 유행했다는 고사가 함께 전한다. 이는 진문공이 중국 제패를 위해서 유목사회와 접촉하였고 그런 와중에서 개자추와의 갈등 및 개자추의 殉死도 전해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43) 開火 의례에서 봄에는 버드나무나 느릅나무, 여름에는 살구나 대추, 겨울에는 회나무나 박달나무가 활용된다. 아이누족의 경우는 당느릅나무가 압도적이다.

44) 이시진의 『本草綱目』에서는, “양류는 세로든, 가로든, 거꾸로 꽃든, 바로 꽃든, 모두 산다”고 한다.

45) 이러한 속성들은 버드나무의 학명인 라틴어 살릭스(Salix)와도 일맥상통한다. ‘salix’의 어원들 중 하나는 ‘멀리 뛰다’의 뜻으로, 버드나무가 빨리 성장하는 데서 연유한다는 설이 있다. 두 번째는 켈트어로 ‘가까움’을 의미하는 ‘sal’과 ‘물’을 의미하는 ‘lis’가 합성된 낱말로서, 버드나무가 물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불

세 번째는 실제적인 유용성이다. 이른 봄의 버드나무 열매나 잎은 먹을 것이 궁하던 절기에 사람의 간식거리로부터 사슴의 먹이 등으로 활용되었다. 버들가지나 기둥은 집이나 천막을 세우거나 바구니를 비롯한 여러 가구, 나막신, 회초리를 만들거나 숯으로도 활용되었다. 또한 수레바퀴, 방패, 화살대 등의 재료로도 많이 쓰였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로 헤로도토스의 『역사』나 카이사르의 『갈리아전기』 및 『내전기』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버드나무를 이용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예컨대, 페르시아군은 버들가지로 엮은 가벼운 방패를 들고 있었고 방패 밑에 화살 통을 달아놓고 있었다고 하며, 마실리아 군대는 버드나무를 엮어 방벽을 만들었다고 전한다.⁴⁶⁾ 약재로도 쓰여서, 진통제나 해열제로 쓰였다. 오늘날 아스피린의 주원료가 버드나무라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학질에 걸렸을 때 버드나무 잎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관행도 이를 나타낸다.

IV. 우리나라의 버드나무 신화소와 그 역사적 해석

우리나라 신화에서도 버드나무 신화소는 많게는 아니라도 매우 의미심장하게 등장한다. 무엇보다도 고구려의 국모신 역할을 담당한 유화부인은 버드나무 꽃 부인 혹은 여신이다. 유화 신화는 만주족의 포구룬 신화와 매우 흡사한데, 여러 면에서 미루어 그 닮은 점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⁴⁷⁾ 만주족의 옛

여진 이름이라고 보는 설이 있다. 모두 버드나무의 물과 가까운 성질과 빨리 자라는 성질을 밝힌 것이다.

46) Julius Caesar, 『내전기』 2권 기원전 49년. 2.

47) 필자는 국모신으로서의 유화를 그리스의 국모신 데메테르 등과 연관하여 본 글을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 부분은 이를 토대로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최혜영, 2006, 앞의 글. 그런데 유화 등의 이름과 관련하여, 이름을 한자로 쓸 때 음을 차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유의해야 하지만, 고대인은 대체로 이름에 의미나 기원을 담아 부르는

수도 심양의 고궁에 비치된 민족의 기원과 관련된 그림 자료를 보면, 만주인들이 장백산(백두산)에서 버드나무를 배경으로 노니는 세 명의 여인을 시조삼아 민족이 발원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왔다는 단군 신화와 유화를 비롯한 세 자매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강림한 산도 바로 楊山, 즉 버드나무 산이며, 신라 시조 묘와 관련하여서도 버드나무가 언급된다.⁴⁸⁾

『규원사화(揆園史話)』에는 신시씨(神市氏) 단군이 쑥대와 버드나무 궁궐에 거처하였다는 기사⁴⁹⁾가 나온다. 이는 만주족 시조 부库里翁순이 버들가지를 엮어 앉은 자리를 만들었다는 내용과 흡사하며, 마루에 앉은 수장인 ‘마립간’을 연상케 한다. 『규원사화』는 사료의 진위 여부에 여러 시비가 있지만,⁵⁰⁾ 현존 사료들을 비교해 본다면, 두 민족의 시조들이 버드나무와 쑥이라는 신화소를 통하여 서로 관련되어 있음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다. 지금 우리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버드나무라는 신화소가 만주족 건국신화나 규원사화에 이렇게 단편적인 단어로나마 후대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당시의 문화 토양과 당시인의 심성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주족 신화와 단군 및 유화 관련 신화를 함께 본다면, 어쩌면 단군신화에 나오는 신단수도 버드나무였으며, 신라의 금관에 나오는 수목형 이파리도 버드나무 잎이었을 가능성

경향이 강했다. 이는 말의 주술성에 대한 신념에 기인한다. 특히 현전하는 고구려의 이름들은 유래나 특징 기원을 담아 작명된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 금색 개구리를 닮았다고 해서 금와왕이 되었다든지, 화살을 잘 쏜다고 주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등이다.

48) 『三國史記』 新羅本紀, 나해왕(奈解尼師今 3年 始祖廟前臥柳自起); 첨해왕(沾解尼師今 7年 金城南臥柳自起).

49) ‘환웅천왕이 세상을 거느린지 무릇 꺾천년이니, 그가 바로 신시씨이다. 쑥대 정자와 버드나무 궁궐에 거처하였다(桓雄天王御世, 凡闕千歲, 是卽神市氏. 蓬亭柳闕而居).

50) 1675년(숙종 2년)에 北崖老人이라는 자호를 가진 야인이 쓴 역사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영대는 사료의 진위성에 의구심을 가지되, 삼국유사, 제왕운기, 응제시주, 규원사화 형의 네 가지로 사료를 분류하는 등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며, 조현설 역시 규원사화 역시 단군신화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조현설, 2003, 앞의 책, 197쪽.

도 없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언어학적으로 버드나무를 가르키는 만주어 ‘포도(Fodoho)’는 한자의 ‘류(柳)’, 혹은 ‘양(楊)’과는 음이 판판인 반면, ‘버드’ 혹은 ‘버들’이라는 한글 발음과는 매우 가깝다는 점이다. 한글로 傳寫하기 어려운 만주어의 순음을 [ʃ]를 근사한 한글음 ‘포[p]’이 아닌 역시 근사한 한글음 ‘ㅂ[p]’으로 傳寫한다면, 만주어 ‘보도(Fodoho)’는 더욱 한글의 ‘버드’와 近似하게 느껴진다.

참고로, 우리나라 신화에서 버드나무 혹은 그 잎과 관련한 신화소는 왕과 같이 주로 신분이 높은 이들과 관련되어 등장하며, 더욱이 여성과 관련해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은 이미 연구되어 있다.⁵¹⁾ 이는 독자적인 버드나무 여신 국모신이 점차 남성적인 세계와 접촉한 결과가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버드나무는 祈雨나 여러 벽사 기능과 관련되어 있었다. 성현의 『용재총화』에서는 기우제를 기술하면서, 집집마다 병에 물을 채우고 버들가지를 꽂았다고 전한다.⁵²⁾ 이 외에도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문 도령과 만나는 것도 버드나무 이파리를 매개로 해서이며, 「이공본풀이」에서 한락궁은 버드나무를 이용해 서천 꽃밭에서 아버지와 해후하는 등 버드나무는 서사무가에서도 나오는 데, 그 의미나 상징은 위에서 지적된 것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점차 농경생활이 주류를 이루면서, 중국처럼 농경생활과 관련한

51) 예컨대 고려 태조 왕건의 첫 부인 이름은 유화이며, 둘째 부인 오달영의 딸은 버드나무 이파리를 매개로 만난다. 왕건이 궁예를 물리치는 데 결정적 조언을 해 준 신혜왕후 유씨도 왕건이 버드나무 밑에서 쉬다가 만나게 되었으며, 이성계 둘째부인 강씨도 마찬가지로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 1-7, 경기도 강화편, 928쪽, 530쪽; 이수자, 1995, 「설화에 나타난 버들잎 화소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vol. 2, 고려 경종의 부인 현정왕후 皇甫씨는 안종과 사통하여 임신한 후, 문 앞의 버들가지를 붙잡고 아이를 낳았고, 이가 고려 현종이 되었다고 전한다. 『고려사』 권 88, 후비 열전 1 참조. 송악이라는 고려 수도 이름이 상징하듯이 왕건은 소나무와 친연성이 강함에 비교하여, 버드나무는 왕비 등과 강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52) 향아리 속에 도마뱀을 넣고, 버들가지로 향아리를 치며 비를 기구하였다고도 한다. 이능화는 『조선무속고』에서 이러한 습속은 불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양류관음보살이 손에 버들가지를 가지고 감로수를 뿌리고 있는 것도 한 예라 한다. 하지만 버드나무 여신과 관련된 전통적 신앙습속에 불교가 습합된 것이 아닐까 하는 필자의 생각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복숭아나무나 뽕나무가 버드나무보다⁵³⁾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 53) 우리나라 민화 중에 나무꾼과 사냥꾼에 관한 이야기나, 유리왕 때의 화희와 치희와의 갈등을 농경민과 수렵민의 갈등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지 모른다. 서사무가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와 문 도령 및 머슴의 관계에서도 이는 암시된다.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하는 가장 오래된 신화 중에는 '암양 여신과 곡물 여신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하늘의 여신 이난나가 '농부와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목동과 결혼할 것인가'처럼, 농경과 목축사회의 갈등에 관한 것들이 많이 전한다. 사마천은 만주에 거주한 무리들을 위치, 생활양식, 종족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적었다.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조선은 대체로 발해연안과 요동반도 등 만주남부 지역이다. 생활양식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종족을 濊로, 사냥에 종사하는 종족을 貊으로, 유목에 종사하는 종족을 胡로 적었다. 유라시아를 넘나들었던 유목민족들을 오늘날의 민족이나 종족의 개념으로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시대착오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되기 쉽다. 이들을 유목적 수렵적 생산양식으로 이 동생활이 심하였던 이들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농경민과의 경계가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니었다. 헤로도토스가 대표적 유목민 스키타이족을 농경 스키타이, 농민 스키타이, 유목 스키타이, 왕령 스키타이 등으로, 즉 농업을 하면서 교역을 함께 하였던 이들, 순수 농업을 하는 사람들, 유목을 주로 하였던 이들, 유목 제국을 세웠던 이들로 나누었던 것도 유목민들의 다양성을 대변해 주는 서술이라 보인다. 중국 시경에도 본래 반농반목하던 견용 등이 순수 유목민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당대 낙산의 팔지보에 의하면 하의 결왕이 은의 탕왕에 의해 추방당해 3년 만에 죽자 그의 아들 훈족이 결의 처첩을 처로 삼고 북방의 벌방으로 피해가서 유목생활을 영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유목민이라는 종족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생활 유습에 따라 변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상고사에서 우리민족과 유목의 전통과의 친연관계는 후대의 역사에서도 빈번하게 지적된다. 肅愼의 후예였던 말갈이 대조영과 더불어 발해를 세우는데 문제가 없었는 점이나, 여진족의 금조가 고려와 유대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예컨대 여진족 아골타는 1117년 보낸 편지에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으며(『고려사』예종 12년 3월 癸丑條, “高麗爲父母之邦”), 금왕조와 송왕조가 정통성 논쟁을 벌일 때 고려와의 민족적 일체감을 드러냈던 것(『金史』張信行傳)이 또한 그러하다. 이를 단순한 외교전략으로만 읽을 수는 없을 듯 하다. 조선시대에서도 이는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만강 유역의 조선족과 여진족들은 매우 밀접한 관련아래 서로 통혼도 하였을 것이다. 여진은 “靺鞨里豆漫夾溫猛哥帖木兒, 火兒阿豆漫古論阿哈出, 托溫豆漫古卜兒闊”. 『龍飛御天歌』 7권 제5장의 주석 참조. 이런 연유로 함경북도의 회령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청 태조 누르하치와 관련된 전설이나 민담이 더욱 많이 전승되어 왔을 것이다. 누르하치의 조상은 지금의 조선 회령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중상류의 알타리 혹은 오도리(靺鞨里) 부락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부락은 조선 왕조로부터 만호, 사직호군 등 벼슬에 책봉되기도 하였다. 세종기의 육진개척으로 波猪江 일대로 이주한 알타리 부족이 후일의 건주여진으로 되고, 이 부족에서 누르하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여러

예컨대 귀신을 쫓는 나무로는 복숭아나무가 잘 알려져 있으나, 더 원형적 모습을 간직함직한 제주도에서는 버드나무가 여전히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유화부인은 주몽에게 오곡의 씨앗을 전하는 등, 곡모신으로서의 역할을 더하여 살아남는다. 이는 유목생활 양식을 계속 영위하면서 버드나무 숭배 습속을 강하게 이어갔던 만주족과는 다른 점이다. 만주족의 『천궁대전』에서는 곡물 여신과 관련한 묘사는 나오지 않는다. 즉 보리 콩 등의 기록은 전혀 없고 다만 꽃이나 과일을 관장하는 여신 정도가 나올 따름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록은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건과 관련한 기사이다. 『고려사』 첫 장 왕세계⁵⁴⁾에 보면, 작제건이 바다 용왕의 딸을 아내로 삼고 용왕이 준 선물 칠보를 가지고 육지로 돌아오려고 하였을 때, 용왕의 딸은 칠보보다도 ‘버드나무 지팡이’와 ‘돼지’가 더 귀중한 보물이므로 이를 청하라고 조언한다. 결국 작제건은 칠보 외에 돼지를 얻어 돌아오게 되고, 얻어온 돼지는 왕건 집안이 송악에 거처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⁵⁵⁾ 그러

맥락에서 고대 우리 민족 형성에 중요한 한 갈래를 형성하였던 유목적 전통도 살펴서, 우리 민족을 예맥족이라 부르기도, ‘예맥호’족으로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54) 『고려사』 중 특히 왕세계는 고려 의종 때에 기록된 『편년통록』을 참작하여 기록된 것이다. 『편년통록』은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지만, 시기적으로 『삼국유사』보다 더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던 것이므로 보다 원형적인 모습을 전하고 있었을 수 있다.

55) 작제건 신화의 원형은 『삼국사기』 고구려 유리왕條의 돼지 이야기와 『삼국유사』의 거타지 이야기 등으로 추정되며, 여러 면에서 조작의 흔적이 강한 정치적 신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 형성 당시의 숨겨진 역사적 배경을 짐작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삼국사기』 유리왕條에 의하면 “21년 3월 제사에 쓸 돼지가 달아나자 薛支에게 명하여 뒤쫓게 하였다. 그는 돼지를 쫓아 국내 위나암에 이르렀고, 왕에게 지세가 ‘땅이 오곡을 키우기에 알맞고’, 다른 산물도 많아 수도를 옮길 것을 권고하였다. 왕이 4월 위중림에서 사냥하였는데, 8월에 지진이 일어나고 다음 달 왕은 국내로 가서 지세를 보고 돌아온다.” 이어서 22년조에는 “10월 드디어 유리왕은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는데, 12월 왕이 사냥에 나가서 며칠이나 돌아오지 않자 협보가 이를 말리다가 왕의 분노를 사서 한직으로 밀려나자 분하여 南韓으로 도망한다.” 필자는 이 역시 농경과 수렵목축사회의 갈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기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환인에서 국내로 수도를 옮긴 주된 이유는 오곡, 즉 농경생활과 관련 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왕은 수렵적 전통을 버리기가 힘든 듯 수렵에 나선다. 그 뒤 지진이 일어나자 하늘의 뜻으로 여겨 천도하게 되지

나 버드나무와 관련해서는, 버드나무가 왜 칠보보다 더 중요한 보물로 여겨졌는지, 또 정작 용왕으로부터 얻게 되는지 혹은 아닌지, 만약 얻어왔다면 어떤 역할을 하였을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해가 힘들지만, 당시 버드나무 지팡이는 무언가의 중요한 의미다발, 혹은 상징다발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신화라는 것이, 후대로 전승되면서 시대마다 이데올로기나, 실권자의 의지, 각 편찬자의 취향에 따라서 첨삭, 윤색, 변화되지만, 그 핵심 덩어리는 여전히 보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돼지가 전 세계적으로 농경 및 비옥함과 관련되는 상징 동물임을 염두에 둔다면(특히 돼지는 다리가 짧고 이동이 불편해 유목민들이 기피하는 동물에 가깝다), 작제건이 요청한 버드나무 지팡이는 유목민의 풍요와 관련되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고려왕조는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자처하였지만, 점차 유교적, 중국적, 농경적 전통을 중시하면서 유목의 전통과는 멀어졌던 왕조였는데,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버드나무 지팡이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는 고려 이래 버들공예 및 목축과 관련된 이들이 사회의 최하층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주로 버들제품 제조, 수렵, 도살, 놀이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고려시대의 양수척, 화척 등이나, 조선 전기의 화척, 백정, 신백정, 화백정, 수척 등은 북방유목민족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⁵⁶⁾ 예컨대, 양수척은 원래 고리버들제품제조, 수렵 등으로 생업을 삼았던 사람들로 북방유목민족에 가까웠고, 실제로 이들은 거란족이 고려를 침입하였을 때 그들의 길안내를 맡는 등 쉽게 유목민이었던 거란족에 동화되기도 하였다.⁵⁷⁾ 조선 전기의 화척 등도 고려시대부터의 북방유목민의 후예로, 도

만, 이후에도 역시 수렵적인 전통과 농경적 전통 사이의 갈등이 협보 사건으로 재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가 또한 유리왕 당시의 화척(농경)와 치척(수렵)의 갈등으로도 재현된 것은 아닌가 한다.

56) 예컨대, 여진족을 함경도에 정착시키면서 천민 마을이 형성되었고, 동몽골 계통 사람들도 그러하였다. 평안남도 용강군의 말피의 재인들은 버들가지로 만드는 키고리 등을 비롯하여 체나 부채 등의 수공업 생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양수척과 관련이 된다.

살업에 주로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조와 조선조는 이들 북방유목민을 정착시키면서 ‘거란장’처럼 한 곳에 모여 살게 하고 천민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버드나무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흥미로운 습속 중 하나는 백중날 머슴들에게 버들가지로 만든 관을 쓰게 한 것이다. 또한 죽음이나 여성과 관련되었다. 우리나라의 장례 풍속에서 물에 불린 쌀을 시신의 입에 넣어줄 때 버드나무 수저를 사용한다든가 襲을 할 때 여자의 경우 버드나무 비녀를 꽂아 주며, 어머니상을 당하였을 때 버드나무 지팡이를 잡는 풍습 등이 그것이다. 가부장제 계급 사회에서 버드나무가 양반 남성이 아니라 특히 머슴이나 여성에게 쓰였다는 것은, 생명 탄생과 연관된 버드나무의 고래의 의미가 전해지기는 하되, 주류사회에서 점점 밀려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듯하다.

버드나무를 중심으로 한 신화를 비교해볼 때, 우리 상고사에서는 만주족, 나아가 유라시아의 여러 유목민들과 상통하는 수렵, 어로, 목축의 유목의 전통이 매우 강하였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고조선이나 부여, 고구려로 대변되는 이러한 유목의 전통은 농경사회로 접어들고 또한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천시되어, 계층적으로는 하층민, 영역적으로는 저승과 관련된 것으로 변질되면서, 궁극적으로 ‘타자화’된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이상에서 고대 한국을 비롯한 일본 홋카이도, 만주 등의 동북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 유럽의 그리스와 켈트족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일대에 걸친 지역의 버드나무 숭배에 관해 살펴보았다. 버드나무 신화는 지역 혹은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에서 차이점들이 없지 않으나 버드나무 신화소와 관련된 결론은 다음

57) 『고려사』, 권129, 열전42 최충헌전 참조.

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유라시아의 유목민 사이에 버드나무 신화소는 두드러진다. 인종적으로 구별되기보다는 생활양식으로는 ‘수렵적, 유목적’ 생활양식을 영위해 온 이들에게 두드러진다. 즉 농경보다는 수렵이나 어렵 혹은 목축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버드나무 신화소는 두드러진다.

둘째, 이들은 주로 주술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주술적인 내용으로는 생명 및 다산, 풍요, 질병치유, 벽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고 지상이나 지하세계 같은 세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셋째, 버드나무는 흔히 여신 혹은 여성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 유휘부인, 아부카허허, 이난나, 브리짓 및 헤라와 헤카테 여신 등이 그러하다. 그 이유는 버드나무 잎의 모습이 여성의 성기 모양을 닮아 있다든지, 버드나무의 생장력이 뛰어나서 여성의 생식력과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인 듯하다. 또한 여신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해가면서도 계속적으로 권력의 추이와 그 쟁탈에 관련되고 있었음도 살펴 볼 수 있다. 권력을 가진 남성이 버들가지 여성과 결혼한다든가, 버들가지 의자에 앉아 왕권을 차지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넷째, 농경생활에 접어들면서 이와 관련한 신화소들은 점차 퇴색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계층자체가 타자화, 천민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민족의 경우 상고사에서 유라시아 유목민들과 연관되는 유목민적인 요소가 강하였다. 특히 만주족과의 인종적 친화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민족이 농경화하면서 유목의 요소는 점차 변두리화되고 소멸해 간 것으로 보인다.⁵⁸⁾

58) 짧은 지면에서 다루는 시대와 장소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거친 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버드나무와 관련한 신화나 습속을 통해 유라시아 전반에서 발견되는 문명의 상호 비교, 교류 흔적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이 글에서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버드나무와 갖가지 동물이 연관되기도 한다.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유휘와 금와의 결합에서 드러나듯이 버드나무와 개구리의 결합이다. 그 외에도 늑대(개), 까마귀, 곰 등 신화소들이 버드나무와 맺는 연관성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차 사료〉

Herodotos, *Historiai*.

Pausanias, *Periegesis*.

Julius Caesar, *De bello Gallico*.

Tacitus, *Germania*.

Vergilius, *Ecloges*.

Ovidius, *Fasti*.

사마천, 『사기』 열전.

이승휴, 『동명왕편』.

『고려사』.

『천궁대전』.

〈2차 사료〉

Batchelor J., 1901, *The Ainu and their Folklore*, London.

Bowra C. M., 1952, "Orpheus and Eurydice," *The Classical Quarterly*, n. s. 2, 3/4.

Eliade M. 저, 최종성 외 역, 2005, 『세계종교사상사』 2, 이학사.

Evans A., 1901, "Mycenaean Tree and Pillar Cult in its Mediterranean Relations," *Journal of Hellenic Studies*, 21.

Smoljak A. V., 최길성 역, 1988, 「나나이족의 영혼관」,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민음사.

May H. G., 1939, "The Sacred Tree on Palestine Painted Pottery,"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59-2.

Kramer S. N., 1936, "Gilgamesh and the Willow Tree," *Open Court* 50.

江上波夫, 1948, 『ユウラシア古代北方文化』, 東京.

更科源藏 저, 이경애 역, 2000, 『아이누신화』, 역락.

富有光, 1990, 『薩滿教與神話』, 遼寧大學出版社, 제4장, 柳祭.

新浜蠻族 자치현만족문화연구회, 1997, 『신빈만족문장』.

『서북민족문학사』, 1995, 북경: 천진고적출판사.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2000, 『동북아시아샤머니즘 문화』, 소명출판.

- 박원길, 1998, 「코톨라칸의 즉위의례에 나타나는 神木繞旋儀式에 대하여」, 『中央史論』 10.
- 박원길, 2001,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마니즘』, 민속원.
- 서대석, 2001, 「동아시아 영웅 신화의 비교 연구」, 『동아시아 제민족의 신화』, 한국구비문학회, 박이정.
- 이수자, 1995, 「설화에 나타난 버들잎 화소와 서사적 기능」, 『구비문학연구』 2.
- 이종주, 1997, 「동북아시아의 성모 유화」, 『구비문학연구』 4.
- 이종주 외, 1999, 『왜 우리 신화인가』, 동아시아.
- 이종주, 1998, 「神들의 본풀이, 滿洲 神話」, 『한국고전연구』 4.
- 임재해, 1989, 「설화에 나타난 나무의 생명성과 그 조형물」, 『비교민속학』 4.
- 장장식, 2005, 『몽골유목민의 삶과 민속』, 민속원.
- 조현설, 2003,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서남동양학술총서, 문학과 지성사.
- 최원오, 2001, 「동아시아 알타이계 민족의 민족기원신화에 나타난 특징 연구」, 『동아시아 제민족의 신화』, 한국구비문학회, 박이정.
- 최혜영, 2005, 「고대 로마와 동북아시아의 신화 분석 : 늑대와 새」, 『지중해지역연구』 7-1.
- 최혜영, 2006, 「테메테르와 유화」, 『역사와 경계』 58.

[ABSTRACT]

A Study on the Myths of Willow Tree of the Eurasian
Contin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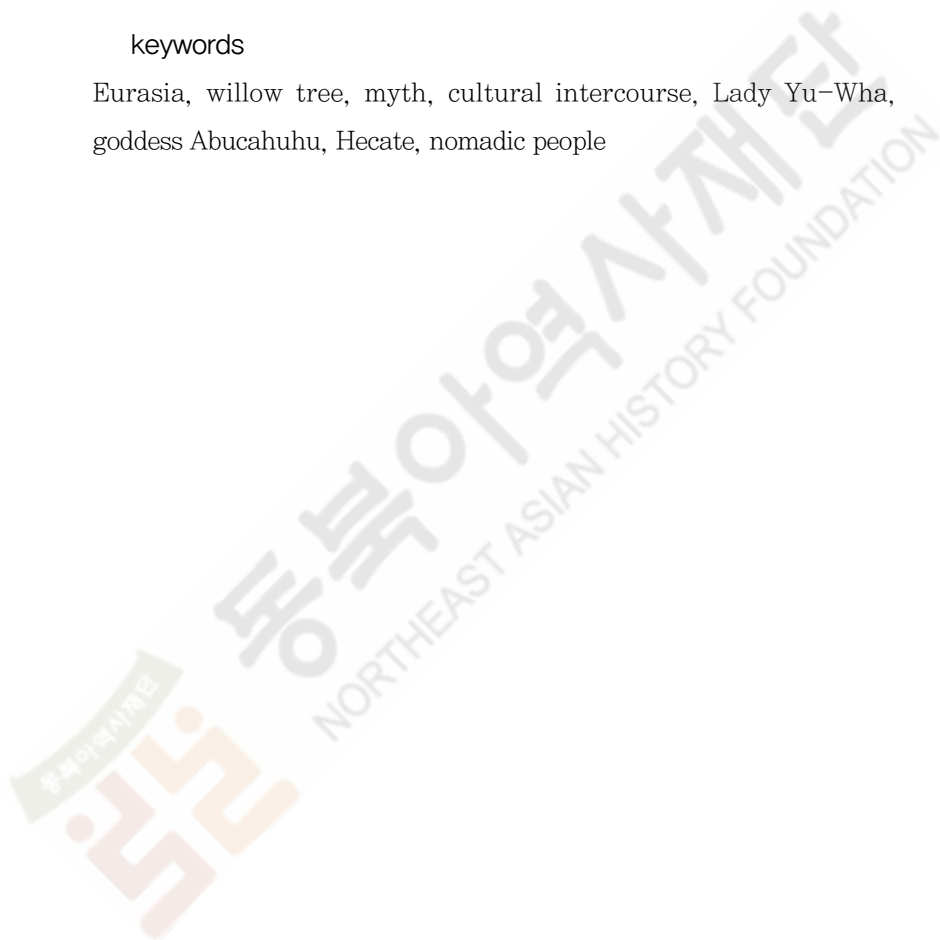
Choi, Haeyoung

This paper aims firstly to analyze the myths of willow tree which were spread widely through the large part of the Eurasian continent, that is, in the north-east Asia including Japan, Korea, and Manju area, as well as the Mesopotamian land and Europe. And then I try to compare those willow tree myths one to one, and lastly to underline the possibility of cultural intercours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ough this comparative study involves a leap of thousand years and miles, which means the very different social contexts in which the myths appeared and flourished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I could conclude as followings. Firstly, the worship of willow tree was prospered especially among those Eurasian nomadic peoples than peoples of agriculture- it seems to be deeply associated with nomadic customs and life styles. Secondly, the myths on willow tree were deeply related to the worship of goddesses, such as Abucahuhu of the Manju area, Inanna of the Mesopotamia, and Hecate in Greek myths. The ancient Korean people also had a willow goddess, the lady Yu-Wha, whose myth is strikingly similar with that of Manju. Thirdly, especially in case of Korea, the worship of willow tree began to wither according to the gradual replacement of the nomadic life style with that of agriculture. In short, the myths on willow tree allude to the

possibility of inter-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especially among those nomadic peoples.

keywords

Eurasia, willow tree, myth, cultural intercourse, Lady Yu-Wha, goddess Abucahuhu, Hecate, nomadic people



고구려 벽화의 북방문화적 요소

박아림 | 숙명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나온 최근의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저술들은 고구려 벽화의 기원과 벽화 제재가 ‘漢文化圈’에 속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진남북조시대가 아닌 한나라를 강조함으로써 고구려 벽화의 기원과 벽화 제재에 대하여 모두 한문화로 귀속시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고구려 벽화의 내용이 일부 고구려 민족의 생활 습관을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漢族 회화 예술의 풍격을 드러내고 있으며, 고구려 벽화는 초기 현실 생활 소재, 중기의 현실 생활과 四神이 결합된 소재, 그리고 후기의 사신을 위주로 한 벽화이든 관계없이 모두 한족 벽화 묘의 기초 위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의 고분미술과의 유사성을 강조함으로써 고구려 문화를 한문화로 완전히 귀속시키려는 논리가 보인다. 이러한 동북공정에 대하여 고구려 고분벽화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한문화권’에 속하는 특징(또는 한계 요소)에 대한 재고찰과 비한계 요소들을 찾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구성 요소로는 고구려 고유의 특징과 중국의 漢나라로부터의 요소(漢文化圈, 또는 漢系 요소), 인도와 중앙아시아로부터 전래된 佛教의 요소와 西域의 요소 등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 고분미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한대의 고분미술의 주제와 벽화 구성의 특징을 한문화권 요소, 또는 한계 요소로 흔히 칭한다. 한나라 이후 북방민족의 정복과 불교미술의 유입의 영향을 받은 위진남북조시대 이후의 고분미술에 보이는 요소들이 불교적 요소, 서역적 요소 등의 非漢系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비한계 요소에는 고구려, 흉노, 선비, 유연, 돌궐 등 여러 유목민족의 문화와 미술에서 보이는 북방문화적 요소가 있다. 흉노, 유연, 돌궐 등의 북방민족들의 미술자료가 충분치 않은 반면 선비족의 경우 탁발선비의 고분미술, 불교미술 유물과 유적이 많아 고구려와의 비교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한계 요소와 비한계 요소의 정확한 정의와 구체적 특성을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 않다. 이들 제 요소들의 융합 과정과 정확한 구분에는 고구려, 중국,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의 문화와 미술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또한 외래계 요소일 경우 유입되는 순간부터 해당 요소를 받아들이는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취사선택과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고구려 벽화 속의 불교적, 서역적 요소라는 것도 이미 고구려 내에서 고구려화된 불교적, 서역적 요소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漢系 요소(한문화권)와 非漢系 요소에 대한 재고찰을 위해 먼저 동북공정과 연관하여 나온 고구려 벽화의 한문화권(한계 요소)에 대한 중국 측의 고구려 벽화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고구려 벽화의 비한계 요소를 정의해 보고, 세 번째로는 고구려를 비롯한 유목민족 미술에 보이는 북방문화적 요소를 고찰한다. 고구려 벽화의 북방문화적 요소의 기원과 형성의 외래적 배경으로 스키타이와 흉노의 초원유목문화를 살펴보고, 동시대 유목민족(유연, 돌궐, 모용과 탁발선비족) 미술의 북방문화적 요소와 비교한다.

II. 고구려 벽화의 漢系 요소(漢文化圈)와 非漢系 요소의 구분

1_ 고구려 벽화의 한계 요소 강조를 통한 중원(한)문화 귀속 논리

고구려 고분벽화의 기원에 대하여는 중국의 한나라로부터의 고분미술이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이제까지의 연구의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나온 중국의 최근 저술들은 고구려 벽화의 기원, 주제 등이 한문화권에 속함을 강조하여 고구려 고분벽화의 중원(한)문화 귀속을 주장하고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고구려 자체의 내재인소를 먼저 인정하고 나서 중원의 선진문화의 영향을 언급하는 정도로 중국과의 연관관계를 지적하였다.¹⁾ 그러나 최근에는 고구려 고분과 벽화는 중국의 한문화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고구려 벽화 연구에 있어서 고구려와 중국과의 단선적인 교류관계에만 시각을 제한시키고 있다.²⁾ 또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위진남북조 시대 중국의 미술과 비교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의 논문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진남북조시대가 아닌 한나라를 강조함으로써 고구려 벽화의 기원과 벽화 제재에 대하여 모두 한문화로 귀속시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고구려 벽화의 내용이 일부 고구려 민족의 생활 습관을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漢族 회화 예술의 풍격을 드러내고 있으며, 고구려 벽화는 초기 현실 생활 소재, 중기의 현실 생활과 四神이 결합된 소재, 그리고 후기의 사신을 위주로 한 벽화이든 관계없이 모두 한족 벽화묘의 기초 위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³⁾ 고구려의 벽화에서 보이는 묘주인의 연회도, 출행도, 주방도 등에서 한나라 시대 묘실 벽화를 옮겨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해,

1) 李殿福, 1980, 「集安高句麗墓研究」, 『考古學報』 1980年 2期.

2) 劉永智, 1982, 「高句麗壁畫與中國文化的關係」, 『學術研究叢刊』 1982年 4期.

3) 趙東艷, 1995, 「高句麗文化中的漢文化因素」, 『遼寧大學學報』 1995年 3期.

달, 별의 그림 역시 중원 고분벽화에서 자주 보이는 소재이고, 벽화 속의 연꽃과 불상 그리고 仙人 역시 중원문화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닌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 세워진 벽화묘를 모두 한족 벽화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으로, 동위 여여공주묘, 복제 누예묘 등 북방 이민족에 의해 세워진 벽화 고분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陳鵬·陳琳은⁴⁾ 고구려 문화란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이 중국의 한문화에 영향을 받아 만든 것이며, 다원 일체적인 중화 한문화의 한 구성부분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중원문화의 영향은 고구려문화가 중화민족 및 한문화에 기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구려문화는 결국 한문화권에 서 조성된 소수민족의 문화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가 중원 지역의 단일한 문화 중심으로 발달하지 않았으며,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음은 하남성 안양의 청동기와 사천성 삼성퇴의 청동기와 비교에서도 보인다. 춘추전국시대 청동기의 상감기법이나 동물모티프가 초원북방문화의 영향을 받은 점은 중국문화가 외부와의 끊임없는 교섭과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흔히 한나라 고분회화미술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마왕퇴 벽화 역시 중국의 중원지역이 아닌 호남성 장사지역에서 나온 점이나, 이 지역이 전국시대 초나라 문화에 기반한 곳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화상석의 발달 면에서 보면 하남성, 섬서성, 산둥성, 사천성 지역의 화상석 제재나 표현기법에서 지역적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성을 지닌 개별 지역의 문화를 다원 일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문화권’ 안에 모두 묶어버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여기서 ‘한문화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대적으로 한나라 시대가 아닌 신석기, 상주, 진나라까지 ‘한문화권’으로 통칭함으로써 ‘한문화권’의 시대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경철화(2000년)는 고구려가 한나라의 속국으로서 비록 고구려 후기의 벽화무덤에 나타난 사신그림의 형상이 민족적,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으나 기원이 한나라의 벽화와 畫像石, 畫像磚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 그는 고구

4) 陳鵬·陳琳, 2005, 「高句麗文化歸屬於中國東北“漢文化圈”」, 『東北史地』 2005년 5기.

려 후기의 사신도의 사실적 특징과 예술적인 기법을 인정하면서도 고구려문화의 뿌리가 한문화라고 못박고 있다. 고구려 벽화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주제로 주로 언급되는 사신도에 대하여 후기 사신도의 뛰어난 기술과 독자적인 특징의 창조라는 점을 무시하고 단지 사신도의 연원이 한나라 문화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고구려 벽화의 독자성 자체를 폄하하거나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논리를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에서 보는 고구려 벽화의 한문화권 귀속 논리에 대하여 한문화권(또는 한계 요소)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비한계 요소인 북방문화적 요소, 서역적 요소, 불교적 요소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계 요소와 비한계 요소의 정의에서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소위 한계 요소라고 하는 인물과 생활풍속 제제는 전세계적으로 고분미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다. 이집트, 로마, 에트루스칸 벽화의 주제를 보면 한의 고분 벽화와 같이 생활풍속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전까지 한계 요소로 여겨져 왔던 것들도 동서양고분미술사의 관점에서 보면 한계 요소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구려 벽화의 제 요소에 대한 기존 연구를 확대하여 고구려 벽화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요소의 연원을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미술 등 큰 범위에서 다양하게 찾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나라 벽화 고분에서 이민족 중심의 위진남북조 벽화고분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문화권의 요소는 이미 많이 제거되고, 동북과 서북 변경 지방의 북방민족의 특색이 많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한문화(또는 한계 요소)와 대비되는 의미로서 한문화권이 아닌 북방문화권에서 나온 고구려 벽화의 특징을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2_ 고구려 고분벽화의 非漢系 요소 중 북방문화적 요소의 정의

동아시아 고분벽화 발달사에서 보면 한나라에서 시작된 벽화 고분의 전통이

5) 耿鐵華, 2000, 「高句麗壁畫四神圖及其文化淵源」, 『黑土地的古代文明』, 遠方出版社.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북방민족 중심으로 변화되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구려를 포함한 북방유목민족 고분미술의 특징으로 북방민족의 고유한 요소(고구려계, 선비계, 초원유목문화 등), 서역적 요소, 불교적 요소 등의 소위 비한계 요소를 들 수 있다. 이들 요소의 결합이 한의 고분미술과 다른 기원 후 4~7세기 벽화 고분의 새로운 전통을 형성하였으며, 수, 당, 요, 금, 원 등 북방 이민족의 왕조를 거쳐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방민족의 고유한 문화요소를 가리키는 북방문화란 용어는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다소 모호한 용어이다. '북방문화'의 지리적인 개념은 시기별로 변성했던 초원·유목문화의 권역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여기에서는 지역의 개념과 함께 스키타이족, 흉노족, 선비족, 돌궐족, 유연족 등 북방초원지대에서 활동한 북방유목민족의 특성이 반영된 것을 북방문화로 보려고 한다.

한편 북방민족들은 유목민족의 특성상 불교와 같은 외래계 문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한족에게 전달하는 중계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의 미술은 비한계 요소인 북방문화, 서역문화, 불교문화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며 각각의 문화 요소를 구분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북방유목문화 자체가 가진 다양한 외래문화의 자유로운 유입과 동서교류의 매개체라는 특징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북방문화적 요소의 고찰에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다. 비한계 요소의 하나로 든 북방문화적 요소 안에 고구려계, 선비계 등 각 북방민족의 고유한 특징이 있을 수 있다. '고구려계' 벽화고분은 고구려민족 고유의 특징을 드러내는 벽화고분을 가리킨다. 한편 북방유목문화의 특징을 고려하면 고구려계에는 고구려민족의 고유한 요소도 포함하면서, 고구려민족이 외래 요소를 받아들여서 고구려화한 요소도 포함될 수 있다.

비한계 요소 중에서 북방문화의 고찰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비한계 요소인 서역적 요소와 불교적 요소보다 북방문화적 요소가 소위 고구려계의 특징과 공통점이 많으며, 고구려계 벽화의 특징이 고구려보다 후대에 벽화고분을 축조한 다른 북방민족 고분미술의 특징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는 고구려 벽화

의 정체성 규명과 다른 북방민족 고분미술에 대한 영향력과의 연결된다.

벽화 제재의 구성과 내용에서 고구려계의 특징이 두드러진 벽화는 북한지역 일부 벽화고분과 중국지역 벽화고분들에서 보인다.⁶⁾ 여기에서는 한계 요소와 고구려계 요소가 혼재된 북한지역의 벽화고분보다는 중국지역의 벽화고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집안지역 벽화고분은 벽화의 구성과 배치가 중국의 요양지역이나, 평양지역 한계 고분벽화와도 뚜렷이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지녔으며 벽화 속 등장인물에서 고구려 고유의 문화적 요소가 일관성 있게 확인된다.⁷⁾ 각저총, 무용총, 장천1호분, 삼실총 등 4~5세기 집안의 고분벽화의 주요 제재들은 수렵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고구려 고유의 문화요소가 강하다. 고분벽화의 구성과 배치에서 보이는 소위 고구려계 또는 북방문화적 요소를 보면, 각저총, 무용총, 장천1호분, 삼실총 등은 한의 고분미술 전통으로부터 변화된 고구려의 독자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 특히 각저총, 무용총 벽화의 구성과 배치는 벽면과 천장 전체를 이용한 단순하고 대담한 구성을 보여주어 집안지역 고구려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소위 북방민족계 고분벽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는 북방민족에 의한 중국 한족 고분미술의 전통의 변화를 의미하며, 선비족과 거란족과 같은 고구려 이후에 발전한 비한족(북방민족)에 의해 후에 채택될 형식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벽화의 구성에 있어서 중국 화상석고분과 벽화고분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궁륭형 또는 말각조정이라는 구조의 특성을 이용하여

6) 전호태는 북한지역의 4~5세기 고구려 벽화 고분을 벽화 제재의 구성과 내용에서 고구려 고유의 문화요소를 충분히 읽어내기 어려운 경우를 漢系 벽화고분으로, 그렇지 않은 사례를 고구려계 벽화고분으로 규정하였다. 대표적 한계 고분으로는 안악3호분, 평양역전벽화분, 태성리1호분, 요동성총, 약수리벽화분, 감신총, 덕흥리벽화분, 팔청리벽화분, 천왕지신총, 안악1호분을 들었다. 고구려계로는 연화총, 동암리벽화분, 용강대묘, 대안리1호분, 쌍영총, 전동명왕릉, 안악2호분, 수렵총, 수산리벽화분, 덕화리1호분, 덕화리2호분 등이 있다. 한계 벽화고분의 집중 분포지는 남포시 강서구역과 안악일대이며 벽화고분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걸쳐 축조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전호태, 2005, 「4~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와 동아시아 문화」, 광개토대왕과 동아시아세계 고구려사연구 21집.

7) 전호태, 2005, 위의 글.



〈도 1〉 무용총 주실 북벽 천장

동물문과 장식문양이 규칙적으로 배치되는 점이다. 이러한 고구려고분의 천장벽화의 강조는 북방초원 문화의 동물양식을 받아들인 북방 문화적 요소로 보인다. 무용총 천장에 그려진 동물문들은 8단 천장이라는 좁은 공간의 특성 때문인지 배치된 동물들이 몸이 구부러진 채로 묘사되기도 하며, 북방문화에 기반한 천마도도 출현하는데 이는 유목민족인 스키타이, 흉노의 동물양식과 비교될 수 있다(도 1).

벽화 속에 묘사된 인물의 약간 세장한 얼굴, 고유의 옷차림에서 고구려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각저총, 무용총, 장천1호분, 삼실총 등에서 두드러진다. 고구려 전통복식은 서역 또는 유목민족 복식과의 유형적 공통성, 양식적 공통성을 공유하고 있다. 생활풍속이 주제인 초기 평양지역 고분벽화의 인물들은 대개의 경우 맞섶이나 오른 섶에 소매와 통이 넓은 중국계 복장을 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반면, 각저총을 비롯한 집안지역 고분벽화의 인물들은 흔히 고구려 특유의 점무늬가 있는 원 섶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원 섶은 내륙아시아 유목계 민족 복식의 특징적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⁸⁾

고구려적 색채를 보이는 생활풍속 외에 측면 연꽃을 이용한 장식문양의 벽화고분이 5세기경 발달한 점도 벽화구성상 중국의 고분과 큰 차이점이다. 한계 요소가 강한 평양지역 벽화고분과의 차이점은 묘주가 앞방에 배치되는 사례를 보이지 않으며, 널방 안벽에서도 神像型 초상으로 묘사되는 사례가 드물며 주로 일상생활의 한 장면 가운데 묘사된다. 이러한 집안지역의 고구려계의

8) 정수일, 2001a, 『셀크로드학』, 사계절, 167쪽.

벽화고분의 특징이 다른 유목민족, 즉 탁발선비족의 북위, 동위, 북제, 북주의 고분미술에서도 공유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분벽화가 집안지역에 소화, 수용되는 첫 단계부터 고구려 고유문화의 전통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⁹⁾ 이러한 집안 고유의 문화전통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으나, 그 중 한 가지로 들 수 있는 것은 평양 안악지역과 다른 지리적 위치상 고구려 특유의 북방유목민족적인 배경, 그리고 다른 유목민족과의 교류에서 나온 북방문화적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4~5세기 고구려 집안지역 벽화고분에 보이는 독자적 특성인 북방문화적 요소의 연원과 전통을 우선 스키타이, 흉노족의 유목문화에서 찾아보고, 다음으로는 동시대의 유연, 선비, 돌궐족의 미술과 비교 고찰하려고 한다.

Ⅲ. 고구려를 비롯한 유목민족 미술에 보이는 북방문화적 요소

1_ 고구려 벽화의 북방문화적 요소의 기원과 형성 - 스키타이와 흉노의 초원유목문화

고구려 벽화의 북방문화적 요소인 수렵문, 동물문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스키타이와 흉노의 초원유목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무용총 주실 동벽에 그려진 수렵도에 보이는 파르티안식 활쏘기는 기원전 8~7세기 앗시리아 유물에서 발견되며, 이것은 앗시리아 사람들이 스키타이 등의 유목민들로부터 도상을 차용한 것으로 그 후 중국의 한나라에 도상을 전하였다고 한다. 흔히 고구려 벽화와 비교되는 한대의 수렵도가 그려진 은상감장식품이나 벽화, 화상석에

9) 전호태, 2005, 앞의 글.

보이는 수렵도가 고구려 수렵도의 기원이 아니라, 스키타이-흉노계의 수렵도와 동물양식 미술을 반영한 요소들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¹⁰⁾

스키타이 문화의 특징은 미술공예의 발달로 동물의장의 발달과 귀금속의 사용의 특징을 보여준다. 학자들은 조형기법이나 소재·문양·용기·내용, 그리고 외래문화의 영향 관계에 따라 미술공예사를 세분하여 5기로 나누기도 하나, 전·후 2기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전·후 두 기의 2분법에서 전기(5분기법의 1·2·3기)는 기원전 8~5세기로 앗시리아와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유물들이 쿠반 강 유역에서 발굴되었다. 후기(5분기법의 4·5기)는 기원전 4세기 이후로 그리스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드네프르 강 유역에 유물이 집중되어 있다. 기원전 8~7세기경부터 흑해 연안에서 발흥한 스키타이족, 북아시아에서 중국 변방을 넘나들며 활동한 흉노족 등은 대부분 주변의 정주문화의 접촉을 계기로 자신들의 문화적 고유성을 촉발시키는 특성을 보인다.¹¹⁾ 스키타이 문화에 앗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이 보이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여러 외래문화의 혼합과 변용이라는 북방민족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북방문화와 서역문화 등 비한계 요소들의 구분이 어려운 점을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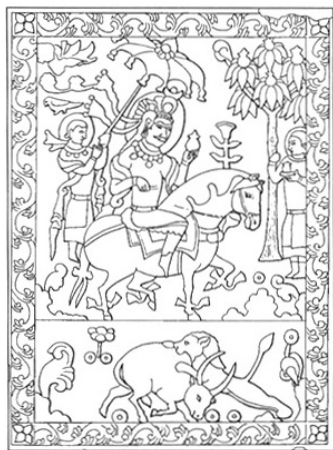
스키타이 미술공예는 귀금속을 다량 사용하여 상층들의 의기와 제기를 비롯해 장신구들은 물론이고, 방패·칼자루·칼집·활집 등 무기나, 용기 및 도

10) Katsumi Tanabe, 1987, "A Sasanian Silver Plate with a Leopard Hunt," *Bulletin of the Asia Institute* 1, pp. 81~94; 권영필, 1997, 『실크로드미술』, 열화당; 권영필, 2007, 「고구려 벽화와 중앙아시아 미술의 연관성」,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숲, 3~28쪽; 권영필, 2003, 「실크로드 미술 새롭게 보기-고대 한국 미술과 관계해서-」, 『서역미술』, 국립중앙박물관, 191~219쪽; 권영필, 2007, 「고구려의 대외문화교류」,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245~270쪽.

11) 스키타이는 흑해 연안의 그리스 이오니아의 식민 소도시들과 분쟁도 없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의 고전문화를 흡수했다. 예를 들면 솔로카 쿠르간에서 출토된 '금제 빗'에 장식된 조각물들은 그리스와 스키타이 두 문화가 결합한 것이다. 즉 카프탄을 입은 스키타이인들의 전투 장면을 주제로 해 사실풍의 정교한 제작 솜씨를 발휘한 것은 그리스의 장인들이었으며, 사자상을 부착한 것은 스키타이적인 취향을 반영한 것이다.

구도 금으로 장식하였다. 사용된 금은 동방 무역을 통해 성금 지방인 알타이 일대에서 수입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흉노를 비롯하여 북방유목민족의 분묘에서는 서방의 영향을 받은 누금세공기법이나 타출기법을 사용한 금제장신구들이 많이 출토된다. 중국 미술 중에서 유목민족의 영향이 가장 많이 보이는 장르가 금속공예이다, 얇은 금판을 두드려서 만드는 유목민족의 금속공예는 서방과의 접촉을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기원전 7~6세기경부터 춘추전국시대의 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내몽골자치구와 섬서성 북부, 길림성 및 요녕성 일대에서는 북방유목민족계열의 금공예품이 다수 출토되고 있으며, 금관이나 목걸이를 비롯한 장신구나 마구, 허리띠 장식품이 많다.

스키타이 동물 의장의 기원에 관해서는 두 가지 기원설이 있다. 북시베리아 산립 지대 기원설은 산양이라든가 사나운 들새와 날짐승 등 사실적인 야생동물이 주제로 많이 등장하고, 오리엔트 기원설은 환상적이고 기괴한 동물들이 등장하여 서로 싸우는 ‘동물 투쟁’이 모티브이다. 스키타이의 동물 의장은 그 출현 이전에 이미 북방 유라시아 유목민들 사이에 사용된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평면감을 살리고, 사실성에서 점차 양식화함으로 동물의 특징적 자세를 강조하며 작은 공간에 많은 주제를 넣었다. 스키타이 동물 의장은 주로 도구나 장식품, 무기의 동물양식과 상징적인 동물투쟁양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물의 투쟁장면을 동물의 몸을 좁은 공간에 압축시키고 그 표현을 도식화함으로써 동물의 힘을 과장·강조하여 동물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상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동물투쟁장식은 묘주가 북방민족인 유연족의 후손이며 페르시아 등 서방 지역으로 사절로 파견되었던 중국 수나라 산서성 태원 우흥묘 화상석각에서도 볼 수 있어 스키타이에서 연원한 북방문화적 요소의 계승을 확인하게 한다(도 2).



스키타이 동물장식이 지닌 또 하나의

〈도 2〉 산서성 태원 우흥묘 화상석각

특색은 금속공예품에 새겨진 짐승 몸의 관절마디 같은 것이 과장되어 표현되고, 주요 마디나 근육 부분에 반달형 틀을 만들고 거기에 보석을 끼워 넣는 감입기법을 쓴 것이다.¹²⁾ 대표적인 예로 코카서스 서북의 켈러메스에서 출토된 호형금판부조(기원전 6세기 초)를 들 수 있다. 스키타이 미술의 전형이라고 알려진 이 작품은 ‘야만적’ 생동성과 ‘문명성’ 호환성의 결합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속공예품의 감입기법과 유사한 문양이 신라 천마총의 천마, 중국 감숙성 정가잡 5호분의 천마의 몸에 그려진 무늬에 나타난다.

흉노는 약 300년 간 몽골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북방지대에서 활동하면서 특유의 호한문화를 창출하였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의 동물문양, 수렵도 등의 북방문화적 요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키타이에 이어 기원전 4세기 말 몽골 고원에서 일어난 흉노는 호한문화를 창출하여 기원전 3세기 후반에 중국 오르도스지방에 진출하고, 기원전 2세기 후반에 동원까지 정복, 고조선과 한반도, 멀리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방 초원지역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족의 흉노는 한대에 북방지역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흉노의 문화에 대해서는 몽골 초원의 노잉 올라(노잉 올)나 알타이 지역의 파지리크 고분 등의 출토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유목민족 특유의 청동기, 금제장식품, 펠트 등이 출토되었다.¹³⁾ 대표적인 발굴품 중에서 노잉 올라 6호분에서 출토된 ‘사슴을 공격하는 늑대’를 주제로 한 카펫 그림에서 투쟁하는 모습이 역동적이면서 유목민족 특유의 강한 면모를 볼 수 있다. ‘기마인물’ 자수단편과 ‘인물두상’의 자수단편들은 기원후 1세기경의 작품들로 헬레니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로 흉노족의 활동범위와 접촉관계를 알려 주는 요소이다.

고구려 벽화의 씨름도와 비교되는 유명한 장방형 동제 부조는 1955~1957년에 중국 섬서성 長安縣 禮西鄉 客省庄 兩周古墳群 140호 흉노 고분에서 발굴되었다. 묘주는 흉노의 사신이나 그 수행원으로 추측되며, 많은 흉노 유물과

12) 정수일, 2001b,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 237~251쪽.

13) 한정희 · 배진달 · 한동수 · 주경미 공저, 2006, 『동양미술사(상권, 중국)』, 미진사.

함께 장방형 동제 부조 한 폭이 발견되었다.¹⁴⁾ 동제 부조 한가운데에 심목고비에 긴 바지를 입은 장발의 두 사람이 씨름하고 있다.¹⁵⁾

유목민족의 동물양식은 중국 청동기에도 영향을 미쳐 고대 중국의 청동 유품에서 수렵문을 비롯한 동물의장이 나타난다. 중국 청동기의 양식은 기원전 8~7세기경부터 북방유목민족을 비롯한 외국과의 교섭이 활발해지면서 크게 변화된다. 먼저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투쟁하는 동물문양이 새로운 장식문양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대체로 은·주 시대의 청동기에서부터 동물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춘추전국 시대에 와서 동물투쟁문, 특히 수렵문이 나타난다.¹⁶⁾ 동물상을 보면, 은·주 시대의 것은 공상적이고 비사실적이며 정적인 반면, 한대의 것은 사실적이고 약동적이다. 수렵문의 경우 전국시대는 기마수렵과 마차수렵·도보수렵 등 형태가 다양하나 한대에 오면 기마수렵이 주를 이루며 주인공이 호북 차림이다. 이것은 스키타이를 비롯한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동물양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전국시대 유적으로 하북성 평산의 중산왕묘



〈도 3〉 하북성 평산 중산왕묘 금은상감 용봉장식 방안

14)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63, 『禮西發掘報告』, 文物出版社, 138~140쪽.

15) 정수일, 2001a, 앞의 책, 256~257쪽.

16) 정수일, 2001b, 앞의 책, 237~251쪽.

가 있다. 중산왕묘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의 독특한 금은상감기법의 금속기가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도 은상감 유익신수나 금은상감 용봉장식 방안은 청동제 괴수의 표면에 금은으로 상감을 한 화려한 금속공예품이다(도 3). 청동제 수형은 여러 개의 가지가 달린 커다란 나무 모양의 등잔에서 원숭이 무리가 놀고 있으며, 그 아래에 사람이 있는 형상을 표현하였다. 받침대는 3마리의 북방양식 동물로 구성되어 있다. 중산왕묘 출토품에 보이는 춘추전국시대에 유행한 동물형상은 북방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¹⁷⁾

권영필은 사신도 가운데 하나인 뱀이 거북을 감고 있는 현무도는 서역에 기원을 둔 신성한 동물 간의 투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동북공정에서 고구려 후기 벽화고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사신도의 기원을 중국의 한문화로 귀속시켜 고구려 벽화를 모두 한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과 대비된다.¹⁸⁾ 전형적인 한계 요소인 사신도의 일부인 현무가 비한계인 북방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_ 고구려와 4~6세기 유목민족 미술의 북방문화적 요소의 비교

스키타이와 흉노족 이후에 흥기한 북방유목민족으로는 유연족, 돌궐족, 선비족 등이 있다. 그러나 유연족과 돌궐족 등의 고분미술은 남겨진 자료가 많지 않아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교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다.¹⁹⁾ 한편 탁발선비족 고분미술은 고분벽화와 불교 석굴 벽화 자료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고구려와 같이 한화된 요소와 비한계 요소인 북방민족적 요소, 서역적 요소(西胡化), 불

17) 한정희·배진달·한동수·주정미 공저, 2006, 앞의 책.

18) 권영필, 1997, 앞의 책.

19) 윤형원, 2006, 「몽골 석인상의 편년과 상징성에 대한 일고찰」, 『중앙 아시아 연구』 11, 197~209쪽. 요녕성 지역의 모용선비족 벽화고분에 대하여는 선행연구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姜賢淑, 2000, 「中國 東北地方 石室封土壁畫墳의 地域的 特徵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43; 姜賢淑, 2001, 「中國 遼寧地域 石室壁畫墳의 構造 檢討」, 『서울大學校博物館年報』 제13집; 姜賢淑, 2002, 「高句麗와 中國 遼寧地方 魏·晉代 石室封土壁畫墳 比較考察」, 『韓國上古史學報』 36.



〈도 4〉 하북성 자현 동위 여여공주묘 모형

교적 요소 등이 혼재되어 공통점이 많다. 또한 탁발선비족 정권 아래에서 조성된 고분과 석굴미술에서 다른 이민족인 흉노족(돈황 석굴), 유연족(동위 여여공주 벽화묘, 수나라 우흥묘 화상석각), 돌궐족(북주 안가묘 석각)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북방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고분의 지역적 분포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영하성, 섬서성, 하북성, 산서성 등 중국의 북방지역과 초원지역의 접경 또는 실크로드 선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고구려와 동시대 북방유목민족들의 미술과의 비교에서 공통된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분벽화의 구성과 배치가 한나라 고분벽화와도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지녔다. 특히 하북성 자현에 위치한 동위의 茹茹(柔然) 공주묘(550년)는 위진과 북위시대에서 후기 남북조와 수당대 고분으로 넘어가는 교체기에 있는 고분으로 중국 고분벽화 발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도 4).²⁰⁾ 여여공주묘와 북제 고분의 벽화 구성상의 특

20) 1978년 9월~1979년 6월 하북성 磁縣에서 磁縣文化館에 의해 발굴되었으며, 단실묘에 墓道, 甬道, 墓室로 구성되었다. 남북 길이는 34.89m, 동서 너비는 5.58m이다. 묘실 내에 150m²의 채색벽화가 있다.

묘도의 양측벽과 묘도 路面, 용도 양측과 용도 門牆 위에, 그리고 묘실 사벽과 천정에 벽화가 그려졌다. 묘도 앞쪽의 동벽에는 청룡, 서벽에는 백호를 그렸다. 청룡은 훼손이 심해 꼬리 부분만 남았다. 백호는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몸이 4m에 가까운 길이이다. 청룡과 백호 주위에는 연화와 운기문을 그렸다. 청룡과 백호의 뒤로 각

징은 고구려 중기 고분의 특징과 유사하다. 장막 아래 앉은 정면인물상, 인물들이 열을 지어 행렬하는 장면 등은 쌍영총, 안악 2호분과 유사하며, 북조시대 벽화와 관관화에서 벽면에 대형의 행렬도와 수렵도를 동시에 구성하는 방식은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과 비교된다. 여여(유연)공주묘의 벽화 구성에 이미 한화된 유연족 그리고 선비족의 문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벽화의 구성과 배치에 있어서 이전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며 동아시아 고분벽화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벽화묘의 무덤 주인공이 유연족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고구려와 유연(402~555년)이 공식적으로 관계를 맺은 시기가 450~472년 사이로 추정되는데 이는 고구려의 장수왕(413~491년) 때로²¹⁾ 여여공주묘의 조성보다 1세기 정도 앞선다. 당시 고

각 14인씩의 호위무사가 있는데 모두 정면상으로 그려져 북주 이현묘 벽화의 시종과 여악사들과 흡사하다.

묘도 북단의 벽화는 상하로 나뉜다. 하단은 시위가 상단은 神獸가 그려져 있다. 묘도 양측 벽에 의장장면이 그려져 있고, 용도의 서벽은 4명의 시위인물, 동벽은 두 사람의 그림이 남아 있다. 동위 시기의 여여공주묘의 벽화에서 연화문과 함께 S자로 길게 늘어진 청룡과 백호를 경사진 널길의 양벽에 배치하고 그 뒤로 일렬로 늘 어선 호위무사를 배치하고, 널방에는 무리지어 서 있는 여자 시종들을 그린 것은 北齊 고분벽화와 唐의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예시하고 있다.

묘실은 상하 양단으로 나뉘지고 묘정에는 천상도를 그렸다. 사벽의 상단에는 사신을 그렸다. 현재는 북벽의 현무와 서벽의 백호가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다. 묘실 하단 벽면에는 인물도 위주이다. 널방에는 7인의 여인상을 북벽에, 10인의 인물들을 동벽과 서벽에 각각 배치하였다. 북벽의 중앙에 서있는 인물이 542년에 결혼하여 550년에 죽은 茹茹공주로 보인다. 공주의 좌우로 각각 세 명의 여인들이 시종되고 있다. 서벽에는 10인의 여인상이 그려져 있다. 동벽은 소수인물의 두상만 남아 있는데 그 용모복식으로 보아 중년이나 노년의 남자로 보인다. 남벽의 벽화 내용은 벽화의 탈락으로 불분명하다. 이전까지의 묘주 초상화가 묘주 한 사람이 부각되어 정면상으로 그려지거나 연회를 즐기는 장면에서 주로 묘사되던 것에 비하여 여여공주묘의 묘주도는 당의 용태공주나 장희태자의 무덤 벽화를 연상시키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21) 姜仙, 2004, 『北方民族史에서 본 高句麗의 正體性』, 『高句麗研究』 18, 고구려연구회, 145~162쪽; 禹惠燦, 2003, 『6~7세기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교섭에 관한 연구』, 『韓國中東學會論叢』, 24-2, 韓國中東學會, 237~252쪽; 禹惠燦, 2001, 『柔然史 研究現況과 앞으로의 課題』, 『外大論叢』 22, 부산외국어대학교, 287~298쪽; 禹惠燦, 1996, 『突厥史上에 나타난 몇몇 問題點에 關한 研究』, 『外大論叢』 14, 부산외국어대학교, 451~466쪽; 禹惠燦, 1999, 『古代 北아시아 遊牧帝國과 中國王朝間』

구려가 중국의 남북조, 유연과 4강 체제를 이루고 유연과 연계하여 북위를 견제하였다는 점²²⁾으로 미루어 고구려와 유연 간에 문화적 교류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마도 유연족이나 탁발선비족보다 앞서서 벽화고분을 받아들여 발전시킨 고구려가 두 북방민족의 벽화고분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유연족과 관련하여 주목할 다른 고분은 산서성 태원의 虞弘의 무덤이다. 우흥은 유연족의 후손으로 유연왕에 의해 페르시아, 토욕혼, 박트리아 또는 간다라 지역, 마지막으로 북제에 사절로 보내져 활동하였고 592년에 59세로 사망하였다.²³⁾ 채색과 금박이 입혀진 장식이 새겨진 53개의 대리석 석각 판석에는 심목고비의 남자인물상이 말을 타고 행진하거나 동물과 싸우는 모습, 리본을 목에 메고 있는 새와 말, 포도덩굴무늬 등이 그려졌다. 북제 북주 수나라 때

의 政治關係 變化에 關한 研究, 『韓國中東學會論叢』 20-1, 韓國中東學會, 229~245쪽.

- 22) 4세기 초부터 6세기 중엽까지 대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유연(402~555)은 拓跋廬(308~316) 시대부터 역사상에 나타난 몽골족계의 민족이다. 고구려나 서투르케스탄의 Ephtalit와는 비교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 柔然의 일부는 서방으로 이주하여 Avars(Abares, Abaroi, Avari, Avars)라는 이름으로 6세기 중엽부터 8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활동하였다. 유연이 고구려와 관계를 맺은 시기는 予成可汗 때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 고구려와 관계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백제 개로왕이 472년 북위 헌문제(465~471)에게 올린 上表와 479년의 地豆于의 분할모의이다. 予成可汗의 생존시기는 고구려의 장수왕(413~491) 때와 일치하고 있다. 고구려와 유연의 결맹은 450년부터 472년의 어느 시기에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 姜仙, 2004, 위의 글, 145~162쪽.
- 23) 2000년 7월 산서성 고고대에 의해 발견된 수대(580~618)의 고분인 태원 虞弘墓(592)는 山西省 太原市 晋源區 王郭村에 위치한 단실 벽돌무덤으로 石椁과 채색과 금박이 입혀진 장식이 새겨진 53개의 대리석 석각 판석이 발견되었다. 묘주는 魚國尉紇麟城 태생의 소그드족으로 535년 출생이며 유연왕에 의해 페르시아, 토욕혼, 박트리아 또는 간다라 지역, 마지막으로 북제에 사절로 보내졌다. 후에 북제, 북주, 수나라의 관리로서 580년에 薩寶가 된다. 북주에서 檢校薩寶府를 맡고 조로아스터교 사원과 중국에 온 서역인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592년에 59세로 사망하였다. 우흥묘 화상석과 산동 청주 전가촌 화상석에 묘사된 리본 달린 새인 길상조는 경교의 센무르브 Senmurv이며 페르시아 길상조 도안이 중국에 유입된 예이다. 山西省考古研究所, 2005, 『太原隋虞弘墓』, 文物出版社; 山西省考古研究所, 2001, 『太原隋代虞弘墓墓清理簡報』, 『文物』 1; 姜伯勤, 2002, 『中國藝術史上的波斯風』, 許虹, 『最新中國考古大發現』 山東畫報出版社, 139~144쪽.

제작된 일련의 서역계 화상석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를 담고 있으며 무덤 주인이 생전에 방문한 페르시아, 유연, 토욕혼, 박트리아, 북제의 다양한 문화요소들을 융합하고 있다. 또한 묘주의 출신으로 미루어 미술자료가 거의 남겨져 있지 않은 유연족의 미술문화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서역계 화상석각에 보이는 잔인한 인간과 동물, 동물과 동물 간의 싸움 장면은 페르시아 계통의 수렵도와 북방초원문화의 동물투쟁양식에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우흥묘 만이 아니라 최근에 연구가 집중되는 북조의 서역계 화상석각의 화면 구성상의 특징은 고구려의 집안지역 초기와 중기 벽화고분과 상당히 유사하여 이러한 특징이 유목민족들의 북방문화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²⁴⁾ 감숙성 천수에서 발견된 석각이 가장 漢化가 많이 진행된 예로 꼽히며, 가장 이른 서역계 석각인 안가묘의 것이 한화가 가장 덜한 예로 여겨진다.²⁵⁾ 감숙성 무위 출신 소그디안 귀족인 안가는 서안에 정착하여 서역계 이주민들을 관리하다가 579년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안가묘의 수렵도에 보이는 2단에 걸쳐 화면을 가득 채우는 벽화의 구성은 각저총, 무용총, 그리고 고구려 장천1호분과 유사하다. 안가묘 석각에서도 각저총과 장천1호분에 보이는 끝

24) 陝西省 西安 北周 史君墓 石榻(579), 陝西省 西安 北周 安伽墓 石榻(579), 山西省 太原 虞弘墓 石椁(592), 甘肅省 天水 출토 石榻, 山東省 青州 傅家村 화상석(573), 일본 미호박물관 석판, 전 하남성 안양 출토 북제 석궐 등이 있다.

25) 북조 고분미술 중 소그디안 등 서역계 인물들이 등장하는 고분미술은 6세기 후반의 섬서성 서안과 태원 근교 고분들에서 주로 출토된다. 姜伯勤은 이들 경교화상석을 3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제1유형은 雙闕型 石棺床 畫像石, 제2유형은 石櫛型 石棺床 畫像石, 제3유형은 石屏風型 石棺床 畫像石이다. 제1유형에는 河南 安陽 발견 石棺床 畫像石, 日本 滋賀縣 미호박물관 소장 화상석각이 해당된다. 제2유형에는 익도 북제 석실 발견 화상석과 우흥묘 발견 석각이 있다. 제3유형은 서안 발견 북주 살보 안가묘 화상석과 1992년 천수시 박물관에서 발표한 天水市 隋唐 屏風 石棺床 墓가 있다. 6조의 화상석 모두 石棺床 화상석이다. 石床, 石屏風 石櫛은 모두 『西京雜記』에 보이는 용어로 위진남북조 시기 도교와 승선사상의 유행으로 석상 장례의식이 발전하였다. 선비족과 같은 고대북방민족이 남천하면서 石室 등 장례의식이 발전하였다. 경교의 장례의식은 시체가 니토에 닫는 것을 금지하여 중국에 들어온 상층 페르시아인과 소그드인들이 중국의 석상 장식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姜伯勤, 2002, 앞의 글, 139~144쪽.

이 주걱같이 묘사된 나무를 볼 수 있으며 장천 1호분의 수렵도와 같이 수렵도가 상하 이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상단의 인물이 사자를, 하단의 인물은 숲속에서 튀어나오는 멧돼지를 창으로 사냥하고 있다. 6세기의 안가묘의 석각보다 5세기에 만들어진 고구려 장천1호분 등이 시기적으로 이르면 스키타이 흉노의 동물투쟁, 수렵도의 전통을 계승한 고구려의 북방문화적 고분미술의 전통이 유연족, 소그드족, 탁발선비족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의 집안지역 벽화가 처음부터 안악 평양지역이나 요녕성지역의 벽화와 달리 고구려적 특징을 강하게 띠었다는 점은 그 연원을 북방민족적 문화에 기반을 두고 고분벽화의 형식을 수용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는 고구려나 북방유목민족 고유의 문화적 요소가 벽화 속의 인물의 얼굴 생김, 옷차림에서 분명하게 보인다. 산서성의 평성과 태원은 탁발선비족의 북방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벽화고분들이 위치하고 있다. 산서 태원시 북제 루예묘(570년)의 대규모의 행렬도에 나타난 인물들은 선비족의 복장을 하고 긴 나팔을 부는 등 선비족문화의 부활을 잘 표현하고 있다.²⁶⁾ 吏部尙書 사마금룡과 탁발선비족 부인의 묘(太和 8년, 484년)에서 발견된 다섯 개의 큰 漆屏 잔편들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과 전실의 도용의 유목민족 복식에서도 한족과 북방민족 풍습의 융합을 잘 볼 수 있다.²⁷⁾ 북위의 수도 평성이 위치하였던 대동 지가보 북위묘에서 출토된 3개의 선명한 송목 채회관판에 그려진 대형의 행렬도, 수렵도에는 남녀 모두 선비 복식을 입고 있다. 회화 제재와 기법이 한족 복장의 열녀고사를 그린 사마금룡 무덤의 칠병과 다르며 주로 북방 탁발선비족의 생활풍속을 그렸다.

셋째는 고구려에서는 생활풍속 외에 장식무늬를 주제로 한 장식무늬계 벽화고분이 5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특히 집안지역에 크게 발달하였는데, 5세기 북위 고분미술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영하성 고원 북위

26) 太原市文物考古研究所, 2004, 『北齊婁叡墓』, 文物出版社.

27) 大同市博物館, 1972, 「山西大同石家寨北魏司馬金龍墓」, 『文物』 3, 20~29쪽;
Lucy Lim, 1989, *Northern Wei Tomb of Ssu-ma Chin-lung and Early Chinese Figure Painting*,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시대 칠관화와 함께 산서성 대동 호동 복위묘에서 발견된 관관화가 있다. 대동 지역 관관화에는 장식문양도가 고구려의 장식무늬계 벽화고분과 같이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영하성은 원래 흉노족, 유연족 등 북방유목민족이 한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북방문화와 한문화가 융합된 곳이며, 고대의 동서 문화교류에 중개지 역할을 하였다.²⁸⁾ 대동지역 역시 흉노, 오환, 선비 등 유목민족과 한족의 문화가 융합되는 지역이다. 북위 도무제가 수도로 정하면서 당시 중국 북방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 북위의 평성시대 동안 북방유목민족과 한족 간 융합과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여러 북방민족 간 교류는 대동 사마금룡묘의 묘주인 사마금룡, 대동 송소조묘(477년, 효문제 太和 원년)의 묘주 송소조,²⁹⁾ 고구려로 서진시기에 이주하여 귀화한 중국인의 후손으로 高撫와 高願의 자손인 高潛 등이 감숙성의 북량의 흉노족 출신 왕인 저거목견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³⁰⁾ 그러므로 집안 지역

28) 羅豐, 1999, 「北朝, 隋唐時期的原州墓葬」, 『原州古墓集成』, 文物出版社, 9~25쪽; 雷潤澤, 1999, 「原州文化在古代東西文化交流中的地位」, 『原州古墓集成』, 文物出版社, 26~33쪽.

29) 2000년 4월 山西省 大同市 考古研究所가 발굴한 북위 묘장 11좌 중 제5호 고분인 宋邵祖墓는 477년(孝文帝 太和 元年) 지어진 것으로 북위 태화시기 화려하고 정교한 석곽과 벽화가 발견되었다. 선비족 군대의 주요 兵種의 특색을 가진 기갑 도용들과 많은 선비족 복식을 입은 도용이 나와 북방민족의 유목 경제와 군대의 특색을 보여준다. 4명의 심목고비를 가진 胡俑은 북위 궁정 내에서 행해지던 四夷歌舞에서 서역음악이 북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宋邵祖墓(M5)와 같이 발굴된 제2호 고분(M2)에서는 심목고비에 곡예를 하는 胡人 陶俑이 발견되었다. 같은 묘에서 나온 유목민족 고유의 텐트(tent)와 유르트(yurt) 모형은 단순화된 형태로 太和 시기에 이르러 北魏가 漢化되어갔지만 여전히 유목민족의 풍습을 가지고 있던 탁발선비족의 생활방식을 말해준다. 王銀田·劉俊喜, 2001. 7, 「大同智家堡北魏墓石槨壁畫」, 『文物』, 40~51쪽; 王銀田·劉俊喜, 2004a, 「大同智家堡北魏墓棺板畫」, 『文物』, 35~47쪽; 王銀田·劉俊喜, 2004b, 「大同湖東北魏一號墓」, 『文物』, 26~34쪽; 張海嘯, 2005, 「北魏宋紹祖石室研究」, 『文物世界』; 李梅田, 2004, 「關中地區魏晉北朝墓葬文化因素分析」, 『考古與文物』, 264~269쪽; Yang Hong, 2002, "An Archaeological View of Toubu Xianbei Art in the Pingcheng Period and Earlier," *Orientalism*, vol. 33, p. 5.

30) 산서성 대동 司馬金龍墓과 宋紹祖墓의 묘주의 출신과 배경 등에서 당시 북방지역 민족 간의 교류를 알 수 있다. 사마금룡의 부친은 423년부터 북위 세조 태무제(재위 424~425년) 밑에서 관직을 맡았으며, 이후 10년간 유연족에 대한 정벌 등에 참

의 고구려계 벽화 고분의 특징 중 하나인 장식무늬계 고분의 유행은 이러한 북방민족 간의 다양한 교류의 결과로 당시 북방문화의 공통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는 고구려의 한계 요소 고분에 보이는 것과 같은 정면의 초상 대신(주로 측실 서벽에 그려지는), 무덤 후실 안벽에 부인과 또는 손님과 편안한 자세로 생활 속의 연회장면 가운데 그려지는 것이다(도 5). 섬서성의 대표적인 유

여하였다. 20년 넘게 전방에서 군사활동에 참여하였다가 464년에 75세의 나이로 죽는다. 高宗(文成帝)은 그의 죽음에 애도하며 사후 관직을 내려준다. 기록에 의하면 후에 탁발선비족 여인과 결혼한 두 번째 결혼에서 사마금룡이 태어난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마금룡은 탁발선비족 사회에 진출하면서 후에 獻文帝가 된 태자를 가르치게 되고 마침내는 吏部尙書를 맡게 된다. 사마금룡은 두 번 결혼하는데 첫 번째는 탁발선비족의 딸과 두 번째는 沮渠牧犍 딸과 결혼한다.

宋紹祖墓의 묘지명에 의하면 묘주는 태화 원년 477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477년은 文明太皇太后 馮氏와 孝文帝가 같이 다스리던 시기이다. 묘주에 대하여는 魏書, 北史, 자치통감에 보이지 않으나 그의 무덤은 평성시기의 약 1세기 동안으로 평성으로 이주된 인구가 많아지면서 북위 수도에서 일어난 민족 간 융합을 반영한다. 宋紹祖는 아마도 돈황의 송씨 가문과 가까운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량의 흉노족 출신 왕인 沮渠蒙遜(401~433)은 돈황 유력가문 출신의 송유를 중용하여 沮渠蒙遜의 아들 沮渠牧犍(433~439)을 그에게 맡기기까지 했다. 태무제(424~452)가 북량을 439년에 정복하자 송유는 태무제를 섬기면서 목건과 그의 가족과 평성으로 이주했다. 宋紹祖는 위서의 송유의 기록에 있는 후손 중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宋紹祖 무덤의 발견은 북위가 하서 정복 후에 명문 가문과 장인들을 중원으로 옮기고 평성 부근에 정착시킨 사실을 보여준다. 宋紹祖는 아마도 그의 가족을 따라 평성으로 이주해 왔을 것이며, 북위 조정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을 것이다. 중국 북조 고분미술에 보이는 서역적 요소와 북방민족적 요소의 발달, 그리고 불교 석굴의 발달에 따른 불교적 요소의 전파에는 감숙성 북량기 돈황 석굴의 공양자인 저거몽손의 역할이 주목된다. 宋書에 기록된 저거몽손은 397년 북량을 세워 433년까지 다스렸다. 이후 아들 저거목건이 다스리던 북량은 북위에 의해 439년에 멸망한다. 저거몽손은 曇無讖(385~433)을 고문으로 하여 불경의 번역 작업을 후원하였으며, 남경의 학술서적들을 수집하는 데 열심이었다. 저거몽손의 부계 사촌인 沮渠京聲은 호탄과 투르판으로 여행하며 불경을 모았다고 한다. 북량시대(420~439)에 세워진 돈황 막고굴 제275굴의 북벽 하단에 그려진 공양인상은 좁은 소매의 상의와 좁은 바지와 둥근 모자를 쓰고 있다. 이들은 段文傑이 확인한 바와 같이 북량 지배층인 흉노족이다. 가슴 높이로 손을 올리고 손바닥을 앞으로 내민 자세는 고구려 삼실총의 묘주부부 행렬도의 끝에 선 인물의 손 자세를 연상시킨다. 寧強이 지적하였듯이 돈황 제275굴의 벽화는 신강성 쿠차의 키질 석굴의 영향을 보여준다. 朴雅林, 2006, 『北魏平城時期古墳美術研究』, 『歷史教育論集』, 305~331쪽.



〈도 5〉 무용총 주실 북벽 묘주도



〈도 6〉 서안 북주 안가묘

목민족계 고분으로는 돌궐족과 소그드족의 회합장면과 수렵도, 동물투쟁도가 주된 주제로 그려진 섬서성 서안 북주 안가묘가 있다. 소그드족 귀족인 안가의 무덤(579년)은 그가 생전에 돌궐인을 만나는 유목부락 간 회맹장면을 묘사하고 있어 주목된다(도 6). 유물이 많지 않은 유목민족인 돌궐인에 대한 회화자료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몽골지역의 돌궐 석인상에 묘사된 것과 같이 장발의 돌궐인이 좁은 소매의 홍색 호복을 입은 소그드인과 서로의 거주지를 오가면서 만나는 장면을 그려 유목민족들의 거주지, 복식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³¹⁾ 안가묘 석관상 화상석, 태원 수 살보 우흥묘 화상석, 일본 미호 박물관 소장 북조 경교 화상석을 보면 장발의 돌궐인과 단발의 이란계 소그드인과 페르시아인을 볼 수 있다. 545년 서위 우문태가 돌궐 추장이었던 토문에게 주천에 거주하던 소그드인 안약반타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돌궐과 중국 간의 정치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소그드인의 당시 북방민족 간의 교류에서의 역할이 중대했음을 보여준다.³²⁾

31) 국가문물국 주편, 2001, 『陝西西安北周安伽墓』, 『2000 中國重要考古發現』, 문물출

다섯째는 고구려나 유연, 돌궐, 탁발의 고분미술이 앞선 흉노족의 미술이 가진 특징이었던 문화의 중계자로서의 다양한 외래문화 흡수를 보인다는 점이다. 북방문화적 요소 외에 서역적 요소, 불교적 요소 등의 비한계 요소가 모두 북방유목민족의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 고구려인들도 북방유목민족으로서 불교적 요소와 서역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고분미술 속에 표현하였다. 장천1호분과 삼실총이 불교적, 서역적, 북방민족적 요소와 한계 요소가 융합되어 독특한 고구려 벽화의 특징을 만들어낸 고분들이다. 탁발선비족이 불교라는 외래 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불교 석굴을 조성하고, 서역계 금은기를 수입하고 호풍을 받아들인 것도 유목민족적 선호와 연관되어 있다. 북조시대 특징인 선비화와 서호화에서 서호화는 북방유목민족으로서의 개방성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서호화의 실물 자료인 탁발선비족 정권하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각종 서역계 금은기와 유리기, 새로운 기형 및 제작기법의 등장은 북방유목민족들의 활동지역과 교역로, 북방민족들이 교류했던 서역민족들과의 외교 관계를 반영하며 지배계층이었던 유목민족의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흔히 실크로드나 스텝로, 오아시스로 등의 교역로가 중국과 서방을 잇는 교역로로 인식이 되나 이 교류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고구려, 유연, 돌궐과 같은 북방민족들이었다.³³⁾

IV. 맺음말

고구려 고분벽화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한문화권’에 속하는 특징

판사, 95~100쪽.

32) 禹惠燦, 1999, 앞의 글, 231~232쪽.

33) 한정희, 2007, 『동양미술사』, 미진사, 95~96쪽 ; 주정미, 2006, 「중국출토 外來系 장신구 일고찰」, 『중앙아시아연구』 11, 181~194쪽.

(또는 한계 요소)에 대한 재고찰과 비한계 요소들을 찾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한계 요소로 고구려, 흉노, 선비, 유연, 돌궐 등 여러 유목민족의 문화와 미술에서 보이는 북방문화적 요소가 있다. 한계 요소(한문화권)와 비한계 요소에 대한 재고찰을 위해 먼저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나온 고구려 벽화의 한 문화권(한계 요소)에 대한 중국 측의 고구려 벽화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고구려 벽화의 비한계 요소를 고찰하고, 세 번째로는 고구려를 비롯한 유목민족 미술에 보이는 북방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구려 벽화의 대표적 북방문화적 요소인 수렵도나 동물문양의 기원과 형성 배경으로 스키타이와 흉노의 초원유목문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동시대 유목민족(유연, 돌궐, 모용과 탁발 선비족) 미술의 북방문화적 요소와 비교하였다.

고구려 벽화를 돌궐족, 유연족 등의 북방유목민족 미술과 비교하는 데에는 자료가 충분치 않으나 탁발선비족 정권 아래에서 조성된 고분과 석굴미술에서 다른 이민족인 흉노족(돈황의 북량시기 석굴), 유연족(동위 여여공주 벽화묘), 돌궐족(북주 안가묘 석각)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탁발선비족 중심으로 유목민족 고분의 북방문화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고구려와 동시대 북방유목민족들의 미술과의 비교에서 공통된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분벽화의 구성과 배치가 한나라 고분벽화와도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지녔다. 하북성 자현 동위의 여여공주묘(550년)의 벽화 구성은 고구려 초기와 중기의 벽화와 유사한데 이미 한화된 유연족 그리고 선비족의 문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벽화의 구성과 배치에 있어서 이전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고구려와 몽골족계의 민족인 유연(402~555년)이 공식적으로 관계를 맺은 시기가 450~472년 사이로 추정되어 이는 고구려의 장수왕(413~491년) 때로 여여공주묘의 조성보다 1세기 정도 앞선다. 아마도 유연족이나 탁발선비족보다 앞서서 벽화고분을 받아들여 발전시킨 고구려가 두 북방민족의 벽화고분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유연족과 관련하여 주목할 다른 고분으로 산서성 태원의 우흥묘에 주목하였는데 유연왕에 의해 페르시아, 토욕혼, 박트리아 또는 간다라 지역, 마지막으로 북제에 사절로 보내져 활동하였고 592년에 59세로 사망

한 우흥은 유연족의 후손으로 여겨진다. 그의 화상석각은 복제, 복주, 수나라 때 제작된 일련의 유목민족 또는 중앙아시아계 화상석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를 담고 있으며 무덤 주인이 생전에 방문한 페르시아, 유연, 토욕혼, 박트리아, 복제의 다양한 문화요소들을 융합하고 있다. 또한 묘주의 출신으로 미루어 미술자료가 거의 남겨져 있지 않은 유연족의 미술문화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흥묘 만이 아니라 최근에 연구가 집중되는 복조의 서역계 화상석각의 화면 구성상의 특징은 고구려의 집안지역 초기와 중기 벽화고분과 상당히 유사하여 이러한 특징이 유목민족들의 북방문화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6세기의 안가묘의 석각보다 5세기에 만들어진 고구려 장천1호분 등이 시기적으로 이르므로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북방문화적 고분미술의 전통이 유연족, 소그드족, 탁발선비족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의 집안지역 벽화가 처음부터 안악 평양지역이나 요령성지역의 벽화와 달리 고구려적 특징을 강하게 띠었다는 점에서 그 연원을 북방민족적 문화에 기반을 두고 고분벽화의 형식을 수용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역계 화상석각에 보이는 인간과 동물, 동물과 동물 간의 잔인한 싸움 장면은 페르시아 계통의 수렵도와 북방초원문화의 동물투쟁양식에 기원을 찾을 수도 있다.

둘째는 고구려나 탁발선비족의 북방유목민족 고유의 문화적 요소가 벽화 속의 인물의 얼굴 생김, 옷차림에서 분명하게 보인다. 산서성의 평성과 태원은 탁발선비족의 북방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벽화고분들이 위치하고 있다. 셋째는 고구려에서는 생활풍속 외에 장식무늬를 주제로 한 장식무늬계 벽화고분이 5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특히 집안지역에 크게 발달하였는데, 5세기 북위 고분 미술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영하성 고원 북위시대 칠관화와 함께 산서성 대동 호동 북위1호묘에서 발견된 관관화가 있다. 영하성은 원래 흉노족, 유연족 등 북방유목민족이 한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북방문화와 한문화가 융합된 곳이며, 대동지역 역시 흉노, 오환, 선비 등 유목민족과 한족의 문화가 융합되는 지역으로 북방유목민족과 한족 간 융합과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집안지역의 고구려계 벽화 고분의 특징 중

하나인 장식무늬계 고분의 유행은 이러한 북방민족 간의 다양한 교류의 결과로 당시 북방문화의 공통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는 고구려의 집안지역 묘주도가 한계 요소 고분에 보이는 것과 같은 정면의 초상과 차이를 보이며, 탁발선비족이나 소그드족과 같은 유목민족 묘주도와 유사하다. 소그드족 귀족인 안가의 무덤은 그가 생전에 돌궐인을 만나는 유목부락 간 회맹장면을 묘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몽골지역의 돌궐 석인상에 묘사된 것과 같이 장발의 돌궐인이 좁은 소매의 홍색 호복을 입은 소그드인과 서로의 거주지를 오가면서 만나는 장면을 그려 유목민족들의 거주지, 복식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는 고구려나 탁발선비족의 고분미술이 앞선 흉노족의 미술이 가진 특징이었던 문화의 중계자로서의 다원적인 문화 흡수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와 탁발선비족의 고분미술은 한족의 고분미술에 대한 문화변용과 비한계 요소의 도입을 보여주며 한계 요소가 북방민족을 통해 확대되고, 북방문화 등 비한계 요소가 고분미술에 깊이 영향을 주어 후대 수당시대의 고분미술로 이어지게 된다.

참고문헌

- 姜伯勤, 2002, 「中國藝術史上的波斯風」, 許虹, 『最新中國考古大發現』, 山東畫報出版社.
- 姜仙, 2004, 「北方民族史에서 본 高句麗의 正體性」, 『高句麗研究』 18, 고구려연구회.
- 권영필, 1997, 『실크로드미술』, 열화당.
- 권영필, 2003, 「실크로드 미술 새롭게 보기-고대 한국 미술과 관계해서」, 『서역미술』, 국립중앙박물관.
- 권영필, 2007, 「고구려 벽화와 중앙아시아 미술의 연관성」,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솔.
- 권영필, 2007, 「고구려의 대외문화교류」,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 山西省考古研究所, 2005, 『太原隋虞弘墓』, 文物出版社.
- 정수일, 2001,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
- 정수일, 2001, 『실크로드학』, 사계절.
- 雷潤澤, 1999, 「原州文化在古代東西文化交流中的地位」, 『原州古墓集成』, 文物出版社.
- 大同市博物館, 1972, 「山西大同石家寨北魏司馬金龍墓」, 『文物』 3.
- 羅豐, 1999, 「北朝, 隋唐時期的原州墓葬」, 『原州古墓集成』, 文物出版社.
- 山西省考古研究所, 2001, 「太原隋代虞弘墓墓清理簡報」, 『文物』.
- 王銀田, 劉俊喜, 2001, 「大同智家堡北魏墓石槨壁畫」, 『文物』.
- 禹惠燦, 1996, 「突厥史上에 나타난 몇몇 問題點에 關한 研究」, 『外大論叢』 14, 부산외국어대학교.
- 禹惠燦, 1999, 「古代 北아시아 遊牧帝國과 中國王朝間의 政治關係 變化에 關한 研究」, 『韓國中東學會論叢』 20-1, 韓國中東學會.
- 禹惠燦, 2001, 「柔然史 研究現況과 앞으로의 課題」, 『外大論叢』 22, 부산외국어대학교.
- 禹惠燦, 2003, 「6-7세기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교섭에 관한 연구」, 『韓國中東學會論叢』, 韓國中東學會.
- 윤형원, 2006, 「몽골 석인상의 편년과 상징성에 대한 일고찰」, 『중앙 아시아 연구』 11.
- 李梅田, 2004, 「關中地區魏晉北朝墓葬文化因素分析」, 『考古與文物』.
- 張海嘯, 2005, 「北魏宋紹祖石室研究」, 『文物世界』.
- 주경미, 2006, 「중국출토 外來系 장신구 일고찰」, 『중앙아시아연구』 11.
- 중국국가문물국 주편, 2001, 「陝西西安北周安伽墓」, 『2000 中國重要考古發現』, 文物出版社.

Katsumi Tanabe, 1987, "A Sasanian Silver Plate with a Leopard Hunt,"
Bulletin of the Asia Institute 1.

Yang Hong, 2002, "An Archaeological View of Touba Xianbei Art in the
Pingcheng Period and Earlier," *Orientations*, vol. 33.



[ABSTRACT]

Study of the Nomadic Characteristics in Koguryo Wall Paintings

Park, Ahrim

This paper attempts to discern nomadic characteristics, one of non-Han Chinese element in Koguryo wall paintings, which are different from Han Chinese tomb murals. I used the term *hangye* 漢系 elements(Han Chinese elements) for those features which derived from Han dynasty funerary arts and *non-hangye* 非漢系 elements(non Chinese elements) which are based on the nomadic tradition of the so-called Northern people. The present paper also tried to compare nomadic elements in Koguryo wall paintings with those found in the funerary and Buddhist arts of the Northern people such as Xiongnu, Rouran, Turks, and Xianbei tribes. The study showed that the nomadic features of Koguryo wall paintings received influences from Scythian and Xiongnu cultures as well as exerted influences on later nomadic people such as Tuoba Xianbei. Koguryo initiated the incorporation of nomadic culture with the already established Han Chinese funerary art tradition. The international characteristics of Koguryo wall paintings is obviously discernable when we compare Koguryo with that of those non-Chinese people as well as when we consider wide interactions with those cultures thriving along the steppe route and the Silk Road.

keywords

Koguryo, tombs, wall paintings, Han Chinese element, non-Chinese element, Scythia, Xiongnu, Xianbei, Rouran, Turks



渤海 수입 衣料 연구

전현실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I. 머리말

발해의 衣料에 대한 연구는 문헌 자료 및 유물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 복식연구와 함께 다른 시대에 비해 연구의 비중이 낮다.

발해 의료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日野開三郎¹⁾는 발해 건국 이전 같은 지역 견직물의 역사를 정리하고, 발해의 綿과 紬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생산이 되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新唐書』 기록을 바탕으로 龍州, 沃州, 顯州에서 생산된 綿, 紬, 布에 관한 서술 및 국제교류에서 중국, 신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무역 관계를 조명하였다. 王承禮²⁾는 발해의 사회경제 중 수공업으로서의 방직업과 관련하여 발해의 기후적인 조건으로 인해 麻와 蠶³⁾이 주로 생산되었고, 布 직조기술의 우수함과 전통성에 대해 정리했다. 이

1) 日野開三郎, 1984, 「北東アジア國際交流史の研究(上)」,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文集』 卷9, 三一書房, 364~385쪽.

2) 王承禮 저, 宋基豪 역, 1988, 『발해의 역사』, 翰林大學아시아文化研究所, 131쪽.

외에 당, 일본과의 무역과정에서 絲織品의 수입 요인에 대해 언급했다.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³⁾에서는 발해에서는 사냥이 주요한 경제생활의 하나로서 수렵된 짐승의 가죽들을 가공하여 교역품으로 이용하였음에 대한 것과 발해의 수공업과 관련하여 그 중 용주의 명주, 현주의 삼베, 옥주의 풀숨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송덕운⁴⁾은 발해 건국 이전 말갈인들의 衣料 풍습과 『冊府元龜』 기록을 통해 당으로부터 입수한 의료 기록을 정리했다. 김민지⁵⁾는 발해의 의료를 직물과 獸皮로 나누었다. 직물에 대해서는 발해에서 생산된 紬·綿·布와 일본 및 중국과의 교류에서 수입된 의료인 絹·布類에 대해 다양한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는데, 그 중 발해에서 생산된 布는 무덤에서 출토된 麻布와 기와편에 남아 있는 포흔의 밀도, 조직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수피에 대한 문헌 고찰 및 발해산 모피류의 일본 전파 의의에 대해 언급하였다. 방학봉⁶⁾은 발해 방직업으로 마방직업, 견직업으로 나누어 마직물의 우수성, 견직물의 수요량 증가에 따른 당·일본으로부터의 수입 관련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직물의 생산지와 발해 유적지를 유추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현주의 천’과 ‘옥주의 솜’과 같은 생산지와 관련된 지역의 평균기온 및 기후조건을 바탕으로 이 생산품들이 면직물이나 면화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전현실⁷⁾은 발해-당-일본과의 교류 관계 속에서 언급되는 발해의 수출, 수입 의료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또한 이 의료들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 즉 魚牙紬는 중국의 絞 絹, 朝霞紬는 중앙아시아의 아부르반디(abrbandi)와 일본 호류지[法隆寺]의 이캇(ikat) 직물, 鳥皮類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수집된 鳥羽衣, 魚皮類는 동해 역권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사할린에서 수집된 魚皮衣와 라이프찌히 박물관 소장 海豹皮衣 등을 제시하

3)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93, 『발해사』, 한마당, 88~90쪽.

4) 송덕운 저, 최태길 역, 1994, 「발해의 경제민속에 대한 연구요점」, 『발해사연구』 2집, 연변대학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181~182쪽.

5) 김민지, 2000, 「渤海 服飾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9~221쪽.

6) 방학봉, 2001, 『발해경제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65~276쪽, 282~296쪽.

7) 전현실, 2004, 「對外交流에서 나타난 渤海의 衣料 고찰-對唐·對日 관계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1, 42~65쪽.

였다.

그러나 이는 여타 선행연구에 비해 그 연구 결과물이 量的으로 적어서 한국 직물사 연구, 특히 고대 직물 연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발해 의료 연구 중에서도 발해 내부에서 생산된 의료보다는 수입 의료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발해는 당시 唐(五代 포함)·日本과의 활발한 교류에 임했고, 그 과정 중 사신들을 통한 다양한 특산물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으로부터는 多種의 衣料[羅, 綾, 絁, 錦, 絹, 兩面, 彩帛, (眞)綿, 布類, 糸]가 입수되었음이 『續日本紀』, 『續日本後紀』, 『日本後紀』, 『日本三代實錄』 등의 문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차적인 자료로써 시기별로 유입된 의료 목록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료들이 발해에서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발해의 수입 衣料에 대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해가 唐·五代, 奈良·平安 조정으로부터 증정받은 의료들의 입수 횟수나 입수 시기, 분량, 재질의 분석을 통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이와 관계된 문헌의 기록을 살펴봄과 동시에 당시 일본의 調庸 制度에 나타난 의료 분석 및 『大日本古文書』 중 「正倉院 編年文書」⁸⁾에 기록된 衣服과 이에 사용된 衣服 材料의 내용 분석을 통해 이 의료들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당시 양국 간의 정치 및 경제적 교류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는 당시 중국 唐·五代, 일본 나라[奈良]·헤이안[平安]조로부터 들어온 발해의 수입 의료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

8) 『大日本古文書』는 도쿄대학 사료편찬소가 출판한 일본의 고문서집으로,公私의 고문서들을 연대순 혹은 소장자별로 편성한 것이다. 그 중 「正倉院 編年文書」는 正倉院 문서를 중심으로 한 나라[奈良] 시대(大寶 2년 11월~寶龜 7년, 702~776년) 및 그 이전의 문서를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에는 나라 시대에 사용된 衣服과 그 材料 및 분량을 포함하여 착용자의 지위가 기록되어 있다.

下中弘 편집, 1997, 『日本史大事典』 3卷, 東京: 平凡社, 1048쪽, 1048~1049쪽; 京大日本史辭典編纂會, 1999, 『新編日本史辭典』, 東京: 東京創元社, 463쪽 참조.

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여러 사료에서 唐이나 日本 조정으로부터 ‘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의료도 수입 품목에 포함시킬 것이다. 古代의 교류 관계는 ‘公貿易과 私貿易’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때 발해의 당·고대 일본과의 교류 관계에서는 몇 건의 사무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사신을 통한 공무역임을 사료를 통해 파악된다. 공무역에서 방문한 국가의 사신이 그 나라의 특산물을 증정하고, 이에 대해 방문국 조정에서는 답례품을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발해도 이러한 관례하에서 양국의 특산물 등이 오고 갔을 것으로, 이는 일종의 ‘교역 관계’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발해 사신이 당이나 일본을 방문했을 때 각국 조정으로부터 다양한 물품을 증정받을 때 ‘賜’로 기록되고 있다. 물론 기록상으로는 ‘사여하다’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으나 廣義에서 보면, 발해 사신을 통해 다른 국가의 물품들이 발해로 도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발해인들이 방문국으로부터 받은 것을 발해로 가져온 물품들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발해의 제도 및 경제면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까지 연구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본 연구자는 사무역뿐만 아니라 공무역의 과정에서 발해가 당이나 일본으로부터 의복 및 의료를 도입한 것에 대해 ‘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여기서의 ‘수입’의 의미는 현재의 무역 관계에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음을 밝힌다.

II. 渤海와 中國 · 日本과의 교류에 따른 품목 내역

1_ 渤海-唐 · 五代 조정과의 교류 관계에서 나타난 수입 의료

발해 조정은 당 · 오대로 사신 파견 시 발해의 대표적 産物인 毛皮類, 鳥類를 중심으로 증여했고, 이에 대해 당 · 오대 조정은 官位와 그에 따른 衣服과 衣料로 답례했다. 『冊府元龜』 『五代會要』에는 당 · 오대가 발해 사신에게 답례로 증정한 품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의복류로는 錦袍, 紫袍 · 金魚袋, 緋袍 · 銀帶, 衣一襲이, 의료로는 綵練, 錦, 綿, 帛, 絹이 있다(표 1 참조).

발해가 당 · 오대 조정으로부터 의복 및 의료를 받은 기록은 722년~924년에 걸쳐 총 19회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9회는 武王代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교류가 시작되는 초반기이므로 외교적 차원에서 우호 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722년부터 730년에 걸쳐 거의 매해 당 조정으로부터 의복이나 의료를 증정받고 있으나 732년부터 4년간 교역 내역이 전혀 없다. 732년은 大門藝 관련 문제로 唐과의 마찰을 빚어 발해가 당 登州를 공격했던 시점이었고, 그 이후에는 당이 신라와의 연합에 의해 발해를 공격하고자 했던 시기였음을 감안했을 때 정치적 요인이 일시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武王과 文王이 집권했던 8세기는 발해 건국의 전반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관직에 준하는 袍-帶-魚袋와 같은 官服과 다소 간단한 직조의 견직물인 帛, 絹, 綵練과 같은 의료가 확인된다. 특히 이때 증여 받은 관복은 문왕대의 唐式 官服 制度 제정에 도움이 되었을 것⁹⁾으로 연구된 바가 있다.

이후의 시기에는 定王代(809~813년 재위) 1회(812년), 僖王代(813~817년

9) 김민지, 2000, 앞의 글, 62쪽; 전현실 · 강순제 공저, 2007, 「발해 건국 초기 官服에 대한 小考」, 『복식』 57권 2호, 한국복식학회, 62~63쪽.

〈표 1〉 渤海와 唐·五代 간의 교역 품목(의료, 의복)

시기 (년)	발해 재위왕	渤海 → 唐·五代 ¹⁰⁾	唐·五代 → 渤海
722	武王	鷹 ¹¹⁾	錦袍金魚袋 ¹²⁾
724			帛 50疋 ¹³⁾
725			紫袍金帶魚袋 ¹⁴⁾
727		貂鼠 ¹⁵⁾	綵練 100疋, 帛 50疋 ¹⁶⁾
728			絹 300疋 ¹⁷⁾
729		鷹, ¹⁸⁾	紫袍金帶, 帛 20疋 ¹⁹⁾
730		海豹皮 5張, 貂鼠皮 3張 ²⁰⁾	緋袍銀帶, 絹 20疋, 帛 ²¹⁾
731			帛 100疋(2月), 帛 30疋(10月) ²²⁾
736			帛 30疋(3月), 帛 500疋(11月) ²³⁾
737	文王	鷹, 鶻 ²⁴⁾	紫袍金帶, 帛 100疋 ²⁵⁾
738		豹鼠皮 1000張 ²⁶⁾	
739		鷹 ²⁷⁾	紫袍金帶·銀帶, 帛 100疋 ²⁸⁾
740		貂鼠皮 ²⁹⁾	
749		鷹 ³⁰⁾	
750		鷹 ³¹⁾	
777		鷹 ³²⁾	
812	定王		衣一襲 ³³⁾
813	僖王		錦(綿), 綵 ³⁴⁾
814		鷹, 鶻 ³⁵⁾	
816			錦, 綵 ³⁶⁾
817			錦, 綿 ³⁷⁾
835	大彝震	文革 ³⁸⁾	
838			錦, 綵 ³⁹⁾
846			錦, 綵 ⁴⁰⁾
908	哀王		錦 ⁴¹⁾
909		貂鼠皮, 熊皮 ⁴²⁾	
924			錦, 綵 ⁴³⁾
925		黃明細布, 貂鼠皮被1, 靴, 革 ⁴⁴⁾	
926		虎皮 ⁴⁵⁾	

- 10) 발해가 당·오대 조정에 증정한 품목들은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원문 내용을 제외하고 출처만 언급하겠다.
- 11) 『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十年(722) 十一月.
- 12) 『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十年(722)……十二月……辛未……授大將軍 賜錦袍金魚袋 放還蕃.
- 13) 『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十二年(724)……二月 乙巳……渤海靺鞨遣其臣賀朝慶來賀正……竝進階渤海將軍 賜帛五十疋 放還蕃.
- 14) 『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十三年(725)……五月 渤海王大武藝之弟大昌勃價來朝 授左威衛員外將軍 賜紫袍金帶魚袋 留宿衛.
- 15) 『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十五年(727) 四月.
- 16) 『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十五年(726)……四月……庚申……至是乃降書與武藝慰勞之 賜綵練一百疋……封大昌勃價襄平縣開國男 賜帛五十疋 首領已下各有差.
- 17) 『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十六年(728) 四月……癸未……渤海王子留宿衛大都利行卒 贈特進兼鴻臚卿 賜絹三百疋 粟三百石 命有司弔祭 官造靈輿 歸蕃.
- 18) 『冊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十七年(729) 二月.
- 19) 『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十七年(729)……二月 渤海靺鞨王大武藝使其弟大胡雅來朝 授渤海將軍 賜紫袍金帶 留宿衛……三月……癸卯……賜帛二十疋 遣之.
- 20) 『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十八年(730) 二月.
- 21) 『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十八年(730)……二月……戊寅……渤海靺鞨遣使智蒙來朝 且獻方物馬三十疋 授中郎將 賜絹二十疋緋袍銀帶 放還蕃……九月……乙丑……靺鞨遣使來朝獻方物 賜帛 放還蕃.
- 22) 『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十九年(731)……二月……己未……渤海靺鞨遣使來朝正 授將軍 賜帛一百疋 還蕃……十月……癸巳……渤海靺鞨王遣其大姓取珍等百二十人來朝 竝授果毅 各賜帛三十疋 放還蕃.
- 23) 『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二十四年(736)……三月 渤海靺鞨王遣其弟蕃來朝 授太子舍人外 賜帛三十疋 放還蕃……十一月……癸酉……靺鞨首領聿棄計來朝 授折衝 賜帛五百疋 放還蕃.
- 24) 『冊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二十五年(737) 四月.
- 25) 『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二十五年(737)……八月……戊申……渤海靺鞨大首領多蒙固來朝 授左武衛將軍 賜紫袍金帶及帛一百疋 放還蕃.
- 26) 『冊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二十六年(738) 閏八月.
- 27) 『冊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二十七年(739) 二月.
- 28) 『冊府元龜』卷975 褒異2, (開元) 二十七年(739) 二月……丁未……渤海王弟大勛進來朝 宴于內殿 授左武衛大將軍員外 置同正 賜紫袍金帶及帛一百疋 留宿衛……十月……乙亥……渤海遣其臣優福子來謝恩 授果毅 賜紫袍銀帶 放還蕃.
- 29) 『冊府元龜』卷971 朝貢4, (開元) 二十八年(740)……十月.
- 30) 『冊府元龜』卷971 朝貢4, (天寶) 八載(749) 三月.
- 31) 『冊府元龜』卷971 朝貢4, (天寶) 九載(750) 三月.
- 32) 『冊府元龜』卷972 朝貢5, (大曆) 十二年(777) 二月.
- 33) 『冊府元龜』卷976 褒異3, (憲宗 元和) 七年(812) 正月……甲申……賜渤海使官告三十五通 衣各一襲.

재위) 3회(813년, 816년, 817년), 大彝震代(830~858년 재위) 2회(838년, 846년), 哀王代(901~926년 재위) 2회(908년, 924년)의 총 8회, 의료가 입수되었다. 이때의 입수 품목은 812년에 衣一襲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錦, 綵, 綿과 같은 의료가 확인되고 있는데, 분량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다만 전반기에는 다소 직조가 간단한 견직물이 수입되었음에 반해 이때는 당시의 최고급 의료였던 금직물이 꾸준히 입수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 34) 『冊府元龜』卷111 宴享3, (元和) 八年(813) 十二月……丙午……宴南詔渤海使賜以綵綵; 『冊府元龜』卷976 褒異3, (元和) 八年(813) 十二月……丙午……宴南詔渤海使仍賜以錦綵.

* 동일한 상황으로 짐작되나 『冊府元龜』 권111에서는 綿을, 권976에서는 錦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본 연구자는 두 가지 품목을 모두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후 발해가 입수한 품목 내용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때는 錦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 35) 『冊府元龜』卷972 朝貢5, (元和) 九年(814) 十一月.
 36) 『冊府元龜』卷976 褒異3, (元和) 十一年(816)……二月……癸卯……賜回鶻渤海使錦綵銀器有差.
 37) 『冊府元龜』卷976 褒異3, (元和) 十二年(817)……三月……甲戌……以錦綿 賜渤海使大誠愼等.
 38) 『張建章墓誌』.
 39) 『冊府元龜』卷976 褒異3, (武宗 開成) 三年(838)……二月……辛卯……上麟德殿對入朝南詔……契丹室韋渤海等 各賜錦綵銀器有差.
 40) 『冊府元龜』卷976 褒異3, (武宗 會昌) 六年(846)……正月 渤海使朝於宣政殿對於麟德殿 賜食於內亭子 仍資錦綵器皿有差.
 41) 『冊府元龜』卷976 褒異3, (後梁 太祖 開平 二年(908)……正月 渤海國朝貢使殿中少令崔禮光已下各加爵秩 并賜金帛有差.
 * 여기서의 金帛은 錦의 誤字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錦으로 언급하겠다.
 42) 『冊府元龜』卷972 朝貢5, (梁 太祖 開平) 三年(909) 三月.
 43) 『冊府元龜』卷30 渤海, (後唐 莊宗 同光) 二年(924)……五月 又遣王子大元讓來朝 莊宗賜錦綵以遺之.
 44) 『冊府元龜』卷972 朝貢5, (後唐 莊宗 同光) 三年(925) 二月.
 45) 『冊府元龜』卷972 朝貢5, (後唐 明宗 天成) 元年(926) 四月.

2_ 渤海-奈良·平安 조정과의 교류 관계에서 나타난 수입 의류

『類聚國史』, 『日本三代實錄』, 『續日本紀』, 『續日本後紀』, 『扶桑略記』와 같은 사료를 통해 발해와 고대 일본은 약 200년 동안 발해에서 34회(비공식 3회), 일본으로부터 13회(비공식 2회)의 사신 왕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양국 사신을 통해 대표적인 産物을 주고받는 형태로 교류 관계를 유지했다.

『日本三代實錄』기록⁴⁶⁾에 따르면, 882년 11월 加賀에 도착한 발해 사신 裴 등은 국가적 의례인 賓禮⁴⁷⁾에 따라 賓客으로 대우받았고, 발해 사신들을 지칭하는 蕃客과의 공식적인 교역에 관련된 『延喜式』의 내용⁴⁸⁾을 통해 발해 사신들이 평안정에 들어오면 객관인 홍려관에 안치되고, 번객에 대한 빈례의 과정에서 大藏省이나 內藏寮의 주도하에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⁴⁹⁾ 이러한 형태의 교역은 정치적으로 통제받았던 公的 貿易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사료에는 사신 왕래 시 兩國 間에 주고받았던 다양한 物目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품목 중에는 衣類나 다양한 衣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료 기록에 의하면, 발해 사신이 일본으로 파견될 때 가져간 구체적 品目⁵⁰⁾들은

46) 『日本三代實錄』卷34, “陽成天皇元慶七年 春正月戊辰朔 式部少兼高階真人茂範 爲存問渤海客使……三月……八日……甲戌……存問兼領渤海客使少外記大藏善行 式部小丞高階茂範等進發……夏四月……二十八日……甲子……郊外勞渤海客 領客使少外記大藏善行等引客徒入鴻臚館……五月……二日……丁卯……大使裴 等於朝堂奉進王啓及信物……三日……戊辰……天皇御豐樂殿賜宴渤海客徒 授大使文籍院少監正四品賜紫金魚袋裘 從三位 副使正五品賜緋銀魚袋高周封正四位下 判官錄事授五位 其次叙六位已下各有等級……五日……庚午……賜大使已下錄事已上續命樓……十二日……丁丑……渤海使歸蕃 是日遣參議政四位下……向鴻臚館付勅書.”

47) 賓禮는 영접 과정을 거쳐 귀국하기까지의 의례를 통틀어 말하는데, 奈良·平安時代 의례의 典據는 唐制였다. 일본의 鴻臚館은 외국 사신의 영접 의례에서 특히 중요한 의례 공간이었다.

李成市 저, 김창석 역, 1999,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23쪽.

48) 『延喜式』卷30 大藏省, “凡蕃客來朝應交關者. 丞錄史生率藏部價長等赴客館. 與大藏寮共交關. 訖錄色目申官. 其價物. 東施一百疋 調綿一千屯 錢三十貫文 若有殘者同申返上.”

49) 李成市 저, 김창석 역, 1999, 앞의 책, 123쪽, 152~153쪽.

50) 발해가 일본 조정에 증정한 품목들은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원문 내용을

〈표 2〉 발해가 일본에 증정한 품목

시기(년)	衣服品目	衣料
728		貂皮 300張 ⁵¹⁾
739		大蟲皮 7張・黧皮 7張・豹皮 6張 ⁵²⁾
872		大蟲皮 7張・豹皮 6張・熊皮 7張 ⁵³⁾
876 ⁵⁴⁾	暗摸靴 ⁵⁵⁾	
920	帶, 裘 ⁵⁶⁾	

728년, 739년, 872년, 876년, 920년 총 5회(표 2 참조)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수량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짐승의 가죽과 같은 衣料가 대부분이며, 점차 이러한 1차적인 원료에서 이 원료들을 가공하여 만든 품목, 즉 暗摸靴, 裘, 帶와 같은 피혁제품으로 바뀌고 있다.

한편 일본 조정이 발해 사신에게 증여한 품목들을 보면, 의복의 종류는 時服, 當色服, 朝服, 衣, 雜色衿衣, 揩衣, 御衣, 冠, 履 등이며, 衣料에는 羅, 綾, 絁, 錦, 絹, 兩面, 彩帛, 眞綿, 布類, 糸 등이다. 즉 발해가 일본에 가져간 것은 皮革를 중심으로 한 의료 소재나 暗摸靴, 裘, 帶 등과 같은 가죽제품이고, 일본에서 발해에 준 것은 다양한 의복류와 여러 종류의 의료였다(표 3 참조).

발해가 일본으로부터 의료를 입수한 횟수는 총 13회로, 9세기에 재위한 大度晃代 2회(859년, 861년), 宣王代 2회(824년, 828년)를 제외하고 나머지 9회가 武王代(728년), 文王代(740년, 759년, 760년, 772년, 777년, 779년),

제외하고 출처만 언급하겠다.

51) 『續日本紀』卷10, 聖武天皇神龜 五年(728) 春正月.

52) 『續日本紀』卷13, 天平 十一年(739) 十二月.

53) 『日本三代實錄』卷4, 貞觀 十四年(872) 五月.

54) 김민지는 암모화와 관련된 발해 사신을 楊承慶으로 보았고, 따라서 발해가 일본 조정에 암모화를 증정한 시기를 양승경이 일본으로 파견된 시기인 872년으로 정리했다. 김민지, 2007, 「함경북도 화대군 금성리 발해벽화고분의 복식」, 『복식』 57권 9호, 26쪽.

55) 『渤海國志長編』卷17 食貨考; 『都氏文集』謝 渤海楊大使贈 貂裘麝香暗模靴 狀.

56) 『扶桑略記』卷24, 醍 延喜 二十年(920) 六月.

〈표 3〉 발해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품목

시기 (년)	발해 재위왕	衣服 品目 ⁵⁷⁾	衣料
727	武王	時服, 衣服, 冠, 履 ⁵⁸⁾	
728		當色服 ⁵⁹⁾	王: 彩帛10疋, 綾10疋, 絁20疋, 糸100絢, 綿200屯 使臣: 彩帛, 綾, 綿 ⁶⁰⁾
740	文王		王: 美濃絁30疋, 絹30疋, 糸150絢, 調綿300屯 己珍蒙: 美濃絁20疋, 絹10疋, 糸50絢, 調綿200屯 己珍蒙 이외 나머지는 차등 증여 贈物로 調布115端, 庸布60段 ⁶¹⁾
746		衣 ⁶²⁾	
759			王: 相酬土毛絹40疋, 美濃絁30疋, 糸200絢, 綿300屯, 錦4疋, 兩面2疋, 羅4疋, 白羅10疋, 彩帛40疋, 白綿100帖 使臣: 綿1萬屯 ⁶³⁾
760			王: 絁30疋, 美濃絁30疋, 糸200絢, 調綿300屯 ⁶⁴⁾
763		雜色袷衣 30櫃 ⁶⁵⁾	
772			王: 絹30疋, 美濃絁30疋, 糸200絢, 調綿300屯 ⁶⁶⁾
777			王: 絹50疋, 絁50疋, 糸200絢, 綿300屯 史都蒙 이하: 綵帛 王后의 喪을 조상하며 贈物: 絹20疋, 絁20疋, 綿200屯 ⁶⁷⁾
779			常陸調絁, 相模庸綿, 陸奥稅布 ⁶⁸⁾
796			絹20疋, 絁20疋, 糸100絢, 綿200屯 ⁶⁹⁾
799		搭衣 ⁷¹⁾	絹30疋, 絁30疋, 糸200絢, 綿300屯 ⁷⁰⁾
824	宣王		冬衣服料 ⁷²⁾
828			大使 이하 梢工 이상: 絹, 綿 차등 증여 ⁷³⁾
842	大彝震	時服 ⁷⁴⁾	
849		時服 ⁷⁵⁾	
859	大虔晃		烏孝愼의 別貢에 대해 東絁50疋, 綿400屯 ⁷⁶⁾
861			出雲國의 絹145疋, 綿1225屯을 渤海使105인에게 분배. 李居正에게 따로 絁10疋, 綿40屯 ⁷⁷⁾
872	景王	時服, 朝服, 御衣 ⁷⁸⁾	
883		冬時服, 朝服, 御衣一襲 ⁷⁹⁾	
908	哀王	御衣, 靑白椶表袍 ⁸⁰⁾	
920		時服 ⁸¹⁾	

- 57) 발해가 일본 조정으로 받은 의복 품목들은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원문 내용을 제외하고 출처만 언급하겠다.
- 58) 『續日本紀』卷10, (聖武天皇神龜) 四年(727) 九月 庚寅……十二月 丁亥.
- 59) 『續日本紀』卷10, (聖武天皇神龜) 五年(728) 春正月 甲寅.
- 60) 『續日本紀』卷10, ((聖武天皇神龜) 五年(728) 夏四月……壬午齊德等八人各賜綵帛綾綿有差……渤海郡王……付書并信物綵帛一十疋 綾一十疋 綿廿疋 絲一百絢 綿二百屯.
- 61) 『續日本紀』卷13, (聖武天皇天平) 十二年(740) 春正月……甲午……賜渤海郡王美濃綿卅疋 絹卅疋 絲一百五十絢 調綿三百屯 己珍蒙美濃綿廿疋 絹十疋 絲五十絢 調綿二百屯 自餘各有差……賻調布一百十五端 庸布六十段.
- 62) 『續日本紀』卷16, (聖武天皇天平) 十八年(746) 十二月.
- 63) 『續日本紀』卷22, (淳仁天皇天平寶字) 三年(759) 春正月……甲午……大保藤原惠美朝臣押勝宴蕃客於田村第 勅賜內裏女樂并綿一萬屯……二月戊戌賜渤海國王……相酬土毛絹卅疋 美濃綿卅疋 絲二百絢 綿三百屯……錦四疋 兩面二疋 羅四疋 白羅十疋 彩帛卅疋 白綿一百帖.
- 64) 『續日本紀』卷22, (淳仁天皇天平寶字) 四年(760) 春正月……己巳……賜(渤海)國王綿卅疋 美濃綿卅疋 絲二百絢 調綿三百屯 大使已下各有差.
- 65) 『續日本紀』卷24, (淳仁天皇天平寶字) 七年(763) 二月 丁丑.
- 66) 『續日本紀』卷32, (光仁天皇寶龜) 三年(772)……二月癸丑……賜國王美濃綿卅疋 絹卅疋 絲二百絢 調綿三百屯 大使壹萬福已下亦各有差.
- 67) 『續日本紀』卷34, (光仁天皇寶龜) 八年(777)……五月……丁巳……賜大使都蒙已下綵帛各有差……送使本鄉 并附絹五十疋 綿五十疋 絲二百絢 綿三百屯……又弔彼國王后喪日……贈絹二十疋 綿二十疋 綿二百屯.
- 68) 『續日本紀』卷35, (光仁天皇寶龜) 十年(779)……九月……癸巳勅陸奥出羽等國 用常陸調 綿 相模庸綿 陸奥稅布 充渤海鐵利等祿.
- 69) 『日本後紀』卷5, (桓武天皇延曆) 十五年(796)……冬十月己未……其所寄絹廿匹 綿廿匹 絲一百絢 綿二百屯.
- 70) 『日本後紀』卷8, (桓武天皇延曆) 十八年(799) 正月 辛酉.
- 71) 『日本後紀』卷8, (桓武天皇延曆) 十八年(799) 九月……信物綿絹各卅匹 絲二百絢 綿三百屯.
- 72) 『類聚國史』卷194 殊俗 渤海下, (淳和天皇天長) 元年(824) 正月……乙卯……賜渤海客徒大使已下綠事已上陸人冬衣服衾.
* 衾는 料의 誤字로 사료된다.
- 73) 『類聚國史』卷194 殊俗 渤海下, (淳和天皇天長) 五年(828)……四月……癸未……渤海客大使已下梢工已上 賜絹綿有差.
- 74) 『續日本後紀』卷11, (仁明天皇承和) 九年(842) 夏四月 乙丑朔.
- 75) 『續日本後紀』卷19, (仁明天皇嘉祥) 二年(849) 二月 辛亥.
- 76) 『日本三代實錄』卷3, (清和天皇貞觀) 元年(859)……六月廿三日……丁未……東綿五十疋 綿四百屯賜大使烏孝慎 孝慎別貢土宜.
- 77) 『日本三代實錄』卷5, (清和天皇貞觀) 三年(861)……五月廿一日……甲午……出雲國絹一百卅五疋 綿一千二百廿五屯 更頒賜渤海客徒一百五人……綿一十疋 綿四十屯

康王代(796년, 799년)인 8세기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류 초반기(1차, 4차)는 다른 시기와는 달리 錦, 綾, 羅, 兩面과 같은 고급 견직물도 입수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교역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었으나, 일본 귀족들이 가죽과 모피를 중심으로 ‘遠物’에 대한 선호가 대단했기 때문에 828년 정월 2일에 蕃客과의 交關 금지령 및 위반 시 가해지는 처벌이 정해지기도 하였으나,⁸²⁾ 일찍부터 발해사가 가져온 물품들을 경쟁적으로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발해사가 도착한 지역에서는 민간교역도 성행했다.⁸³⁾ 이러한 내용은 872년 5월 20일, 발해사 일행이 內藏寮와 교역을 행하고, 다음날에는 平安京의 官人과도 교역이 허가되었으며, 22일에는 京市의 상인과의 교역도 허락되어 이 날 일행은 土物 교역으로 官錢 40萬을 벌었다는 『日本三代實錄』의 기록⁸⁴⁾을 통해 확인된다. 이처럼 전일본사의 평안경에서의 교역은 정부로부터 관인으로, 또한 상인으로 옮겨 진행되어진 것으로,⁸⁵⁾ 발해와 일본 간에는 사적 형태의 교역도 활발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적 교역의 또 다른 단서로는 1988년 平安京 나가야오우[長屋王] 저택 유적에서 출토된 ‘渤海使’, ‘交易’ 등으로 기록된 木簡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발해와 일본의 교류 초반, ‘나가야오우’가 執政大臣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

別賜大使李居正.

78) 『日本三代實錄』 卷21, 清和天皇貞觀十四年(872)五月丙戌……十九日戊子……二十四日癸巳.

79) 『日本三代實錄』 卷43, 陽成天皇元慶七年(883)二月壬戌……五月戊辰……八日癸酉.

80) 『扶桑略記』 卷23, 醍 延喜八年(908)五月十五日.

81) 『扶桑略記』 卷24, 醍 延喜二十年(920)三月二十二日.

82) 『類聚三代格』 卷18 夷俘并外蕃人事, “禁交關事. 右蕃客賣物私交關者. 法有恒科. 而此間之人. 心愛遠物. 爭以貿易. 宜嚴加禁制. 莫令更然. 若違之者百姓決杖一百. 王臣家遣人買. 禁使者言上. 國司阿容及自買. 殊處重科. 不得違犯……天長五年正月二日.”

83) 酒寄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東京: 校倉書房, 124쪽.

84) 『日本三代實錄』 卷21, “清和天皇貞觀十四年……五月……二十日己丑 內藏寮與渤海客廻貨物 二十一日庚寅 聽京師人與渤海客交關 二十二日辛卯 聽諸市人與客徒私相市場 是日 官錢四十萬賜渤海使等.”

85) 濱田耕策, 2000, 『渤海國興亡史』, 東京: 吉川弘文館, 190쪽.

택에서 교역을 행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⁸⁶⁾ 당시 나라시대에는 執政大臣의 저택에 신라사와 발해사를 초대해서 향연을 벌인 예가 여러 사료에서 보이고, 그곳에서 대량의 綿을 증정한 기록도 있어 집정대신의 私邸에서 외국 사신과 사적 교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⁷⁾

이 밖에 발해 사신은 물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方物(信物)을 일본 조정에 여러 번 증정한 기록⁸⁸⁾도 있어, 실제 발해에 전달된 물품의 양과 종류는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일본은 824년 귀국하는 발해사에게 ‘앞으로는 12년에 한 번씩 조공할 것(一紀一貢)’을 통보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에는 일본인들이 ‘遠物’을 경쟁적으로 구입하는 데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826년 3월, 右大臣 후지와라노오츠구[藤原緒嗣]가 발해인들을 商旅로 언급하면서 “이들을 손님으로 대하는 것은 나라의 손해가 된다”⁸⁹⁾고 한 당시 기록을 통해, 교류 과정 속에서 발해인들이 일본을 빈번하게 방문하여 多種多量の 물품을 가져갔던 것은 일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동시에 일본 조정이 발해사에게 공식적으로 지급한 의료의 종류나 양에는 발해인들의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⁹⁰⁾

86) 酒寄雅志, 2001, 앞의 책, 122쪽; 佐藤信 編, 2003, 『日本と渤海の古代史』, 山川出版社, 10쪽.

87) 李成市 著, 김창석 역, 1999, 앞의 책, 114쪽.

88) 총 34회의 파견 기록 중에서 14회(753년, 758년, 762년, 771년, 776년, 795년, 798년, 809년, 819년, 821년, 848년, 859년, 882년, 908년)는 方物 혹은 信物로만 기록되어 있다. 酒寄雅志, 2001, 앞의 책, 付表1 참조.

89) 『類聚國史』 卷194 殊俗 渤海下 天長三年 三月戊辰朔, “右大臣從二位兼行皇太子傳臣藤原朝臣緒嗣言…而渤海客徒 既違詔旨 濫以入朝 偏容拙信 恐損舊典 實是商旅不足隣客 以彼商旅 爲客損國.”

90) 酒寄雅志, 2001, 앞의 책, 122~123쪽.

Ⅲ.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본 발해 입수 衣料

문헌을 통해 살펴본 발해가 당·오대로부터 증정받은 의료는 綵練, 錦, 綿, 帛, 絹이고, 일본으로부터 증정받은 의료는 彩帛, 綾, 糸, 錦, 兩面, 羅·白羅, 絹, 絁, 調布·庸布, 綿·調綿, 美濃絁·常陸調絁·東絁, 白綿·相模庸綿, 陸奥稅布이다.

본 장에서는 고대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각 의료에 대한 고대 일본과 발해의 생산 정도와 사용 현황, 발해가 일본으로부터 증정받은 의료의 양과 품질 등을 「정창원 편년문서」의 내용⁹¹⁾(표 4 참조)이 포함된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延喜式』賜蕃客例⁹²⁾에 의하면 당시 일본 遣唐使가 唐 조정에 증정한 조공 품목에는 絁, 絲, 綿, 布와 같은 섬유 제품이 포함⁹³⁾되어 있다. 이것들은 당 황제에게 증여하는 물품이었는데, 실제로 관례적인 조공품으로도 이용되었던 물품들⁹⁴⁾로, 발해와 일본과의 교류 과정에서도 같은 衣料들이 기록⁹⁵⁾되어 있다.

91) 표 4 내용은 『大日本古文書』(총 25권, 東京帝國大學文科大學史料編纂掛 編, 東京: 東京大學史料編纂所) 중 관련 내용만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의 내용은 각 의복별 의료를 '/'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92) 『延喜式』卷30 大藏省 賜蕃客例, “大唐皇……水織絁美濃絁各二百疋 細絁黃絁各三百疋 黃絲五百絢 細屯綿一千屯 別送彩帛二百疋 疊綿二百帖 屯綿二百屯 紵布卅端 望陀布一百端 木綿一百帖.”

93) 각주 92에 제시된 내용은 일본 조정에서 파견된 遣唐使를 통해 唐 조정에 전할 품목이다. 그러나 『延喜式』이 성립한 延喜(901~922년)~延長(923~930년)의 시기는 이미 遣唐使 파견이 정지된 시기이므로, 이 내용은 이전에 정해졌던 式條를 답습한 것이고, 일본에 내항한 당 사절을 통해 당의 황제에 증여된 것이다. 東野治之, 1986, 「遣唐使の文化的役割」, 『遣唐使と正倉院』, 東京: ぎょうせい, 38쪽, 40쪽; 酒寄雅志, 2001, 앞의 책, 29쪽.

94) 朝日新聞社, 2003, 『日本の歴史-古代(9): 正倉院寶物と萬葉の歌』, 2~261쪽.

95) 『延喜式』卷30 大藏省 賜蕃客例, “渤海王絹卅疋 絁卅疋 絲二百絢 綿三百屯 並以白布裏東 大使絹十疋 絁廿疋 絲五十絢 綿一百屯 副使絁廿疋 絲卅絢 綿七十屯 判官各絁十五疋 絲廿絢 綿十五屯 錄事 各絁十疋 綿卅屯 譯語史生及首領各絁五疋 綿廿屯.”

〈표 4〉 「正倉院 編年文書」에 기록된 착용자에 따른 의복과 의료

착용자 ⁹⁶⁾	의복	의료
經師	單衣 / 衣 / 綿衣 / 淨衣 / 單衣 / 淨衣 / 單衣 / 淨衣 / 單衣 / 袍 · 綿袍 · 袷袍 · 單袍 / 襖子 / 袴 · 綿袴 · 袷袴 · 單袴 / 汗衫 · 衫 / 褌 / 冠 / 襪(袜) / 湯帳 · 湯帷 · 溫帳 / 被 / 衾	布 / 調布 / 絁 · 調綿 / 絁 / 調布 / 絁 · 庸綿 / 庸布 / 庸布 / 紺布 / 絁 · 布 · 細布 · 調布 · 綿 · 庸綿 · 調綿 / 絁 · 綿 / 絁 · 白橡繩(綿袴) · 布 · 細布 · 調布 · (紺布) · 庸布 · 綿 · 庸綿 · 調綿 · 黑綿 / 絁 / 絁 / 調布 · 絹 · 細布 · 望 布 / 布 · 調布 · 凡布 / 布 · 調布 · 凡布 · 庸布 / 絁-綿 · 絁-庸綿 · 望 布-綿 / 細布-綿 · 調布-綿
貳使丁	衣 / 淨衣 / 布袍 / 袴 · 單袴 / 前裳 / 冠	布 / 庸布 / 綿 / 商布 · 調布 · 祖布 / 庸布 / 庸布
貳使人	前裳	調布
女	女衣	布
裝潢	衣 / 綿衣 / 淨衣 / 袍 · 綿袍 · 袷袍 / 襖子 / 袴 · 綿袴 · 袷袴 / 汗衫 · 衫 / 褌 / 冠 / 襪(袜) / 湯帳 · 湯帷 · 溫帳 / 被 / 衾	布 / 絁 · 調綿 / 絁 · 庸綿 / 絁 · 布 · 細布 · 調布 · 綿 · 庸綿 · 調綿 / 絁 · 綿 / 絁 · 布 · 細布 · 調布 · 綿 · 庸綿 · 調綿 · 黑綿 / 絁 / 絁 / 調布 · 細布 · 望 布 / 調布 · 布 · 凡布 / 布 · 調布 · 凡布 / 絁-綿 · 絁-庸綿 · 望 布-綿 / 細布-綿 · 調布-綿
校生	衣 / 綿衣 / 淨衣 / 單衣 / 單衣 / 單衣 / 淨衣 / 袍 · 綿袍 / 襖子 / 袴 · 綿袴 · 單袴 / 汗衫 · 衫 / 褌 / 冠 / 襪(袜) / 湯帳 · 湯帷 · 溫帳 / 被 / 衾	布 / 絁 / 絁 · 庸綿 / 庸布 / 調布 / 庸布 / 庸布 / 絁 · 布 · 細布 · 調布 · 綿 · 庸綿 / 絁 · 綿 / 絁 · 布 · 細布 · 調布 · 庸布 · 綿 · 庸綿 · 黑綿 / 絁 / 絁 / 調布 · 細布 · 望 布 / 調布 · 布 · 凡布 · 庸布 / 布 · 調布 · 凡布 · 庸布 / 絁-綿 · 絁-庸綿 · 望 布-綿 / 細布-綿 · 調布-綿
雜使	衣 / 淨衣 / 衣袴 / 綿衣 / 淨衣 / 淨衣 / 單淨衣 / 單衣 / 袍 / 襖子 / 袴 · 綿袴 · 單袴 / 褌 / 被	布 / 絁 / 調布 / 絁 / 細布 / 庸布 / 調布 / 調布 / 絁 · 庸布 · 細布 · 調布 · 綿 / 絁 · 綿 / 絁 · 布 · 調布 · 細布 · 庸布 · 綿 / 絁 / 絁-綿
熟銅火作工	衣, 袴 / 袴	庸布 / 庸布
廝仕丁	淨衣 / 前裳 / 速袖	祖交易布 / 祖布 · 庸布 / 布
陰陽師	淨衣	祖布
桴工	衣袴 / 袴	祖布 · 祖交易布

착용자	의복	의료
木工	衣袴 / 袴 / 汗衫 / 褌 / 被	祖布 · 祖交易布 / 絁 / 絁 / 絁
夷	淨衣 / 淨衣 / 前裳 / 早袖	祖布 / 細布 / 祖布 / 祖布
膳部	綿衣 / 袍 / 袴 · 綿袴 / 前裳 / 早袖 · 速袖 / 冠	絁 / 絁 · 細布 · 調布 · 綿 / 絁 · 細布 · 調布 · 綿 / 調布 · 庸布 / 調布 · 祖布 · 庸布 / 調布 · 祖布
膳夫	早袖	布
舍人	淨衣 / 袍 · 袷袍 / 袷袴 · 袴 / 前裳	調布 · 庸綿 / 絁 · 調布 · 庸布 · 調綿 · 庸綿 / 調布 / 商布
自進	淨衣 / 淨衣 / 袷袍 · 袍 / 袷袴 · 袴	庸布 / 商布 / 調布 · 庸布 · 調綿 · 庸綿 / 調布 · 商布
仕丁	淨衣 / 袍 · 袷袍 / 袴 / 前裳 / 早袖 / 冠	商布 / 庸布 · 祖布 / 布 · 庸布 · 祖布 · 祖交易布 · 調布 · 商布 · 調綿 · 庸綿 / 調布 · 祖布 / 祖布 · 布 · 調布 / 祖布 · 調布 · 庸布
案主	袍 · 綿袍 · 單袍 / 袷袴 · 袴 / 汗衫 / 褌 / 袴 / 袴	絁 · 望 布 · 調綿 / 絁 · 望 布 · 調綿 / 絁 / 絁 / 調布
別當僧	單袍 · 袍 / 袴 · 單袴 / 汗衫 / 褌	絁 · 調布 · 調綿 / 絁 · 調綿 / 絁 / 絁
校經僧	單袍 / 袴 · 單袴 / 汗衫 / 褌 / 袴 / 溫帳	絁 / 絁 · 調布 · 調綿 / 絁 / 絁 / 調布 / 布 · 調布
主當	袍 / 襖子 / 汗衫 / 褌	布 / 絁 · 綿 / 絁 / 絁
堂雜使	袍 / 袴	布 / 布
驅使	袍 · 綿袍 / 袴 · 綿袴 / 前裳 / 早袖 / 冠	布 · 庸布 · 祖布 · 綿 / 布 · 庸布 · 祖布 · 綿 / 庸布 · 調布 / 調布 · 庸布 · 祖布 / 調布 · 庸布 · 祖布
料理供養 驅使丁	前裳 / 冠	布 / 布
優婆夷	袍 · 女袍 / 前裳 / 早袖 / 冠	布 · 庸布 · 細布 / 庸布 / 調布 / 庸布 · 調布
料理供養 優婆夷	裳 / 前裳	布 / 調布
題師	袍 / 襖子 / 汗衫 / 褌 / 被	布 / 絁 · 綿 / 絁 / 絁 / 絁 · 綿
書生	袍 / 袴 / 袴	細布 / 細布 / 凡布
夫	袷袍 / 袴	庸布 / 庸布

착용자	의복	의료
雇女	袍 / 前裳 / 冠	祖布 / 祖布 / 祖布
夷從	袷袍 · 袍 / 裙裳 / 前裳 / 早袖 / 冠	調布 · 庸綿 / 調布 / 庸布 / 庸布 / 庸布
廝女	袍 · 單袍 / 裳 / 前裳 / 早袖 / 冠	調布 / 調布 / 調布 / 調布 / 調布
廝女丁	早袖	庸布
廝	冠	庸布
主典	單袍 / 袴 / 汗衫 / 褌	望 布 / 望 布 / 純 / 純
皇太子馬甘	橡襖子	純 · 商綿
領	綿袴 · 袴 · 單袴 / 汗衫 / 衾	純 · 祖布 · 細布 · 庸綿 · 黑綿 / 純 / 調布-綿
奴	袴	布 · 祖布
鐵工	袴	祖布
佛工	汗衫 / 褌 / 被	純 / 純 / 純
婢	前裳 / 冠	調布 / 調布
染女	前裳	布
膳仕丁	早袖	商布
食所驅使	速袖	庸布
鑄工	手衣	庸布
瓦工	手衣	庸布
雜工	手衣 / 冠 / 被	祖布 / 祖布 / 調布 · 細布 · 祖布
熟工	手衣	庸布
畫師	冠	絹
銅鐵工	冠	調布
堂使	襪	布
大工	被	調布 · 細布 · 祖布
*	衾	布-綿
*	被 / 短被	上總布-綿 / 調綿
*	冠과 巾	庸布
*	冠	上總布
*	冬衣服	布, 綿
*	袴	商布
*	赤練服	調綿
*	夏衣服	純

1_ (眞)綿

眞綿은 綿은 목화가 아니라 누에에서 뽑은 풀솜⁹⁷⁾을 말하는 것이다.⁹⁸⁾

- 96) 「正倉院 編年文書」에 기록된 착용자 대부분이 寫經所(불전을 書寫하는 기관. 官營・私營 시설로, 절 내외에서 경영되어졌다.)에 소속된 寫經事業 종사자들로서, 문서에는 經師・裝潢・校生・雜使・案主・舍人・題師・主典・別當僧・校經僧・駝使丁・駝使人・熟銅火作工・廝仕丁・陰陽師・桴工・木工・夷・膳部・膳夫・自進・仕丁・主當・堂雜使・駝使・料理供養・駝使丁・優婆夷・料理供養・書生・雇女・夷從・廝女・廝女丁・廝・皇太子馬甘・領・奴・鐵工・佛工・婢・染女・膳仕丁・食所駝使・鑄工・瓦工・雜工・熟工・畫師・銅鐵工・堂使・大工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이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일부만 밝힐 수 있는 정도이다. 그 중 사경소 일의 핵심은 經卷의 생산 라인으로 이 부분은 경사・교생・장황 3인이 형성하는 寫經生에 의해 이루어진다. 經師는 書寫하고, 謹直의 문자를 기록했다. 校生은 작성된 경전의 오자나 착자를 교정・정정하였고, 裝潢은 造紙・表裝, 즉 용지를 염색하거나 卷軸 혹은 줄을 부착시켜 책을 만들거나 회화・채색을 담당했다. 案主는 장부가 포함된 文書案을 작성・보관하는 담당자이고, 別當은 각 所에 배치되어 안주가 행하는 실무를 통괄하고, 소내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했다. 이 외에 題師는 表題를 표기, 舍人는 잡사・공봉 예불, 優婆塞(출가하지 않고 불도를 닦는 남자)・優婆夷(출가하지 않고 불도를 닦는 여자)는 在家의 불교 신자로 壽堂의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각 經所에는 佛師 등의 기술자나 관청의 잡역부인 仕丁, 단순 노동을 담당했던 驅使丁, 火頭, 女堅, 奴婢 등이 각각 배속되어 있었다.

下中弘 편집, 1997, 앞의 책, 1048쪽, 1048~1049쪽; 京大日本史辭典編纂會, 1936, 앞의 책, 463쪽; 山下有美, 1994, 「正倉院文書を傳えた寫經機構(上)」, 正倉院文書研究會編, 『正倉院文書研究』 2, 14쪽, 41쪽, 47쪽; 杉本一樹, 2003, 『日本の美術 no.440: 正倉院の古文書』, 東京: 至文堂, 41쪽, 61쪽, 73쪽; 山下有美, 1995, 「正倉院文書を傳えた寫經機構(下)」, 『正倉院文書研究』 3, 正倉院文書研究會編, 34쪽, 73쪽, 57~58쪽, 63쪽, 67쪽 참조.

- 97) 繭(누에고치)을 담귀 쪼개, 가른 것. 특히 精細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금취편] 注, [廣韻]에서는 “漬繭擘의 정밀한 것은 絲, 거친 것은 絮”라고 언급되고 있어, ‘綿’과 ‘絮’는 모두 ‘솜’을 의미하지만, 품질의 차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綿絮’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諸橋轍次, 1985, 『大漢和辭典』 卷8, 東京: 大修館書店大漢和辭典, 9253쪽.

- 98) 木綿(면직물)은 우리나라에서는 高麗 공민왕 12년(1363), 문익점에 의해 면 종자가 유입되어 재배가 시작된 후 朝鮮時代 초기부터 면 재배를 국책 사업화함으로써 일반화되었고, 중국에서는 고대 漢・唐代의 묘에서 유품이 발견되거나 문헌상으로는 이전에 제직된 기록이 있으나 재배의 일반화가 이루어진 것은 宋・元代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일본에서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朝鮮과 명으로부터 도입되어 江戸時代 초기, 17, 18세기 초반 경, 한랭지인 北國을 제외한 온난 지방에서 점차 그 재배가 확산된 것으로, 중세까지 목면은 거의 보급되지 않았다.

「정창원 편년문서」에는 白綿, 黑綿, 短綿, 調綿, 庸綿, 祖交易綿, 交易綿, 商綿과 같은 眞綿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표 4 참조). 그 중 발해인들이 입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면은 白綿, 調綿, 庸綿이다. 백면은 흑면에 대응하는 용어로, 잠사 표면에 부착된 황색 膠狀의 세리신 물질이 제거된 정련을 행한 것을 말한다. 또 布의 경우와 같이 자세로 거둬들인 調綿은 상층의 의복료에, 庸綿은 하층의 의복료로 사용되었는데, 庸綿이라는 것은 調綿에 비해 품질이 뒤떨어지는 하급품이었다.⁹⁹⁾

발해가 증정받은 眞綿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당으로부터는 817년 1회 綿(분량 없음)을 받았다.

일본 조정은 728년 발해왕에게 綿200屯, 使臣에게 綿(분량 없음), 740년 渤海王에게 調綿300屯, 己珍蒙에게 調綿200屯, 759년 渤海王에게 綿300屯, 白綿100帖, 使臣에게 綿1萬屯, 760년 발해왕에게 調綿300屯, 772년 국왕에게 調綿300屯, 777년 국왕에게 綿300屯, 賻物로 綿200屯, 779년 相模庸綿, 796년 綿200屯, 799년 信物로서 綿300屯, 828년 大使 이하 梢工 이상 綿 차 등 증여, 859년 烏孝愼에게 綿400屯, 861년 渤海使105인에게 綿1225屯, 李居正에게 綿40屯을 증정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보면 그 분량이나 횟수에 있어 입수한 의복 목록 중 가장 다량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품질이 우수한 調綿이나 綿, 白綿이 발해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해의 眞綿은 南京南海府 관할하의 한 州인 沃州 및 그 일대(현재 咸鏡道와 兩江道 일부분을 포함하고, 옥주는 현재 함경남도 北靑郡 부근¹⁰⁰⁾)에서 주로 생산되었는데, 누에는 25~30℃의 조건에서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 25℃ 이하의 조건에서는 성장이 늦어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당시 이 지역의 지리적

민길자, 2000, 『한국전통직물사연구』, 한림원, 25쪽; 佐藤利夫, 2005, 『裂織: 木綿生活誌』,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2쪽; 永原慶二, 2004, 『苧麻・絹・木綿の社會史』, 東京: 吉川弘文館, 220~222쪽, 226쪽, 279~281쪽.

99) 關根眞陸, 1986, 『奈良朝服飾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25~26쪽.

100) 방학봉, 2001, 앞의 책, 292쪽.

특성을 감안해보면, 발해의 眞綿 생산량은 적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발해의 옥주가 속한 현재 함경 방면에 실제로 蠶桑이 시작되었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漢書』地理志에, 기원전 12~11세기경, 箕子朝鮮 관련 기사에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양잠이 행해졌다¹⁰¹⁾는 기록과 『東史綱目』에 “기자가 백성에게 蠶織 기술을 가르쳤다”¹⁰²⁾는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의 양잠 기술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魏書』高句麗傳에 “옷은 布帛이나 가죽을 사용하고, 잠농은 자급하기에 부족했다”¹⁰³⁾는 기록이 있어 고구려 시기에 도 잠상 기술은 계승되고 있으나 그 생산량이 부족함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은 발해 시기까지도 이어졌을 것이다.

2. 絹織物

문헌에서 당·오대로부터 증정받은 견직물은 錦, 綵練, 帛, 絹(표 1 참조)을, 일본으로부터는 錦, 綾, 羅, 絹, 絁, 彩帛·帛, 綵練, 兩面(표 3 참조)을 증정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견직물들은 주로 公的 貿易을 통해 받은 견직물이다.

1) 絹, 絁

絹, 絁는 나라시대에 생산된 견직물 중 가장 단순하게 직조된 것으로, 발해나 일본에서나 교류 과정 중에서 많이 기록되고 있는 의료이다.

발해가 증정 받은 絹, 絁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당·오대로부터는 728년 絹300疋, 730년 絹20疋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일본으로부터는 728년 발해왕에게 絁20疋, 740년 발해왕에게 美濃絁30疋·絹30疋, 己珍蒙에게 美濃絁20疋·絹30疋, 759년 渤海王에게 相酬土毛

101) 曹喜勝 저, 金洪圭 역, 2007, 『朝鮮の絹とシルクロード』, 東京: 雄山閣, 7쪽.

102) 『東史綱目』卷1 朝鮮箕子 元年, 箕子用殷田制 教民以田蠶織作.

103) 『魏書』卷100 高句麗, 衣布帛及皮蠶農不足以自供.

絹¹⁰⁴⁾40疋・美濃絹30疋, 760년 渤海王에게 絹30疋・美濃絹30疋, 772년 渤海王에게 絹30疋・美濃絹30疋, 777년 渤海王에게 絹50疋, 779년 常陸調絹, 799년 絹30疋・絹30疋, 828년 大使 이하 梢工 이상에게 絹 차등 지급, 859년 烏孝愼에게 東絹50疋, 861년 渤海使105인에게 出羽의 絹145疋, 李居正에게 絹10疋이 확인된다.

이 중 美濃絹, 常陸調絹, 東絹은 각 지역의 특산물로, 조정에 조세[調]의 의미로 바쳤던 것인데¹⁰⁵⁾ 지역에 따라 시의 등급에는 차이가 있었다. 미노[美濃]는 당시 畿内¹⁰⁶⁾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상등품의 시를 생산하였을 것이고,¹⁰⁷⁾ 히타치[常陸]는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하등품을 생산했다.¹⁰⁸⁾ 또한 東絹은 東國,¹⁰⁹⁾ 즉 지금의 관동지방에서 생산된 시를 의미하며, 『延喜式』에 따르면 東國은 스루가[駿河], 이즈[伊豆] 등의 10여개 국가를 지칭하나 이곳에서 생산된 료의 품질이 어떠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그림 1 참조). 그런데, 발해인들은 그 중 품질이 우수한 美濃絹를 빈번히 증정 받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창원 편년문서」에서 絹를 이용하여 제작된 의복을 착용한 사람들은 經

104) 土毛는 생산지의 산물의 의미로, 조공품을 뜻하지 않는다. 濱田耕策, 2000, 앞의 책, 147쪽.

105) 율령제 하에 있던 헤이안 시대 전반에는 나라시대에 이어 絹布類가 調, 庸으로 상납되었다. 前代에 布만 생산하였던 지역도 견직물의 생산이 행해져 絹・絹를 上輸하는 지방이 3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延喜主計式』에 의하면, 견 생산국에서 생산된 실의 품질에 따라 上糸國, 中糸國, 糸國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調庸으로서 납입되어진 絹布의 질은 매년 조악해졌고, 촌법도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이 증가하였다. 西村兵部 編, 1967, 『日本の美術 4 : 織物』, 至文堂, 45쪽.

106) 고대 京都 근방의 5개국, 山城・大和・河内・和泉・攝津을 지칭하는데, 이 근방에서 생산된 衣料들은 良質의 것이었다. 東京書籍編輯部, 2004, 『圖説 日本史』(개정 3판), 東京書籍, 45쪽.

107) 布目順郎, 1988, 『絹と布の考古學』, 雄山閣, 52쪽.

* 畿内는 당시 織部司에 직속되어 고급직물을 납품한 견직물의 주요 산지였는데, 현재 일본 특산 직물인 丹後の縮緬, 甲斐의 絹, 福井・石川の 絹, 越後の 上布, 結城의 紬 등이 이곳의 전통 위에 이루어졌다(西村兵部 編, 1967, 앞의 책, 41쪽; 永原慶二, 2004, 앞의 책, 19쪽).

108) 關根眞陸, 1986, 앞의 책, 18쪽.

109) 東(あづま): 넓게는 일본 本州 동부 지방의 총칭. 좁게는 關東 지방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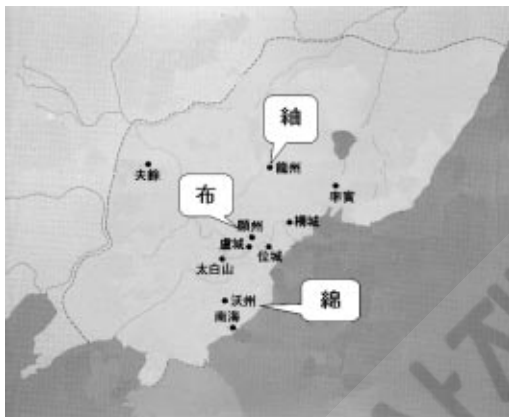
〈그림 1〉 고대 일본 繩 생산지(『圖說日本史』, 東京書籍, 45쪽; 『日本史綜合圖錄』, 山川出版社, 25쪽 참조)

師, 裝潢, 校生, 雜使, 膳部, 舍人, 案主, 別當僧, 校經僧, 主當, 題師, 主典, 領으로(표 4 참조), 이들은 사경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에 있다. 다만 주요 직책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皇太子馬甘, 木工, 佛工이 繩을 사용한 예가 확인되는데, 이는 불교와 관련된 인물이거나 皇太子의 시중을 드는 상황적 요인에 의한 예외적 결과라 생각된다. 특히 絹은 經師와 畫師의 冠帽 의료로 사용된 기록이 2건만 있어 빈번히 사용되었던 시와 비교가 되는 점으로, 사용빈도와 의료가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絹의 가치가 繩보다 다소 크다고 사료된다.

발해의 龍州는 紬로 유명했는데, 紬는 平織의 絹을 말한다. 용주는 上京龍泉府 관하의 한 州(그림 2 참조)로, 『新唐書』에 ‘龍州의 紬’라는 내용을 통해 용주가 위치한 上京 지구도 紬 생산의 집중지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용주 부근의 기후조건에 비추어 생각하면, 용주에서 생산된 주는 주로 蠶(뽕누에)에서 얻은 실을 원료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발해의 紬에 관한 기록으로, 748년에 “黑水靺鞨이 唐에 사신을 보내 魚牙紬와 朝霞紬를 증정했다”¹¹⁰⁾는 기록이 있고, 이러한 것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110) 『渤海國志長編』 卷1 總略上 天寶7載 29年 3月: 黑水靺鞨遣臣 獻金銀及六十紵布



〈그림 2〉 발해 衣料의 생산지(『발해를 찾아서』, 1998, 전쟁기념관, 41쪽 참조)

을 가진 흑수말갈이 발해에 병합되었음¹¹¹⁾을 감안하면 발해에서도 조하주와 어아주의 직조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발해의 平織 絹이 생산된 龍州는 기후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생산량이 충분치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발해는 일본으로부터 上品의 平織 絹을 교류 초반부터 후반까지 빈번하게 증정 받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당과의 관계에서 絹의 입수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입수 분량이 총 220필로, 당시 당과 일본으로부터 발해로 입수된 평직 견직물의 양은 적지 않았다.

魚牙紬朝霞紬牛黃頭髮人蔘.

- 111) 武王 시기에 高王 이후 영토의 재확장이 이루어져 黑水靺鞨을 포함한 말갈 세력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었는데, 대부분의 말갈 부족은 이미 750년대 전반 경까지 발해로의 병합이 완료되었다. 한편 흑수말갈의 對唐 조공은 722년부터 725년까지 총 7차례 보이나 이후 흑수말갈의 토벌이 이루어지는 726년부터 746년까지 730년 5월, 6월, 741년 1회를 제외하고는 조공 기록이 전혀 없다. 이렇게 726년 이후 흑수말갈의 조공이 갑자기 중지된 것은 발해의 흑수말갈 토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흑수말갈이 발해의 세력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북방의 흑수말갈은 8세기 초 무왕대의 북중은 일시적인 것으로, 이후 수차례 반란을 일으켰으나 宣王代에는 완전한 지배가 이루어졌다.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93, 앞의 책, 53쪽; 酒寄雅志, 2001, 앞의 책, 73쪽; 김진광, 2008, 「石室墓 造營을 통해 본 渤海의 北方 經營」, 『高句麗渤海研究』 제30집, 고구려발해학회, 170쪽.

2) 錦, 綾

錦은 미리 염색한 실을 사용하여 이중조직으로 제직한 다채로운 문양의 견직물로(그림 3), 주로 經錦과 緯錦으로 분류된다. 경금은 바탕과 문양이 경사의 색사로 직조된 것으로, 중국 漢 시대 이후의 것을 말한다. 위금은 위사에 複數의 색사를 사용하여 바탕과 문양을 나눠 직조한 것으로 初唐 경에 시작되었는데, 경금과 달리 색상 수, 문양의 크기 조절이 비교적 자유로워 점차 주류를 점하게 되었다.¹¹²⁾

또한 綾은 사선 방향의 문양이 나타나는 견직물을 의미한다(그림 4).

발해가 증정받은 錦, 綾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당 · 오대로부터는 813년, 816년, 817년, 838년, 846년, 908년, 924년 총 7회(당 5회, 후량 1회, 후당 1회) 錦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분량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일본으로부터는 728년 발해왕에게 綾10疋, 사신에게 綾(분량 없음), 759년 발해왕에게 錦4疋을 증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錦 · 綾 등은 고도의 직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급 직물로서, 唐의 직조 기술이 일본으로 유입된 것이다. 奈良朝 겐메이[元明]代(707~715년)에는 조정의 논의를 거친 후 唐으로 織物司¹¹³⁾를 파견하여 織造法을 배워오게 한 뒤 백성들에게 錦과 綾 직물의 직조법을 가르치도록 하였다.¹¹⁴⁾ 이를 바탕으로 하여

112) 松本包夫, 『正倉院裂: 日本の染織1』, 京都書院, 4쪽, 13쪽.

113) 大藏省 아래에 織部司가 있고, 직부의 正을 長官으로 하여 그 밑에 실제 기술에 관여하는 挑文師 4인과 挑文生 8인이 있다. 도문사는 직조해야 하는 錦綾의 모양을 생각하고, 作圖하여 직기의 장치 설계를 맡고, 도문생은 직기를 조작하여 제직했다. 또한 『集解』의 古記·別記에 따르면 錦戶 110戶, 綾을 직조하는 吳服部 7戶, 河内に 거주한 광복 絹을 직조하는 350戶가 직부사에 소속되어 徭役을 면제받았다. 또한 매년 1~2인이 司에 上番하고, 다수는 郡郷에 있어 금릉을 직조하고, 결정된 분량의 직물을 상납했다. 그들은 이전의 錦織部 등에서 금릉을 계속 직조했던 사람들로, 새롭게 개편된 司의 통제 하에 둠으로써 신기술 도입도 용이하게 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모양, 직조 기법도 개발했을 것이다. 西村兵部 編, 1967, 앞의 책, 30쪽.

자체 내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和銅 4년(711년)에 挑文師(문양을 짜 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를 모든 지방에 파견하여 금·능의 직조 방법을 가르쳤고, 그 결과 다음해에는 21개 나라에 처음으로 금·능을 팔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續日本記』에 기록¹¹⁵⁾되어 있다. 또한 和銅 6년(713년)에는 쿠라츠쿠리노마신[鞍作磨心]이라는 자가 특히 능이 뛰어나서 그가 짠 금·능이 훌륭했었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다.¹¹⁶⁾

이후 元正[元正]代 養老 원년(717년)에는 모든 나라에서 능을 직조하게 하여 상납의 양을 정하였고, 동왕 7년(723년)에는 彩綾의 사용이 확대되어, 쇼우무[聖武]代 神龜 5년(728년)에 발해국 사신에게 능 10필 등의 견직물을 증여할 수 있을 만큼 생산도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唐으로부터의 舶載品을 선호하는 것은 여전하여 9세기 귀족들 사이에서는 唐 상인들이 들여온 唐物 중 唐錦, 唐綾 등 박재 고급직물에 대한 수요가 도시를 중심으로 증대되었고, 점차 지방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동시에 하급자들이 唐物을 취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엄격했다.¹¹⁷⁾

이를 통해 일본에서 금, 능의 직조가 가능하여 생산이 이루어진 시기는 8세기 전반 이후로 볼 수 있고, 당으로부터 수입된 금, 능에 대한 귀족들의 수요가 여전한 것은 아직은 생산량이나 기술 정도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발해가 받은 금, 능은 당시 일본에서 직조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그 가치가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직물들이 일본에서 직조되었다 해도 당시 일본에서 활동한 고급 염직 종사자들은 우리나라나 대륙에서의 귀화인이거나 일본인이라 해도 귀화인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 직물들은 다분히 모방색이 짙었을 것이다.¹¹⁸⁾

114) 王輯五, 1975, 『中國日本交通史』, 臺灣商務印書館, 92쪽.

115) 『續日本記』 卷5: 元明天皇和銅四年……閏六月……丁巳遣挑文師于諸國 始教習折錦綾……和銅五年……秋七月壬午……廿一國始織綾錦

116) 『續日本記』 卷6, “元明天皇和銅六年……十一月……丙子 詔正七位上鞍作磨心 能工異才 獨越衆侶 織成錦綾.”

117) 西村兵部 編, 1967, 앞의 책, 32~33쪽, 45쪽.

118) 山辺知行 編, 1966, 『日本の美術 11: 染』, 至文堂, 26쪽.

한편 발해의 錦, 綾 직조 기록을 직접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건국 이전 고구려의 錦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간접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後漢書』¹¹⁹⁾ 『梁書』¹²⁰⁾ 『魏書』¹²¹⁾ 『南史』¹²²⁾ 『北史』¹²³⁾ 『通典』¹²⁴⁾에, “公會시 모두 錦에 繡가 놓이고, 金銀으로 장식된 옷을 입는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상류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금직물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翰苑』 高麗條에 “고구려에서 금을 짠데, 紫地 紋錦을 최상으로 쳤고, 다음은 五色錦, 그 다음은 雲布錦이 있었다”¹²⁵⁾는 기록에서 다양한 문양의 금직물을 직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 東大寺 獻物帳에 보이는 ‘高麗錦’은 고구려에서 생산된 금직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일본 아스카(飛鳥) 시대에 전해졌을 것으로 본다.¹²⁶⁾

『冊府元龜』 發號令條에, “고급직물 직조를 금지한 詔文 중, ‘高麗白錦’ 등은 舊例에 의해 만든다”¹²⁷⁾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때의 ‘고려백금’은 고구려에서 직조되어졌던 독특한 기법의 금직물일 것이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 이 고려백금이 8세기 후반 중국에서 직조되어 생산되었다는 것은 이미 고구려 시기부터 중국에 백금이 반입되어졌고, 백금이 지니는 독특한 기법의 이국정취가 인기를 끌게 되어 중국인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錦을 먼저 직조했었던 중국으로 고려백금 직조 기법의 역수입으로 이어졌다고 할 것이다.¹²⁸⁾ 다만 大曆 6년

119) 『後漢書』 卷115 高句麗,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120) 『梁書』 卷54 列傳 第48 諸夷 高句麗,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121) 『魏書』 卷100 高句麗,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122) 『南史』 卷79 列傳 第69 夷貊下 高句麗,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123) 『北史』 卷94 列傳 第83 高麗,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爲飾.

124) 『通典』 卷186, 高句麗……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125) 『翰苑』 蕃夷部 高麗, 高麗……造錦紫地 文者爲上次有五色錦次有雲布錦.

126) 이여성, 1998, 『조선복식고』, 범우사, 191~192쪽.

127) 『冊府元龜』 卷64 帝王部 發號令3, “(大曆)六年(771) 四月……耗縑繒之本 資錦綺之奢 異彩奇文 恣其誇競 今師旅未 黎元不康 豈使淫巧之工 更虧常制 在外所織造大張錦 透背及大綢錦 竭鑿六破已上錦 獨窠文紗 四尺幅及獨窠司馬綾等 並宜禁斷 其常行高麗白錦 雜色錦及常行小文字綾錦等 任依舊例造.”

128) 日野開三郎, 1984, 앞의 책, 85~86쪽.

은 771년으로 이미 고구려가 멸망된 지 100년이, 발해가 건국되고 나서 약 70년이 지난 시기이므로, 고구려 멸망 후 그 백금 직조 기술을 갖춘 유민들이 발해로 흡수되면서 그 기술이 발해로 계승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외에 6~7세기 일본의 금직물로 ‘야마토니시키[大和錦, 倭錦]’ ‘카라니시키[韓錦, 加羅錦]’ ‘코마니시키[高麗錦]’의 세 종류가 존재한다. 당시 일본인들은 錦 직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금직물은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재봉공들에 의해 직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중 ‘코마니시키’는 고구려 계통의 견직물일 것이다.¹²⁹⁾

이러한 기록들은 고구려에서는 錦 직조가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유민들이 발해의 주요 세력으로 발해 문화 성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감안했을 때 그 직조 기술도 발해로 유입되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遼史』地理志에는 “綾錦院, 班院의 祗候, 蕃, 漢, 渤海人 300명이 內府의 수요에 공급하였다”¹³⁰⁾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거란이 祖州에 綾錦院을 설치하여, 번인, 한인, 발해인 등 300명을 배치하여 內府가 요구하는 綾, 錦의 공급을 맡았다는 것이다. 당시 거란은 수도인 臨潢府에 능금원을 두고 황실에 綾, 錦을 공급하였다. 발해 멸망 후의 시기이기는 하나 그 직조 기술자 중 발해인들이 속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발해에서 능, 금의 직조가 가능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¹³¹⁾

발해는 錦이나 綾을 당·오대로부터는 9세기에, 일본으로부터는 8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입수하고 있었는데, 의료의 분량 측면에서나 증정 횟수에 있어서나 다른 의료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은 당시 생산이 어렵고 귀하게 취급되었던 의료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발해는 고구려로부터 금직물의 직조기술을 계승하여 발해 자체내의 생산은 이미 가능했을 것으로, 이때의 금은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初唐부터 성행하여 직조된 緯錦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창원 편년문서」에서는 사용 기록이 전혀 없다.

129) 曹喜勝 저, 金洪圭 역, 2007, 앞의 책, 73~74쪽.

130) 『遼史』卷37 志7 地理志1 上京道 祖州 天成軍, “東爲州 及諸官 舍 綾錦院 班院 祗候蕃漢渤海三百人 供給內府取索.”

131) 日野開三郎, 1984, 앞의 책, 383쪽.

3) 羅

羅는 직조직으로 직조된 반투명하고 가벼운 견직물로, 『和名抄』에서는 ‘매미 날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히 얇은 직물이다. 이는 오늘날 정창원에 다수의 유물이 전해지고 있고 있는 만큼 나라시대에 많이 이용되었으나 헤이안[平安] 시대 이후 점차 줄어들게 된다.¹³²⁾

발해의 수입 의료 목록에서는 당과의 관계에서는 기록이 전혀 없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759년에 羅4疋, 白羅10疋이 기록되어 있는데, 힐라는 염색되어 있는 것이고, 백라는 어떤 색상이나 문양 없이 정련된 상태의 실로 직조된 것을 의미한다. 당시의 染에는 藤 · 夾 · 絞 의 세 기법이 있고, 이 기법들은 唐의 영향으로 발달했고, 織物도 唐의 纈, 夾 등을 모방했다.¹³³⁾

갈힐은 직물 위에 붓으로 먼저 가열 용융한 臘으로 문양을 묘사하거나 용융한 납향을 판형으로 부착하고, 그것을 포백 위에 눌러 찍어낸 표면에서 염색을 행한 후 납향을 제거하여 바탕색보다 옅은 색의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납염’이라고도 한다(그림 5). 갈힐에 이용된 직물은 纈나 綾이 이용되었는데, 갈힐 직물 바탕에 납향을 잘 흡착시켜야 했으므로, 비교적 두꺼운 직물이 적합했다. 주로 無地の 두꺼운 시가 자주 사용되었고, 능은 그 자체로 문양이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용된 예가 많지 않다.¹³⁴⁾

絞 은 실로 직물의 일부분을 묶고 침염하여 문양을 표현한 기법으로, 현재의 ‘시보리염(絞リ染め)’ ‘홀치기염’이다(그림 6). 실로 직물을 묶을 때 곡식알이나 작은 돌 등을 직물 안에 넣어 묶기도 하는데, 만들어지는 도안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작은 점무늬나 사각의 문양이다.¹³⁵⁾ 교힐 기법은 바탕천을 묶어 침염하면 되므로 협힐의 경우와 같이 염료의 제한을 주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각종 색상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자유로운 문양의 표현이 가능하였다. 교

132) 關根眞陸, 1986, 앞의 책, 21쪽.

133) 王輯五, 1975, 앞의 책, 92쪽.

134) 關根眞陸, 1986, 앞의 책, 33~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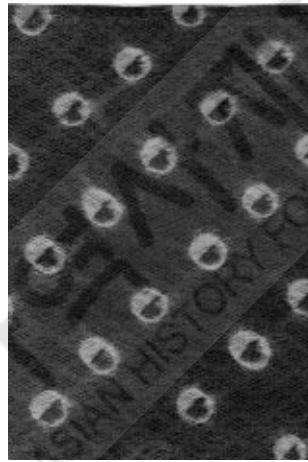
135) 심연옥, 2002, 『한국직물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298쪽.

힐은 두꺼운 직물이 보다 효과적이었으므로, 布, 紵, 綾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의 예가 많다.¹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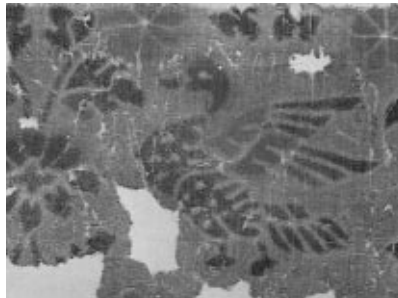
다음은 夾 인데, 이는 갈힐과 함께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어진 염색 기법으로, 다채롭고 큰 형태의 문양을 양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唐代의 최



〈그림 5〉 祿地唐草花文 紵
(染織の美, 23쪽)



〈그림 6〉 紵地目交文紋 綾
(染織の美, 44쪽)



〈그림 7〉 좌 : 紵地夾 紵(正倉院 染織, 112쪽)
우 : 黃地唐草花鳥文夾 羅(染織の美, 44쪽)

136) 關根眞陸, 1986, 앞의 책, 40~42쪽.

신 기법이고 정창원 직물 중에도 유례가 많다.¹³⁷⁾ 협힐은 같은 문양을 조각한 2매 1조의 동일 규격 판 사이에 직물을 끼우고 잘 잡아당겨 판을 단단히 고정시킨 후 판 사이에 염액을 주입하여 염색한 것으로, 이 때 화판이 잘 고정되어 있어도 염료가 밖으로 살짝 퍼져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느낌을 낸다(그림 7).¹³⁸⁾ 협힐에 사용된 직물은 羅, 縵, 綾, 紗를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은 얇은 직물인 라인데, 이는 얇아 몇 장이나 겹쳐도 염료가 잘 침투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갈힐이 주로 두꺼운 직물을 사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¹³⁹⁾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발해가 수입한 羅는 세 가지 염색 기법 중 라에 가장 적합한 협힐염의 방법이 이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발해의 羅 직조 기록을 錦·綾과 함께 직접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고구려의 羅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간접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周書』,¹⁴⁰⁾ 『隋書』,¹⁴¹⁾ 『北史』,¹⁴²⁾ 『新唐書』,¹⁴³⁾ 高麗條에는 蘇骨이라는 상류층 관모의 소재로 白, 紫, 靑色の 羅를 계층별로 사용한다는 기록과 『三國史記』¹⁴⁴⁾에는 唐의 「通典」을 인용하여 고구려 樂工人의 관모와 帶의 소재로 紫色 羅를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 내용들은 고구려인들이 라를 직조했다는 단서가 될 수는 없으나 수요가 있다는 것은 공급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금의 직조가 가능했음을 감안하면 라도 충분히 생산 가능했을 것이고 발해에도 그 기술이 전승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일본이 라를 직조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발해에 증정한 힐라, 백라는 唐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증정

137) 松本包夫, 앞의 책, 50쪽.

138) 심연옥, 1998, 『중국의 역대직물』, 한림원, 110쪽.

139) 關根眞陸, 1986, 앞의 책, 37~40쪽.

140) 『周書』 卷49 列傳41 異域上 高麗, “丈夫……其冠曰骨蘇多以紫羅爲之.”

141)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高麗, “貴者冠用紫羅飾以金銀.”

142) 『北史』 卷94 列傳83 高麗, “貴者其冠曰蘇骨多用紫羅爲之飾以金銀.”

143) 『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王……白羅製冠革帶皆金釧 大臣靑羅冠次絳羅珥兩鳥羽金銀雜釧.”

144) 『三國史記』 卷32 雜志1 樂, “高句麗樂 通典云 樂工人紫羅帽飾以鳥羽黃大袖紫羅帶大口袴赤皮 五色縹繩.”

횃수, 분량을 고려했을 때 일본에서도 귀하게 여겼던 의료였을 것이다.

「정창원 편년문서」에서는 사용 기록이 전혀 없다.

4) 帛, 彩帛 및 綵練

帛은 견직물의 총칭이고, 彩帛의 ‘彩’는 ‘무늬, 채색, 장식’의 의미¹⁴⁵⁾가 있으므로, 채백은 염색된 다양한 색실로 직조된 견직물을 뜻한다. 『日本後紀』에 “延曆 18년(799년) 정월 7일, 발해 사신 大昌泰 일행을 위한 연회를 베풀었는데, 연회 장소인 樂院이 미완성이어서 彩帛 여러 겹으로 장식한 假殿을 만들어 宴樂을 개최했다”¹⁴⁶⁾는 기록이 있다. 이 내용을 통해 채백의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綵練의 ‘練’은 ‘生絹’에 대한 용어¹⁴⁷⁾로, 세리신이 제거된 정련 상태 비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綵練은 색실로 직조된 정련 견직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발해로 입수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당 · 오대로부터 724년 帛50疋, 727년 綵練100疋, 帛50疋, 729년 帛20疋, 730년 帛(분량 없음), 731년 帛130疋, 736년 帛530疋, 737년 帛100疋, 739년 帛100疋, 813년, 816년, 838년, 846년, 924년에는 분량없이 綵를 받았는데, 綵는 彩帛이나 綵練으로 생각된다. 帛이나 綵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고급 견직물인 錦에 비해 횃수나 분량에서 월등히 많기 받았기 때문에, 금, 능, 라 등과 같은 고급 견직물에 비해 생산이 비교적 용이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는 728년 발해왕이 彩帛10疋, 사신이 彩帛(분량 없음), 759년 발해왕이 彩帛40疋, 777년 견일본사 史都蒙 일행이 綵帛(분량 없음)을 받았다.

145) 諸橋徹次, 1985, 『大漢和辭典』 卷4, 東京:大修館書店大漢和辭典, 793~794쪽.

146) 『日本後紀』 卷8, “延曆十八年春正月……壬子豐樂院未成功 大極殿前龍尾道上搆作借殿 以彩帛.”

147) 關根眞陸, 1986, 앞의 책, 18쪽.

발해는 당·오대로부터 교류 초반부터 후반기까지 꾸준히 다량의 정련된 견직물인 帛, 彩帛, 綵練을 받았으나 일본으로부터는 소량의 彩帛을 3회만 받았을 뿐이다. 이 직물들이 錦, 綾, 羅 정도는 아니지만 彩帛, 綵練은 色絲로 문양을 넣어야 했을 것으로, 어느 수준의 직조 기술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일본은 기술력의 부족으로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발해에 증정한 분량도 적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오대로부터 받은 백, 채백, 채련은 발해의 부족한 견직물 생산량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창원 편년문서』에서는 사용 기록이 전혀 없다.

5) 兩面

兩面은 ‘兩’은 ‘장식하다’는 뜻과 함께 ‘繡’의 의미를 포함하는데,¹⁴⁸⁾ 『說文』에, “繡曰絞也”라 하여 ‘실을 몇 가닥 합쳐 꼰다’¹⁴⁹⁾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의미를 합쳐 생각해 보면, 양면은 꽤 두꺼운 色絲로 직조된 문양이 놓인 도톰한 느낌의 견직물로, 錦과 유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양면이 금보다 다소 두껍지 않을까 추정된다. 이외에 겉과 안이 다른 문양으로 직조된 이중 직물¹⁵⁰⁾로 보기도 한다.

양면에 대해서는 半臂의 걸감에 사용되어진 의료로, 일본 『西大寺資財帳』의 白地兩面, 『正倉院編年文書』의 黃地兩面, 地兩面, 白橡兩面, 吳桃地兩面, 綠地兩面과 같은 문헌에서만 그 명칭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반비는 가장 겉에 입었던 옷이었고, 문헌에서는 錦과 함께 다양한 양면이 기록되고 있어¹⁵¹⁾ 당시 錦에 못지않은 고급직물이었을 것이다. 당시 兩面은 오우미[近江] 이하 10개국에서 생산되었다.¹⁵²⁾

148) 諸橋轍次, 1985, 『大漢和辭典』卷1, 東京:大修館書店大漢和辭典, 1066쪽.

149) 諸橋轍次, 1985, 『大漢和辭典』卷8, 東京:大修館書店大漢和辭典, 1112쪽.

150) 김민지, 2000, 앞의 글, 202쪽.

151) 關根眞陸, 1986, 앞의 책, 109쪽, 112쪽, 114~116쪽.

152) 西村兵部 編, 1967, 앞의 책, 44쪽.

발해의 수입 의료 목록에서는 759년 발해왕에게 兩面2疋 기록만이 확인되고 있어 금, 능, 라를 증정 받았던 횡수나 양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하기 힘들었고, 귀한 의료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정창원 편년문서」에서는 사용 기록이 전혀 없다.

3. 麻織物

포에 관한 용도나 종류는 「정창원 편년문서」의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문서 중에는 寫經所에 근무하는 낮은 직급의 관리자나 일반인들이 착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의복과 衣料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는 주로 다양한 布類로, 상등품인 望布·細布와 하등품인 交易布·商布·祖布 및 調布·庸布·紺布·上總布·洗布이다(표 4 참조).

발해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의료 목록을 보면, 740년 발해 왕비 薨去시 賻物로 받은 품목 중에 調布115端, 庸布60段, 779년 陸奧稅布(분량 없음)로 2회에 걸쳐 포를 증정 받은 것(표 3 참조)으로 나타나고 있다.

庸布는 稅目 중 울령제 시대에 부역 대신 납부되어진 포이고, 調布는 조세의 의미로 거둬들인 포인데, 『延喜式』에는 말 1필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이 正人(21~60세 남자)의 규정 납세액의 몇 인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 調布와 庸布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 즉 말 1필당 調布 30端(1端=약 16m, 총 480m)이 45인분, 庸布 40段(1段=1端과 너비는 같고 길이는 약 2丈 짧아 약 8m, 총 320m)이 20인분으로,¹⁵³⁾ 이를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調布는 10.67m, 庸布는 16m로 조포의 가치가 용포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153) 朝日新聞社, 2003, 『日本の歴史: 古代-税・交易・貨幣』, 2~198쪽.

* 괄호의 端, 段 단위 환산은 『圖說 日本史』, 2004, 東京書籍, 46쪽의 내용을 참고로 1端=약16m, 關根眞陸, 1986, 『奈良朝服飾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6쪽의 내용(端은 길이 4장 2척·너비 2척 4촌, 段은 길이 2장 8척·너비 2척 4촌)에 근거해서 1段=1/2端으로 정했다.

〈표 5〉 調布와 庸布의 가치 비교

말 1필당 積荷量	正丁 輸納額相當人數	調布와 庸布의 가치 비교
調布 30端 庸布 40段	45人分 20人分	
[換算] 1端=약16m 1段=약8m	* 1段=1端과 같은 너비, 길이 약2丈 짧음	
	1人당	
調布 480m(45人分) 庸布 320m(20人分)	10.67m 16m	調布의 가치가 용포보다 다소 높다

그리고 調布의 가치는 다시 상등품인 望 布와 비교할 수 있는데, 賦役令에는 일반적인 調布가 길이 5장 2척, 너비 2척 4촌을 2丁(2인이 조세로 내는 분량)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望 布는 비슷한 분량을 4丁(4인이 조세로 내는 분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望 布가 調布보다 2배나 가치가 높았음¹⁵⁴⁾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陸奥稅布는 陸奥에서 생산된 調布로 이는 凡布에 속한다. 凡布란 細布(1cm 평방 당 경사 20本 전후, 위사 15~16本 정도)보다 거친 중간 등품의 포로서, 밀도는 대개 1cm 평방 당 경사 10本 전후, 위사 7~8本 정도이고, 대체

〈표 6〉 望 布와 調布의 가치 비교

賦 役 令		望 布가 調布보다 2배의 가치
〈調布〉 길이 : 5丈 6尺 너비 : 2尺 4寸	2丁(2人分)	
〈望 布〉 調布와 유사한 길이, 너비	4丁(4人分)	

154) 關根眞陸, 1986, 위의 책, 16쪽.

로 위사보다 경사의 밀도가 높다.¹⁵⁵⁾

따라서 발해가 입수한 調布, 庸布, 陸奧稅布는 조세로 거둬들인 포로서, 상 등품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陸奧稅布는 陸奧에서 생산된 포임을 감안했을 때 최상의 품질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발해의 布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925년 裴璆를 파견했을 때 後唐에 細布의 증정 기록,¹⁵⁶⁾ 발해 유민들이 세운 東丹國 초기에 해마다 布 10만단, 細布 5만단을 契丹에 증정한 기록,¹⁵⁷⁾ 928년(東丹國 人皇王 甘露 3)에 발해에서 생산된 白紵를 거란에 증정 기록,¹⁵⁸⁾ 다른 말갈 부족에 비해 독립적이었으나 뒤늦게 발해의 일부로 포섭되었던 黑水靺鞨(각주109 참조)이 748년, 唐에 60綜布를 조공했다는 기록¹⁵⁹⁾이 있는데, 이 60綜布는 細布의 일종이었다. 또 『遼史』에 “동단국이 거란에 歲貢으로 布 15만端과 말 1,000匹을 주었다”¹⁶⁰⁾는 기록이 있는데, 15만端(1端=약 16m)의 분량은 약 2,400,000m가 되므로 발해 지역에서는 마직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東丹國 자체 내에서 사용하는 분량과 민간의 소비분량을 더한다면, 매년 생산량은 막대한 수량이 된다.¹⁶¹⁾

따라서 발해에서의 布는 발해 멸망 후에도 꾸준히 생산량이 매우 많았으며, 그 중 上等의 품질의 포(細布, 白紵布)는 수출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後漢書』,¹⁶²⁾ 『三國志』¹⁶³⁾에 挹婁와 肅慎 사람들의 麻布 사용 기록,

155) 關根眞陸, 1986, 앞의 책, 13~16쪽.

156) 『冊府元龜』 卷972 朝貢5, “後唐 莊宗同光……三年……遣使裴璆 貢人參松子昆布 黃明細布貂鼠皮一褥.”

157) 『渤海國志長編』 卷17 食貨考 第4, “謹案渤海生産布設 已見前東丹國初建 約歲貢 布十萬端細布五萬端於契丹 是布又 細之分.”

158) 『渤海國志長編』 卷17 食貨考 第4, “謹案東丹國甘露三年 人皇王 獻白紵於契丹 此亦渤海所産也.”

159) 『渤海國志長編』 卷17 食貨考 第4, “大興十一年 黑水部獻六十綜布於唐.”

160) 『遼史』 卷72 列傳2 宗室 義宗倍, “改其國曰東丹 名其城曰天福 以倍爲人皇王主之……歲貢布十五萬端 馬千匹.”

161) 朱國 · 魏國忠 著, 浜田耕策 譯, 1995, 『渤海史』, 東京: 東方書店, 123쪽.

162) 『後漢書』 卷85 東夷 列傳75 挹婁, 有五穀 麻布.

163)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 挹婁, 有五穀 牛馬 麻布.

『北史』,¹⁶⁴⁾ 『隋書』¹⁶⁵⁾에 勿吉과 그 이후 靺鞨 여성이 布를 의료로 한 의복과 치마(裙)를 착용한 기록, 『通典』에 “고구려인들은 賦稅로 絹, 布, 粟을 받는다”¹⁶⁶⁾고 하여 마포가 고구려 시기에도 직조되었고, 이것을 화폐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내용들은 발해 건국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麻布를 일상 의료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의료에 비해 그 오랜 전통이 누적되어 발해 시기 마직물의 우수한 직조 기술, 생산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정창원 편년문서」에서는 다양한 품질의 포를 일반인부터 하급 관리층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음(표 4 참조)을 볼 수 있음에 반해, 발해가 일본으로부터 입수한 포는 품질이나 빈도면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 조정에서는 충분히 다량의 우수한 품질의 포의 증정이 가능했으나 기록에서는 오히려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소량의 포를 증정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당시 발해에서는 布의 생산량이 많고, 좋은 품질의 것(細布, 白紵布)을 생산내지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布의 직조 기술이 발달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糸

糸는 봉제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정창원에 남아있는 의복류 등을 재봉한 실을 조사한 결과, 당시의 봉제사는 Z 꼬임의 麻絲와 絹絲이고, 대체로 布地와 같은 품질로 나타나고 있다.¹⁶⁷⁾

발해가 증정받은 목록에서 일본 조정은 728년 발해왕에게 糸100紵, 740년 渤海王에게 糸150紵·己珍蒙에게 糸50紵, 759년 渤海王에게 糸200紵, 760년 渤海王에게 200紵, 772년 國王에게 糸200紵, 777년 國王에게 糸200

164) 『北史』 卷94 列傳82, “勿吉國在高句麗北 一曰靺鞨……婚嫁婦人服布裙…….”

165) 『隋書』 列傳46 東夷 高麗 靺鞨, 婦人服布 男子衣 狗皮

166) 『通典』 卷186, 高句麗……賦稅則絹布及粟.

167) 關根眞陸, 1986, 앞의 책, 24~25쪽.

絢, 796년 渤海王에게 糸100絢, 799년 信物로 糸200絢가 기록되어 있어 眞綿 다음으로 많은 양을 발해로 입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해가 입수한 실은 입수량이나 발해의 지리적 특징을 고려해 보았을 때 絹絲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창원 편년문서」에는 糸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이는 고문서에 기록된 의료들이 이미 제작된 의복들의 재료들을 언급한 것이므로, 독립적 의료로서의 糸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발해인들은 公的 貿易 과정에서 糸를 입수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실은 무역 품목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IV. 발해에 입수된 의료의 입수 횟수 및 분량에 관한 분석

발해가 수입한 의료는 당·오대와의 관계에서 彩帛·錦과 같은 견직물이 대부분을, 일본과의 관계에서 다수는 綿, 평직 견직물인 紵·絹 및 絹絲가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帛·彩帛·彩練, 綾, 錦, 羅, 兩面과 같은 다양한 고급 견직물이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정창원 편년문서」에서는 다량의 布와 綿과 일부 紵, 絹이 사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종류나 규모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국 간의 교류 관계를 정치 및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발해가 일본으로부터 증정받은 布, 平織 絹(紵, 絹), 眞綿의 증정 횟수, 量 및 품질의 高下 등이 갖는 의미를 일본의 調庸 制度에 근거하여 종합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시에 발해가 다량 입수한 견직물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언급할 것이다.

1_ 布, 平織 絹織物, 眞綿과 調庸 制度와의 상관관계

당시 일본의 調庸 제도는, 중앙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의 품목·품질·수량을 각 지역의 공민에게 할당하고, 공민들은 규정된 품목, 품질, 수량의 물품을 제출하도록 요구 받았던 제도이다.¹⁶⁸⁾ 당시 공민이 부담한 조세 내역 중 物納稅는 다시 租·調·庸으로 세분되는데, 調는 정규적인 조세로 絹과 絁(絹布), 糸(絹絲), 綿(絹綿), 布(麻布)가 납부되었고, 庸은 勞役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를 대신하여 布(麻布)를 기준에 따라 납부하도록 했다(표 7 참조). 이렇게 각 지역으로부터 거둬들인 조세는 지방과 중앙에 운반되어 당시 지배층이자 특권층이었던 官人·官司에 의해 분배·소비되는데,¹⁶⁹⁾ 발해가 입수하거나 증정받은 품목들을 보면, 調布, 庸布, 美濃絁, 常陸調絁, 東絁, 調綿, 相模庸綿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들은 조庸제도를 통하여 거둬어들인 의료의 일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官人은 위계에 알맞게 位田·位封을, 관직에 맞게 職田·職封 등을 지급받는 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그들이 받은 녹봉을 보면, 調庸 제도에 의해 납부된 平織 絹織物(絁·絹), 布, 綿의 양이 품계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발해인들에게 지급된 衣料의 분량과 비교해 봄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창원 편년문서」에 기록된 의복 착용자들은 寫經 업무 종사자들이나 단순 노무자였는데, 그 중 지위를 갖춘 사경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經師所의 문서, 사경소 발급 보시[布施] 신청, 작업자들을 위한 食料 신청 등의 장부 서명을 통해 그들의 이름과 지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무 담당자인 案主는 高屋赤麻呂·小原國堅·葛野古萬呂·阿刀萬繩萬呂·川村福物·辛國人成·市原王·常世馬人·上馬養·佐伯今毛人 등이, 잡사·공봉 예불을 담당한 職舍人은 伊福部宿 男依, 坊舍人은 肖奈王廣山·志斐連萬呂·阿刀連酒

168) 朝日新聞社, 2003, 앞의 책, 2~198쪽.

169) 東京書籍編輯部, 2004, 앞의 책, 46쪽.

〈표 7〉 고대 일본의 납세 제도

일반인의 부담 내용					비고
租稅		正丁 (21~60세의 男子)	老丁 (61~65세)	少丁 (17~20세)	
物納稅	租	곡물의 수납			
	調	* 정기적인 調(正調) 絹, 絁(絹布) 8尺5寸 糸(絹絲) 8兩 綿(絹綿) 1斤 布(麻布) 2丈6尺 등에서 1 종류 * (調)雜物(正調를 수납하지 않을 때) 그 외의 特産物 34 종류	正丁의1/2	正丁의1/4	京·畿內는 반감 (正丁는 調布1丈3尺) 운반은 납세자 부담
		* 調副物 染料(紫·紅· 등), 胡麻油, 麻 등에서 1종류	없음	없음	京·畿內는 면제
	庸(歲役)	布(麻布) 2丈6尺(約8m) 납입 (원래는 연간 10日 勞役)	正丁의1/2	없음	京·畿內는 면제 운반은 납세자 부담
勞動稅	仕丁	50호마다 正丁 2人을 挑發(3년간) (식량은 50호에서 부담)	없음	없음	中央官廳의 雜役이나 勞役に 종사
	雜徭	지방에서 연간 60일 이하의 勞役	30일 이하	15일 이하	후에 반감
	兵役	正丁 3~4人에서 1人 징병	없음	없음	兵士는 庸·雜徭 면제 衛士·防人는 調·庸·雜徭 면제
雜稅	出舉	창고에 저장된 벼를 봄, 여름 2회, 강제적으로 부담, 가을에 이자를 붙여 반납			
	義倉	흉작에 대비해 빈부에 따라 일정량의 粟 등을 납부			

※ 『圖說 日本史』, 46쪽; 『新選 日本史圖表』, 23쪽; 『日本の歴史: 古代-稅・交易・貨幣』, 2~197쪽 참조

主가 기록되고 있다. 이들의 지위에 대해 天平 11년(739년) 정월부터 8월까지 임시적으로 案主를 맡았던 市原王은 당시 從5位下, 天平 20년(748년) 10월경부터 案主를 담당한 上馬養은 從8位下, 舍人 출신으로 天平 15년(73년)부터 담당했던 佐伯今毛人의 天平 17년(745년)의 지위는 從7位下였으며, 職舍人 伊福部宿 男依는 大初位下, 坊舍人 肖奈王廣山은 從8位上, 志斐連万呂·阿刀連酒主는 少初位上이었다.¹⁷⁰⁾

이들의 지위를 살펴보면, 담당자이자 이들 중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案主가 중5위하였던 市原王을 제외하고는 7位, 8位로 당시의 관리의 등급 체계 중 낮은 지위에 속하였고, 舍人들도 마찬가지로 최하위직인 初位에 해당되었다.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다른 직책의 인물들도 이 정도의 위계를 갖추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대부분이 단순 노무자들로서 위계와는 무관한 인물들이었을 것이다(그림 8 참조).

「정창원 편년문서」에 기록된 구체적인 의료들을 종류별로 정리하면, 布(布·調布·庸布·紺布·商布·祖布·祖交易布·細布·望布·上總布·凡布·洗布), 綿(綿·調綿·庸綿·商綿·庸綿黑綿), 紵(紵·白橡紵), 絹, 帛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絹製(紵, 絹)의 비단류보다는 布와 綿類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이 중 紵를 이용하여 제작된 의복을 착용한 사람들은 經師, 裝潢, 校生, 雜使, 膳部, 舍人, 案主, 別當僧, 校經僧, 主當, 題師, 主典, 領으로, 이들은 사경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에 있다. 다만 단순 노무자로 추정되는 皇太子馬甘, 木工, 佛工이 紵를 사용한 예가 확인되는데, 이는 불교와 관련된 인물이거나 皇太子의 시중을 드는 상황적 요인에 의한 예외적 결과라 생각된다. 특히 絹은 經師와 畫師의 冠帽 의료로 사용된 기록이 2건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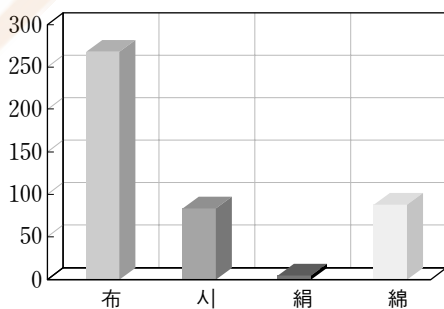
이처럼 「정창원 편년문서」에 기록된 의복 착용자들은 당시의 낮은 위계에 속해있거나 雜務를 행했던 하층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이나 고려된 의복

170) 山下有美, 1994, 앞의 글, 8쪽, 32쪽, 34쪽, 38쪽; 山下有美, 1995, 앞의 글, 56쪽.

직책	성명	
案主	高屋赤麻呂, 小原國堅, 葛野古萬呂, 阿刀萬繩萬呂, 川村福物, 辛國人成, 市原王, 常世馬人, 上馬養, 佐伯今毛人	正1位 從1位 正2位 從2位 正3位 從3位 正4位 從4位 正5位 從5位
職舍人	伊福部宿稱男依	正6位 從6位 正7位 從7位
坊舍人	肖奈王廣山, 志斐連萬呂, 阿刀連酒主	正8位 從8位 大初位 少初位

〈그림 8〉 寫經所 근무자들의 위계

이나 의료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문서에 기록된 일부 사용된 絹, 絁, 白橡絁, 帛, 望 布細布·上總布를 제외한 布·調布·庸布·紺布·商布·祖布·祖交易布·凡布·洗布, 綿·調綿·庸綿·商綿·庸綿黑綿과 같은 의료들이 당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러한 의료들이 대중적인 것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의료들 중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布(255)가 가장 일반적 의료이고, 다음으로 綿(76), 絁(70), 絹(2)의 빈도순으로 기록되고 있어 그 가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표 4, 그림 9 참조).



〈그림 9〉 「정창원 편년문서」에 기록된 의료별 빈도수

반면 발해의 입장에서 布는 다른 의료와 비교했을 때 횃수나 입수량이 많지 않다. 布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일본에서 매우 일반적이지 대중화된 의료로서, 공급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해가 입수한 포의 횃수나 분량은 다른 의료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양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발해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실리를 중시하였음을 시사하는 앞서의 기록들과, 필요한 품목에 관해서는 일본으로부터 다량의 것을 취하고자 했음을 유념해 볼 때, 발해가 자체 내에서 우수한 품질의 포를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는 것에 보다 큰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증정받은 분량과 일본 관인에게 지급된 분량의 관계분석

관리들의 위계에 따라 지급된 녹봉에서 布, 平織絹, 眞綿에 관련된 것을 표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첫째, 布의 경우를 살펴보면, 발해인들은 740년 調布와 庸布, 779년 陸奧稅布를 받았다.

일본 관인이 녹봉으로 받은 포를 보면(표 8 참조), 季祿으로 지급된 관인의 포는 調布의 단위인 端으로 표기되어 있어 調布였음을 알 수 있다. 調布는 季祿으로 관인 1위부터 初位까지 받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발해 사신이 받은 調布의 양과 비교해 볼 때, 발해인들이 받은 調布115端(1,840m)은 관인 정 1위가 받은 양인 100端(1,600m)보다 다소 많다. 또한 庸布는 位祿으로 관인 4위 이하가 받은 것인데, 발해 사신이 받은 庸布는 庸布60段(480m)으로, 관인 정 4위가 받은 庸布의 양, 360常(1常=약 4m, 총 1,440m)보다는 적은 양이다. 779년에 발해 사신이 받았다는 陸奧稅布는 일본에서도 관리들에게 지급된 기록이 없어 녹봉으로 이용되지 않고 일본 조정에서 발해 사신들에게 직접 증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양에 관한 기록이 없어 확실한 분량은 알 수 없다(표 9, 그림 10 참조).

布는 당시 일본에서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했지만, 발해가 입수한 포의 횃수나 분량을 다른 의료와 비교했을 때 수치가 가장 적다. 이는

〈표 8〉 고대 일본 관인의 위계에 따른 收入

(1匹=약15m / 1屯=1200g / 1端=약16m / 1常=약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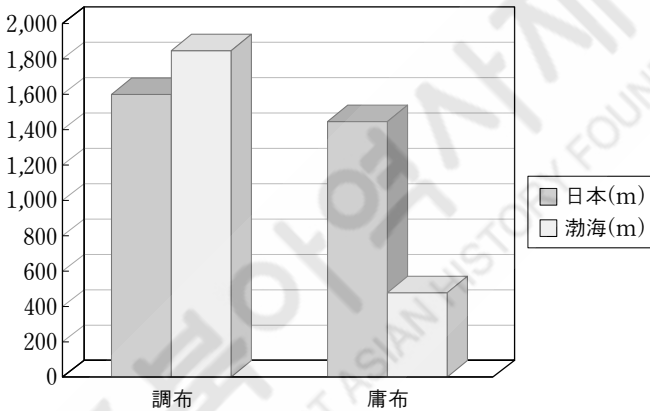
	位祿				季祿			
	總(匹)	綿(屯)	布(端)	庸布(常)	總(匹)	綿(屯)	布(端)	羹イ(口)
正1位					30 (450m)	30 (36000g)	100 (1600m)	140
從1位					30	30	100	140
正2位					20 (300m)	20 (24000g)	60 (960m)	100
從2位					20	20	60	100
正3位					14 (210m)	14 (16800g)	42 (672m)	80
從3位					12 (180m)	12 (14400g)	36 (576m)	60
正4位	10 (150m)	10 (12000g)	50 (800m)	360 (1440m)	8 (120m)	8 (9600g)	22 (352m)	30
從4位	8 (120m)	8 (9600g)	43 (688m)	300 (1200m)	7 (105m)	7 (8400g)	18 (288m)	30
正5位	6 (90m)	6 (7200g)	36 (576m)	240 (960m)	5 (75m)	5 (7200g)	12 (192m)	20
從5位	4 (60m)	4 (4800g)	29 (464m)	180 (720m)	4 (60m)	4 (4800g)	10 (160m)	20
正6位					3 (45m)	3 (3600g)	5 (80m)	15
從6位					3	3	4 (64m)	15
正7位					2 (30m)	2 (2400g)	4	15
從7位					2	2	3 (48m)	15
正8位					1 (15m)	1 (1200g)	3	15
從8位					1	1	3	10
大初位					1	1	2 (32m)	10
少初位					1	1	2	5

※ 『圖說 日本史』, 2004, 東京書籍, 46쪽 참조

〈표 9〉 발해, 일본 관인이 받은 布 분량 비교

(1端=약16m / 1段=약8m / 1常=약4m)

時期	渤海가 증정받은 布의 내용	日本 官人에게 지급된 俸祿
740	調布115端(1,840m)	正1位：100端(1,600m)
	庸布60段(480m)	正4位：360常(1,440m)
779	陸奥稅布	없음



〈그림 10〉 발해, 일본 관인이 받은 布 분량 비교

포가 『延喜式』과 같은 제도를 바탕(각주 92, 96 참조)으로 다른 나라의 조정에 증정되는 慣例 품목으로서, 발해도 이러한 규정에 준해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발해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포의 양이 소량이며, 횡수 또한 2회에 한했다는 것은 일본 조정이 포를 각국 사절에 대해 의례적으로 증정한 것 이외에도 발해가 다른 의료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포를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본다.

둘째, 평직 견직물의 경우를 살펴보면, 관인 1위는 季祿으로 繩30匹(1匹=약15m, 총450m)를 받고 있는데, 기록에서 일본 조정은 728년 繩20疋(疋=匹, 300m), 740년 발해왕에게 美濃繩30疋(450m), 己珍蒙에게 美濃繩20疋(300m), 759년 渤海王에게 美濃繩30疋(450m), 760년 渤海王에게 美濃

純30疋(450m), 772년 渤海王에게 美濃純30疋(450m), 777년 渤海王에게 純50疋(750m), 786년 常陸調純(수량 없음), 799년 純30疋(450m), 859년 烏孝愼에게 東純50疋(750m), 861년 李居正에게 純10疋(150m)를 증정했음이 확인된다(표 10 참조). 이 외에 평직이지만 純보다 품질이 다소 좋은 絹도 純와 함께 비슷한 분량을 꾸준히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

이 내용을 통해 발해인들은 777년, 859년(750m)을 제외하고는 한 번에 일본 관인 1위와 같은 분량(450m)의 평직 견을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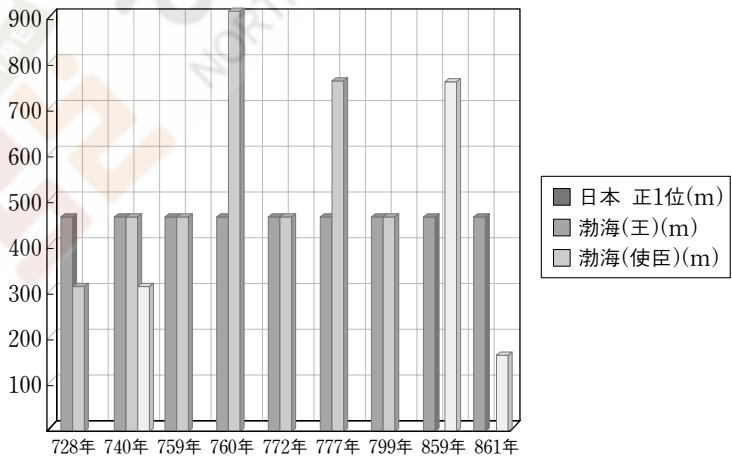
또한 평직 견은 최고급 견직물은 아니지만, 교류 후반기까지 계속하여 발해에 증정되고 있다는 것은 기후 조건에 따라 발생된 발해 내의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 꾸준히 일본 조정에 요구했던 발해의 경제적 목적까지도 내포되어 있었다고 본다.

셋째, 眞綿의 경우를 살펴보면, 관인 1위는 季祿으로 綿30屯(1屯=약 1200g, 총36,000g)을 받고 있는데, 일본 조정은 728년 발해왕에게 綿200屯(240,000g), 使臣에게 綿(수량 없음), 740년 渤海王에게 調綿300屯(360,000g), 己珍蒙에게 調綿200屯(240,000g), 759년 渤海王에게 綿300屯(360,000g), 白綿100帖, 使臣에게 綿1萬屯(12,000,000g), 760년 발해왕에게 調綿300屯(360,000g), 772년 국왕에게 調綿300屯(360,000g), 777년 국왕에게 綿300屯(360,000g), 賻物로 綿200屯(240,000g), 779년 相模庸綿(기록 없음), 796년 발해왕에게 綿200屯(240,000g), 799년 信物로서 綿300屯(360,000g), 828년 大使 이하 梢工 이상 지급(분량 없음), 859년 烏孝愼에게 綿400屯(480,000g), 861년 渤海使105인에게 綿1225屯(1,506,000g), 李居正에게 綿40屯(48,000g)을 증정하였다(표 11, 그림 12 참조).

이 내용을 통해 발해인들은 眞綿을 다른 의료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입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관인 1위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평균 10배 이상의 진면을 증정받고 있다. 이는 당시 발해가 綿을 생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적 조건으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의료를 입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다량의

〈표 10〉 발해, 일본 관인이 받은 繩 분량 비교 (1疋(≒匹)=약15m)

時期	渤海가 증정받은 繩의 내용	日本 官인이 지급받은 俸祿
728	王：繩20疋(300m)	
740	王：美濃繩30疋(450m) 己珍蒙：美濃繩20疋(300m)	
759	王：美濃繩30疋(450m)	
760	王：繩30疋(450m), 美濃繩30疋(450m)	
772	王：美濃繩30疋(450m)	
777	王：繩50疋(750m) 賻物：繩20疋(300m)	正1位：繩30疋(450m)
779	常陸調繩(없음)	
796	王：繩20疋(300m)	
799	信物：繩30疋(450m)	
859	烏孝愼：東繩50疋(750m)	
861	李居正：繩10疋(1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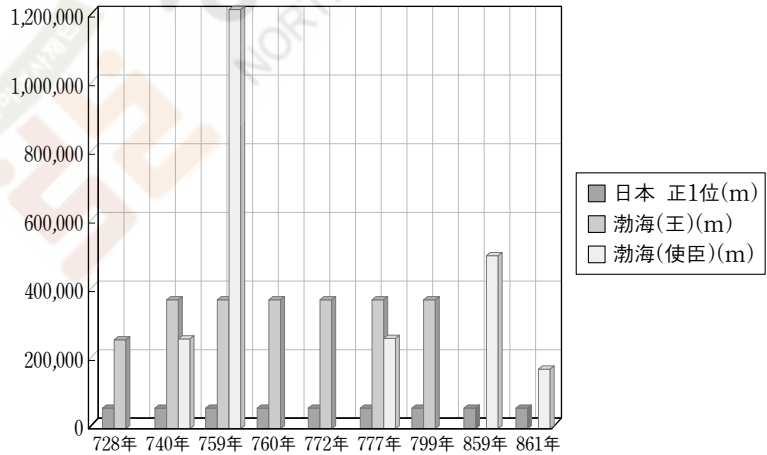


〈그림 11〉 발해, 일본 관인이 받은 繩 분량 비교

〈표 11〉 발해, 일본 관인이 받은 眞綿 분량 비교

(1屯=약1200g)

時期	渤海가 증정받은 眞綿의 내용	日本 官인에게 지급된 俸祿
728	王：綿200屯(240,000g) 使臣：綿(없음)	正1位：綿30屯 (36,000g)
740	王：調綿300屯(360,000g) 己珍蒙：200屯(240,000g)	
759	王：綿300屯(360,000g) , 白綿100帖 使臣：綿10,000屯(12,000,000g)	
760	王：調綿300屯(360,000g)	
772	王：調綿300屯(360,000g)	
777	王：綿300屯(360,000g) 賻物：綿200屯(240,000g)	
779	相模庸綿(없음)	
796	王：綿200屯(240,000g)	
799	信物：綿300屯(360,000g)	
828	大使 이하 梢工 이상(없음)	
859	烏孝愼：綿400屯(480,000g)	
861	渤海使105人：綿1225屯(1,506,000g) 李居正：綿40屯(48,000g)	



〈그림 12〉 발해, 일본 관인이 받은 眞綿 분량 비교

진면을 가져갔다는 것은 발해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량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양의 충족을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_ 발해 입수 絹織物 및 眞綿·絹絲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

발해가 입수한 여러 의료 중 종류 및 다수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絹織物, 眞綿, 絲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입수 시기와 종류에 있어 사회적 요인이 적용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당시 緇나 같은 평직이면서 다소 품질이 우수한 絹은 일본 관인 1위와 같은 분량(450m)을 꾸준히 받고 있음이 확인되어, 平織 絹는 적은 양이지만 교류全般에 걸쳐 꾸준히 입수되고 있는 의료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견직물이라고 하면 고급 의료에 속하는 彩帛, 綾, 錦, 兩面, 羅와 비교적 등급이 낮은 평직의 견직물인 緇와 絹으로 나눌 수 있다. 당시 견직물들은 조세나 현물로 사용되었던 대중적·일상적인 麻布와는 상반되게 신분제적 의료로 취급되어졌던 것이었고,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고급직물이었다. 그 제직 기술은 도래인에 의해 전래된 것으로, 최소 8세기 중반 이후 중앙정부 관하의 공방 기술자들에 의해서만 직조가 가능하였으므로 생산량도 다른 의료보다는 적어 일본 조정 내에서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의료였다.¹⁷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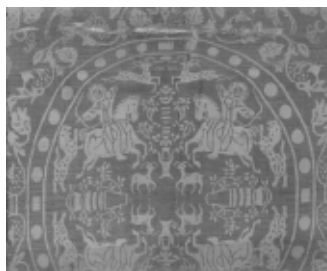
또한 발해는 당으로부터 9세기에 총 5회, 오대로부터는 10세기에 총 2회 錦을 입수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받았던 帛이나 絹보다 귀하게 여겨졌던 직물이었고,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교류관계에서 나타나는 발해 사신의 증정에 대한 답례의 형식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발해로 금직물이 입수되는 시기는 당의 憲宗(806~820년)代부터로, 당시 당은 안사의 난(755~763년) 이후 지방 절도사의 세력이 커져 수많은 반란이 발생하던 때였다. 이에 대해 현종은 절도사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중앙 정부의 재정을 강화시켜 중앙집권화를 이루었으나 민중뿐

171) 永原慶二, 2004, 앞의 책, 15쪽, 110~111쪽.



〈그림 3〉 좌 : 赤地格子連珠文經錦(染織の美, 14쪽)
우 : 淺緑地狩獵文緯錦(染織の美, 14쪽)



〈그림 4〉 龜甲龜花紋黃綾
(染織の美, 10쪽)

만 아니라 지주 호족층에게도 큰 부담을 주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반란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헌종은 이러한 국내의 어려움을 발해와의 우호 증진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당의 발해에 대한 금직물 증정은 분량에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당 멸망 이후 908년은 後梁의 太祖(907~912년)가, 924년은 後唐 莊宗(923~925년)이 즉위한 다음해로 즉위 축하 등을 위해 발해에서 파견된 사절에 대한 답례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급 견직물은 당·오대, 일본 모두에게 귀한 만큼 고도의 직조 기술을 필요 했기 때문에 자체 내의 생산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 적은 양이지만 고급 견직물들을 발해인들에게 증정하였다는 것은 국가 간의 교류 목적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 목적은 시기별로 달랐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즉 당시 국제 정세에 의해 시작된 발해와의 교류기간(727~920년) 중 728년(1차), 759년(3차)에 걸친 교류 초반기에는 彩帛, 綾, 錦, 兩面, 羅·白羅와 같은 최고급 견직물이 발해로 입수되고 있다. 이 시기는 양국 교류의 초기로, 당시 국제 정세상으로 보면 唐과 統一新羅와의 사이에서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던 발해와 일본은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다지는데 주력했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일본에서 증여한 고급 견직물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과의 관계에서는 국내의 정치적 혼란의 해결책으로 오대와의 관계에서는 정치적 우호관계 구축

을 위한 수단의 일부로 고급 견직물이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평직 견이 최고급 견직물은 아니지만 교류 후반기까지 계속하여 발해에 증명되고 있다는 것은 기후 조건에 따라 발생된 발해 내의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 꾸준히 일본 조정에 요구했던 발해의 경제적 목적까지도 내포되어 있었다고 본다.

한편 당·오대와의 관계에서 교류 전반에 걸쳐 綿 1회를 제외하고는 絹은 2회 총 220필(3,300m), 帛은 8회 총 약 950필(14,250m), 彩帛이나 綵練은 6회(1회만 분량 100필 기록되었음)에 걸쳐 꾸준히 견직물이 입수되었음이 확인된다. 발해와 당·오대와의 교류 횟수 빈도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량의 견직물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으로부터는 견직물을 직조하기 위한 재료인 풀솜이나 견사를, 당·오대로부터는 이미 직조가 마무리된 견직물을 대량 입수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당시 일본 백성들에게 있어 견직물 직조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었으나 풀솜인 진면이나 견사의 생산은 직조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였으므로 자체 내 생산이 가능하며,¹⁷²⁾ 그만큼 중앙 정부에서 수취할 수 있는 양이 많아 공급이 원활하였을 것이다. 반면 고도의 견직물 직조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던 당·오대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견이나 백과 같은 평직 견직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을 것이다. 다만 彩帛이나 綵練과 같은 무늬가 있는 견직물은 평직 견직물보다는 생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발해인들에게 지급한 양이 견이나 백보다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발해에서는 당시 견직물을 직조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는 있었으나 재료의 생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견직물 생산이 어려웠었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원료들을 통해, 혹은 당·오대로부터 받았던 다량의 견직물을 통해 부족한 양을 충족시켰을 것이다.

172) 永原慶二, 2004, 앞의 책, 115쪽.

IV. 맺음말

발해는 당·오대와 711년부터 약 130회의 교류를 행했고, 일본과는 727년부터 34회의 교류를 행했다. 그 과정에서 각국 간에는 다양한 품목의 교환이 있었는데, 특히 衣料는 발해의 교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해가 입수한 의료의 종류, 분량 및 신분·사회제도와 같은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당시 발해의 입수 의료들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1. 각 의료를 분량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에서 발해로 입수된 의료의 양은 眞綿, 絹絲, 平織 絹織物, 布, 고급 견직물(錦, 綾, 羅, 兩面)의 순이었다. 이를 발해의 생산량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발해에서 생산량이 적은 의료일수록 일본으로부터 입수한 의료의 분량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布는 다른 의료들에 비해 횃수나 분량면에서 상당히 적은 양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포가 발해에서도 충분한 분량의 생산이 가능했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포는 일본 쪽에서 보면, 외교관계에서의 관례적·형식적인 의미로서 다른 나라에 증정되는 품목의 하나였으며, 발해는 이를 단지 의례적 측면에서 받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錦, 綾, 羅, 兩面과 같은 고급 견직물은 다른 의료와는 의미를 달리하는데, 당·오대, 일본으로부터 소량만이 입수되고 있었다. 소량 입수는 고도의 직조 기술을 요하는 견직물이었으므로, 생산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입수 시기는 교류 초반 2회에만 기록되어 있었고, 당으로부터는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9세기부터 입수 기록이 있다. 이는 양국의 상황이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발해와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전해지는 여러 기록들은 고구려에서 고급 견직물을 직조하거나 사용했음을 추정하는 단서가 되었는데, 발해 문화 정립에 큰 영향을 주었

던 고구려인들은 이러한 기술을 발해인들에게 전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기술 바탕 하에서 발해인들도 고급 견직물들을 직조해 낼 수 있었을 것이나 지리적 요건에 의해 재료 생산 부족에 의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일본을 중심으로 견직물의 재료인 다량의 眞綿이나 絹絲를 수입함으로써 해결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발해는 일본으로부터 眞綿, 平織 絹織物, 絲를 대량으로 입수했는데, 1회에 받은 양을 일본 관인 1위가 지급받은 분량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평직 견은 비슷한 정도이고, 진면은 10배 정도로 많았으며, 이러한 수준은 교류의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당·오대로부터는 교류 전반에 걸쳐 綿을 제외하고 絹, 帛, 彩帛이나 綵練과 같은 견직물이 입수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적은 교류 횟수 빈도에 비해 대량의 견직물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으로부터는 견직물을 직조하기 위한 재료인 풀솜이나 견사를, 당·오대로부터는 이미 직조가 마무리된 견직물을 대량 입수하고 있었다. 이는 상당한 양이 발해로 유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기후적인 조건으로 견직물을 직조하기 위한 재료 생산량이 충분치 않았던 발해에서는 재료와 견직물의 수입을 통해 부족한 양을 충족시켰고, 이를 주로 지배층의 의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증여 품목의 내용(품질, 양, 횟수)에는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견직물의 경우, 교류의 초반에만 증여된 고급의 견직물은 일본 쪽에서 보면 다분히 발해와의 우호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평직 견이 교류의 말기까지 많은 양이 꾸준히 증여되고 있는 것은 교류의 의미가 보다 실리 추구의 경제적인 의미로 변화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창원 편년문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布는 당시 일본인들에게 대중적인 의료로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지만, 발해인들의 입수량이 적었다는 것은 양국 간 공식 외교 관계상의례적으로 증명되는 형식적인 품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일본은 調庸制度에 따라 각 지역으로부터 공납받은 布, 平織 絹(純・絹), 綿을 공식 일정에서 관례적으로 발해인들에게 증정하였다. 이 때 발해인들이 증정 받은 의료의 분량은 물론 상대적인 수치이기는 하나 일본 官人 1위가 조정으로부터 받은 양보다 많은 것으로, 발해인들의 위상 및 실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발해인들의 경제적 의지를 짐작하게 한다.

반면 당으로부터는 문왕대까지의 교류 초반기(722~777년)에 官服을 주로 증여받고 있는데, 이는 발해의 제도 정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증여받은 다량의 帛, 絹은 발해인들의 견직물 수요를 충족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후반기(812~926년)에 접어들면, 錦이나 綵와 같은 문양이 있는 고급 견직물(분량 없음)을 증여받고 있어 전반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는 발해의 제도가 이미 정립되었고, 부족한 견직물의 수요량 충족은 일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錦이나 綵의 증여는 형식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고문헌

『類聚國史』, 『日本三代實錄』, 『續日本紀』, 『續日本後紀』, 『扶桑略記』, 『延喜式』, 『類聚三代格』, 『三國志』, 『後漢書』, 『魏書』, 『梁書』, 『新唐書』, 『南史』, 『北史』, 『通典』, 『遼史』, 『周書』, 『隋書』, 『冊府元龜』, 『五代會要』, 『翰苑』, 『三國史記』, 『渤海考』, 『渤海國志長編』, 『東史綱目』.

2. 한국문헌

- 김민지, 2000, 『渤海服飾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지, 2007, 「함경북도 화대군 금성리 발해벽화고분의 복식」, 『복식』 57(9).
- 김진광, 2008, 「石室墓 造營을 통해 본 渤海의 北方 經營」, 『高句麗渤海研究』 제30집, 고구려발해학회.
- 방학봉, 2001, 『발해경제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93, 『발해사』, 한마당.
- 서병국, 1990, 『발해 발해인』, 一念.
- 송덕운 저, 최태길 역, 1994, 「발해의 경제민속에 대한 연구요점」, 『발해사연구』 2집, 연변대학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 심연옥, 1998, 『중국의 역대직물』, 한림원.
- 심연옥, 2002, 『한국직물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 王承禮 저, 宋基豪 역, 1988, 『발해의 역사』, 翰林大學아시아文化研究所.
- 윤재운, 2006,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景仁文化史.
- 李成市 著, 김창석 譯, 1999,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 이여성, 1998, 『조선복식고』, 범우사.
- 전현실·강순제, 2003, 「遣日本渤海使의 交流 品目에 나타난 服飾 연구-일본 사료를 중심으로」, 『服飾』 53권 6호, 한국복식학회.
- 전현실, 2004, 「對外交流에서 나타난 渤海의 衣料 고찰-對唐·對日 관계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1, 한국고대학회.
- 전현실·강순제, 2007, 「발해 건국 초기 官服에 대한 小考」, 『복식』 57권 2호, 한국복식학회.

3. 외국문헌

- 京大日本史辭典編纂會, 平成 11年, 『新編日本史辭典』, 東京: 東京創元社.
- 關根眞陸, 1986, 『奈良朝服飾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 東京帝國大學文科大學史料編纂掛 編, 『大日本古文書』, 東京: 東京大學史料編纂所.
- 東野治之, 昭和 61年, 「遣唐使の文化的役割」, 『遣唐使と正倉院』, 東京: ぎょうせい.
- 濱田耕策, 2000, 『渤海國興亡史』, 東京: 吉川弘文館.
- 山邊知行 編, 昭和 41年, 『日本の美術 11: 染』, 東京: 至文堂.
- 山下有美, 1994, 「正倉院文書を傳えた寫經機構(上)」, 『正倉院文書研究 2』, 正倉院文書研究會編.
- 山下有美, 1995, 「正倉院文書を傳えた寫經機構(下)」, 『正倉院文書研究 3』, 正倉院文書研究會編.
- 杉本一樹, 2003, 『日本の美術 no.440: 正倉院の古文書』, 東京: 至文堂.
- 上田正昭 監修, 2005, 『古代日本と渤海: 能登からみた東アジア』, 千葉: 大巧社.
- 西村兵部 編, 昭和 42年, 『日本の美術 4: 織物』, 東京: 至文堂.
- 石井政敏, 2001,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 笹山晴生 외 6인 編著, 2007, 『日本史綜合圖録』, 東京: 山川出版社.
- 小池三枝・谷田閑次, 1989, 『日本服飾史』, 東京: 光生館.
- 松本包夫 編, 昭和 49年, 『日本の美術 11: 正倉院の染織』, 東京: 至文堂.
- 松本包夫, 『正倉院裂: 日本の染織1』, 京都書院.
- 新野直吉, 2003, 『古代東北と渤海使』, 福島: 史春秋出版株式會社.
- 永原慶二, 2004, 『苧麻・絹・木綿の社會史』, 東京: 吉川弘文館.
- 王輯五, 1975, 『中國日本交通史』, 臺灣商務印書館.
- 伊藤智夫, 1992, 『絹Ⅱ』,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 日野開三郎, 1984, 「北東アジア國際交流史の研究(上)」,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文集』卷9, 東京: 三一書房.
- 諸橋徹次, 昭和 60年, 『大漢和辭典』卷4, 東京: 大修館書店大漢和辭典.
- 朝日新聞社, 2003, 『日本の歴史-古代(9): 正倉院寶物と萬葉の歌』.
- 朝日新聞社, 2003, 『日本の歴史: 古代-税・交易・貨幣』.
- 喜喜勝 著, 金洪圭 譯, 2007, 『朝鮮の絹とシルクロード』, 東京: 雄山閣.
- 佐藤 信 編, 2003, 『日本と渤海の古代史』, 東京: 山川出版社.
- 酒寄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東京: 校倉書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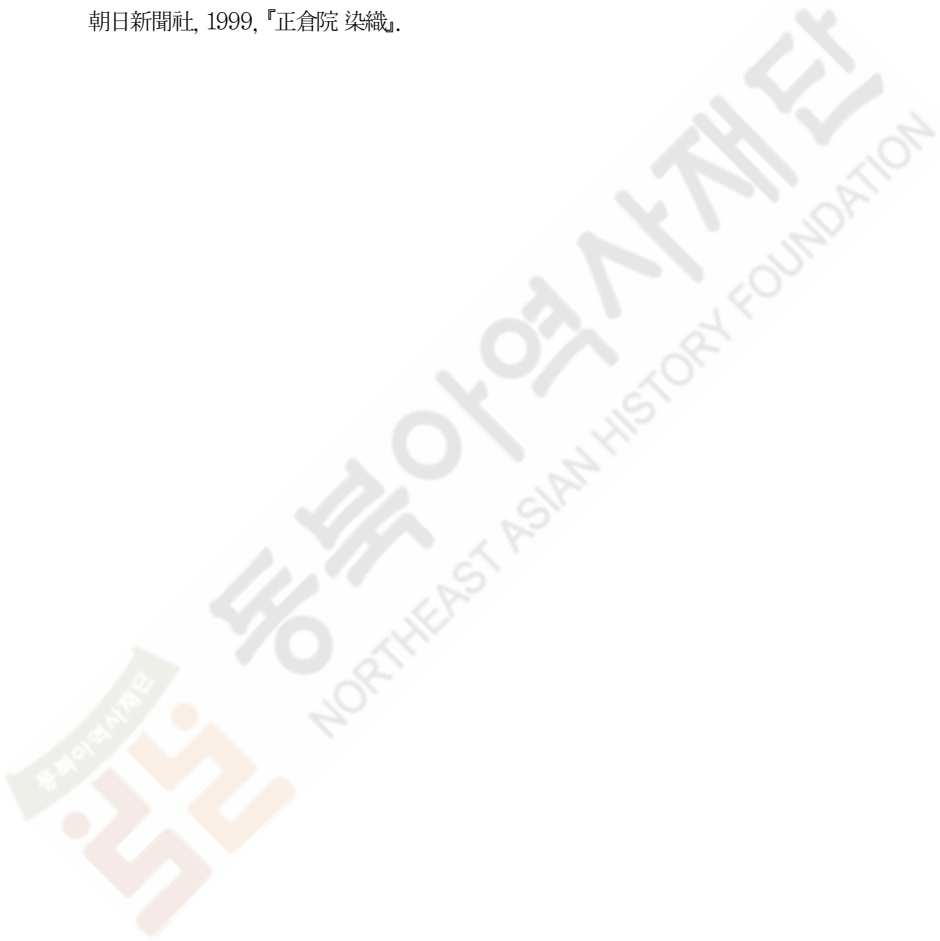
布目順郎, 1988, 『絹と布の考古學』, 雄山閣.

蒲生眞紗雄 외 5인 編集, 2004, 『圖説 日本史』, 東京: 東京書籍.

下中弘 編集, 1997, 『日本史大事典』3卷, 東京: 平凡社.

『染織の美』 第7號, 1980, 京都書院.

朝日新聞社, 1999, 『正倉院 染織』.



[ABSTRACT]

A study on the Imported Textiles of Balhae

Jeon, Hyunsil

On focused the exchange relation of *Balhae* (渤海),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social meaning of the imported textiles from *Tang* (唐) · Five dynasties (五代) and ancient Japan (*Nara* 奈良 era to the beginning of *Heian* 平安 era) by the import frequency, import period, import quantity and so on.

Balhae has imported a lot of floss (眞綿), plain weaved silk (平織 絹織物) and silk thread (糸) that has produced a little in *Balhae*. However, among the textiles the linen (布) which *Balhae* could mass-produce, has an opposite tendency. Moreover, *Balhae* has imported a lot of plain weaved silk and figured silk from *Tang* as compared with the exchange frequency. That is, mostly has imported raw materials for weaving from Japan and weaved product from *Tang* · Five dynasties because of the insufficiency of an output by a climatic influence and the imported textiles filled up a deficiency in silk.

Expecially, the high-quality silk, as Compound silk (錦), Twill damask (綾), Complex silk gauze (羅) among the imported silks connote the political purpose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Balhae* in *Tang* (唐) · Five dynasties (五代) and ancient Japan. The other side, a lot of low-quality silks connote the economic purpose for material gain in *Balhae*.

And Japan has presented officially to the envoys of *Balhae* the

linen · plain weave silk · floss which were taken as tax. The amount that envoys of *Balhae* were taken was much than one which a official of Japan, first class (1位) received from the Government.

keywords

Exchange relation (교류관계), Imported textiles (수입의료), Balhae (渤海), Tang (唐), Five dynasties (五代), Nara (奈良), Heian (平安), Floss (眞綿), Plain weaved silk (平織 絹織物), Silk thread (糸), Linen (布), Compound silk (錦), Twill damask (綾), Complex silk gauze (羅), Official of ancient Japan

1920년대 초 일본정치와 식민지 조선지배

-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의 활동을 중심으로 -

김종식 |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전공 교수

I. 머리말

본 논문은 식민지 조선통치에서의 변화를 식민본국인 일본의 정치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기존의 번벌세력이 주도하고 육군이 지배하는 식민지 조선에 대하여, 새롭게 정당과 정당내각에 의한 식민지 조선지배의 개입을 드러내고, 그 개입방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에서 본격적인 정당내각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라 내각의 출현으로 정치지형이 변화하며, 식민지 조선에서는 3·1운동으로 지배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1920년대 초의 일본정치와 식민지 조선지배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조선총독은 육군대장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서 해군대장 사이토 마고토[齋藤實]로, 정무총감은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에서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로 바뀌었다. 이는 단순히 인적 색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정치가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국내 정치에서 궁중·육군·추밀원·귀족원·문관(文官) 관료에 의존하던 번벌(藩閥)세력이 약화되고 정당을 기반

으로 하는 정당정치세력이 강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진행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¹⁾

문화정치로의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였다. 그는 1919년부터 1922년까지 하라 총리의 권유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역임하면서 조선개혁을 진행하였다. 이후 대정말기(大正末期)부터 소화기(昭和期)에는 '정우회계 내무관료의 거두'로 활동하였다.

미즈노 렌타로가 정무총감으로 부임하던 당시 일본 국내는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기였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였지만, 일본의 변별세력은 더 이상 국민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은 제1차 호헌운동, 제1차 세계대전, 쌀소동을 거치며 정치적으로 성장하였고, 정당의 세력 확장을 이끌었다. 쌀소동을 계기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정점으로 하는 변별세력이 약해지고,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 이하 정우회) 중심의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이 성립하여 본격적인 정당세력의 팽창이 시작되었다.²⁾ 하라는 안정적인 정당정치와 정당내각의 재생산을 위해 다방면에서 변별세력을 압박하였다.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식민지 조선 문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육군은 제2차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내각에서 2개 사단 증설문제로 대립하여 '육군대신 현역무관제'를 이용하여 내각을 무너뜨렸다. 이러한 사태는 변별파를 주장하는 제1차 호헌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제1차 호헌운동은 변별의 중심인 군벌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식민지총독의 무관제를 비판하였다.³⁾ 하라 내각은 변별세력에 대한 압박을 위해 육군대신 현역무관제의 개정과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총독 무관임용을 문관임용으로 바꾸는 식민지 조선의 개혁을 구상하고 있었다.

1) 김중식, 2007, 「1919년 일본의 조선문제에 대한 정치과정-인사와 관계개혁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6집 참조.

2) 季武嘉也, 1999, 『大正期の政治構造』, 吉川弘文館; 三谷太一郎, 1995, 『大正デモクラシー論』 新版, 東京大學出版會.

3) 李榮娘, 1990, 「第一次憲政擁護運動と朝鮮の官制改革論」, 『日本植民地研究』 3호.

한편 식민지 조선에서는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무단통치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였다. 조선지배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였다. 이것을 대변하는 조치는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의 전환이었다. 하라 내각하에서 정무총감으로 취임한 미즈노는 육군 군인을 대신하여 본국 내무성 관료를 중심으로 총독부를 재편하면서, 조선지배의 중심세력을 군인에서 관료로 전환시켰다.

조선지배 중심세력의 군인에서 관료로의 변화는 일본 정치와 식민지 조선의 결합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 정당과 정당내각은 관료를 정치적으로 포섭하여 정치력의 강화와 정권담당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관료의 정당화(政黨化)' 경향도 촉진시켰다.⁴⁾ 이것은 러일전쟁 직후 제1차 사이온지 내각의 하라 내무대신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다이쇼 데모크라시기의 정당정치와 정당내각에 만연하였다.

일본정치와 식민지 조선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3·1운동 직후 미즈노가 식민지 조선의 관료 인사를 통해 조선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식민지 조선의 재정보조를 둘러싼 조선총독부와 제국 의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지배에 일본정치가 개입하는 문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정당과 정당내각이 식민지 조선에 개입하는 방식을 찾아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로는 식민지 조선의 인사문제를 정책⁵⁾ 혹은 통치구상과 연결시킨 연구,⁶⁾ 식민지 조선의 관제개혁과 일본의 정치를 연관시킨 연구⁷⁾ 등이 있다. 본격적으로 정당정치·정당내각과 식민지 조선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4) 升味準之助, 1968, 『日本政黨史論』第四卷, 東京大學出版會.

5) 木村健二, 2000, 「朝鮮總督府經濟官僚の人事と政策」, 波形昭一・堀越芳昭 編, 『近代日本の經濟官僚』, 日本經濟評論社.

6) 李炯植, 2006, 「文化政治」初期における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史學雜誌』 115-4.

7) 李熒娘, 2007, 「原敬內閣期における朝鮮の官制改革論」, 服部龍二・土田哲夫・後藤春美 編, 『戰間期の東アジア國際政治』, 中央大學出版部; 李正龍, 1987, 「原內閣における植民地官制改正問題－朝鮮總督府を中心に－」, 『慶應義塾大學大學院法學研究科論文集』 26호.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⁸⁾ 본 논문은 일본의 정당과 관료 관계를⁹⁾ 통해 일본의 정당정치·정당내각과 식민지 조선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며,¹⁰⁾ 또한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관계를 재정문제¹¹⁾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확대하여 연결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미즈노 렌타로를 통해 식민지 조선과 일본정치의 관련성을 찾고자 한다.

II. 1919년 8월의 미즈노 렌타로 인사

3·1운동을 계기로 조선총독부의 관제개혁이 이루어졌다. 총독을 무관임용에서 문·무관 병용임용으로 변화시켰고, 조선총독에 해군 출신인 사이토 마고토가 취임하였다. 조선총독부 관제개혁과정에서 하라 다카시는 조선총독에 대한 내각총리대신의 감독권을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육군 중심의 군부의 조선 지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에 하라는 조선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

8) 가장 기본적인 연구는 강동진, 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의 연구가 있으며, 최근의 연구로 이 문제를 부분적이지만 다룬 것으로 김동명, 2006,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경인문화사; 長田彰文, 2005, 『日本の朝鮮統治と國際關係』, 平凡社 등을 들 수 있다. 최신의 대만과 조선의 식민지관료 연구로는 岡本眞紀子, 2008, 『植民地官僚の政治史』, 三元社가 있다. 그 외 미즈노 렌타로에 관한 연구는 稻葉繼雄, 1994, 『水野練太郎と朝鮮教育』, 『九州大學比較教育文化研究施設紀要』 46이 있다.

9) 清水唯一朗의 연구 「大正期における政黨と官僚-官僚の政黨参加とその意識を中心に」(寺崎修·玉井清 編, 2005, 『戦前日本の政治と市民意識』, 慶應義塾大學出版會)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었다.

10) 제2차 호헌운동(1924년) 이후의 정당정치와 식민지 통치의 관련성을 연구한 李炯植, 2007, 「政黨内閣期における植民地統治-植民地長官人事を手掛かりとして」, 『日本の朝鮮・台灣支配と植民地官僚』, 國際シンポジウム第30集,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가 있다.

11) 堀和生の 연구 「朝鮮における植民地財政の展開: 一九一〇~三〇年代初頭にかけ て」, 『植民地朝鮮の社會と抵抗』, 未來社, 1982)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받았다.

즈노 렌타로의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인사를 단행하였다. 미즈노는 하라의 의향에 따라 조선지배의 새로운 틀을 짜는 중심인물로 조선에 보내졌다. 미즈노는 하라와 신임총독 사이토로부터 총독부 인사 전권을 위임받아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였다.¹²⁾

조선부임 전 미즈노 렌타로의 정치이력에서 그와 하라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미즈노는 1912년 12월 제2차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내각의 총사직에 즈음하여 내각과 함께 내무차관을 사직하였다. 이때 그는 칙선의원(勅選議員)으로 귀족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귀족원 의원으로의 칙선은 정무관(政務官) 관직까지 올라간 관료에게 정치가로서의 신분을 보증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봉급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관료들이 바라는 지위였다. 미즈노가 이러한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내무대신이었던 하라의 알선이 절대적이였다. 미즈노는 정우회계 원내회파인 교우구락부(交友俱樂部)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1913년 2월 성립한 야마모토 곤페이[山本權兵衛] 내각에서 하라 내무대신 아래 내무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정우회에 입당하였다. 이후 미즈노는 당을 떠나는 것을 조건으로 1916년 10월 데우라치 마사다케[寺內正毅] 내각에서 내무차관을 역임하였다. 미즈노는 대중외교(對中外交)에 전념하고 있던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내무대신 아래에서 총선거를 지휘하여 준여당인 정우회의 의석을 104석에서 160석으로 늘리는 데 일조하였다. 그 후 고토가 외무대신 자리로 옮기면서, 미즈노는 내무대신이 되었다.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간 미즈노는 정우회 의원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정우회의 의향을 알고 정우회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입장에 있었다. 특히 하라와의 특별한 관계는 그의 인사가 하라와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즈노가 단행한 조선총독부 인사는 1919년 8월 20일 관제개혁에 따른 총독부 중앙 국부장급 수뇌부 인사와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바뀌면서 각 지방단체(道)에 경찰을 책임질 부장의 인선으로,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진 8월 20일 전후한 시기부터 미즈

12) 김종식, 2007, 앞의 글 참조.

〈표 1〉 미즈노의 조선총독부 초기 인사

이름	채용 일자	고등문관시험 합격연도	취임 전직	취임 관직	임용순서
守屋榮夫	1919년 8월 12일	1910년	내무성 참서관	총독비서관	
赤池豊	1919년 8월 20일	1902년	靜岡縣 지사	내무국장	
野口淳吉	이하 동일	1907년	경시청 경무부장	경무국장	부임 전 사망
西村保吉		1901년	埼玉縣 지사	식산국장	
柴田善三郎		1905년	大阪府 내무부장	학부국장	
白上祐吉		1910년	富山縣 경찰부장	경무과장	
占部正一		1911년	山形縣 이사관	보안과장	1920년 사망
丸山鶴吉		1909년	靜岡縣 내무부장	경무국 사무관	
藤原喜藏		1914년	青森縣 서무과장	경무국 사무관	
古橋卓四郎		1912년	愛知縣 농림과장	경찰강습소 소장	
伊藤武彦		1914년	千葉縣石原郡長	총독비서관	
千葉了		1908년	秋田縣 경찰부장	경기도 경찰부장	
山口安憲		1911년	兵庫縣 이사관	충청북도 경찰부장	
關水武		1912년	茨城縣 서무과장	충청남도 경찰부장	
松村松盛		1913년	福岡縣 학무과장	전라북도 경찰부장	
山下謙一		1911년	경시청 이사관	전라남도 경찰부장	
小林光政		1916년	경시청 경시(警視)	고등경찰과장	
新庄祐一郎		1910년	鹿兒島縣 권업과장	경상북도 경찰부장	
八木林作		1909년	兵庫縣 이사관	경상남도 경찰부장	
馬野精一		1909년	富山縣 학무과장	황해도 경찰부장	
石黑英彦		1911년	群馬縣 학무과장	강원도 경찰부장	
岡崎哲郎		1913년	栃木縣鹽谷郡長	평안남도 제2부장	

※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統治秘話』(1933년)를 참조하여 작성

노가 조선으로 부임하는 9월 2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미즈노 인사의 특징은 초기인사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미즈노는 헌병경찰을 대신하는 보통경찰 창설을 위한 중앙부서의 골격을

쫓고, 13도 중 10개도의 도(道)급 경찰책임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은 3·1운동 이후 최우선 과제로 부각된 치안문제의 해결과 육군을 대신하여 관료중심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관료중심의 조선 지방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무성의 지방 지배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조선에 적용하여 내무성 계통의 관리에게 총독부 주요 중앙관서의 부서장을 맡기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미즈노가 이렇게 빠르게 총독부 인사를 결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일본 관리가 조선으로 가면 좌천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 근무할 관리를 채용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즈노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미즈노에게 처음으로 발탁되어 총독비서관이 된 모리야 에이지(守屋榮夫)는 미즈노가 내무성 계통의 인재를 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단시간에 이 정도 내지의 인재를 조선에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미즈노 총감이 내무계통에서 명성이 높았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¹³⁾

미즈노는 1896년부터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1910년까지 십 수년에 걸쳐 내무대신 비서관으로 내무성에 입성하는 문관고등시험합격자의 면접관을 지냈다. 또한 1913년부터 1918년까지는 내무차관·내무대신으로 내무성의 주요 인사에 관여하였다.¹⁴⁾ 이것은 하라 총리가 조선통치개혁을 위해 미즈노를 정

13) 守屋榮夫의 발언, 1933, 『朝鮮統治秘話』(2), 『東洋』 36-3, 東洋協會, 87쪽.

14) 〈미즈노의 내무성 근무 이력〉

1894년 5월 내무성 참사관

1896년 4월 내무대신 비서관 겸 내무성 참사관

1898년 10월 내무성 서기관 내무대신 관방 문서과장

1899년 4월 내무대신 비서관 겸 내무성 참사관

1900년 10월 내무성 참사관 겸 내무대신 비서관

1903년 1월 법학박사

무총감으로 기용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였다. 하라는 미즈노가 오랫동안 내무대신 비서관으로서 내무성의 인재채용·양성에 관계한 경력과 법학박사 취득 등 법제상의 지식을 높이 산 것이었다.¹⁵⁾ 또한 미즈노가 하라 내각 바로 직전 내각인 테라우치 내각에서 내무대신을 역임하여 지방관에게도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즈노는 ‘인사대신(人事大臣)’으로 불릴 정도로 내무성의 실력자였다.¹⁶⁾

그리고 미즈노가 총독부 인사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라 내각의 지지가 있었다. 하라 내각은 미즈노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라와 도코나미 다케지로[床次竹次郎] 내무대신, 고바시 이치타[小橋一太] 내무차관의 권유와 그들의 양해하에 조선 전임(轉任)을 희망하는 지방사무관의 채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이었다.¹⁷⁾ 미즈노와 도코나미는 대학동기로 절친한 관계였으며, 동시에 정우회계 관료의 대표 주자였다.

1919년 8월 12일 사이토 마고토가 총독, 미즈노 렌타로가 정부총감으로 임명되었다. 미즈노는 제일 먼저 모리야를 8월 12일자로 총독부 비서관으로 채용하였다.¹⁸⁾ 당시 모리야는 내무성 감찰관으로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을 시찰하였고, 미즈노를 만나 조선통치 개혁론을 주장하면서 미즈노의

1904년 1월 내무성 신사국장(神社局長) 겸 내무대신 비서관

1908년 7월 내무성 참서관 겸 내무대신 비서관

1910년 9월 내무성 토목국장

1911년 9월 내무성 지방국장 겸임

1912년 12월~1946년 1월 귀족원 의원

1913년 2월~1914년 4월 내무차관

1916년 12월~1918년 4월 내무차관

1918년 4월~1918년 9월 내무대신

15) 水野鍊太郎 著, 1999, 尙友俱樂部・西尾林太郎 編, 『水野鍊太郎回想録・關係文書』, 山川出版社, 121쪽.

16) 青水唯一朗, 2005, 앞의 글, 148쪽.

17) 守屋榮夫의 발언, 1993, 앞의 글, 87~88쪽.

18) 모리야는 미즈노 정부총감의 영향하에 조선총독부관료로서 임용·활동하였다. 松田利彦, 2007, 『朝鮮總督府秘書課長と‘文化政治’—守屋榮夫日記を讀む』, 『日本の朝鮮・台灣支配と植民地官僚』, 國際シンポジウム第30集,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궐기를 촉구한 인연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즈노는 모리야를 쉽게 채용할 수 있었다. 모리야는 내무성 감찰관에서 1919년 8월 9일 내무성 참서관으로 전임(轉任)되어 내무성 지방국 부현과장(府縣課長)으로 임명되었으나, 내무차관의 양해하에 임명 열흘 후인 8월 19일 부현과장을 사직하고, 8월 20일 총독부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인사는 직속상관인 내무차관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

다음으로 조선 경찰업무의 총 책임자로 도쿄[東京]의 경찰업무 실무책임자로 있던 경시청 경무부장 노구치 준키치[野口淳吉]를 8월 12일 경무국장으로 내정하고, 20일자로 임명하였다. 거의 같은 시기에 미즈노는 조선 행정 실무책임자인 내무부장에 시즈오카현[靜岡縣] 지사로 근무하고 있던 아카이케 유타카[赤池豊]를 임명하였다. 아카이케는 미즈노와 사적인 관계도 있어 임명을 거절할 수 없었다. 미즈노 부부는 아카이케의 결혼에 중매인 역할을 하였다.¹⁹⁾ 총독부 인사는 미즈노의 지도하에 모리야, 노구치, 아카이케를 중심으로 경무국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 경찰부장의 진용을 짜는 식으로 진행되었다.²⁰⁾ 특히 노구치가 경시청에서 고바야시 미즈마사[小林光政], 아마시다 겐이치[山下謙一]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오카 기시치로[岡喜七郎] 경시총감의 협조하에 경시청의 경부, 순사를 다수 데리고 올 수 있었다.²¹⁾

미즈노가 뽑은 조선총독부의 주요인사는 매우 유능한 자들로, 이 시기 조선에 건너온 관료 22명 중 초기사망자 2명을 제외한 20명은 전부 조선총독부의 고위관리, 지사, 중앙관청의 차관, 국장 지위에 이르렀고, 지방지사까지 승진한 인물들이다. 미즈노는 당시 일본 최고의 엘리트들을 조선에 투입하였다고 생각된다.²²⁾

이들 중 미즈노 인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리야, 노구치, 아카이케

19) 西尾林太郎, 1999, 「官僚政治家水野鍊太郎」, 『水野鍊太郎回想録・關係文書』, 山川出版社, 432쪽.

20) 守屋榮夫의 발언, 1933, 앞의 글 참조.

21) 미즈노 발언, 앞의 글, 87~88쪽.

22) 李炯植, 2006, 앞의 글, 76쪽 표 참조; 日本國政調査會, 1977, 『衆議院名鑑』 참조.

의 이후 행적을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리야는 조선총독부 근무를 마친 후 귀국하여 고향인 미야기현[宮城縣]의 시오가마[鹽釜] 시장을 역임한 후 1928년 총선거에 입후보하여 중의원 의원이 되었으며 이후 정우회에 입당하여 활동하였다. 노구치는 조선으로 부임하기 전에 병으로 죽었다. 아카이케는 조선총독부 내무부장 이후 정우회 내각, 정우회가 준여당으로 있는 내각에서 탁식국(拓殖局) 장관, 경시총감을 거쳐 헌정회 중심의 호헌3파 내각에 이르러 헌직에서 물러났다. 아카이케는 정우회계 관료로서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미즈노는 하라 내각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당시 내무성의 엘리트들 조선으로 데리고 왔다. 인사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 하라-미즈노로 이어지는 정우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육군의 조선 지배에 대응하여 관료지배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내각이 조선총독부 지배권을 강화할 토대도 마련되었다.

Ⅲ. 미즈노 렌타로와 식민지 조선의 재정문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정부의 재정지원은 번벌세력이 중심이 되는 내각인 경우에는 번벌세력-육군의 긴밀한 유대관계상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정당세력의 확장과 정당내각의 성립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정당·정당내각이 식민지 조선에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911년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이 성립하였다. 러일전쟁시기에 국가재정은 계속 팽창하였고, 새로운 식민지 경영비의 증가는 국가재정 팽창에 일조하였다. 한편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발생함에 따라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부는 조선에 2개 사단 증설을 요구하였다. 내각은 반대하였고 군부는 사단증설 문제를 도각(倒閣)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정치 문제화하였다. 군부에 의해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이 무너지고 군부의 지원을 받는 가쓰라 타로[桂太

郎 내각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별족타파·헌정옹호’(閥族打破・憲政擁護)를 내건 헌정옹호운동이 시작되었다. 사단증설 반대는 군벌횡포에 대한 저항과 반대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조선에 2개 사단을 증설하는 문제는 일본 국내 정치문제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경영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환기시켰다.

‘한일합방’ 후 조선은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전체 식민지 경영비(국고보조금, 공채보충금, 군사비)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조야(朝野)는 조선에 많은 보조금을 제공한 재정정책과 조선 조세정책을 비판하였고, 나아가 총독의 무관전임제를 비판하기에 이르렀다.²³⁾ 식민지 조선에 대한 과도한 재정투여에 대한 비판은 육군의 조선 지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조선에 대한 회계 기준은 1910년 한일합방 후 정해졌다. 1910년 9월 30일 칙령406호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 관한 건』의 「제3조 정부는 매년 조선총독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만들어 세입세출의 총예산과 함께 제국의회에 제출할 것」²⁴⁾이라는 규정에 따라 예산안은 제국의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날 칙령407호 『조선총독부특별회계규칙』의 「제1조 세입세출의 예산예산서는 소관대신(인용자 주 : 조선총독)이 만들어 전년도 8월 31일까지 대장대신에게 송부할 것」²⁵⁾이라는 규정에 따라 예산 작성에 대장대신의 지휘, 감독이 중요하게 되었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재정정책 비판과 일본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규칙의 제정은 조선총독부의 재정정리를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조선에 대한 과도한 식민지 경영비와 조선총독부의 회계규정의 정비로 내

23) 李榮娘, 1990, 「第一次憲政擁護運動と朝鮮の官制改革論」, 『日本植民地研究』 3 참조.

24) 「御署名原本・明治四十三年・勅令第四百六號・朝鮮總督府特別會計二關スル件」,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 A03020871900 참조.

25) 「御署名原本・明治四十三年・勅令第四百七號・朝鮮總督府特別會計規則」,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 A020872000 참조.

〈표 2〉 조선경 경비(일본에서 지출된 비용분)

단위 : 천 엔(千円)

연도	국고 보충금	국·공채금	군사비	합계
1907	1,467(b)	1,769(c)	10,224	13,460
1908	1,185(b)	5,259(c)	15,441	21,885
1909	2,084(b)	4,653(c)	10,358	17,095
1910	3,881(b)	2,600(c)	10,193	24,454
	2,885(a)	4,895(a)		
1911	12,350	10,000	10,509	32,859
1912	12,350	14,900	11,802(d)	39,052
1913	10,000	11,103	11,674(d)	32,777

※ (a)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설치로 인한 잔여분, (b) 통감부비용, 사법과 감옥 관련諸경비 합계, (c) 조선정부계정(일본정부가 식민지화 이전 대한제국의 계정으로 발행한 것)에서 대체받은 금액, (d) 1912, 1913년도 군사비는 예산을 표시

※ 출전 : 『東洋經濟新報』 634호, 1913년 5월 25일 ; 『明治大正財政史』 제18권 제1장 부속표 「朝鮮總督府特別會計歳入歳出決算額累年一覽表」 참조

각과 제국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조선총독부는 재정정리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경비보충금은 총독부 특별회계의 수지로 조선에서 거두는 세입의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였다. 이것은 한일합방 전의 일본정부의 지출 경비를 계승한 것으로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설치와 함께 종래 통감부와 그 외 한국정부를 위해 일본 정부가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액 1,235만 엔으로 결정되었다. 1910년에는 잔여분으로 288만 5,000엔이 결정되었다. 1911·1912년도에는 1,235만 엔, 1913년에는 1,000만 엔으로 결정되는 등 정리와 축소가 단행되었다(표 2 참조).

일본정부는 재정적 이유에서 보충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 하였고, 조선 총독부는 1914년 「재정자립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계획의 개요는 삭감되는 보충금 부분을 경비 절감과 지세, 주세, 연초세의 증세와 역둔토 소작료의 인상으로 증수하여 보충하려고 한 것이었다.²⁶⁾ 이것은 조선지배 비

26) 小田忠夫, 「併合初期に於ける朝鮮總督府財政の發達」, 『朝鮮經濟の研究』 3, 京城帝

〈표 3〉 조선총독부 재정수입내역(결산)

단위: 천 엔(千円)

연도	조세수입	관업수입	역둔토 소작료	보충금	공채금	전년도 잉여금편입	기타세입	총 세입
1910	9,061	429	1,063	2,885	4,895	181	3,807	22,321
1911	12,440	10,590	1,201	12,350	10,000	4,163	1,540	52,284
1912	13,361	12,359	1,255	12,350	14,900	6,112	1,247	61,584
1913	13,903	13,940	1,130	10,000	11,103	10,345	2,672	63,093
1914	16,685	14,749	1,549	9,000	7,640	9,639	2,785	62,047
1915	17,494	16,971	1,474	8,000	311	6,947	11,525	62,722
1916	18,876	20,622	1,500	7,000	0	5,852	14,352	68,202
1917	22,679	17,082	1,510	5,000	12,830	10,639	5,163	74,903
1918	29,184	22,288	1,574	3,000	13,098	23,731	7,236	100,111
1919	38,518	23,272	1,777	0	14,435	36,049	11,752	125,803
1920	34,839	24,456	2,280	10,000	22,355	32,776	19,637	146,343
1921	36,890	42,027	2,844	15,000	37,219	24,122	17,032	175,134
1922	42,524	44,643	1,745	15,600	21,125	26,720	17,003	169,360

※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근거해서 작성

용을 점차로 조선 내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었다.

1914년 예산편성에서 시작된 재정자립계획은 보충금을 1914년부터 점차 감액하여 1919년에는 보충금을 없앨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실행결과 1919년에는 예정대로 재정자립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²⁷⁾ 식민지 조선의 재정자립은 육군의 조선 지배를 공고화, 영구화하기 위한 조치였다(표 3 참조).

심지어 조선 내에서는 한발 더 나아간 생각도 나오고 있었다. 재정자립 계획과 실행에서 조선에 있는 육해군 방비 경비는 군사비로 일본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는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

大, 24~32쪽(堀和生, 1982, 앞의 글, 204쪽에서 재인용).

27) 水田直昌 監修, 1974, 『總督府時代の財政』, 友邦協會, 157쪽.

을 밝히고, 장차 그 경비에 대하여 조야(朝野)가 생각해 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다.²⁸⁾ 즉 식민지 조선당국자들은 재정뿐만 아니라 군사비까지 자체적으로 부담하여 일본정부로부터 독립된 운영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 결과 조선의 치안유지와 정책에 전환이 이루어졌다.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의 전환, 태형의 폐지와 감옥의 신설·운영 등은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이것은 1919년 예산에서 확립한 재정자립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문화정치’가 시작된 1920년도 총독부 재정은 전년도보다 약 3,000만 엔 정도 증가하여 1억 2,000만 엔으로 팽창하였다. 증가액의 6할 이상이 경찰, 감옥 등 직접적인 치안비용으로, 1910년대에는 약 700만 엔을 전후했던 금액이 1920년에는 2,394만 엔이 되었다. 불과 1년 만에 13,800명의 경관이 증원되었다. 게다가 치안관계뿐만 아니라 총독부 기관 전체가 팽창하였다. 1919년부터 2년 사이에 판임관 이상의 관리가 11,000명에서 28,000명으로 증원되었다.²⁹⁾ 문화정치는 민족운동의 고양에 대항하기 위한 식민지 지배기구의 비약적 확장정책이었다.³⁰⁾

문화정치를 구체적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획득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미즈노는 하라 총리와 직접 만나 예산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조선을 통치하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미즈노의 태도는 조선에 미즈노의 사직설로 전달될 정도였다. 미즈노는 예산 획득을 위해 하라 총리와 면담하고 각의에 출석하여 대신들의 설득작업도 진행하였다.³¹⁾ 이처럼 미즈노는 예산 획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예산 획득을 위한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무총감 미즈노는 1920년 7월 9일 제43회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1,000만 엔 보충금은 팽창된 세출의 보충에 사용될 것을 밝혔다.³²⁾ 미즈

28) 鈴木穆述, 1919, 「朝鮮行政獨立の完成」, 『朝鮮公論』 7-1, 1 참조.

29) 中塚明, 1966, 「日本帝國主義と朝鮮」, 『日本史研究』 83, 61쪽.

30) 堀和生, 1982, 앞의 글, 211쪽.

31) 水野鍊太郎의 발언, 1993, 앞의 글, 「朝鮮統治秘話」(6), 118~120쪽.

노는 예산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1919년 9월의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전환하는 관제개정에 따른 경찰인원의 증설을 들고 있었다. 즉 “종래 헌병의 비용은 육군 등으로부터 지출되고 있었지만, 이후에는 조선 독립회계에서 이것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비용의 증가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예산증가 이유를 밝혔다.³³⁾

구체적인 예산에서 경찰비용의 증가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1918년 · 1919년의 경찰비용 비교와 증가액

단위 : 엔(円)

금액단위(엔)	1918년도(A)	1919년도(B)	(B-A) 증가분
경찰비예산	4,357,114	* 13,950,797	9,593,683
헌병보조원비	1,177,104	1,289,567	112,463
헌병비예산	2,469,749	2,511,045	41,296
합계	8,003,967	17,751,409	9,747,442

※ 추가예산 996,543엔 포함

※ 筋瀬徳松 述, 「朝鮮警察費予算の沿革」, 『朝鮮』 68호, 1920년 9월호 참조

또한 미즈노의 1,000만 엔 보충금 요구 이유 중에는 조선인 아동을 수용하는 조선인 보통학교 증설도 있었다. 미즈노는 이것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기존에 6면 1교를 3면 1교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전 총독시기에도 같은 계획이 세워졌었다. 8년간에 걸쳐 3면 1교를 만들겠다는 이전 계획을 미즈노는 3년 내에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보충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³⁴⁾

미즈노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보충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만 했다. 이유는 조선총독부 예산은 제국의회 심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

32) 水口隆三 발언, 1983, 「제43회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3분과(대장성소관) 회의록 제1회(大正 9년 7월 9일)」, 『帝國議會衆議院委員會議錄』 25, 臨川書店, 138쪽.

33) 水野鍊太郎 발언, 위의 회의록, 138쪽.

34) 水野鍊太郎 발언, 앞의 회의록, 139쪽.

〈표 5〉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조선총독부 출석인원(1918~1922)

회기	참석시기	출석인원
제40회	1918년 2월	조선총독부 사무관 河内山樂三, 참사관 大塚常三郎
제41회	1919년 2월	조선총독부 度支部장관 鈴木穆, 참사관 大塚常三郎, 사무관 河内山樂三
제42회	1920년 2월	조선총독 齋藤實, 정무총감 水野鍊太郎, 재무국장 河内山樂三, 참사관 大塚常三郎
제43회	1920년 7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水野鍊太郎, 내무국장 겸 참사관 大塚常三郎, 사무관 水口隆三
제44회	1921년 2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水野鍊太郎, 재무국장 河内山樂三, 내무국장 겸 참사관 大塚常三郎
제45회	1922년 2월	조선총독 齋藤實, 재무국장 河内山樂三, 식산국장 西村保吉

※ 『帝國議會衆議院委員會議錄』 14, 19, 23, 25, 27, 31, 臨川書店, 1983

다. 이러한 상황은 하세가와 총독하에서 재정자립을 달성할 때와 사이토 총독하에서 보충금을 요구하던 때의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심의회에 참석하는 조선총독부의 인적구성 차이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수뇌가 제국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모습은 육군이 조선을 장악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었다. 재정자립으로 나아가고 있던 시기인 제40회, 제41회 예산심의회에는 조선총독부 국장급이 참석하였으나, 보충금이 요구되는 제42회 이후에는 총독이 직접 참석하거나, 정무총감이 참석하였다. 제국의회가 조선총독부의 예산운용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표 5 참조). 하라 내각의 성립으로 일본 국정의 주도권은 변별세력에서 정당과 제국의회로 옮겨오게 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이전과 다른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또한 재정자립의 기초가 무너진 상황에서 제국의회로부터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예산 중 본국에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보충금형식이었다. 보충금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면, 1921년 2월 7일 제44회 제국의회 예산위원회에서 대표적인 조선통인 마키야마 게이쥬[牧山耕藏]³⁵⁾가 미즈

노에게 지속적으로 최소한 1,500만 엔 정도의 보충금을 본국에서 충당할 계획인가에 대한 질문에 미즈노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종래 조선의 재정독립이라는 계획도 있었지만 (현재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은 중지되었고, 본년도에는 1,500만 엔의 보충금을 요구하였다. 즉 전년도에 비해 500만엔 증가하였다. 이 보충금을 장래 계속해서 요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물론 총독부로서는 적어도 이만큼의 보충금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³⁶⁾

미즈노는 총독부의 입장을 대변하여 지속적인 보충금 원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마키야마 의원이 다카하시 고레키요 [高橋是清] 대장대신에게 조선총독부의 보충금 예산이 1920년의 1,000만 엔에서 1921년 1,500만 엔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장래에도 계속해서 보충금을 지급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다카하시 대장대신은 조선 보충금에 대해 미즈노와 다른 인식을 보였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때 조선은 경제독립, 재정독립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여서, 지방은 중앙의 귀찮은 애물이 되지 않는 상태로 나아간 것으로도 보였다. 그러나 그 후 조선 내외 사정의 변화와 함께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었다. 때문에 다시 중앙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이것은 반드시 최소한도로 하며 매년 지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³⁷⁾

미즈노와 다카하시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와 중앙정부는 보

35) 마키야마는 1882년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출생하였다. 1906년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조선에 건너가 통신사 경영에 참여하여, 조선공문사와 동아전보통신사를 신설하고 사장이 되었다. 광산 경영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였고, 조선신문사를 매수하여 사장이 되었다. 1917년 총선거에 나가사키현에서 입헌정우회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36) 水野鍊太郎 발언, 『帝國議會衆議院委員會議錄』 27, 371쪽.

37) 高橋是清 발언, 위의 회의록, 378쪽.

충금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었다. 중앙정부는 매년 사정에 따라 보충금의 사정도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조선총독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 이상을 받기를 기대하였다.

보충금 심의는 제국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제국의회와 정당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자연히 증대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귀결로 문제점도 드러났다. 미즈노 정무총감이 조선을 떠난 후 총독부 재무국장을 맡은 와다 이치로[和田一郎]는 이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조선의 예산에는 중대한 곤란이 있다. 그것은 일반회계의 보충금과 공채금이다. 보충금은 일반회계 사정에 의해 좌우되어져(좌우되나), 단순히 조선 사정만으로 결정될 수가 없다. 또한 공채금은 조선 내에서 도저히 소요액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것 역시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어느 것이든 조선에서 보자면 수동적이고, 일반 회계를 관리받는 입장에 있다.³⁸⁾

보충금과 공채금을 매개로 조선총독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다. 1920년대 일본의 정치는 정당내각이 움직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었다. 정당내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국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세력은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확장과 활용 움직임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38) 和田一郎, 「大正一二年度の予算に就て」, 『金融と經濟』 46(堀和生, 1982, 앞의 글, 220~230쪽, 주4 재인용).

Ⅳ. 일본 정당정치의 식민지 조선 개입

정당과 정당내각의 식민지 지배 개입은 정당세력이 확대되던 러일전쟁 직후부터 보였다. 1906년 사이온지 내각하의 하라 다카시 내무대신은 당시 비서관인 미즈노 렌타로를 시켜 육군대신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에게 가라후토[樺太 : 현재의 사할린] 장관을 군인이 아닌 문관으로 교체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였다. 데라우치는 강하게 반대하였다. 반대 이유는 가라후토가 사무적으로 지방청과 같을지 모르지만, 문관이 임용되면 장관이 계속해서 불안정화 된다는 것이었다. 내각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뀌는 폐해를 경계한 것이었다. 데라우치는 정당내각이 성립하면 장관 임명에 정당의 입김이 미칠 것이고, 이 권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내지의 각 부현에 이미 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내각이 바뀔 때마다 지사가 경질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신영토에는 이러한 폐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영토의 장관은 군인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였다.³⁹⁾ 그러나 하라 내무대신은 내각 각의(閣議)에서 문관장관 임용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내무성 안(案)대로 결정되어 가라후토에 초대 문관장관이 임용되었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식민지 조선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육군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식민지 조선에서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유화책을 논의하였으며, 논의 중심내용이 문관총독의 임용문제였다. 그러나 육군이 문관총독으로의 제도적 변화에 강하게 반발하여 총독의 문무관 병용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육군의 반발은 문관총독의 임용이 가져올 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육군은 정당내각이 만들어져 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이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내각이 바뀔 때마다 총독이 바뀌는 것에 대하여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⁴⁰⁾

39) 水野鍊太郎 著, 1999, 앞의 책, 71~72쪽.

결국 육군은 사회여론과 정당내각의 의향을 무시하지 못하고 조선총독에 퇴임한 육군도 아닌, 해군 장군출신의 사이토 마고토를 현역으로 복귀시켜 임명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었다.⁴¹⁾ 하라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내각은 육군을 포함한 번벌세력과의 대립상황에서 식민지 조선 문제를 활용하여 국내정치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였다. 그러나 사이토 마고토 총독의 임용은 정당내각이 식민지 조선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라 내각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권 확립에 제국의회를 이용하였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민지 조선의 재정을 보충하는 보충금과 공채발행은 제국의회의 심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국의회, 특히 중의원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의원, 특히 여당인 정우회는 일본정부와 내각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제권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조선총독이 사이토 마고토로 바뀌고 난 후 열린 1920년 2월 5일 제42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여당 정우회 소속인 마키야마 게이쵸 의원은 조선은행의 관리권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동양척식회사와 대만은행 등 식민지의 특수기관은 모두 대장대신 소관이다. 특히 대만은행은 대만총독의 재무국장이 관리관(管理官)이나 대장대신이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행은 조선총독이 관할한다. 이름은 조선은행이라고 하지만 실제 하는 일은 만주은행, 일지(日支)은행, 일러(日露)은행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조선은행은)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의 경제차관에 응하고, 미국에도 런던에도 지점을 가지고 있다. 그 활동 범위는 오늘날 조선 지역과 그 외 지역을 비교하면 거의 같은 수준이다. 오히려 조선이라는 글자가 있지만 대륙은행 혹은 동아은행이라고 해야 할 성질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중국에 차관을 주고, 일본이 대륙의 경제발전도 원조한다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조선은행이 조선총독의 관리하에 있다는 것은 묘한 느낌이 든다.⁴²⁾

40) 水野鍊太郎 著, 1999, 앞의 책, 72쪽.

41) 김종식, 2007, 앞의 글 참조.

조선은행이 다른 식민지 은행과 다른 대외차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다카하시 대장대신은 이 문제는 정부도 심의 중으로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해석상 대장대신의 관할하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⁴³⁾ 조선총독부하의 조선은행의 독자적인 활동에 대한 견제와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문제는 니시하라 차관[西原借款]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1916년 조선총독에서 총리대신으로 자리를 옮긴 데라우치는 중국의 단기서(段祺瑞) 정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겨냥하여 니시하라를 앞세워 총 8회 1억 4,500만 엔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유럽이 전쟁 때문에 중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틈을 타 군벌출신의 단기서 정권에게 경제차관 명목으로 정권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 주었다. 일본에서 차관을 제공했던 은행은 일본흥업은행, 대만은행과 더불어 조선은행 등 3개 은행이었다. 차관정책의 구상자로 교섭에 직접 개입한 니시하라는 데라우치가 조선총독이었던 시기에 조선 경제계에서 활약하였던 인물이었고, 실제 자금의 수집관리를 담당한 가쓰다 가즈에[勝田主計] 대장대신은 조선은행 총재출신이었다. 결국 군벌출신의 단기서는 중국정권에서 물러나고, 데라우치도 하라에게 총리대신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이후 이 차관은 중국내란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일본 언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고, 하라 내각의 중국불간섭정책에 의해 차관정책은 중지되었다. 결국 대부분의 차관회수는 미수에 그쳤다.⁴⁴⁾

조선총독의 관할하에 있던 조선은행은 데라우치의 후임자인 하세가와의 양해를 얻어 니시하라 차관정책을 수행하였다고 생각된다. 니시하라 차관은 결국 조선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고려한다면 조선은행을 총독의 관리감독이 아닌 중앙정부의 관리감독하에 두려는 정당내각의

42) 牧山耕藏 질문, 「제42회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3분과(대장성소관) 제1회 회의록 (大正 9년 2월 2일)」, 『帝國議會衆議院委員會議錄』 23, 1983, 臨川書店, 341쪽.

43) 高橋是清 답변, 위의 회의록, 341쪽.

44) 大森とく子, 1975, 「西原借款について」, 『歴史學研究』 419 참조.

당위성은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위에서 본 마키야마와 다카하시 대장대신의 질의응답은 이러한 배경하에 조선은행에 대한 내각의 지휘권을 명백히 하려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예산지출 문제에도 제국의회와 일본정부의 관리감독권이 작동할 수 있었다. 1920년 2월 5일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인 정우회의 의원인 오카다 에이[岡田 榮]⁴⁵⁾ 의원은 중의원의 법률을 근거로 조선총독부의 행정처분이 모순된다는 질문을 하였다. 오카다는 1919년 의회에 조선총독부 소관의 경철도보조법안(輕鐵道補助法案)이 제출되었지만 성립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총독부가 1919년 총독부 자체 행정처분으로 경철도에 실제적인 보조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그는 총독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헌법과 회계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⁴⁶⁾ 조선총독의 자의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카하시 대장대신도 “종래에는 예산을 획득하면 그 예산을 마음대로 하였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라고 오카다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조선총독부의 자의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⁴⁷⁾ 내각은 조선총독부의 자금운용에 대하여 총독부의 자의적인 결정보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총독, 총독부 정무총감, 총독부 재무국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질문과 답변이라는 점에서 총독부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명확히 보여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1920년대 정당내각하의 정당정치세력은 제국의회를 매개로 식민지 조선의 문제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각과 내각을 이루는 정당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다른 방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 정우회의 이권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미즈노의 다음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5) 대한제국 정부법무보좌관 역임, 고치현(高知縣) 당선의 정우회 의원.

46) 岡田 榮 질의, 『帝國議會衆議院委員會議錄』 23, 342쪽.

47) 高橋是清 답변, 위의 회의록, 342쪽.

조선에는 내지(内地 : 인용자 주-일본 본토)와 같은 정당은 없지만, 때때로 내지에서 정당의 모리배가 이권획득을 위해 온 경우가 있다. 즉 산림의 불하라든가, 거래소 문제라든가, 그 외 이권문제에 대하여 나에게 청원하였다. 중에는 정우회의 당의(黨議)라고 한다든가, 총재의 의사라고 강요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추한 문제에 관계하는 것을 피하고, 그때마다 강경히 거절하였다.⁴⁸⁾

이러한 미즈노의 발언을 통해 조선에 정우회 관련자들이 이익획득을 위해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된다.

조선총독부의 인허가 문제에 정우회쪽 인사가 관련되었다는 정황은 인허가 관련 회사령의 변동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회사령은 1911년 실시되어 2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제1차 세계대전 말기 기업(起業)붐 시기에는 거의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1920년 3월 민간기업가의 요청으로 회사령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거래소·보험업·유가증권의 매매 혹은 중개업 등에 대해서는 특수한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규 제정을 통하여 회사령의 적용을 받았으며, 1920년 4월 '시장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총독부가 계속하여 시장개설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과 만주(朝鮮及滿州)』에는 「정우회와 부산거래소 신설문제」(1921년 4월)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는 정우회가 식민지를 먹이로 만들고 있다는 등의 지적을 하였다. 사이토 총독과 미즈노 정무총감은 이를 부정한다는 잡지의 내용과 달리 거래소는 계속해서 경성·부산·대구·군산·목포·진남포·원산·신의주·강경에 개설되었다. 모두 총독부 내 정우회계 관료가 인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전에 비해 인가 판정이 쉽게 내려져 그만큼 정우회계 관리와 '조선계 의원'의 암약기회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정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조선에서 이권의 신장이 곧바로 정우회의 당세확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우회가 이를 각 선거구와 조선의 경제적 관계를 긴밀화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선전함으로써 당세확장과 연결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

48) 「懷舊錄」 前篇 ; 水野鍊太郎 著, 1999, 앞의 책, 26쪽.

이다.⁴⁹⁾ 정당정치가 조선총독부의 인허가권에 관계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선계 의원'의 존재는 이권신장, 정우회의 당세확장과 간접적이거나 연결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정당정치의 식민지 조선 개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식민지 조선에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변별과 육군에 대항하여 정당정치 세력의 세력확장 전략의 일환이며, 둘째는 정당정치세력의 직간접적인 지지 기반 확장을 위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이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V. 맺음말

1919년 3·1운동으로 촉발된 식민지 조선의 통치 변화는 일본 국내 정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다. 일본 국내는 변별세력이 약화되고 정우회가 중심이 되는 정당내각이 구성되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 결과 식민지 조선의 통치에서 변별과 육군의 힘이 약해지고 내각과 정당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새로운 식민지 조선지배의 실행 주체는 정당내각의 지지를 받는 미즈노 렌타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었다.

미즈노는 먼저 인사를 통하여 문화정치를 시작하였다.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전환시키면서, 식민지 조선지배의 중심세력을 무관에서 문관으로 바꾸었다. 미즈노는 본인이 오랫동안 재직하였던 내무성의 측근 엘리트들을 불러와 조선총독부의 요직에 임명하였다. 조선총독부 인사가 육군을 대신하여 정당내각의 영향력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였다.

문화정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였다. 3·1운동 이전

49) 木村健二, 2000, 앞의 글, 282쪽 참조.

조선총독부는 일본 국내 정당정치의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재정자립계획을 실행하였고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보통경찰 창설과 교육정책 강화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총독부는 본국에 보충금을 요구하였다. 보충금의 획득은 내각과 제국의회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당내각과 정당은 제국의회를 통하여 식민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920년대 초 정당·정당내각의 식민지 조선 개입은 식민지 조선을 둘러싼 번벌·육군과의 정치 대립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하라 정우회 내각은 번벌·육군에 대한 정치력 확장의 일환으로 식민지 조선의 문제에 개입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당 혹은 정당 정치가의 이권개입도 배태되었다.

참고문헌

〈사료〉

『朝鮮統治秘話』, 1933, 『東洋』 36 1~6, 東洋協會.

水野鍊太郎 著, 1999, 尙友俱樂部・西尾林太郎 編, 『水野鍊太郎回想録・關係文書』, 山川出版社.

『帝國議會衆議院委員會議錄』, 23・25・27권, 1983, 臨川書店.

水田直昌 監修, 1974, 『總督府時代の財政』, 友邦協會.

御署名原本・明治四十三年・勅令第四百六號・朝鮮總督府特別會計ニ關スル件,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A03020871900 참조.

『御署名原本・明治四十三年・勅令第四百七號・朝鮮總督府特別會計規則』,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A020872000 참조.

〈논문〉

김종식, 2007, 「1919년 일본의 조선문제에 대한 정치과정-인사와 관제개혁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6집.

李炯植, 2006, 「『文化政治』初期における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史學雜誌』 115-4.

稻葉繼雄, 1994, 「水野鍊太郎と朝鮮教育」, 『九州大學比較教育文化研究施設紀要』 46.

李焚娘, 1990, 「第一次憲政擁護運動と朝鮮の官制改革論」, 『日本植民地研究』 3호.

李正龍, 1987, 「原內閣における植民地官制改正問題-朝鮮總督府を中心に-」, 『慶應義塾大學大學院法學研究科論文集』 26호.

大森とく子, 1975, 「西原借款について」, 『歴史學研究』 419.

中塚明, 1966, 「日本帝國主義と朝鮮」, 『日本史研究』 83.

〈연구서〉

岡本眞紀子, 2008, 『植民地官僚の政治史』, 三元社.

服部龍二・土田哲夫・後藤春美 編, 2007, 『戦間期の東アジア國際政治』, 中央大學出版部.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07, 『日本の朝鮮・台灣支配と植民地官僚』, 『國際シンポジウム第30集』.

김동명, 2006,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경인문화사.

長田彰文, 2005, 『日本の朝鮮統治と國際關係』, 平凡社.

寺崎修・玉井清 編, 2005, 『戦前日本の政治と市民意識』, 慶應義塾大學出版會.

波形昭一・堀越芳昭 編, 2000, 『近代日本の經濟官僚』, 日本經濟評論社.

季武嘉也, 1999, 『大正期の政治構造』, 吉川弘文館.

三谷太一郎, 1995, 『大正デモクラシー論』新版, 東京大學出版會.

飯沼二郎・姜在彦編, 1982, 『植民地朝鮮の社會と抵抗』, 未來社.

강동진, 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升味準之助, 1968, 『日本政黨史論』第四卷, 東京大學出版會.

[ABSTRACT]

Japanese Politics and the Rule of Chosun in 1920s – Mizuno Rentarō's Colonial Policies in Japanese Political Context

Kim, Jongsik

This essay investigates the role of Director-General of Political Affairs Mizuno Rentarō.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Japan's policy toward colonial Chosun experienced a major shift. The existing literature pays little attention to the impact of Japan's domestic politics on the policy shift. To understand the impact, I analyze the policies that Mizuno introduced between 1919 and 1922. His tenure coincides with the peak of the Taisho Democracy when the pendulum of political power swung from the old oligarchic group of elder statesmen and generals to the democratic parties. He played a crucial role in reducing the power of military and police whose ruthless suppression the nation-wide protest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 rule. At the same time, he persuaded Japanese politicians to increase the budget of the colonial government to ease the protest. In this respect, his efforts contributed to cement a link between Japan's domestic politics and the colonial rule. After his return to Japan, these policies remained intact because his successor was recommended by himself. As a result, the influence of Japan's domestic politics on the colony continued until the late 1920.

keywords

Mizuno Rentaro, Hara takasi, Colonial Chosun, Hanbatu (藩閥 : the old oligarchic group), Bureaucracy of Japanese Colonial Empire



滿洲國(1932~1945)의 時憲書 발행과 그 정치적 의미

정성희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I. 머리말

서양 제국주의의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에 대한 西勢東漸은 가장 큰 영향력 중의 하나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동아시아는 중국적 시간 질서에서 서양적 시간질서로 이동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력인 태음태양력에서 서양의 태양력으로 改曆을 단행하였다. 근대 동아시아에서 양력의 사용은 동아시아가 세계사 일원으로 포함되는 사건이자 내부적으로는 큰 변화의 시기이기도 했다. 일본은 1876년, 한국은 1896년에 각각 태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조금 늦은 1913년부터 양력을 사용하였다. 한·중·일 3국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양력으로 개력한 데는 과학적인 이유보다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단행하던 시기였고, 한국은 고종이 황제의 지위에 올라 대한제국을 선포하던 시기였으며, 중국은 신해혁명으로 청왕조가 붕괴되고 중화민국이 성립되었던 시기였다.

전통시대 역의 개력은 역대로 국가 및 황제의 지위와 권위를 강조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을 제공해 왔다. 특히 황제의 권위와 지배 명분이 약할수

록 개력은 황제권의 상징이자 국가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예컨대 대한제국의 성립과 함께 고종은 황제권의 강화를 위해 양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또한 양력에 맞추어 국민통합을 꾀하고 황실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오늘날과 같은 국경일도 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선발주자인 일본도 후발주자인 만주국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만주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단시일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신제국주의적' 통치이념을 국민들에게 선전한 국가였다.

時憲書¹⁾는 明末清初의 曆法인 時憲曆을 토대로 만든 曆書로서 중국에서는 청왕조에서 사용되었고, 한국에서는 조선 효종대부터 대한제국의 역서인 明時曆으로 이름이 교체되기 직전까지 발행되었다. 청왕조의 역서인 시헌서가 청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다가 그 이름이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만주국이 건국되면서부터이다. 1932년에 건국된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정부'라는 별칭답게 그 시기 태양력을 사용했던 일본과 같은 달력을 사용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만주국은 1932년 건국과 동시에 滿洲國 및 大同이라는 만주국 연호가 들어간 時憲書を 발행했으며, 1934년부터는 康德이라는 연호가 들어간 시헌서를 만주국이 멸망할 때까지 발행하였다. 만주국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청의 시헌서를 공식적으로 다시 발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만주국이 시헌서를 발행한 것은 표면적으로 청제국의 정통성을 이으면서 한편으로 일본의 괴뢰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조선왕조 시기에 없어졌던 환구단을 부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역은 본래 천문학적 기능²⁾ 외에도 국가의 권위 및

1) 본고에서 언급되고 있는 時憲曆과 時憲書는 동일한 역서명이라 볼 수 있다. 시헌력은 원래 청조의 역서인데, 건륭제의 이름인 弘曆의 曆자를 피휘하기 위해 洪력 연간 이후에는 시헌력의 역서명을 시헌서로 개명하였다. 본고에서 만주국의 시헌력을 설명할 때는 만주국의 역명인 시헌서라는 이름을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2) 역사상 曆法의 탄생은 변함없이 계속된 자연의 순환론적인 변화에서 기인하였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하루로 정하여 1년 365일라는 천체운행의 법칙을 발견한 이후, 인간은 1년 단위의 달력을 만들어 시간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을 포

정치적 상징성을 나타내 주는 기능도 함께 있었다. 역의 반포는 중국에서 천자만의 고유한 기능이었고, 한국도 역서의 발행은 국가의 고유 영역으로 인정되어 사사로이 발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제왕의 권위를 천문학적 정확성에서 찾고자 했던 동아시아의 曆書는 근대 이후 양력으로 바뀌면서 국가 혹은 정부의 선전효과와 더불어 국민통합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고래로 역서의 제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국가의례를 지내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새 달력과 새로운 국가의례, 이것은 국민들에게 국가의 정체성을 선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이것이 근대국가에서 국가기념일을 제정한 목적이기도 했다.

근대 동북아시아에서 만주국이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만주국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서 한국에서의 만주국 연구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지역적 특수성과 긴밀성, 그리고 일제 치하라는 정치적 배경 때문인지 대체적으로 항일투쟁지로서의 만주, 재만조선인, 혹은 만주지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측면에 치중한 점이 많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만주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나라였는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 본 연구는 한석정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사실 만주국은 일제가 만주사변 이후 1932년에 세운 나라로 일본 관동군이 건설한 ‘괴뢰국’ 정도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 한석정은 “괴뢰국이라는 것은 주요 정책이 외세 혹은 패권국에 의해 조종, 결정되는 나라로 국방을 위해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는 나라이므로 이런 기준을 따르다면, 20세기 많은 ‘주권국’들이 실제로는 모두 괴뢰국에 해당된다”고 하여 만주국에 대한 새로운 시

함한 동양에서의 전통적인 달력은 비단 순환하는 시간의 경과만을 알려주는 것만은 아니었고, 고대적 천문사상 예컨대, 운이 있는 날, 혹은 운이 없는 날 등의 길흉일을 알려주는 점성적 기능이 결합된 것이었다. 물론 달력의 점성적 기능은 서양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1244년의 서양의 달력을 보면, 별자리의 운행과 결합된 점성적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 이진경, 1997,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39쪽, 중세 귀족의 livres d'heures 그림 참조.

각을 제시하였다.³⁾ 이어서 그는 “20세기 동북아시아의 몇 나라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초강대국이나 국제자본주의체제의 압력에 대항해서 버텨 내거나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이끌어가는 등, 그 형태가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고 하여 만주국이 일개 일본의 괴뢰정부가 아닌 20세기 동북아의 새로운 형태의 근대국가로 인식하고자 하였다.⁴⁾ 만주국에 대한 한석정의 해석은 과거 일본의 괴뢰정부로서의 만주국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난 긍정적인 평가에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윤휘탁은 만주국이 다수 민족 내부의 역학관계, 각각의 생활토대와 문화적 전통, 그들 간의 상호인식, 그리고 각 민족의 혈통과 연계된 해당 국가 상호간의 역학관계 등이 일정한 공간에서 체현된 결과들의 총합물로서 일종의 ‘복합민족국가’라 진단하고 따라서 만주국은 국가 구성원들인 제 민족 상호간의 자연 발생적인 합의에 기반해서 형성된 국가가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권력에 의해 급조되고 그들의 식민의지가 집중적으로 투영된 국가라고 하여 만주국이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⁵⁾

약간의 시각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만주국의 국가정체성과 관련한 연구는 과거 괴뢰국 정도의 나라라는 인식을 넘어 동북아시아 역사에서 새롭게 그 의미를 찾을 정도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연구 가운데서 만주국이 발행한 역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를 통해서 만주국의 국가정체성을 살펴보려는 시도는 없었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만주국 역서에 주목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공식문서가 주로 양력만 기재하고 있어 만주국이 당연히 일본과 같은 달력을 사용했으리라

3) 만주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한석정, 1999,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를 꼽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임성모, 2001a, 「국방국가의 실험 : 만주국과 일본파시즘」, 『중국사연구』 16 ; 임성모, 2005, 「팽창하는 제국의 시선—근대 일본의 만주 여행과 제국의식」, 『일본사연구』 23도 관련 연구로 주목할 만하다.

4) 한석정, 2001, 「동아시아 국가 만들기의 연결 고리 : 만주국, 1932~1940」, 『중국사연구』 16, 118쪽.

5) 윤휘탁, 2001, 『滿洲國의 2等 國(公)民, 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 169.

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힘없는 제국의 자기과시적 선전효과는 제국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치 상징성을 지닌다고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시각과 목적을 가지고 만주국의 시헌서 발행과 그것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곧 동북아시아에서 만주국이 지녔던 역사적 위치 및 만주국의 국가정체성 문제를 구명하는 작업이며, 궁극적으로는 근대 동아시아의 改曆이 가진 역사적 상징성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II. 근대 동아시아의 改曆과 그 상징성

근대 동아시아에서 양력으로의 개력은 천문학적 이유도 근대적 이유도 아닌 제국주의의 침략에서 비롯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전통과의 단절이라는 명분을 내걸으며 양력을 택했고 근대국가의 표피적 모습을 본 따기에 여념이 없었던 만주국은 역설적으로 청조의 달력을 공식적으로 발행하였다. 정당성이 결여된 국가일수록 보다 초월적이고도 권위적인 것에 의지하고자 '전통의 창조'에 열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 홉스봄의 지적처럼,⁶⁾ 만주국의 시헌서 발행은 전통적으로 역이 지닌 정치적 권위와 상징성을 재연한 측면이 강하다. 청조의 달력을 발행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사생아와도 같았던 만주국의 정체성을 일소하고 국가의 정통성을 선전하고자 한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구의 경우 국민국가의 탄생과 함께 태양력에 기초한 각종 기념일의 제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계층에 속한 날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모두의 기념할 만한 날이 제정되고, 여기에 모두가 동참

6) Eric Hobsbawm 저, 최석영 역, 1996,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할 수 있는 상황이야말로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형성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음력에 비해 양력은 무엇보다 근대 국민국가의 기념일이 모든 국민 구성원의 날이 될 수 있는데 유리했다. 음력이 달의 주기에 근거하여 천문학적으로 12달과 일년 날짜를 결정한 것과 달리 서양의 태양력은 1년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균분하였다. 각각의 달과 날이 서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양력은 특정한 날을 다수의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날로 만들기에 매우 용이한 매력이 있었다.

사실 달력에 국경일이 기재된 것은 근대국가의 특징이기도 하다. 인위적이고도 특정한 시간 틀 속에 전 국민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은 역과 국경일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난다. 동아시아에서 서양의 태양력을 가장 빨리 채택하여 사용한 일본은 국가기념일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祝日을 일찌감치 제정하여 황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다. 일본의 축일 제정은 명치유신 이후에 천황제를 중심으로 근대국가를 확립하고자 했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秋季皇靈祭, 大正天皇祭 등은 근대 천황제의 확립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축일이었다. 양력 사용과 함께 최초로 제정된 기념일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근대 이전 민간에서 널리 행해져오던 세시풍속일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달력에 기재되어 있는 기념일은 대부분이 皇室家와 관련된 날이다.

한국의 경우 양력을 사용한 1896년 역서부터 국가의례나 황실의 행사일이 처음으로 달력에 기재되기 시작하였다. 대한제국의 등장과 고종의 황제 등극은 종래 국가의례를 帝國의 지위에 맞는 것으로 변

舊曆 一月大三十日 辛亥年 丁酉年 丁酉年 丁酉年 丁酉年 丁酉年 丁酉年 丁酉年 丁酉年 丁酉年 丁酉年											
十四日	十三日	十二日	十一日	十日	九日	八日	七日	六日	五日	四日	三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土	金	木	火	水	土	金	木	火	水	土	金
小寒前時○分 ○冬至後時四分 舊土月節 日八時五十分 晝九時三十分 夜十時三十分											

화를 가져왔으며 이와 함께 국가경축일이 제정되었다.⁷⁾ 이 외에도 국가의례인 吉禮의 大祀, 中祀, 小祀의 변화가 帝國에 걸맞은 제사 체제로 변화하였다. 특히 역서 안에 왕실 혹은 황실의 행사일을 기록한다든지, 양력 일자를 음력 일자와 병기한다든지 한 것은 전통력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다.

1896년부터 1908년까지 대한제국기에 발행된 달력인 明時曆에는 새로 제정된 국가기념일 및 기존의 國忌日이 혼합되어 기재되었지만, 전통력에서 양력체제로 완전하게 전환되기 시작한 1909년부터는 8개의 국가경축일만이 간략하게 기재되기 시작했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 한국은 역서의 발행기관이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었으며, 역서에 기재된 국가기념일도 일본의 祝祭日로 모두 대체되었다. 그림 1에서 보다시피 1913년 大正二年朝鮮民曆을 보면, 四方拜(1. 1), 元始祭(1. 3), 紀元節(2. 11), 春季皇靈祭(3. 21), 神武天皇祭(4. 3), 明治天皇祭(7. 30), 天長節(8. 31), 秋季皇靈祭(9. 24), 神嘗祭(10. 17), 新嘗祭(11. 23) 등 일본의 축제일만이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다.

근대시기에 역서에 국가기념일이 기재된 것은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만주국도 마찬가지였다. 후술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전통력을 버리고 양력으로 개력한 것과 다르게 만주국은 淸曆의 이름과 옛 의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활시켰다는 것이 차이점일 뿐,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치적 상징성은 동일하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는 국민국가나 특정지역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서양 주도의 근대적 시간체제가 확산되는 기간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 표준시간은 서양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서양 주도의 시간 통일은 근대 이후 서양의 우위를 확인해 주는 또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의 통일은 과학적 우위와 함께 정치적 우위라는 함수 위에 존재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근대 동북아시아의 시간체제, 즉 曆체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이다.

7) 대한제국의 개력과 국가기념일에 대해서는 정성희, 2003, 「대한제국기 태양력의 사용과 역서의 변화」, 『국사관논총』 103을 참조하기 바람.

이와 같은 현상은 20세기 초 한국이나 만주국처럼 허약한 황제의 지위와 권위를 겉으로 내세워야 했던 상황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사실 오늘날 달력에 기재된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은 수십 가지에 이르고 있지만,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역서에는 날짜 외에 24節氣 정도가 기재되어 있었다. 역서의 편찬 목적을 帝王의 授時的 기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節氣日의 정확한 날짜를 미리 예측하고자 한 것이 곧 역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달력은 24절기의 정확한 날짜 및 시각을 아는 것이 중요했다. 이 밖에도 역서는 일반인들뿐 만 아니라 왕실의 각종 忌祭와 祭儀日을 정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왕실의 대소사를 역서에 공식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다.

음력에서 양력으로의 개력은 급격한 근대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전통과학에 대한 불신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전통과학은 진부하고 미신적이라는 인식은 달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1907년에 발행된 계몽잡지 『太極學報』를 보면, '전통력은 擇日의 길흉화복서로서 冠婚喪祭를 정할 때 지침서로 활용되는 것은 미신적인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또한 『태극학보』는 '태양력에는 전통력에 있었던 택일 지침 항목이 없어서 일반인들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조선인이 문명인이 되는 영광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⁸⁾ 근대 시기에 전통력은 미신적이고도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반면, 태양력의 사용은 근대문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전통적인 음력은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서양의 태양력은 계몽적이며 과학적'이라는 『태극학보』의 인식은 일본이 양력으로 改曆했던 시기에 보여준 인식과 유사하다. 한국에서 양력의 사용이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개력과 양력에 대한 인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만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개력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일본은 한국에 앞서서 1872년에 문명개화를 하루아침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하에 전격적으로 개력을 단행하였다. 전격적인 개력으로 준비 없

8) 『太極學報』 5호, 1906년 : 京城.

이 양력을 사용하게 된 일본인들은 큰 혼란을 겪었는데, 개력할 당시 일본은 전통력인 天保曆을 사용하고 있었다. 당황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정자들은 양력의 사용을 국가계몽 차원에서 선전하였지만, 실상은 정치·경제적 이유도 적지 않았다. 천보력에 따르면, 1873년은 윤년에 해당되어 13개월이 되는데 이 때문에 정부는 관리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부담되었고, 이런 이유로 1872년에 전격적으로 개력을 단행하였다. 양력 사용으로 明治 5년 12월 3일은 명치 6년 1월 1일이 되었는데, 개력으로 인한 27일의 실종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이 때문에 『改曆辨』, 『太陽曆講譯』, 『太陽曆和解』 등 국민 계몽을 위한 태양력 해설집이 이 시기에 출판되었다.

개력 당시 양력사용을 주장한 福澤諭吉과 같은 인물은 태양력을 찬성하는 자는 문명인, 반대하는 자는 미개인으로 구분하는 등 양력사용을 국가계몽적 차원에서 선전하였고, 태음력에 승리한 태양력은 훗날 편리성으로 크게 인정 받을 것이라고도 하였다.⁹⁾ 이처럼 근대시기 양력의 사용은 그 이전의 개력과 달리 일반 대중의 계몽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양력으로 개력을 추진했던 만주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근대 동아시아의 근대적 시간체제의 형성과정은 일본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고 이는 식민지 권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왜곡된 방식으로 형성되어 갔다. 동아시아에서 근대시기는 전통적인 시간체제가 붕괴하고 근대적 시간체제가 성립하는 기간이었으며, 그 지표의 하나가 曆이다. 중국에 기원을 둔 동아시아의 전통력은 태음력에 맞추어져 있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민중들은 농사의 주기를 전통력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으며, 모든 세시 풍속이 여기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국민국가나 특정지역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서양 주도의 근대적 시간체제가 확산되면서 이는 전통력의 해체를 가져왔다. 19세기 말의 일본과 한국을 비롯하여 20세기 초 만주국에서 나타난 시간체제의 변동은 정치적이고도 식민지적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또 왜곡되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시

9) 渡邊敏夫, 1985, 『近世 日本天文學史』, 恒星社厚生閣, 440~442쪽 참조.

간체제는 순조롭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시간체제를 고수하려는 습속과 부딪치고 갈등하는 양상이 더 심했다.

Ⅲ. 만주국의 시헌서 발행과 내용 검토¹⁰⁾

1_ 시헌서¹¹⁾ 발행의 배경

만주국의 역서 이름으로 등장하는 時憲書는 원래 淸의 역서명으로 1645년(順治 2)부터 발행되었다. 시헌서는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력의 공식명칭이기도 한데, 시헌서의 原名은 時憲曆이다. 曆을 書로 바꾼 이유는 청 乾隆帝의 이름인 弘曆의 역(曆)자를 피휘하면서부터이다. 한국에서도 시헌력은 1653년(효종 4)에 발행하기 시작하여 1896년에 양력이 사용되기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 청의 연호가 사용된 시헌서는 공식적으로는

10) 만주국이 발행한 시헌서는 현재 중국국가도서관과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필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지원으로 중국에 있는 만주국 시헌서 자료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이 자료들이 귀중본으로 되어 있어 자료를 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만주국 시헌서는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시헌서를 사용했으며, 본문 중에 인용할 때는 소장처나 소장기호를 생략하였음을 밝혀둔다. 만주국 시헌서는 일본국회도서관에 時憲書라는 도서명으로 소장되어 있으며, 소장기호는 14.6エ-334, W741-4이다.

11) 시헌서는 시헌력을 토대로 만든 역서이다. 시헌력은 태음력에 태양력의 원리를 적용하여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만든 역법이다. 예수회 소속의 서양 신부 湯若望 등의 편찬으로 청나라와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되었다. 1645년부터 청나라에서 시행하여 도중에 두 번의 개편을 거쳐서 청나라 말까지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653년(효종 4)부터 조선말까지 이를 중용하였다. 1644년 청나라의 세조가 중국을 통일하자 명나라 말에 『崇禎曆書』 137권의 편찬에 참여하였던 탕약망에게 이를 정리, 개편할 것을 명하여 『新法西洋曆書』 103권을 편찬케 하여 그 다음해부터 시헌력의 이름으로 시행하였다.

1912년까지 발행되었지만, 중국이
나 한국은 양력이 사용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 풍속 상 음력을 양력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1930년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공식력은 양력이었고, 만주국 또한
공식적으로 양력을 사용했다. 만주
국이 양력을 사용했음은 실제 만주
국이 발행한 시헌서에 양력을 기본
으로 하여 제작한 데서 분명하게 드
러난다. 그러나 시헌서를 자세히 보
면, 음양혼용력으로 달력 체제상으
로는 양력을 우선시했지만, 내용면
에서는 양력보다는 전통적인 음력
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음양혼용력 형태의 시헌서
(滿洲國大同三年時憲書)

그림 2에서 보듯이 만주국의
시헌서는 일본처럼 음력을 완전히 폐하고 양력만 사용한 것이 아닌 陰陽混用
曆이었다. 게다가 양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1930년대에
만주국이 시대를 역행하여 만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청의 역서명을 부활했다
는 사실은 만주국의 원류가 곧 청국임을 나타내 준다.

물론 만주국이 淸曆인 시헌서를 발행하였다고 해서 만주국의 공식력이 양
력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일본의 新正은 곧 만주국의 신정이기도 하였다. '시헌
서'라는 이름이 지닌 상징성만을 빌린 것이다. 그렇다면 만주국은 새로운 曆書
名을 만들지 않고 시헌서라는 청력의 이름을 부활했을까. 만주국 황제 부의가
大同 및 康德이라는 만주국의 연호를 사용한 시헌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국이라는 사실을 넘어 청국의 복원이자 만주국의 정통성
이 청에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선전한 것일 수 있다. 역서 제작에
만주국 관료뿐만 아니라 일본 관료까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국의 역서명

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일본도 이를 정치적 이유에서 어느 정도 묵인해 준 인상이 짙다.¹²⁾

만주국은 역대 어떤 나라보다도 정체성 찾기에 골몰했던 국가였다. 그 시대 다른 식민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국가체제에 대한 정당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1932년 건국된 만주국은 당초 유교사상을 기본으로 한 王道主義와 大同의 理想을 표방하였다.¹³⁾ 『滿洲國大同三年時憲書』에 실려 있는 만주국 국가선언문을 보면,¹⁴⁾ 왕도주의는 만주국 영토 안에 모든 민족들이 빛나게 되는 세계정치의 모형이 되는 정치사상으로, 만주인, 몽고인, 한인, 조선인, 일본인 등 새로운 국가의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이 혈통이나, 준비의 구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왕도주의로 실현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¹⁵⁾

만주국 정부는 건국선언을 통해 國體를 君主國體로 선포하였고, 政體를 제한군주정체로 선포하였다. 정치원리도 결의문 내용에 따라 ‘왕도정치의 실현’과 ‘민족협화의 실현’, ‘日滿不可分一德一心 실현’ 등 세 가지로 구상되었다. 특히 왕도정치의 실현은 만주국 정부가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이념적인 구심점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이기도 한 왕도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왕도를 잃은 중국정부에 대한 일종의 放伐革命으로 등장한 국가가 만주국이었다.¹⁶⁾

孟子的 중심사상이기도 한 王道는 霸道の 상대되는 개념으로 민의와 덕치

12) 『滿洲國大同三年時憲書』를 보면, 역서 마지막에 10명의 편찬위원회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일본측 위원은 關口鯉吉, 佐藤了翁, 土佐林忠夫, 後藤一郎인데, 위원장이 後藤一郎이다.

13) 保坂祐二, 2000, 『滿洲國における三種の支配理念考察』, 『日本學報』 44. 한국일본학회, 539쪽.

14) 역서에 국가건국의 선언문이 실렸다는 점은 특이하다. 만주국이 역서를 국가를 홍보하는 도구로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5) 대동사상은 民族協和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민족들을 통합하는 이념이기도 했다. 민족협화는 훗날 日滿同族論으로 변질되어 일본의 만주지배를 정당화시키기도 했다. 保坂祐二, 2000, 앞의 글 참조.

16) 고경철, 2005, 『만주국의 정치 이데올로기 창출과 종교』, 『한신인문학연구』 6, 181쪽.

의 필요성을 담고 있는 유교의 이상적인 정치사상이다. 왕도사상이 근대시기에 주목받게 된 것은 쑨원의 삼민주의가 왕도사상에 바탕을 두면서부터이다.¹⁷⁾ 쑨원은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전통적인 왕도를 언급했지만, 만주국의 왕도주의는 순수한 유교적 정치이념이 아닌 전략적인 정치이념이었다.

왕도주의가 만주국의 건국과정에서 통치이념으로 선택되게 된 것은 재야의 중국평론가 다치바나 시라키[橘樸]에 의해서였다. 다치바나는 관동군의 참모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왕도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이론화함과 동시에 유교를 이용했다.¹⁸⁾ 다치바나와 다른 측면에서 왕도주의를 만주국 건국이념으로 체계화한 인물은 鄭孝胥(1860~1938)이다. 정효서는 清末의 관료이자 학자 출신으로 駐日 공사관원을 거쳐 고베[神戸]영사를 지낸 일본통이며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 때 부의와 함께 참여해 초대 국무총리가 된 인물이다. 그는 유교적 지식을 바탕으로 왕도주의를 왕도사상으로 발전시켜 왕도주의만이 세계의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정치적으로는 善政·養民의 왕도정치와 先王之治를 주장하였고, 외교적으로 親仁善隣 정책을 추진했으며, 군사적으로 왕도무장 관점, 경제적으로 문호개방정책, 문화교육상 孔孟의 道를 주창하였다. 이런 일련의 정치적 이념은 1934년 이전에 기본적으로 형성되었고 건국초기의 건국정신과 왕도사상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왕도사상은 일제 식민통치의 부용, 즉 부의로 대표되는 복벽세력과 결탁하여 일제에 굴복한 산물이었기 때문에, 왕도사상은 유가경전의 내용을 이용해 식민통치에 부합한 사상이기도 했다.¹⁹⁾ 왕도주의를 바탕으로 만주국 황제 부의가 주장한 ‘王道樂土’는 실제 황제권의 강화를 위한 목적을 위한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일본을 베끼면서도 復古로 가는 것이 곧 청국의 부활이라고 믿었던

17) 쑨원은 서양의 패도에 맞서 동양 왕도를 주장하였다. 고마고메 다케시, 2008,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만주국, 역사비평사.

18) 다치바나의 왕도주의에 대해서는 고마고메 다케시의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을 참조하기 바람.

19) 趙聆實, 1991, 「鄭孝胥의 “王道思想” 剖析」, 『東北淪陷14年史研究』 2집, 吉林人民出版社.

것이다. 부의의 황제 등극과 함께 시헌력이 다시 발행된 것은 청국의 부활과 황제권의 강화라는 부의의 정치적 목적과 만주국이 일본의 식민지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싫어한 일본 측의 입장이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주지하다시피 大同의 理想은 『禮記』 禮運篇에 등장하는 공자의 사상으로 서 요약하면 “큰 도가 행하여지면 천하는 公共을 위주로 하는”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한 가족처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²⁰⁾ 만주국이 왕도사상과 더불어 대동사상을 표면에 내세운 이유는 만주국의 다양한 다민족 구성원과 관련이 깊다.²¹⁾ 만주국 연호를 大同이라고 지은 것만을 봐도 대동의 사상은 앞서 언급한 왕도정치의 구현이자 다양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왕도낙토나, 민족협화 같은 건국이념이 향후 ‘대동아공영권’의 이데올로기로 이용되고 발전한 것을 보면, 만주국의 국가정체성은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2_ 시헌서의 체제 검토

청력이었던 시헌서는 태음력을 바탕으로 태양력이 가미된 태음태양력이다. 흔히 우리가 음력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 동양의 역법은 태음태양력이다. 만주국의 건국과 함께 시헌서는 재발행되지만, 과거의 시헌서와는 다른 모습이다. 일단 양력의 사용으로 기존의 음양력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양력의 사용으로 음양력이 혼용되고 있는 것은 개력 당시의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한국은 중국과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한다는 정치적 이유로 시헌서라는 중국의 역서 이름을 폐기하였지만, 만주국이 시헌서라는 이름을 다

20) 대동사상은 아래에 인용되어 있는 『예기』 예운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大道之行也，天下爲公，選賢與能，講信，修睦，故人不獨親其親，不獨子其子，使老有所終，壯有所用，幼有所長，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男有分，女有歸。貨惡其棄於地也不必藏於己，力惡其不出於身也，不必爲己。是故謀閉而不興，盜竊亂賊而不作，故外戶而不閉，是謂大同”；『禮記』 禮運篇。

21) 中保與作, 1997, 『滿洲國皇帝』, 景仁出版社 영인본, 202~203쪽.

시 사용한 것은 청국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과거 중국은 국가가 바뀔 때마다, 심지어는 황제가 바뀔 때도 역서의 이름을 바꾸곤 했다. 역서의 이름은 국호나 연호만큼이나 정치적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기에 시헌력의 이름을 明時曆으로 고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²²⁾

만주국은 건국과 함께 시헌서를 발행했다. 만주국 역서는 1932년에 발행된 「滿洲國大同元年時憲書」부터 1945년 「康德十二年時憲書」까지 총 15개의 시헌서를 발행했다. 이 기간 동안 14개가 아닌 15개가 된 이유는 1934년에 만주제국의 선포와 함께 연호를 대동에서 康德으로 바꾸면서 「大同三年時憲書」와 「康德元年時憲書」를 각각 발행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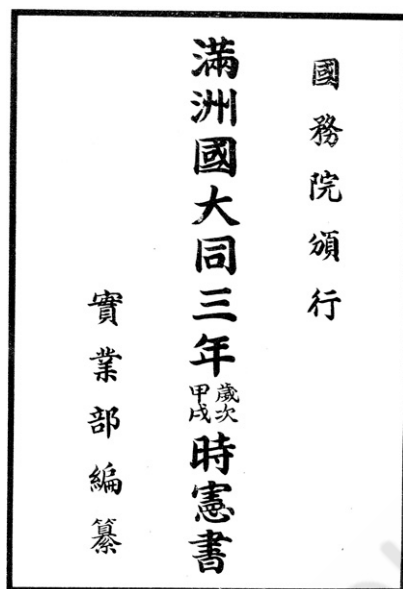
1) 대동년간에 발행된 시헌서

대동년간에 발행된 시헌서의 가장 큰 특징은 만주국이라는 국호가 연호 앞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연호 앞에 국호가 들어가 있는 것은 淸曆의 작명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인데, 歲次가 역명에 들어 있는 淸曆과 달리, 만주국의 시헌서는 작은 글씨로 처리하여 본 이름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²³⁾ 세차가 역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만주국의 시헌서가 청의 시헌서와 달리 양력을 우선했기 때문일 것이다. 발행처는 국가 최고기관이었던 國務院이고 편찬을 담당한 곳은 국무원 산하의 實業部였다. 역서명이 있는 첫 표지를 넘기고 나면, 당시 집정이었던 부의의 사진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 면에는 만주국의 지도와 국기가 함께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면에는 만주국의 건국이념이 담겨져 있는 만주국 건국선언이 소개되어 있다.

건국선언문에 이어서 일출입시각 및 절기 등에 대한 범례가 기록되어 있으며, 春牛芒神과 土王用事, 年神方位之圖, 嫁娶周堂圖 등 전통 역서에 들어 있

22) 정성희, 2003, 「대한제국기 태양력의 사용과 역서의 변화」, 『국사관논총』 103.

23) 청의 시헌서 曆名은 청의 국호와 연호 세차 등의 순서로 되어있는데 참고적으로 청의 마지막 역서는 「大清宣統三年辛亥時憲書」이다.



〈그림 3〉 만주국의 국호가 있는대동3년의
시헌력 표지

는 陰陽五行的 요소들이 잔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年神은 지정된 방위에 주로 1년 동안 머물러 길흉을 관장하는 神이라는 뜻으로 중국 전통력이나 조선시대 曆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시했었다.²⁴⁾ 周堂圖는 주택 주위의 8방위에 각종 신이 배치된 그림이란 뜻으로 이들 신의 배치에 따라 나날의 길흉을 점치는 그림이다.²⁵⁾ 원래 주당도에는 결혼일의 길흉을 알아보기 위한 移安周堂圖, 장례일을 택하기 위한 安葬周堂圖, 新婦의 新行 날짜를 가리는 于歸周堂圖 등 여러 가지

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²⁶⁾ 중국과 한국의 전통력에는 가취주당도만 그려져 있다. 이 외에도 그림 4에서 보다시피 14개의 축제일과 1년간의 일요일 날짜를 적어놓은 星期日表과 24절기표가 월별 날짜가 시작되는 앞면에 기재되어 있다.

1월부터 12월의 月曆日이 끝난 다음 뒷면에는 만주국 주요 도시의 평균기온과 최고·최저기온, 강수량 등이 소개되어 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사항은 종래 중국 전통력에 볼 수 있었던 男女九宮度가 발행년도를 기준으로 60년간의 九宮이 소개되어 있는 점이다. 예컨대 「만주국대동3년시헌서」의 구궁도에 소개된 기간은 대동3년을 기준으로 60년인 光緒 元年까지이다.

24) “年神方位之圖”에 대해서는 이은성, 1988, 『曆法の 原理分析』, 정음사, 397~399쪽을 참조할 것.

25) 이은성, 1988, 위의 책, 412쪽.

26) 이들 周堂圖에 대해서는 이은성, 1988, 앞의 책, 412~415쪽을 참조할 것.

역서 편찬에 참여한 관원들을 소개해 놓은 것은 전통 역서의 오랜 관행인데, 만주국 시헌서의 경우는 대동 3년에 발행된 시헌서에만 편찬위원을 역서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 놓고 있다. 이후의 역서에 편찬위원을 소개해 놓지 않은 것은 편찬위원이 동일해서 인지, 아니면 편찬위원의 중요성이 적어진 탓인지 알 수가 없다. 「대동3년시헌서」에는 고문이 5명, 위원장을 포함한 편찬위원이 5명으로 총 10명의 편찬위원들이 소개되어 있다. 중국

인 羅振玉, 張燕卿, 松島鑑이 고문을 담당했으며, 일본인 關口鯉吉과 佐藤了翁도 고문으로 되어 있다. 시헌서를 편찬하는 데 있어 총책임자적인 위원장은 일본인 後藤一郎이며 그 외 王圻俊, 王嵩儒, 胡靖 위원과 土佐林忠夫가 편찬위원으로 시헌서 발간에 참여했다. 고문으로 참여한 나진옥은 강덕 원년에 감찰원장을 지낸 인물이고, 장연경은 실업부대신을 지낸 고위관료들이다.

대동년간에 발행된 초기 만주국의 시헌서는 전통적인 시헌서와 근대시기 달력의 특징이 혼합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대동 3년의 시헌서에서 보듯이 만주국은 부의의 사진을 전면에 게재하여 집정으로서의 부의의 존재를 알리는 데 시헌서를 활용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역서에 만주국의 건국선언문을 기재하는 등, 근대 동북아시아의 어떤 국가보다 국가 체제를 홍보하는 데 역서를 상당히 활용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 축제일과 각월일요표 (만주국대동3년시헌서)

2) 강덕년간에 발행된 시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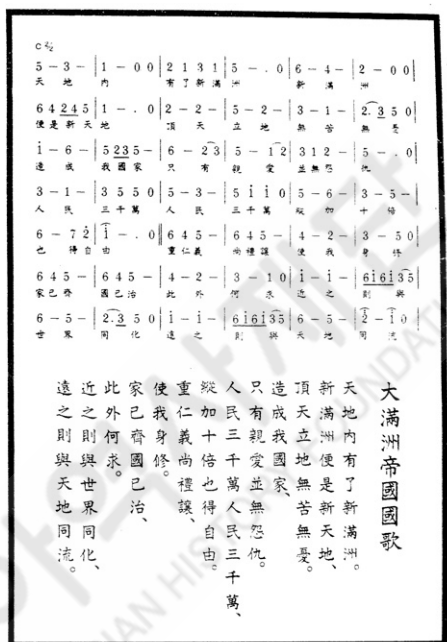
만주국은 역사상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었고 따라서 역서의 발행 시기도 짧았지만, 역서가 보여주는 표면적인 모습은 만주국의 정치적 변화만큼이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시헌서가 강덕년간에 들어와 달라진 점은 역서명에서 만주국이라는 국호가 사라지고 연호만 등장한 점이다. 대동년간에는 대동이라는 연호 앞에 만주국이라는 국호가 있었는데 강덕년간에 발행된 역서에는 만주국이라는 국호가 없다. 역서명에 국호가 사라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초기에는 만주국이라는 국호를 선전하려는 이유가 있었으나, 점차 역서명을 간략하게 만들고자 한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점 외에도 강덕년간 시헌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만주국의 지도와 국기,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國歌가 역서 맨 앞장을 장식한다는 점이다. 만주국의 국가는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신천지 만주국의 인민 삼천만이 10배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말미에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유교적 이념과 함께 세계와의 동화 및 동류를 강조하고 있어 王道樂土나 民族協和 등의 만주국의 건국이념이 국가에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뒷면에는 도량형이나, 우편요금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만주제국 통치조직도가 마지막에 그려져 있다.

연호인 강덕은 집정 부의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새롭게 만든 연호이다. 강덕년간에는 그 이전 대동년간보다는 만주국의 체제가 제국의 지위에 걸맞게 변화된 모습을 갖추나갔고, 이러한 점이 역서에도 반영되었다.

강덕원년에 만주국의 통치조직이 새롭게 정비되었는데, 정비된 통치조직은 이듬해 「康徳二年時憲書」에 기재되었다. 만주국의 통치조직은 몇 차례 정비가 되었는데, 새롭게 정비될 때마다 달라진 통치체제가 역서에 기재되어 국민에게 홍보되고 있다. 예컨대 강덕2년의 시헌서에는 황제 아래 국무원이라는 최고기관이 있었고 국무원 아래에는 민정부, 외교부, 군정부, 재정부, 실업부, 교통부, 사법부, 문교부 등의 8部 편제가 있었다. 이 8부 편제는 강덕원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강덕8년시헌서」를 보면, 강덕 7년 7월

15일자로 변경된 통치조직표가 있는데, 그 이전과 달리 황제 아래 국무원을 두고, 다시 총무청을 두고 있는 체제이다. 국무원 아래의 8부 편제도 치안부, 민생부, 사법부, 홍농부, 경제부, 교통부 등의 6부로 축소 개편되었다. 홍농부와 같은 부서는 농지개량 및 홍농합작회사가 설립되면서 이를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생긴 것으로 이 시기 홍농의 목표와 목적이 역서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림 5〉 國歌가 소개되어 있는 강덕2년의 시헌서

시헌서를 통해 만주국 정부는 학교교육개요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만주국의 학교교육 방침을 보면, 황제 부의의 방일선조의 취지가 강조되어 있고 ‘日滿一德一心’과 ‘忠孝大義’를 강조하여 길으로는 교육적인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 만주와 일본에 충성하는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은 만주국 건국 초부터 학교 교장의 인솔하에 공자의 제사에 참여하여 건국정신과 충효의 유교 윤리를 되새겨야 했다.²⁷⁾

역서에 실려 있는 학교교육체계를 보면, 상급학교 순으로 국민학교-國民優級學敎-국민고등학교-대학 순으로 학교 진학 체계를 세웠고, 거기에 맞는 취학연령을 기재해 놓고 있다. 이 외에도 직업학교와 師道學敎 체계가 별도로

27) 『만주국정부 공보』, 1932. 2. 11 ; 한석정 · 임성모, 2001, 「쌍방향으로서의 국가와 문화 : 만주국만 전통의 창조, 1932~1938」, 『한국사학회』 35, 177쪽에서 재인용함.

조직되어 있는 등 상당히 체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강덕년간에 발행된 시헌서 내용 중 주목되는 것은 1941년(강덕 8)부터 실려 있는 滿洲帝國協和會에 대한 내용이다. 만주제국협화회가 역서에 기재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선전을 목적으로 했음이 분명한데, 사실 만주국은 복수민족 국가인 탓에 건국이념에서부터 민족협화를 강조하고 다민족의 통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역서 첫 면에 만주국 지도와 함께 등장하는 홍·감·백·흑·황색의 만주국 국기는 만주에 거주하는 다섯 민족을 상징할 정도로 표면적으로 민족협화를 강조했다.

만주제국협화회는 만주의 실질적 통치체이기도 한 關東軍에 의해 결성된 조직체로서 이른바 ‘민족협화’ 이데올로기를 내걸고 만주국 지배의 정당성을 만주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일을 담당한 조직이었다.²⁸⁾ 협화회는 1932년에 결성된 이후 전후 4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마지막 제4차 조직개편이 1941년에 4월에 있었다.²⁹⁾ 아마도 1941년 4차 조직개편과 함께 협화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역서에까지 실린 것으로 추측된다.

「강덕8년시헌서」에 있는 협화회 기록을 보면, ‘만주제국협화회는 국가기구 내의 조직체이지만, 정부에 속해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대립하는 조직도 아닌 오로지 정부와 표리일체하고 영구불가분의 단일기관’이라고 선전하고 있다.³⁰⁾ 이와 아울러 협화회는 건국정신의 발양, 민족협화의 실현, 국민생활의 향상, 宣德達情의 철저, 國民運員의 완성이야 말로 현실적인 건국이념이라 강조하고 있다. 또 1. 精神工作, 2. 協和工作, 3. 厚生工作, 4. 宣德達情工作, 5. 組織工作, 6. 興亞工作 등의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정신공작은 개인주의를 배제하고 국가 혹은 애국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홍아공작은 건국정신을 동아시아 전체에 보급시키고 아시아인을 각성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의

28) 임성모, 2001b, 「滿洲國協和會의 對民支配政策과 그 實態」, 『東洋史學研究』 42, 102쪽.

29) 임성모, 2001b, 앞의 글, 104쪽.

30) 『康德八年時憲書』, 滿洲帝國協和會, “滿洲帝國協和會, 是國家機構內的組織體 既不從屬於政府 又不與政府對立 是和政府表裏一體 永久不可分的一個機關”.

새로운 질서를 실현시켜 세계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공작강령들은 대동아공영권을 노골적으로 합리화시켜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³¹⁾

6개의 공작강령은 思想戰과 治本工作의 주도체로서 관동군에 의해 조종된 만주국협화회에 의해 만주국 지배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실천이념으로써, 지방행정체제와 일체화하면서 민중의 일상생활로 침투해 들어갔다. 협화회는 ‘민족협화’를 추구하는 만주 국민의 자발적 대중조직이라는 외피를 쓰고 항일민중운동에 대한 계급적 민족적 분리·분열정책을 통해 만주 국민을 지배체제 안으로 획득해내는 데 주력하였다.³²⁾ 협화회는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1941년 세력을 확장하면서 협화회의 창립일인 7월 25일이 국가기념일로 시헌서에 기재될 정도로 막강한 세력이었다.

이상에서 만주국의 시헌서를 대동년간과 강덕년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집정 부의가 황제 부의로 변신하면서 만주국의 시헌서가 점차 변화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만주국이 초기 근대 독립국임을 알리고자 하는 의견상의 노력에서 중일전쟁이 발발했던 1937년을 기점으로 확연하게 변하고 있으며, 1941년부터는 노골적으로 제국주의의 자기선전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연하면, 초기 만주국 시헌서에는 일시적으로나마 만주국이 괴뢰국이 아닌 독립국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엿보인다고 볼 수 있지만, 1937년을 지나면서부터 일제 괴뢰국으로서의 정체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헌서에 나타난 변화는 실제 중일전쟁을 전후로 일어난 만주국의 지각변동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1936년 제1차 치외법권 철폐에 이어 1937년 1월 1일부터 만주국에는 새로운 표준시가 시행되었다. 1936년 칙령에 근거해 실시된 이 만주국 신표준시는 종래의 동경 120도 자오선보다 1시간 앞당겨진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종의 썸머타임 효과,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적

31) 「康徳八年時憲書」滿洲帝國協和會.

32) 임성모, 2001b, 앞의 글, 102쪽.

일원화를 노린 조치였다. 법제적 일원화를 목적으로 한 치외법권 철폐와 함께 이른바 日滿一體가 가속화되었던 것이다.³³⁾

IV. 만주국의 국가기념일과 시헌서

달력에 국경일 등의 국가기념일이 기재된 것은 근대국가의 특징이기도 하다. 인위적이고도 특정한 시간 틀 속에 전 국민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은 역과 국가 기념일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난다. 만주국이 발행한 시헌서는 전체의 체제나 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만주국의 국가기념일은 중일전쟁이 발발했던 1937년 「滿洲國康徳四年時憲書」를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 1932년 「滿洲國大同元年時憲書」부터 1936년 「康徳三年時憲書」를 보면 총 14개의 축제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大同三年時憲書」를 중심으로 축제일을 정리하면〈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총14개의 축제일 가운데 元旦과 滿洲國建國日, 年末은 양력 축제일이다. 원단은 양력설을 의미한다. 원래 중국인들에게 음력설인 춘절이 최대 명절이지만, 만주국은 메이지시대 일본에서 채택되었던 양력설인 원단을 음력설인 춘절과 함께 쇠었다. 제석이나 원소절, 단오절, 중추절 등은 전통적인 음력축제일이다.

주목되는 사실은 옛날을 상징하는 옛 神들도 기념일 속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공자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음력 2월 상정일과 8월 상정일, 즉 봄과 가을에 걸쳐 공자의 제일을 지정했고, 8월 27일 공자의 탄신일도 공탄이라하여 축제일에 포함시켰다. 〈그림 6〉에서 보다시피 비단 공자뿐

33) 임성모, 1999, 「서평 : 만주국 연구의 사회적 효과를 생각한다.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3, 606쪽.

〈표 1〉 「대동3년시헌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주국의 축제일

축제일명	양력	음력
元旦	1. 1~1. 3	1. 1~1. 3
除夕	2. 13	臘月 末日
春節	2. 14~2. 18	1. 1~1. 3
執政萬壽	2. 26	1. 15
原宵節	2. 28	2. 上丁日
建國日	3. 1	양력
祀孔	3. 27	2. 上丁日
祀關岳	3. 28	春分後第一戊日
端午節	6. 16	5. 5
祀孔	9. 13	8. 上丁日
仲秋節	9. 23	8. 15
祀關岳	10. 4	春秋後第一戊日
孔誕	10. 5	8. 27
年末	12. 29~12. 31	양력

祀關岳					祀孔				
三十一日	三十日	二十九日	二十八日	二十七日	二十六日	二十五日	二十四日	二十三日	二十二日
土	金	木	水	火	月	日	土	金	木
時陽生氣 天倉欲安	同命 鳴吹對	月陰合 鳴倉三合 臨日	六合 金堂	月恩 四相 玉子 陰神	解神 陰神 鳴吹	陰德 三合 時陰	陰德 金國 鳴吹	相日 驛馬 天后	守日 吉期
三十一日	三十日	二十九日	二十八日	二十七日	二十六日	二十五日	二十四日	二十三日	二十二日
土	金	木	水	火	月	日	土	金	木
時陽生氣 天倉欲安	同命 鳴吹對	月陰合 鳴倉三合 臨日	六合 金堂	月恩 四相 玉子 陰神	解神 陰神 鳴吹	陰德 三合 時陰	陰德 金國 鳴吹	相日 驛馬 天后	守日 吉期

〈그림 6〉 공자·관우·악비의 제사일이 기재되어 있는 「만주국대동3년 시헌서」(부분)

만 아니라 祀關岳이라 하여 중국의 關帝 즉 관우와 송나라 忠將인 岳飛를 기념하는 제사일도 제정했다. 관우와 악비는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군으로 일찍부터 중국에서 신격화된 인물이다.³⁴⁾ 청말 관제 숭배는 국가의 후원으로 전

34) 정일남, 2007, 「연행록의 관제묘 영상과 이미지」, 『동방한문화회』 33, 540쪽.

국에 퍼졌으며, 청조의 지배자인 만주족의 후신인 만주국의 지배자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중국인들의 영웅 관제를 유교식으로 섬겼다. 국민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국적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다.³⁵⁾

만주국의 14개 축제일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으로 접어들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다양해진다. 만주국 정부는 11개의 공휴일을 만든 일본을 모델로 여러 개의 휴일을 제정했다. 국경일에 해당하는 元旦, 萬壽節, 紀元節, 建國節, 天長節, 訪日宣詔紀念日, 建國神廟創建紀念日 등 7개의 경축일이 제정되었고, 그 외 官署放假日이라 하여 4개의 祭日과 6개의 節祀日, 13개의 民間重要節日祀日 및 紀念日이 등재되어 있는데, 1942년 「康德九年時憲書」를 기준으로 보다 다양화된 만주국의 국가기념일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의 왼쪽에 있는 7개의 경축일은 모두 양력기념일로서 앞서 <표 1>에

<표 2> 「康德九年時憲書」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기념일

慶祝日	官署放假日	民間重要節日祀日 및 紀念日
元旦 (양1.1) 萬壽節 (양2.6) 紀元節 (양2.11) 建國節 (양3.1) 天長節 (양4.29) 訪日宣詔紀念日 (양5.2) 建國神廟創建紀念日 (양7.15)	祭日 祈穀祭 (양4.21) 建國忠靈廟春季例祭 (양5.31) 建國忠靈廟秋季例祭 (양9.19) 嘗新祭 (양10.17)	除夕 (음12.末日) 祀關岳 (春分後第一戊日) 釋迦佛廟會 (음2.19) 湯崗子娘娘廟會 (양4.18) 天齊佛廟會 (음3.28) 佛誕廟會 (음4.8) 娘娘廟會 (음4.18) 藥王廟會 (음4.28) 關帝廟會 (음5.13) 協和會創立紀念日 (양7.25) 日本承認滿洲國紀念日 (양9.15) 祀關岳 (秋分後第一戊日) 孔誕 (음8.27)
	節祀日 春節 (음 1.1) 元宵節 (음1.15) 春丁祀孔 (음 2.上丁日) 端午節 (음5.5) 秋丁祀孔 (음8.上丁日) 仲秋節 (음8.15)	

35) 한석정, 1998, 「滿洲國의 국가 효과와 의례에 관한 연구」, 『일본역사연구』 8, 125쪽.

서의 축제일에 비하면 일본 경축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1937년 이전의 만주국 축제일이 만주국 건국이념인 왕도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교적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1937년부터는 일본 국가기념일이 상당부분 가장 중요한 경축일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만주국의 국가정체성이 어떤 형태였는가를 역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표 2〉를 통해 변화된 만주국의 국가기념일을 분석해보면, 먼저 일본의 경축일을 그대로 옮겨서 기념한 것이 신년 원단과 기원절, 천장절이다. 이 가운데 기원절은 일본 신무천황의 즉위를 축하하는 경축일로, 일본은 1873년에 양력으로 개력한 뒤 신무천황의 즉위일을 기념하는 紀元節을 제정하였다. 기원절제의 제일은 정월초하루에 즉위했다하여 원 날짜는 1월 1일이었다. 1873년에 전격적으로 양력으로 개력이 이루어져 음력 정월초하루인 1월 29일로 기원절이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에 거행하게 되면 제일이 해마다 양력 날짜가 변동하게 되어 국가의 시작을 축하하는 중요한 제사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1874년부터 2월 11일로 고정되었다.³⁶⁾

천장절은 원래 중국 고전인 『道德經』에 나오는 天長地久에서 따온 말로 일본에서는 천황의 생일에 그 만세를 궁중3전에 기원하는 제전으로서 천장절제가 제정되었다. 천장절에 지내는 천장절제는 과거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제의가 아닌 새로 정해진 제사였다. 천장절 의식과 제전이 성대하게 치러지게 된 것은 명치초년으로 이는 일본의 전통이 부활한 것이 아닌 서구의 국왕·대통령 등 원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관습이 있는 것에 대응하여 천황신격화의 일환으로 외교상의 효과를 노리고 성대하게 치러진 성향이 짙었다.³⁷⁾ 양력 4월 29일 천장절은 황제인 부의의 생일이 아닌 일본 소화천황의 생일을 기리는 기념

36) 기원절의 날짜가 양력 2월 11일로 정해진 것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당시의 기록으로는 신무천황 당시의 역으로 정월 초하루를 환산하여 2월 11일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계산이 무슨 근거로 했는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계산은 문부성 천문국이 맡았고, 그 결과를 태정관에 근무하던 역학자 塚本明毅가 심사하여 결정했다고 한다. 기원절은 전후에는 건국기념일로 국민의 경축일이 되었다. 村上重良, 1989, 『天皇과 天皇制』, 한원출판사, 168~169쪽.

37) 村上重良, 1989, 앞의 책, 180~181쪽.

일이다. 다시 말해 만주국 시현력에 등장하는 천장절은 일본천황의 생일을 기린 것이고, 2월 6일 만수절이 부의의 생일을 기념한 경축일이다.³⁸⁾

만주국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국경일로 제정된 것이 3월 1일의 건국절이다. 매년 3월 1일 모든 관공서와 학교, 사회단체들은 거룩한 의식을 치렀고 전국에 걸쳐 새로 만든 만주국 국기가 국가에 맞춰 나부꼈다. 매년 건국절 약 10일 전에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행사에 관련된 지시가 각급 학교와 관공서에 시달되었다.³⁹⁾

또 하나 만주국 경축일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방일선조기념일이다. 방일선조기념일은 1935년 부의의 일본 방문을 기념하여 만든 것으로 일주년인 1936년 5월 2일부터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당시 만주국 정부는 방일기념 일주년의 해에 일주일간을 ‘發揚국민정신주간’으로 정할 정도로 대대적인 선전을 하였다.⁴⁰⁾ 또 하나 만주국 경축일에서 주목되는 것은 건국신묘창건기념일이다. 만주국은 왕도주의와 황도주의의 확산을 위해 각각 유교와 신도의 의례를 활용하였다. 왕도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는 공자묘를 건립하여 공자에 대한 제사를 지냈고, 황도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는 전국에 신사를 만들었다. 왕도정치가 중국의 왕도사상에 입각한 정치라면, 황도주의는 천황의 마음을 정치상에서 구현 완성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실제 만주국에 건립된 신사의 수는 193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00여 개에 이를 정도였다.⁴¹⁾ 건국충령묘춘계에는 부의가 1940년 제2차 일본 방문 후에 만든 것으로 부의는 일본에서 皇大神宮부터 여러 신궁에 차배한 후 귀국하여 建國忠靈廟를 건립하였다.⁴²⁾ 또 동

38) 한석정의 연구에 따르면, 부의의 생일은 실제 2월 5일이라고 『공보』에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한석정, 1998, 앞의 글, 124쪽). 그런데 부의의 생일은 양력으로 지낸 것이 아니라 음력으로 지냈음이 만주국 역서에 나타나고 있다. 부의의 생일은 음력 1월 13일이었고 따라서 매년 달력마다 양력 생일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39) 한석정, 1998, 앞의 글, 123쪽.

40) 한석정, 1999, 앞의 책, 210쪽.

41) 고경철, 2007, 「만주국의 황도낙토 구상과 종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271쪽.

42) 増田福太郎, 1942, 『東亞法秩序序説：民族信仰を中心として』, ダイアモンド社, 183~184쪽.

년 7월 15에 황제국의 정원에서 천조대신에게 제사한 후 건국신묘의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이후 건국신묘창건기념일을 국가 최고의 기념일인 경축일로 제정하여 역서에 기재하였다.

이처럼 만주국은 신년 원단, 부의의 생일인 만수절 기념, 건국기념일, 방일 선조기념일, 건국신묘창건기념일 등등 각종 국가기념일을 제정하였으며, 기념 경축대회도 자주 개최하였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만주국이 일본의 천조대신을 절대 존송하는 日滿一心의 皇道思想을 심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중일 전쟁이 발발된 1937년을 시작으로 대동아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40년대 이후 만주국은 노골적으로 황도낙토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가기념일과 의례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전하면서 점차 건국초의 왕도주의를 버리고 황도주의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만주국은 공자묘와 신사뿐만 아니라 많은 충령탑과 공양탑을 각지에 건립하였고 민족화합을 강조하면서 민족에 관계없이 전쟁에서 숨진 병사들을 위한 영령 합사 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각종 의례들을 보도하였으며, 심지어 일본의 제전일에 맞추어 만주국에서도 동일한 제전을 행사하였다.⁴³⁾ 그 시기 만주국 국민들은 끊임없이 싫던 좋던 의례 관련 보도를 접하며 애국국민을 강요받아야 했다.

V. 맺음말

만주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근대국가 건설은 국민들에게 제국을 인식시키고 전체주의적 사고를 고취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던 셈이다. 만주국의 전체주의적이고도 국가홍보를 위한 국가 기념 혹은 의례일의 제정은 일본 의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었다. 일본에

43) 고경철, 2007, 앞의 글, 274쪽.

서도 국가 행사에 학생들이 동원되기 시작한 것은 1880년 후반부터였고,⁴⁴⁾ 메이지시대 후기에는 거의 모든 대중적인 국가의례에서 황실과 국가를 줄곧 찬양했다.

1930년대 만주국에는 만주국의 황제가 있었고 빈번한 궁정연회, 황제의 순시와 관병식, 그리고 새 국가, 새 시민, 새 민족의 기운 함양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만주국의 독립국으로서의 노력은 국제사회의 인정과 무관하게 매우 열심히 진행되었고,⁴⁵⁾ 이러한 양상은 30년 전의 대한제국에서도 진행되었다.

19세기 말 한국과 일본은 양력으로의 개력이야말로 근대국가로 가는 길이라 선전하였다. 동시에 제국주의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황실 전통을 내세우는 ‘전통의 창조’도 전개되었다. 1930년대 후발주자인 만주국 또한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만들기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동시에 만주국은 전통력인 시현서를 발행하였고, 공자의 문묘를 만드는 등 과거로의 복귀 또한 제국주의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양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만주국에서 청조의 마지막 달력이었던 시현력이 부활한 것은 만주국이 지니고 있던 이중성이기도 하다. 시현력의 부활은 식민지의 전통을 인정해 주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방식의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만주국은 일본의 최신 의례 및 행사들이 도입되면서 한편으로는 청조에 이미 있었던 역사나 전통적 의례들을 부활시켰다.

동아시아 근대국가의 정치적 특징 중의 하나는 황실의 신성화 작업이었다. 메이지유신 이후에 일본의 새 국가가 행한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일황의 신성화 작업이었다. 조선의 경우 고종은 1898년 10월에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면서 청국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청조 황제와 동급의 지위를 되찾았다. 일제는 그러한 고종을 을사보호조약 이전까지 황제로 인정했다. 조선왕을 청조 황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만든 뒤 다시 동등한 지위의 독립국 조선과 독립국 일본을 수평적으로 합친다는 계산이 있는 것이다.⁴⁶⁾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1932년 일본

44) 다카시 후지타니 저, 한석정 역, 2003, 『화려한 군주』, 이산, 268쪽.

45) 한석정, 1999, 앞의 책, 24~25쪽.

의 영향 아래 만주국이 건설되었고, 일본은 만주국을 공식적으로 만주제국으로 불렀다. 만주국이 만주제국으로 격상되고 집정 부의가 황제 부의가 된 것은 허약하고도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만주국에 정통성을 덧씌우는 과정이었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과거의 전통이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만주국의 전통만들기 작업 속에서 청조의 시헌서가 부활되고 국가기념일들이 제정되었으며, 시헌서는 국가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만주국의 국가정체성을 구명하는 연구로 지금까지 연구에서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만주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만주국의 국가기념일을 살펴보고 시헌력의 발행이 의미하는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만주국의 국가정체성을 확인해보는 일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만주지역의 역사적 변화와 함께 형성된 재만 조선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19세기 중엽에 조선에서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만주국이 들어선 이후 반도인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일본인과는 다른 차별을 받았다. 재만 조선인의 민족정체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다중성과 복합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본 주제가 비록 현재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민족정체성을 직접적으로 구명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1930년대 만주국의 근대국가 건설과 국가정체성을 밝히는 작업은 향후 만주지역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의미와 함께 재중 조선인의 민족정체성을 도출해내는 데 유용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46) 日本外交年報および重要文書(東京：日本外務省, 1955) vol.1, p. 165 ; 한석정, 1999, 앞의 책에서 재인용함.

참고문헌

〈주요자료〉

時憲書, 大同3年-康德9年, 中央觀象臺, 國立國會圖書館(日本).

〈주요저서 및 논문〉

- 고마고메 다케시, 오상철 외 역, 2008,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 고병철, 2007, 「만주국의 皇道樂土 구상과 종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8.
- 김기훈, 1993, 「滿洲國 시대 일제의 對滿 朝鮮人農業移民政策史研究」, 『학예지』 3, 육군박물관.
- 김태국, 2005, 「만주국에서 일제의 식민지배 논리」, 『한국근현대사연구』 35.
- 남창룡, 2000, 『만주제국 조선인-일제 동북침략사』, 신세림.
- 다나가 류이찌, 2003, 「日帝의 滿洲國 통치와 在滿韓人 문제: 五族協和와 內鮮一體의 상극」, 『만주연구』 1.
- 다카시 후지타니 저, 한석정 역, 2003, 『화려한 군주』, 이산.
- 渡辺敏夫, 1985, 『近世 日本天文學史』, 恒星社厚生閣.
- 保坂祐二, 2000, 「滿洲國における三種の支配理念考察」, 『日本學報』 44. 한국일본학회.
- 신규섭, 2004, 「만주국의 協和會와 在滿 朝鮮人」, 『만주연구』 1.
- 신규섭, 2003, 「재만조선인의 만주국권 및 일본제국주의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6.
- 阿搭拉, 1993, 「偽滿洲國協和會」, 『植民政權』, 吉林人民出版社.
- 윤휘탁, 2001, 「만주국의 '民族協和' 운동과 조선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6.
- 윤휘탁, 1996, 『일제하 '만주국' 연구』, 일조각.
- 이진경, 1997,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 임성모, 1999, 「서평: 만주국 연구의 사회적 효과를 생각한다」,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3.
- 임성모, 2001, 「『國防國家』의 실험: 만주국과 일본파시즘」, 『중국사연구』 1.
- 임성모, 2001, 「일본제국주의와 만주국: 지배와 저항의 틈새」, 『한국민족운동사연구』의 역사적과제, 국학자료원.
- 임성모, 2005,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 『일본역사연구』 23.
- 정성희, 2003, 「대한제국기 태양력의 사용과 역서의 변화」, 『국사관논총』 103.
- 정일남, 2007, 「燕行錄의 關帝廟 영상과 이미지」, 『동방한문화회』 33.

- 趙聆實, 1991, 「鄭孝胥의 “王道思想” 剖析」, 『東北淪陷14年史研究』 2집, 吉林人民出版社.
- 中保與作, 1997, 『滿洲國皇帝』, 景仁出版社 영인본.
- 최봉룡, 2004, 「만주국의 종교정책과 재만 조선인의 종교활동」, 『만주연구』 1.
- 최학근, 1992, 『國譯 滿洲實錄』, 보경문화사.
- 한석정, 1998, 「滿洲國의 국가 효과와 의례에 관한 연구」, 『일본역사연구』 8.
- 한석정, 1998, 「복지정책과 국가의 효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
- 한석정, 1999,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 한석정, 2001, 「쌍방향으로서의 국가와 문화 : 만주국판 전통의 창조, 1932~1938」, 『한국사회학』.
- 한석정, 2001, 「만주국 주권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8.
- 한석정, 2003, 「지역체계의 허실-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관계-」, 한국사회학.

[ABSTRACT]

A Study of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raditional-Calendar System in Manchukuo

Jeong, Seonghee

Traditionally before the modernization to change and establish the calendar system often contributed to the strength and justification of the legitimacy of Kings or emperors in East Asia. In particular the weaker their legitimacy to rule the country, the better the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of new calendar system which equated the symbol of the power of the ruler became for the unification of the consensus. For example, with the declaration of the Great Empire (大韓帝國 : 1897-1910) the King Kojong (高宗 : 1852-1919) positively promoted the use of new solar calendar introduced by the West for the sake of his ruling legitimacy as a emperor. In addition he also declared the national holidays in accord with the calendar in order to promote the authority of the emperor and to pursue the unification among people. This kind of political process occurred in Japan and in Manchukuo (滿洲國 : 1931-1945) in which the imperialistic ruling ideology was built most rapidly among other nations in Asia.

As seen from the case of Manchukuo to build modern nation through 19th and 20th century in East Asia was about to encourage people to have a clear notion of the empire and authoritarian way of thinking.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holidays for the purpose of PR in Manchukuo was that which strongly influenced by the national

ceremonial tradition of the imperial Japan at the time. It was from the late of 1880s in Japan when students started to be sent for the national ceremony as main players and then in the late part of the Meiji Era the imperial nation and the court was openly praised in all of the national events.

The government of Korea in the late of 19th century propagated in public that the establishment of solar calendar system was the necessary path to the modern nation as the imperial Japan did. So both governments also developed a series of political reformation in the name of the 'creation of tradition' in order to solidify the authenticity of the empire and the court. Manchukuo which was comparatively late built in the 1930 also keen to build itself as modern nation. Ironically Manchukuo decided on the revival of the traditional calendar system from the precious Ching dynasty and the ideology of the Confucianism which stressed the 'way of King'. With a slogan of building modern nation and introduction of imperial national events which was already practiced by the imperial Japan Manchukuo pursued a plan to build a modern nation but at the same time it was eager to revive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Ching dynasty.

Declaring itself as the empire and calling the consul of the Ching dynasty emperor were part of the process to strength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in which the plan to revive the tradition of the Ching was practiced because its legitimacy was not powerful enough to persuade people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this process the precious calendar system was rebuilt, national holidays were introduced and the issue of new calendar became a tool for the PR of the nation.

This paper focused on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the declaration of

new calendar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a way to define their national identification in East Asia. This approach was initiated from the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the Koreans who resided in the Manchu area and started to raise a question of their identification : some Koreans who moved to the area in the mid of the 19th century became an objective of ethnic discrimination with the nation building of Manchukuo, which didn't happen to the Japanese in the area. The identification of the Chinese-Koreans in the Manchu area is very complicated and complex so that this issue needs another detailed research further. So the study of the process and identification of the nation building of Manchukuo in the 1930s can be useful to look into the formation of their identification and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 of the area as well.

This study is a first step to reveal the historical status of the nation building of Manchukuo and the political meaning of its establishment of new calendar system.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Manchukuo we could get a picture of the history of the enactment of new calendar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keywords

Manchukuo, modern nation building, the ideology of the way of King, Chinses-Koreans in Manchu, Ching dynasty, imperialism, Jeong Hyoseo, Confucius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제 1·2·3 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
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 · 중세 · 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제1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연구실장이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충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충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 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2호(2008. 12)

초판 1쇄 인쇄 2008년 12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08년 12월 30일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75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